

# 여성학연구

2026년 제36권 1호

논문

기후위기 시대, 육외작업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향수·류지아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환경정의' 연구 지형 | 배혜정  
광장의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시민성 | 정연보  
성차별적 호칭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 배홍철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젠더화 | 김경미  
가사육아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문지선  
팬데믹 시기 60대 여성들의 자기 계발과 그 의미 | 최이숙  
조선 후기 『受教輯錄』 소재 여성 관련 수교 연구 | 홍지현  
나이지리아 힙합의 (서)아프리칸 페미니즘 실천 | 권영승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여성학연구

*PNU Journal of Women's Studies*

제36권 제1호 | 2026. 4.

Vol.36. No.1. | 2026. 4.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 목차 |

### 특집 논문 젠더, 생태, 삶

- 김향수 · 류지아 | 기후위기 시대, 옥외작업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7
- 배혜정 |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환경정의’ 연구 지형  
-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중심으로 ..... 45

### 일반 논문

- 정연보 | 광장의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시민성  
- ‘응원봉 시위’의 물질들을 중심으로 ..... 81
- 배홍철 | 성차별적 호칭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 1990~2025년 전국 일간지의 “여류(女流)” 표현  
사례 분석 ..... 121
- 김경미 |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젠더화  
- 시간 접근권의 불평등 ..... 151
- 문지선 | 가사육아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2015~2025년 성별 일자리 질 비교를 중심으로 ..... 181
- 최이숙 | 팬데믹 시기 60대 여성들의 자기 계발과 그 의미  
- 나이듦 그리고 불안과 마주하기 ..... 239
- 홍지현 | 조선 후기 『受教輯錄』 소재 여성 관련 수교 연구  
- 여성 규범의 법제화 작용 사례에 대한 고찰 ..... 283
- 권영승 | 나이지리아 힙합의 (서)아프리칸 페미니즘 실천  
- 아티스트 ‘시미(Simi)’ 사례연구 ..... 319



## 젠더, 생태, 삶

김향수 · 류지아 | 기후위기 시대, 육외작업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배혜정 |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환경정의' 연구 지형  
-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중심으로



## 기후위기 시대, 옥외작업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향수\*\* · 류지아\*\*\*

### | 목차 |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문헌 고찰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 방법 |            |

### | 초록 |

본 연구는 교차성 관점에서 여성 노동자의 기후 건강 경험을 탐색하고, 건강 위협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와 옥외작업 여성노동자(조선소, 물류, 검침 등)를 질적 면담하여 기후위기 하의 직업건강 경험을 조사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의 적용 제외와 체류 지위의 불안정성, 산업안전보건조치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폭염 속 장시간 연속 노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지와 비닐하우스 등 옥외 및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 둘째, 도시 옥외작업 여성노동자들은 성별 분업에 기반한 직무 특성과 작업 통제권의 부재,

\* 이 연구는 2025년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정기학술대회 〈기후위기 시대, 마주침의 정치를 향하여: 페미니즘, 생태, 돌봄〉에서 발표한 “기후위기 시대, 직업건강과 젠더: 옥외작업여성노동자의 경험을 중심으로”를 수정한 것으로, 2024년 여성가족부의 『중대재해감축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에서 수행한 질적 연구 중 계절적 유해 요인에 관한 면담자료를 분석한 글이다. 학술대회에서 논평을 해주신 창원대 이정은 선생님과, 이 글을 읽고 유익한 제안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 제1저자: 성공회대학교 nostalgia79s@gmail.com

\*\*\* 교신저자: 가톨릭관동대학교 jiyajiya000@gmail.com

여성 직업건강 위협의 저평가로 인해 기후 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험의 사사화(privatization of risk)’를 경험한다. 기후로 인한 건강 위험은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을 넘어 성별화된 직종 분리와 비정규직 노동의 불안정성, 체류 지위, 물성적 산업안전보건정책이 결합하여 건강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보편적 노동자’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노동자 집단의 복합적 취약성을 반영한 성인지적 직업건강 예방 체계로 전환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기후위기, 직업 건강, 젠더, 여성 노동자, 교차성

## 1. 서론

기후위기는 ‘인류세(Anthropocene)’라 불리며 인간종이 초래한 문제로 논의되지만, 그 영향과 대응 역량은 사회 집단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기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매개되어 전개되며, 기후위기의 적응 능력은 “위험 분산 능력, 형평성, 정보 접근성, 인프라, 제도, 기술, 경제적 자원 등(Duncan, 2006: 641)”에 의해 결정되기에 가난한 국가나 지역, 노약자, 아동, 여성,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취약 집단으로 보고된다. 기후위기는 안전한 식수, 식량, 주거, 의료 접근 등을 위협하기에, 공중보건·사회정의·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Levy & Patts, 2015; Solomonian & Di Ruggiero, 2021). 대응 정책과 전략이 젠더화된 권력 구조를 간과하거나 탈정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Denton, 2002; Moosa & Tuana 2014; Buckingham & Le Masson, 2017; Pearse, 2017). 기후위기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결합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건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증폭 요인(multiplier)으로 작동하기에(IPCC, 2022),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온 노출을 통해 노동자의 심혈관계 부하를 가중시키고 신진대사 조절 기전에 병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보건학적 위협으로 작동한다. 국내에서도 폭염기 옥외작업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은 총 147건이며, 그중 15%에 달하는 22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김연정, 2024).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자의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이도운, 2025).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 건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나, 동시에 ‘어떠한 몸이 취약한 주체로 인식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혹은 ‘누구의 몸은 이 논의에서 배제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대중매체는 주로 고령 농업인이나 건설업·물류업 노동자의 산재를 조명하지만,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여전히 기후건강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사망한 이주여성 고(故) 속행의 죽음은 기후위기가 특정 집단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기후 건강 위협을 단순히 ‘야외 작업’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문제로만 국한한다면, 그 이면에 작동하는 고용 형태, 법적 지위, 주거 환경 등 복합적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ILO는 기후위기가 노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단일한 열 노출 차원을 넘어, 다각적인 유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 결과를 악화시키는 ‘위험의 칵테일(cocktail of risks)’구조를 형성한다고 경고한다(ILO, 2024: 102). 실제로 농업 및 건설업 등 옥외 작업 노동자는 극한의 열 스트레스(heat stress)뿐만 아니라 자외선, 대기오염, 매개체 감염병, 농약 노출 등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에 동시에 노출된다. 폭염과 한파라는 물리적 위험은 고용 형태, 산업 구조, 젠더화된 노동 분업, 그리고 산업보건 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과 같은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매개되며 그 위

중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후위기 하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실효성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취약성이 상호 작용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관점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차성을 핵심 분석틀로 삼아 옥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기후 건강 경험을 탐구한다. 교차성 분석은 첫째, 특정 집단의 경험과 위험이 배제되지 않기 위한 비판적 도구이다. Kaijser와 Kronsell(2014: 429)의 지적처럼, 질적 연구에서 교차성의 핵심 기여는 ‘누가 취약한가?’를 넘어 ‘왜 취약해지는가?’라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에 있다. 본 연구는 이 질문에서 나아가 ‘누구의 취약성은 왜 이야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맥락에서 노동자 개인·작업 환경·법제도적 차원에서 취약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건강 위험을 형성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둘째, 교차성 접근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기후건강 위험은 자연 현상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성별 분업 체계, 산업안전보건 제도 등의 실행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로, 교차성 접근은 위험을 만들어내는 요인들과 그 상호작용을 조사하여, 개입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떠한 사회적·제도적 요인이 옥외작업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분석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문헌 고찰

### 1) 기후위기와 여성 건강

기후위기와 여성 건강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기후위기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들이다. 이들은 가뭄, 폭염, 허리케인, 홍수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여성의 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빈곤층,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여성 가구주 가구(female-headed households)에게 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된다(Denton, 2002; Alhassan et al., 2019; Poudel et al., 2020). 가나, 네팔, 콩고 등 중·저소득국가 농촌 지역 여성과 소녀들은 물 부족으로 우물, 강, 연못 등 물 확보 과정에서 매개체 감염병뿐 아니라, 산림 황폐화로 장작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피로와 동물 공격, 성폭력 등에 노출된다(Pommells et al., 2018; Tallman et al., 2023; Apatinga et al., 2024; Meeuwisse et al., 2024; Tallman et al., 2025; Tshimambu et al., 2025). 폭설과 눈보라, 빙하 해빙으로 북극권의 이누이트 등 토착민 여성들은 해산물 수확량 감소로 인한 식품 불안정 증가, 생활 기반의 변화, 건강 위험 증가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돌봄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Beumier & Ford, 2010; Bunce et al., 2016; Friedrich, 2023). 기후 변화는 식수 염분 증가를 통해 임신 중 고혈압 발생률을 높이고(Khan et al., 2011; Scheelbeek et al., 2016; Howells et al., 2025; Costopoulos et al., 2025), 재생산 건강과 정신 건강(불안, 우울, 트라우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Giudice et al., 2021; Stone et al., 2022). 또한 재난 상황에서의 자원 부족은 젠더 기반 폭력과 착취 위험을 증가시켜,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van Daalen et al., 2022; Allen et al., 2024; Osman et al., 2025). 이들은 여성과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기후 건강 영향을 분석하며, 젠더가 계급,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과 교차하며 기후위험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여성의 기후 관련 취약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다(Arora-Jonsson, 2011; Tschakert & Machado, 2012; Moosa & Tuana, 2014; Pearse, 2017; Perkins, 2018).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기후 관련 취약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특성이나 내재적 요인이 아닌, 사회경제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조직되는 방식과 밀

접히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Perkins(2018)는 여성이 환경 재난과 극한 기상현상에 취약한 이유를 첫째, 여성의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 둘째, 재생산 건강과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특정한 요구, 셋째, 긴 기대수명으로 인한 고령기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 넷째, 사회적으로 제한된 선택지로 인한 유무급 돌봄 노동 수행으로 설명한다. 취약성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여성의 능동적 역할과 체현된 지식을 간과할 수 있기에, 여성의 행위성과 회복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laimo(2009)는 ‘반란적 취약성(insurgent vulnerability)’개념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물질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여성의 취약성을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태로만 바라보기보다 환경적 불평등과 권력 구조(정부와 기업의 책임, 자본주의, 소비주의, 기술주의 등)를 가시화하고 윤리적·정치적 대응을 촉발하는 조건으로 제안한다.

셋째, 기후위기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들은 의료적 지원에 한정하기보다 빈곤, 사회경제적 지위, 고용 형태, 자원 접근성 등을 고려하는 교차성 접근의 필요를 강조한다(Sorensen et al., 2018; Desai & Zhang, 2021; Zavala et al., 2024; Anjum & Aziz, 2025). 네팔,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의 연구는 동일한 기후 위험 속에서도 젠더 권력 구조와 자원 접근권에 따라 건강 영향과 사회적 대응이 상이하게 전개됨을 보여준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젠더 규범과 의사결정 배제 등으로 여성의 물 확보 부담이 증가한 반면(Dickin et al., 2021),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성들이 공동체 자원 관리, 지역 지식,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물 확보와 생계 활동 다각화, 홍수와 염수 침투 등 다양한 적응 전략을 발전시켰다(USAID Adapt Asia Pacific & The Center for People and Forests, 2017; Tanjeela & Rutherford, 2018). 이는 물 접근성의 문제가 환경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식수 체계, 가족 내 젠더화된 물 관리 책임, 대체 수자원 접근성, 의사결정 권한 등 사회·문화·경제·정치적 요인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강 취약성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개입과, 교차성에 기반한 통합적 전략과 대응을 마련함으로써 건강 형평성과 젠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여성 건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아열대·열대 지역의 중저소득국가 농촌 지역에서 주로 수행되었기에, 고소득 국가의 산업화·도시화된 사회에서 사회복지체계, 노동시장 구조, 생활 환경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젠더화된 적응 전략의 형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Pearse, 2017; Desai & Zhang,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폭염이 장기화된 한국 사회<sup>1)</sup>에서 여성의 기후 건강 경험을 교차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2)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전통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연구는 ‘보편적 노동자’를 상정해 왔으나, 실질적 표준은 남성 중심의 산업 구조와 직무 특성을 기준으로 구축되어 왔다.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인 직무 연관성의 입증 과정에는 노동자의 계급, 젠더, 인종적 속성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Messing(1998)은 기존의 산재 보상 체계가 남성 집중 직종의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정립됨에 따라, 여성 노동자의 고유한 상해와 질환이 보상 체계에서 가시화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여성 직업건강 문제는 노출지표와 건강 결과 간 인과관계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 및 과학적 입증의 부재 혹은 부족으로 인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악순환을 반복한다(정진주 외, 200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LO(2013)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성주류화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성주류화 관점 적용뿐만

1)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통해 폭염과 풍수해를 포함한 재난 대응을 강화하며, 2024년과 2025년 모두 5월 중순부터 약 4개월간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4, 2025). 이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폭염이 일시적 기상 이변을 넘어 일상화된 기후 재난으로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니라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및 역학 연구 전반에 성별 차이를 반영하고 성별 분리 통계에 기반한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남녀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성별 신체 치수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 보호구(PPE)와 작업 장비의 설계, 그리고 근무 시간 배치와 일·생활 균형을 고려한 포괄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제안하고 있다(ILO, 2013; 류지아 외, 2024: 125~127 참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사회적 차이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및 통계 구축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열악한 주거 환경, 정보 접근성의 제약, 사회적 고립 및 젠더 폭력의 위험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 하에서 건강 불평등이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김영혜 외, 2019; 하바라, 정은아, 2021; 이수연, 2022; 우춘희, 2023), 여성 농민들 또한 반복되는 자연 재해로 인한 경제적 생존 위기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정숙정,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편적 노동자’ 모델은 젠더화된 노동 현실과 기후위기로 인해 증폭되는 중층적인 위험 노출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건설 및 제조 등 남성 집중 업종의 물리적 유해 인자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됨에 따라,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의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김영택 외, 2022). 이는 전통적인 물리적·화학적 인자에 편중된 관리 방식이 여성 노동자가 자주 노출되는 사회심리적 유해 요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화된 건강 위험을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ILO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기후위기와 직결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ILO, 2024). 이러한 위험은 농업·건설·운송 등 전형적인 육외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 작업장이나 환기가 불충분

한 폐쇄 공간, 그리고 제빵·주조·세탁 등 열을 발생 공정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한다(NIOSH, 2016). 기후 건강 영향은 고용 형태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되며, 저임금·계절·영세사업 노동자와 같은 취약 집단에 그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불평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직업건강 위험은 산업 구조, 성별 분업, 고용 형태 등과 교차하며 특정 집단의 구조적 취약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위험은 사회경제적·문화적·생리적 요인을 통해 매개되므로 이러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경로를 규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젠더 분석이 필수적이다. Moyce 외(2017)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히스패닉 여성 농업노동자 연구를 통해 수확량 기반의 임금 체계가 시간급 체계에 비해 급성 신손상(Acute Kidney Injury)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작업 효율 유지와 위생시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수분 섭취와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탈수와 열 부하(Heat strain)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집트의 임신한 옥외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열 노출로 인해 체온 조절 부담이 증가하고 혈압 변동 등 생리적 과부하를 겪으며, 이러한 조건이 고강도 노동과 결합될 경우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등 재생산 건강 위험으로 이어진다(El Khayat et al., 2022). Habibi 외(2024)에 따르면, 열대·아열대 지역 여성 노동자의 열 부담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 및 젠더 규범(히잡 등 종교에 따른 의복 규범)과 결합하여 피로, 탈수, 인지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발생 위험의 증가로 직결된다. 이에 공학적 개선(작업장 환기, 냉각 설비 설치, 차광 시설 확보 등)과 조직적 개선(폭염 시 작업시간 탄력 운영, 휴식 및 수분 섭취 규정 강화, 취약 노동자의 업무 재배치, 휴게 공간 확보)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인지적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한다.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직업건강 위험은 단순한 외적 노출을 넘어 산업 구조, 성별 직무 분리, 임금체계, 고

용 불안정성, 이주 지위 등과 교차하며 사회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므로, 성인직적 직업건강 연구는 여성과 주변화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학문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중대재해감축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에서 수행한 질적 자료 가운데, 야외에서 일하는 여성<sup>2)</sup>의 면접 자료 중 폭염·폭우·한파·폭설 등 계절적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내용을 분석자료로 한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목적 표집으로, 노동조합, 노동자건강권운동단체, 이주민지원단체, 한국여성노동조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은 산재보상 신청한 경험이 있거나 농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나 직업병으로 치료받거나 일을 그만둔 여성을 눈덩이 표집으로 모집하였다.

면접 조사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근무 일정, 거주 지역, 사용 언어(통역 동반) 등으로 개별 면접과 초점집단 면접을 병행하였다. 면접 1회당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이며, 모두 대면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은 녹음

---

2) 본 연구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보고한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 조건으로 인한 작업 위험과 보호 조치 부재로 인한 부상 경험과 개선 조치 요구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업종과 직무에 따라 옥외, 반옥외, 고온의 실내 작업장에서 일한다. 조선업 여성 노동자들은 작업 과제에 따라 선박 내부와 선박 외부인 옥외를 오가며 작업하고, 물류 센터 여성 노동자들은 물류의 이동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반옥외 물류 창고에서 일한다. 이들은 여름철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옥외보다 더 높은 온도에 노출된 채 일하곤 한다. 면담에 참여한 농업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여성들로, 작업 과제가 노지 재배작물일 경우 옥외에서 일하며 시설 재배 작물일 경우 고온다습한 실내 환경인 비닐하우스에서 일한다.

되었고, 녹음된 파일은 전사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여성 노동자(조선업 노동자 2명, 물류업 노동자 4명, 도시가스 검침원 1명, 농업노동자 4명) 11인과 이주민지원단체 활동가 1인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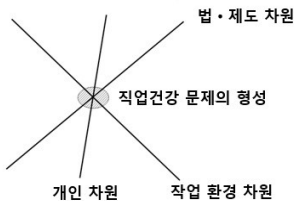
|          | 업종   | 직무      | 고용형태  | 연령  |
|----------|------|---------|-------|-----|
| 연구참여자 1  | 조선업  | 도장      | 계약직   | 50대 |
| 연구참여자 2  | 조선업  | 발판      | 계약직   | 50대 |
| 연구참여자 3  | 물류업  | 입고(반품)  | 무기계약직 | 50대 |
| 연구참여자 4  | 물류업  | 출고(포장)  | 무기계약직 | 50대 |
| 연구참여자 5  | 물류업  | 출고(포장)  | 무기계약직 | 50대 |
| 연구참여자 6  | 물류업  | 입고(반품)  | 계약직   | 40대 |
| 연구참여자 7  | 기타산업 | 도시가스검침원 | 계약직   | 50대 |
| 연구참여자 8  | 농업   | 농업노동자   | 고용허가제 | 30대 |
| 연구참여자 9  | 농업   | 농업노동자   | 고용허가제 | 30대 |
| 연구참여자 10 | 농업   | 농업노동자   | 고용허가제 | 30대 |
| 연구참여자 11 | 농업   | 농업노동자   | 고용허가제 | 30대 |
| 연구참여자 12 | 농업   | 이주민지원단체 |       | 50대 |

## 2)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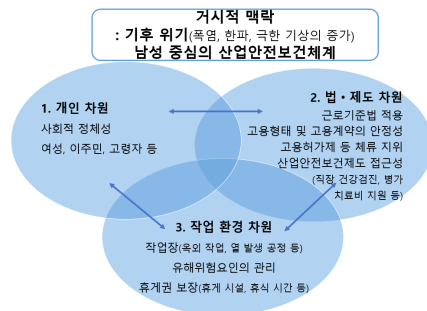
본 연구는 옥외 작업 여성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적 배치가 불평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주목하는 체계 중심(system-centered) 교차성 접근(그림 1 참조)을 취한다<sup>3)</sup>. 이 접근은 불평등

3) 주와 페리(Choo & Ferree, 2010)는 교차성 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집단 중심(group-centered approach), 과정 중심(process-centered approach), 체계 중심 접근(system-centered approach)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집단 중심 연구는 주변화된 집단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에 두며, 과정 중심 연구는 젠더·계급·인종 등이 상호

이 특정 집단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법·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과 같은 제도적 배열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보기에, 제도와 그 작동 방식이 기회와 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동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형성하고 재생산하는가에 초점을 둔다(Choo & Ferree, 2010: 135~145).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기후건강 경험을 형성하는 거시적 조건과 더불어 개인 차원, 법·제도 차원, 작업 환경 차원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일터의 건강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직업건강에 대한 제도 중심 교차성 접근



〈그림 2〉 분석틀

여성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을 형성하는 거시적 조건은 첫째, 폭염, 한파, 극한 기상 현상 증가 등의 기후위기, 둘째, 남성 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이다. 노동자 개인 차원에서는 여성, 이주민,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정체성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계절 노동과 계약직 등 고용 형태로 인한 고용 안정성, 고용허가제 등과 같은 노동자의 체류 지위, 산업안전보건제도 등으로 구

작용하여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주목하며, 체계 중심 연구는 다양한 사회 시스템이 서로 얹혀 구성되는 불평등의 복합성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한다. 본 연구는 체계 중심 교차성 접근을 취하지만, 세가지 접근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성된다.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접근성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검진의 실시 여부, 유급 병가나 공결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으로 정의한다. 작업 환경 차원은 옥외 작업이나 고온의 실내 작업장과 열 발생 공정 등 작업장 환경, 위험성평가 등 개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와 개선 수준,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등 휴게권 보장 여부 등 직업건강 노출 요인과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림 2>의 분석틀은 다층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옥외작업 여성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의 도출을 가능케 한다.

#### 4. 연구 결과

##### 1) 체류 지위와 법적 사각지대의 교차: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 (1) 근로기준법의 “예외 근로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지속적 열 부담

폭염·한파 등 극한의 기상 요인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결합할 때 치명적 건강 장애를 유발한다. 고온 환경에서 적절한 휴식 없이 작업이 지속될 경우, 체내 열 발산 기전의 과부하로 심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탈진(Heat exhaustion)이 발생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을 동반한 열사병(Heat stroke)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주기적인 휴식과 수분 섭취, 체온 저감을 위한 공학적·조직적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및 폭염 대응 권고에 반영된 핵심 요소로, 노동자의 건강 손상을 막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면담에 참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은 폭염 경보 문자에도 야외 노지(露地) 재배지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조치<sup>4)</sup>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고, 매일 5시 50분 출근하고 12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은 한 시간, 1시부터 4시까지 일해요. 그 사이에 오후 간식은 10분~15분, 4시 퇴근이에요. 추가하는 날은 저녁 8시까지 일해요, 8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숙소 와서 저녁 준비해 먹는 거예요. (2시간에 10분 쉬는 건 없는지?) 없습니다(연구참여자 9, 농업노동자).

비닐하우스는 여름에 엄청 더워요. 겨울에도 엄청 추워요. 여름에는 말도 안 되게 진짜 힘들어요. 숨 쉬는 것도, 선풍기도 없고, 차양막 덮으면 괜찮은데, 우리 농장은 없었어요(연구참여자 8, 농업노동자).

핸드폰에 문자 왔잖아요. (면담자: 쉬어라) 쉬어라 왔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 쉬어본 적이 없고, 근데 사장님이 그냥 1시, 2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라 해요, 2시하고 4시 사이에는 비닐하우스는 더우면서도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 때는 사장님하고 정보가 조절되면 좋겠다(연구참여자 11, 농업노동자).

이들은 계절적 변화와 상관없이 하루 9~10시간, 농번기에는 12시간 가량 일하며, 휴일은 2주일에 1일, 한달 평균 28.5일 일한다. 표준계약서에 휴일이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시간 연속 노동을 한다. 농업노동자는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식·휴일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열이 순환되지 않아 고온다습한 비닐하우스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일한 경험을 보고한다.

너무 더워서 참은 거지. 왜냐면 사장님이 혼내니까. 진짜 못 참으면, 구토하고. 어지러워서 못 참아서, 비닐하우스 밖에서 바람 쐬고 또다시 들어오고. 구토 안

---

4)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수칙, 체크리스트, 대응요령 등을 배부하고 있다. 면담이 이루어진 2024년도 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 31℃ 이상일 경우 시원한 물과 그늘 등 휴식공간과 노동자 요청 시 보냉장구를 제공하고, 33℃ 이상 ‘주의’ 단계에서는 매시간 10분 휴식과 옥외작업 시간 조정을, 35℃ 이상 ‘경고’ 단계에서는 매시간 15분 휴식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나오는데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올라오면, 그냥 비닐하우스 밖으로 뛰어나와요. 물은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또 눈치 보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자주 나가면 되게 안 좋아해요. (중략) 친구 일하는 데 갔는데, 거기는 선풍기 있었어요. 전 행운이 없어. 내가 일하는 비닐하우스는 선풍기 없어. 작업한 거 박스 안에 넣는 곳은 선풍기 에어컨까지도 있어요. (면담자: 포장하는) 왜냐면, 사모님이 같이 일하니까(연구참여자 9, 농업노동자).

상추 매일매일 계속 따야 하거든요. 두 명이니까 부족해서, (농장에 고용한 노동자를 겨울에) 줄였어요. 겨울이 되면 손이 부어요. 동상 입는 것도 있고. 일하다가 손이 부어서 엄청 가려워져요.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약 먹고 좀 바르고 괜 찮아졌어요. (중략) 일할 때 옷 세 겹으로 입고. 털 있는 신을 신어서 작업했는데, 근데 발가락 끝에는 시럽조. 아침에 이슬 있으니까, (작물을) 따다가 물 축축해요 손에. 그것 때문에 더 추워요(연구참여자 10,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연구참여자 9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오심(Nausea), 두통, 현기증 등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위계적 통제와 질책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노동자의 휴게권을 박탈시키고 위험 노출을 강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또한 연구참여자 10이 경험한 차고 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은 저체온증뿐만 아니라 동창(Chilblains) 및 참호족(Trench foot)과 같은 말초 혈관계 손상을 야기함에도, 적절한 보호구 지급이나 의학적 조치 없이 일해야 하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기후 건강 위험은 노지와 밀폐된 비닐하우스라는 작업장 환경뿐 아니라 장시간·연속 노동, 온열질환 예방조치의 미이행 등 법·제도의 비작동, 노동시간 설계와 작업 조직 등 사회심리적 유해·위험요인의 미개선, 적절한 개인보호구의 미지급 등 작업환경 위험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2) 위험성평가의 미실시: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

농업 현장에서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됨에도 사업장 차원의 체계적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채소·과일 재배는 과거 고령 농촌 여성의 ‘밭일’로 인식되어 노동 강도와 건강 영향이 저평가되어 왔다. 연구참여자8의 경험에서 보듯, 농작물 재배 노동 역시 비닐 설치·철거와 작물 정리 등 고강도 육체노동을 수반한다.

진짜 진짜 힘들어요. 고추 심기 전에 (몸짓으로 설명) 켜가지고 다 이렇게. (면담자: 밭을 가는 거. 고르게, 흙 뒤집고.) 밭을 만들어 해. 비닐 펴야 하고, 나중에 비닐 다 버려야 하고 두 사람이 이걸 땡겨야 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어깨 엄청 아파요. 비닐이 엄청 길어요. (팔 뻗으며) 거기까지 똑같은 비닐을 당기고 묶어서 버려야 되고, 다시 못 쓰니까. 고추나무나 상추 버릴 때 다 같이 버려야 되니까. 진짜 힘들어요. 진짜 무거워요. 더울 때는 또 고추나무 말리면 먼지 엄청 나 (연구참여자8, 농업노동자).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산부인과 질환. 습한 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일하고, 매일 일하며 움직이는 공간이 습하고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요. 그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쪼그려서 봐야 하고, 화장실 위생도 숙소 위생도 좋지 않지. 코로나 때 위생 이야기 한 것처럼, 손 씻고 깨끗해지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냐 말이지요. 비닐하우스 숙소가 74%란 말이지요, 여전히 별로 개선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12, 이주민지원단체 활동가).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장으로 재편된 현대적 작업 환경에서 노동 집약적 작업량과 인간공학적 부담,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유해 요인에 대한 관리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직업병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들의 일터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은 농약 노출과 같은 화학적 위험뿐만 아니라 고온·다습한 비닐하우스 내부의 미생물 증식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 그리고 장시간 부적절한 작업 자세(쪼그려 앉기, 허리 굽힘 등)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열악한 휴게 및 위생 시설과 제한된 화장실 접근성은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한 이

주민단체 활동가의 지적처럼, 이러한 작업 환경과 위생 관리의 부재는 상행성 감염(Ascending infection)을 통한 질염 및 비뇨기계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폭염 시 수분 섭취 제한과 결합한 신장 기능의 저하 등과 같은 심각한 건강 손상을 초래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계속 일하는데 농사 약도 뿌렸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증상 없었는데, 계속 밑에 쪽이 좀 가렵고 냉이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농약 없었는데, 계속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니까, 거기서 약 뿌리고, 아가씨이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못 가요. 그냥 약만 사서 먹지. 여성들이 남자도 아니니까 자궁이 있어요(연구참여자 10, 농업노동자).

(일사병에) 두통약을 사모님이 챙겨주셨어요. 숙소도 엄청 더워요, 여름에 에어컨 고장나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집이에요. 여름에 더워서 밥도 안 먹어요. 요리하는 게 덥고, 입맛도 없고, 과일 많이 먹었어요. 물도 많이 먹고, 식해도 먹고. (중략) 식혜는 입맛에 맞아서. 아마 다른 사장님들도 주시니까(연구참여자 9, 농업노동자).

한 하우스에 두 명씩 짝으로 일하고, 물 못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일 없잖아요. 화장실이 멀어서, 그냥 하우스 안에서 어차피 여자끼리니까. 근데 물 자주 못 먹는 게,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걸어도 한 5분 거리. 화장실 갔다 오면, 사장님한테 혼나니까 못 가요(연구참여자 11, 농업노동자).

작업 환경에서의 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화학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불충분한 산업안전보건조치는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건강 위험을 적절히 포착하여 예방조치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 (3) 제한된 의료접근성: 직업건강 문제의 비가시화

의료 접근성의 제한은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건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경험한다.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주여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한국인 의료진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 병원에 방문해야 하기에, 의료기관 방문과 선택 역시 고용주의 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면담에서 만난 여성들은 일하다 아프더라도 주로 감기약, 진통제, 두통약, 파스 등만을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보고한다.

여름에 수박 하다가 쓰러졌어요. 힘이 없어 녹초가 돼서 쓰러지는 거. 약간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쓰러진 거죠. 옆에 친구 소리 지르고, 캄보디아 파스 코에 해주니 깨어났어. 사장님 와서 조금 이야기하고, 약 주고 끝이에요. (면담자: 병원에 가거나 검사는 없었나요?) 없어요. 아마 두통약? “두 개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며 약 주고(연구참여자 10, 농업노동자).

여름에 저와 친구들 몇 명 알려지 생기고, 몇 명은 겨울에 생기고, 엄청 추워서 손 시리면 발이나 몸이나 알려지 생기고, 아픈 거는 치료는 안 하지만(연구참여자 8,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일하면서도 병원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여기 와서, 지금 세 번 진료받고 약 먹고 지금 나왔어요. 냉도 좀 줄었어요. 의사가 굵이 있고, 염증이 조금 있다고(연구참여자 9,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연구참여자 9는 농장 일을 그만둔 이후 도시의 이주민 공동체에서 여성들로부터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지하게 되어 치료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주노동자 개인의 사용 언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는 증상 설명, 진단 이해, 치료 선택 등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면담에 참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은 아파도 참고 일했으며,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유급 병가 부재로 사후 관리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준수할 수 없었다. 면접에 참여한 이주여성 4명 중 근무 시간 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한국 도착하자마자 교육받고 사장님한테 와서 다음 날부터 계속 일해요. 아침 5시 50분에 출근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21일간 쉬는 날 없었어요. 일 때문에 몸이 아프고, 통증 많이, 면역력이 떨어져. 갑자기 위가 아파요. 계속 구토만 해요. 사장님 하루 쉬라고 하고 다음 날 은 가서 일하라고 했어. 힘없이 일하는데. 계속 구토만 해요. 사장님이 “너 임신하니?”래서, “임신 아니라 계속 일 힘들고. 음식도 안 맞다”니까, 사장님이 병원 데려갔어요. 소변 검사하니까 임신 아닌 거죠. 아마 탈수증 생겼나 봐. 링거 하나 맞고,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었어요(연구참여자 9, 농업노동자).

토마토 나무 털이 너무 나서, 알러지가 생겨서. 그때는 병원 가서 치료받았어요. 약도 먹고 안약도 넣고. 친구들도 몸 알러지 생겼어요. 빨간 거 가려운 거. 친구들은 치료 안 받고. 저는 너무 아파서 일 못 해서,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근데 계속 일해야 하니까. 또 농장에 들어가면 알러지 또 올라와요. 의사 선생님이 “알러지 생긴 자리는 안 하면 좋겠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쉬면 월급을 잘라요(연구참여자 8, 농업노동자).

연구참여자 9는 입국 후 21일간 휴일 없이 하루 12~13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지속한 뒤, 어지럼증·구토·실신과 같은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상을 보였으나, 고용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산부인과로 가서 임신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 임신이 아닌 온열질환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알레르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증증 증상을 겪은 연구참여자 8은 고용주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자비로 치료 받았으나, “완치될 때까지 토마토 줄기에의 접촉을 금하라”는 의사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즉각 일터로 복귀하여 유해인자에 재노출되었다. 이들의 병원 치료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아닌, 임신 여부 확인이나 노동력 손실 방지를 위한 고용주의 선별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언어 장벽, 정보 부족, 사업주와의 권력 불평등, 농촌 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은 이들의 의료 이용을 제한한다. 직장 건강검진 및 유급 병가의 미 실시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개인의 건강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직업병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와 연구, 정책 부재로 이어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직

업건강 문제를 비가시화한다.

#### (4) “성실 근로자”와 체류 기한 연장: 협상력 부재로 인해 아파지는 몸

체류 지위의 불안정성은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건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고용허가제(E-9) 하에서 체류 기간 연장은 사업주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므로, 노동자는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휴식·치료 등을 협상하기 어렵다. 연구참여자 8는 ‘성실 근로자’라는 지위가 체류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작동하면서 노동자로 하여금 고된 노동을 감내하도록 만들고, 건강이 악화되어도 치료를 요구하지 못한 채 해고와 귀국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심리적 압박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 못 하겠어”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1년 더 버텼어요. (면담자: 다행히 빠이빠이 해주셨네요). 네. 너무 아파서 자니까. 일을 못 하니까. 맨날 더워서 일하다가 물 마셔도 땀이 많이 나와서. 다른 친구들은 힘들지만, 저는 머리가 아파서 토해요. 계속 토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고 눈도 볼 수가 없고. 그거 보고 사장님도 나중에는 안 되겠다했던 것 같아요. (중략) 나 걱정 많이 했죠. 돈 벌려고 왔는데, 몸이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돈 벌까. 다른 일도 찾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안 보내줄까 걱정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연구참여자 8, 농업노동자).

연구참여자 8은 한 농장에서 4년간 근무하는 동안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고, 여름철에는 열 관련 질환으로 일주일가량 와병하였다. 그는 당시 병원에 가는 등 치료 계획을 세우기보다, 해고와 귀국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 일터에서, 내국인 노동자는 건강이 악화될 경우 퇴직 후 회복을 거쳐 재취업하곤 하지만, 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아파도 참고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경우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을 받는다. 법·제도 영역에서 유급 병가 및 공결제도 이용 등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접근성은 체



류 지위와 결합하여 이주 노동자가 질병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휴식이나 치료에 대한 협상력을 제한하여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 2) 작업 위험의 저평가와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조치의 부재: 옥외작업 여성 노동자

### (1) 휴게 공간 접근성과 몸의 회복

물류센터, 조선업, 도시가스 검침과 같이 옥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폭염 단계에 따라 10~15분 그늘에서 휴식이 권고되지만, 짧은 휴게 시간, 휴식 공간까지의 이동 거리, 성별 분리되지 않은 좁은 공간으로 휴게 공간 이용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에어컨이 설치된 그늘 공간이나 휴게시설 마련 등 공학적 대책이 제안되지만, 대형 선박 등 작업 지점에서 휴게 시설까지의 이동 거리가 길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름 되면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놔요. 그 안에 에어컨도 하나 넣어놓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마루처럼 누워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면 한 15~20명? 거기 가면 태반 남잔데(연구참여자 1, 조선소 노동자).

블록 밑에 그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떼기 주어가다가 깔고 자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햇빛 쬔할 때는 이 블록 밑에 들어가서 그늘 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고요(연구참여자 1, 조선소 노동자).

1층이 100명 정도인데 폭염 휴게실 안에는 25~30명 들어가면 서있어야 해요. 근데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면 남자들이 못 들어오고, 온도가 18도로 내려놔도 들어오면 사람 냄새 때문에 오래 못 있고(연구참여자 4, 물류센터 노동자).

나머지는 야외에서 좀 바람을 쐬다거나, 2층이 식당으로 올라가면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근데 힘들잖아요. (포장일은) 두세 시간 동안 서있으니, 걷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휴게시간에 목숨 걸고 2층 휴게실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가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힘들니까. 어지럼증을 호소한 분들도 많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연구참여자 5, 물류센터 노동자).

의자를 다 없었어요. 빠레트 위에 그냥 종이 깔고, 박스 깔고, 뽁뽁이 깔고 이런 식으로 앉아 쉬고, 또 누워 있으면 안 되고(연구참여자 6, 물류센터 노동자).

조선업 및 물류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성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게 시설에서 실질적인 이용 제약을 경험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폭염시 휴게 시설 설치, 휴식시간 준수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작업 환경 측면에서 작업장의 성별 분포, 성별 분리 휴게 공간의 부족, 작업장의 규모와 휴게 시설의 거리 등으로 휴게 공간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성 노동자가 공간을 점유하거나 성별 분리 시설이 전무한 경우, 이들은 선박 하부나 작업장 내 유히 공간에 임시로 박스를 설치하여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한다. 기후위기 하에서 휴게권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적절한 휴게 공간은 상승한 심부 온도를 낮추고 열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을 완화시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생리적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휴게 시설의 설치를 넘어, 성별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간의 제공과 휴식 시간 준수를 강제하는 조직적·관리적 대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 (2) 계절적 위험요인에도 줄어들지 않는 작업량

여성 노동자들은 폭염과 한파 등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작업 강도나 물량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아 탈수, 만성 피로, 열사병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계절적 유해 요인을 반영한 작업 속도의 조절이나 작업 배분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 여성 집중 직종의 노동 강도나 생리적 부하는 종종 저평가됨에 따라, 폭염과 한파라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노동자의 신체적 항상성에 미치는 치명적 부담을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험의 과소평가는 결국 예방 가능한 보건학적 위험을 방치하고, 여성 노동자를 기후위기 하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도록 한다.

겨울에 따뜻한 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은 안 돼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휴게 시간을 꼭 달라는 이야기에요. 업살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해요. 진짜 3시간 4시간 계속 하다 보면 손이 어떨 때 막 꺾여. 저러서 손가락이 안 움직여져요. 손을 막 주물러서 펴주고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서러워, 서러워요. (중략) 관리자 자리에서는 온풍이 나오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일하기 싫다고. 온풍기를 우리 쪽으로 작게만 줘도 돼(연구참여자 5, 물류센터 노동자).

겨울에는 수량이 떨어져요. 당연히. 왜냐면 옷도 두껍게 입어 그쵸? 그다음에 물건도 커요. 크니까 테이프도 안 붙어. 얼어요. 어떨 때는 정수기가 얼어서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중략) 겨울에 목 감기 걸릴까 봐, 일하다 추우면 (상표 라벨이나 송장을 떼기 위해 둔) 드라이기를 목하고 (가슴 쪽을 가르키며) 여기다 넣어서 내 몸에도 쏘요. 추우니까(연구참여자 3, 물류센터 노동자).

물류센터 여성 노동자들은 동절기 저온 환경에서 두꺼운 방한복과 얼어붙은 작업 장비로 인해 작업 효율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물량을 완수하기 위해 무리한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추위로 인한 근육 경직, 말초 감각 저하, 손 저림 증상을 겪으면서도 작업 속도를 늦출 수 없는 구조적 압박에 노출된다. 특히 송장을 떼기 위해 비치한 드라이기로 손을 녹이며 일하는 노동자의 상황과 온풍기가 구비된 관리자 공간의 대비는 기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직위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상징적 사례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는 검지기, PDA, 거울, 서류들, 망원경 등 여러 장비를 휴대한 채 장시간 도보 이동과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육체 노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 특성은 폭염 시 노동자의 에너지 대사량을 높여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발생 위험을 가중시킨다. 실제로 폭염 중 의식 상실 위기를 경험했다는 보고는, 이동 노동자의 특성상 적절한 휴게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작업 통제권 또한 부재한 중첩적 상황이 기후위기 하에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천재지변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중지권을 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얼마나 폭염이 예요? 근데 우리는 계량기 3600개를 봐야 되잖아요. 폭염에 진짜 쓰러지고, 물 한 병 들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이 장비를 들고 8시간 일하는데, 외부 노동자들 이번 쿠팡에서 쓰러지는 거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고지서 넣고 딱 돌아서서 저 집을 직선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몸이 옆으로 가더라고요. ‘어머! 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벽을 잡고 딱 앉았어요. 나중에 후회스러웠던, ‘내가 왜 119 생각을 왜 못했지?’ (중략) 서울시에서 폭염에 격월 검침 권고 사항이 나왔어요. 작업 중지권도 있어서, 22년도에 우리 작업 중지를 중간에 했어요. 그랬더니 업무 지시 불이행이라고 노조원들을 징직 했어요(연구참여자 7,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는 당시 119를 불러 도시가스 검침원의 건강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낼 계기로 삼았어야 했으며,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서울시 폭염 대책인 ‘격월 검침’ 권고를 따른 도시가스검침원에 정직을 부과한 사업주의 조치는 폭염, 폭우 등 물리적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위험관리 책임을 위반한 것이며, 여성노동자들의 행정소송이 없었다면 작업중지권도 건강도 지키지 못하였을 것이다(강석영, 2024). 기후 조건을 반영한 작업속도·작업량 조정 등 사회심리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입은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조치로 도입되어야 한다.

### (3) 직업 건강의 사사화(Privatization)

여성 노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직업건강 위험이 일터 내에서 개인의 체력이나 자기 관리 능력의 문제로 여겨짐에 따라 조직적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조치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보고한다. 조선업은 정부의 ‘폭염 안전 특별 태스크포스(TF)’가 지정한 고위험 관리 감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보건 조치는 매우 미비하였다. 한 여성 노동자는 온열 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휴식이나 의학적 조치 대신 소금 섭취만을 권유받았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기후

위험을 조직적 관리 대상이 아닌 개인의 인내와 임시방편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위험의 사사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보건학적 위험을 가시화하지 못하게 만든다.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어지럽다”하면 “소금 무라(먹어라)”카고. (중략) 회사에 일하다가 아프면, 회사에서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그 것도 눈치 보고 못 한다. 비 오는 날 위험하다고 항의하잖아, 반장한테. 그러면 “집에 가라” 이렇게 한다. 무노동 무임금. “돈 내놔라” 이라가면은 “일도 안 하는데 만다고 돈 줘야 되는데” 이라고고(연구참여자 1, 조선소 노동자).

발판 같은 경우는 협착이 많고, 물량을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손을 잘 찢어요. 협착 그 다음에 추락 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 그다음에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도장 페인트가 금방 된 곳에서 미끄러지고 비 오는 날 또 미끄러지고. 미끄러져서 엉치뼈, 지금 우리 반 동생도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중략) (비옷이) 어벙벙 하고 어디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연구참여자 2, 조선소 노동자).

담장을 밟아야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눈하고 비 올 때. 2층 높이 정도는 망원경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망원경으로 안 될 때는 남의 담장을 도시가스관을 잡고 탈 때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침기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갔는데, 잘못 떨어져서 십자인대 파열이 왔어요. 90%가 파열이 된 바람에 쉽게 안 붙은 거죠(연구참여자 7,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는 폭설 환경에서 건물 외벽 상부에 위치한 검침계를 확인하기 위해, 담장을 넘는 등 위험한 이동을 지속하다 동료가 십자인대 파열로 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례를 보고하며, 극한 기상 조건이 유발하는 물리적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안전 사고의 치명성을 이야기한다. 조선소 노동자는 남성 신체를 기준으로 한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하여 넘어질 뻔한 위험을 경험하였고, 비오는 날 추락 및 전도 위험으로 인해 ‘작

업중지권 행사를 제안하였으나 실질적 안전 조치 대신 귀가 조치(임금 손실)를 강요받았다. 이는 계절적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사사회화(Privatization of risk)’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업무상 사고와 산업안전보건 요구는 종종 여성의 “직무 부적합”이나 “불필요한 불평”(Messing, 1997: 37)으로 여겨지곤 하기 때문이다. 폭설, 폭우 등 극한 기상 이 잦아짐에 따라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 관리체계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노동자의 주의 의무로 치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책은 질병 예방을 넘어, 기상 악화 시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과 작업 환경별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의 재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차성 관점에서 여성 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을 분석하여, 건강 위험이 개인과 특정 집단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적 조건, 작업환경,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문제임을 규명하였다. 첫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제한적 적용, 고용허가제라는 체류 자격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폭염에도 장시간 연속 노동을 한다. 작업환경 차원에서는 노지와 비닐하우스라는 옥외 및 고온다습한 실내작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 환경과 위생 관리의 부재 속에서 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화학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는 언어, 보건의료 정보와 접근성의 제한 등으로 건강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옥외작업 여성노동자는 작업환경 차원에서 조선소, 물류센터, 검침 업무 등에서 폭

염·한파·폭우 등 극한 기후 조건과 고강도 노동이 결합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계절적 위험요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작업량과 작업속도가 조정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이를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는 사회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비정규 고용 구조와 제한된 노동권 속에서 제도적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이며, 기후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조치 요구 역시 여성의 직업건강 위험에 대한 저평가와 남성 중심 조직 문화 속에 기각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 결과, 여성 노동자의 직업건강 위험은 제도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는 ‘위험의 사사화’가 일어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 기후위기 대응책,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도입, 포괄적 예방 체계로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기후위기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폭염과 한파 시 작업중지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기후 조건에 따라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과 작업 환경별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성별 접근성을 고려한 휴게시설 설계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노동자가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점검과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업장 내 남녀 노동자의 직종별 직무별 성별 통계와 분포를 바탕으로, 생물학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직종과 직무에 따라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모든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요인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방법을 확장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에는 노동자의 성별, 연령, 국적을 고려하여 균등한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젠더 관점의 산재 통계를 생

성하고, 직종, 성별, 연령, 이주 특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야, 이를 토대로 작업 환경과 직무 특성에 맞는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기후건강 위험에 취약하고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집단으로, 직장 건강검진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 검진사업은 51~70세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연령층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실행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개인 중심 접근을 넘어 다양한 노동자의 조건과 교차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포괄적 예방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 작업장 기후건강 대책은 공학적, 조직적, 의학적 조치를 통해 위험 노출을 줄여 건강을 보호하는 등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터의 기후 건강 문제는 고용 불안정성, 성별 직무 분리 등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제도의 적용, 작업환경에서의 작업 위험 관리 등 다양한 권력 관계와 제도적 배치로 인해 전개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자 건강 보호는 노동과 안전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문제이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접근성 강화, 건강 영향을 고려한 작업 과제와 작업량의 설정이라는 사회심리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도입, 기후 조건을 반영한 작업중지 기준 마련, 젠더 관점의 위험성평가의 도입 등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통해 질병이나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불이익 없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기술적·성중립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넘어 산업 구조, 성별 분업, 고용 조건, 산업안전보건 정책 등이 교차하며 특정 집단의 구조적 취약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기후위기라는 물질적 조건이 사회 구조와 이데올로기 등 사회적  
으로 매개되어 개인과 집단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명함으로  
써, 사회과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둘째, 여성과 주변화된 노동자의  
기후 건강 경험에 대한 교차성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의 필요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위기 시대에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작업환경을 설계하고,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  
심 전략이다. 본 연구는 옥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기에, 면담에 참여한 직종의 직업건강문제를 포괄하  
여 다루거나 집단 내 이질성(고용 형태, 성별, 직무 등)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첫째, 다양한 산업과 직종의 성인지  
적 직업 건강 연구와 둘째, 기후위기와 젠더 건강,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등을 제안한다.

## | 참고문헌 |

- 김영택 · 최영미 · 이지선. 2022.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방안: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혜. 2019.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 수원: 경기여성가족연구원.
- 류지아 · 강태선 · 권오성 · 김재민 · 김향수 · 이주연. 2024. 『중대재해감축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 세종: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매싱, 캐린. 2012. 『반쪽의 과학: 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건강문제』. 정진주 외(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Messing, Karen. 1998. *One-Eyed Science: Occupational Health and Women Workers*, Temple University Press.)
- 우춘희. 2023. 『이주농업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및 건강권 확보방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수연. 2022. “농업 부문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주거권 보장.” 『이화젠더법학』. 14(3): 131-170.
- 정숙정. 2024. “기후재난과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농민의 기후재난 경험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34(2): 121 - 162.
- 정은아 · 하바라. 2021. 『가중되는 기후위기,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 서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정진주 · 김형렬 · 임준 · 정최경희 · 나성은. 2008. 『산재보험급여 지급의 성불평등 연구(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laimo, S. 2009. “Insurgent vulnerability and the carbon footprint of gender.” *Kvinder, Køn & Forskning* (3 - 4): 22-35.
- Alhassan, S. I., Kuwornu, J. K. M., & Osei-Asare, Y. B. 2019. “Gender dimension of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variability: Empirical evidence of smallholder farming households in Ghana,”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e Change Strategies and Management* 11(2): 195 - 214.
- Allen, E. M., Munala, L., & Ward Rannow, J. 2024. “Do gender based violence interventions conside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5(3): 2421 - 2435.
- Anjum, G., & Aziz, M. 2025. “Climate change and gendered vulnerability: A systematic review of women’s health,” *Women’s Health* 21: 17455057251323645.

- Apatinga, G. A., Schuster Wallace, C., & Dickson Anderson, S. 2024.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the overburden of water collection responsibility of rural women in Ghana." *Journal of Water and Health* 22(11): 2015 - 2039.
- Arora-Jonsson, S. 2011. "Virtue and vulnerability: Discourses on women, gender and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2): 744-751.
- Beaumier, M. C., & Ford, J. D. 2010. "Food insecurity among Inuit women exacerbated by socioeconomic stresses and climate change."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1(3): 196 - 201.
- Buckingham, S., & Le Masson, V, eds. 2017.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through Gender Relations*, Taylor & Francis.
- Bunce, A. F. J., Harper, S., & Edge, V., & Ihacc Research Team. 2016. "Vulnerability and adaptive capacity of Inuit women to climate change: A case study from Iqaluit, Nunavut." *Natural Hazards* 83(3): 1419 - 1441.
- Choo, H. Y., & Ferree, M. M. 2010. "Practicing intersectionality in sociological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of inclusions, interactions, and institutions." *Sociological Theory* 28(2): 129 - 149.
- Costopoulos, E., Imamura, A., Khan, N., Butler, A., Millett, C., Hoque, M. A., ... & Khan, A. 2025. "Adverse health outcomes associated with drinking highly saline water: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40(11): 1307-1322.
- Desai, Z., & Zhang, Y. 2021. "Climate change and women's health: a scoping review." *Geohealth* 5(9): e2021GH000386.
- Denton, F. 2002.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mpacts, and adaptation: Why does gender matter?" *Gender and Development* 10(2): 10 - 20.
- Dickin, S., Segnestam, L., & Dakour, M. S. 2021. "Women's vulnerability to climate-related risks to household water security in Centre-East, Burkina Faso." *Climate and Development* 13(5): 443 - 453.
- Duncan, K. 2006. "Global climate change, air pollution, and women's health." *WIT Transactions o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99: 633 - 643.
- El Khayat, M., Halwani, D. A., Hneiny, L., Alameddine, I., Haidar, M. A., & Habib, R. 2022.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heat stress on farmworkers' health: A scoping review."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782811.

- Friedrich, D. 2023. "Climate justice and intersectionality in Arctic." *Sibirica: Journal of Arctic Studies* 22(1): Article s1 02.
- Habibi, P., Heydari, A., Dehghan, H., Moradi, A., & Moradi, G. 2024. "Climate change and occupational heat strain among women workers: A systematic review." *Indi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8(1): 4 - 17.
- Howells, M., Palmquist, A. E., Josefson, C., Dancause, K., Quinn, E., Daniels, L., & Blair, A. F. O. 2025. "Climate change, evolution, and reproductive health: The impact of water insecurity and heat stress on pregnancy and lactation." *Evolution, Medicine, and Public Health* 13(1): 125-139.
- ILO. 2013. *10 Keys for Gender Sensitive OSH Practice: Guidelines for Gender Mainstreaming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ILO. 2024. *Ensuring safety and health at work in a changing climat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Working Group II contribution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udice LC, Llamas-Clark EF, DeNicola N, et al. 2021. "Climate change, women's health, and the rol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in leadership." *Int J Gynecol Obstet* 155: 345 - 356
- Kaijser, A., & Kronsell, A. 2014. "Climate change through the lens of intersectionality." *Environmental politics* 23(3): 417-433.
- Khan, A. E., Ireson, A., Kovats, S., Mojumder, S. K., Khusru, A., Rahman, A., & Vineis, P. 2011. "Drinking water salinity and maternal health in coastal Banglades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9(9): 1328 - 1332.
- Levy, B. S., & Patts, J. A. 2015. "Climate change,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Annals of Global Health* 81(3): 310 - 322.
- Meeuwisse, S., Elliott, S. J., Bennett, A., & Kapoor, V. 2024. "Water fetching and musculoskeletal health across the life-course in Sub-Saharan Africa: A scoping review." *PLOS Global Public Health* 4(9): e0003630.
- Messing, K. 1997. "Women's occupational health: A critical review and discussion of current issues." *Women & Health* 25(4): 39-68.

- Moosa, C. S., & Tuana, N. 2014. "Mapping a research agenda concerning gender and climate change: A review of the literature." *Hypatia* 29(3): 677 - 694.
- Moyce, S. C., Mitchell, D., Armitage, T., Tancredi, D. J., Joseph, J., & Schenker, M. 2017. "Heat strain, volume depletion and kidney function in California agricultural workers."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74(6): 402 - 409.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16. *Criteria for a recommended standard: Occupational exposure to heat and hot environments* (NIOSH Publication No. 2016 - 10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Osman, Y. M., Shaban, M. M., & Shaban, M. 2025. "Shaping a sustainable future: Climate related stress and violence among women of reproductive age: A systematic review." *Women and Birth* 38(6): 102092.
- Pearse, R. 2017. "Gender and climate chang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8(2): e451.
- Perkins, P. E. 2018. "Climate justice, gender and intersectionality." In *Routledge handbook of climate justice*, Routledge. 349-358.
- Pommells, M., Schuster-Wallace, C., Watt, S., & Mulawa, Z. 2018. "Gender violence as a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risk: Uncover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s it pertains to poor WaSH access." *Violence Against Women* 24(15): 1851 - 1862.
- Poudel, S., Funakawa, S., Shinjo, H., & Mishra, B. 2020. "Understanding households' livelihood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in the Lamjung district of Nepal."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22(8): 8159-8182.
- Scheelbeek, P. F., Khan, A. E., Mojumder, S., Elliott, P., & Vineis, P. 2016. "Drinking water sodium and elevated blood pressure of healthy pregnant women in salinity-affected coastal areas." *Hypertension* 68(2): 464 - 470.
- Solomonian, L., & Di Ruggiero, E. 2021. "The critical intersec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justice: a commentary." *Globalization and Health* 17(1): 30.
- Sorensen, C., Murray, V., Lemery, J., & Balbus, J. 2018. "Climate change and women's health: Impacts and policy directions." *PLoS medicine* 15(7): e1002603.
- Stone, K., Blinn, N., & Spencer, R. 2022. "Mental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women: a scoping review."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reports* 9(2): 228-243.
- Tallman, P. S., Collins, S., Salmon Mulanovich, G., Rusyidi, B., Kothadia, A., & Cole,

- S. 2023. "Water insecurity and gender based violence: A global review of the evidenc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Water* 10(1): e1619.
- Tallman, P. S., Salmon-Mulanovich, G., Archdeacon, N., Kothadia, A., Lopez Flores, L., Castañeda, K., ... & Cole, S. 2025. "Gender-Based Water Violence": Cross-Cultural Evidence for Severe Harm Associated With Water Insecurity for Women and Girls." *Violence against women* 31(3-4): 916-932.
- Tanjeela, M., & Rutherford, S. 2018. "The influence of gender relations on women's involvement and experience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grams in Bangladesh." *SAGE Open* 8(3): 215824401879878.
- Tschakert, P., & Machado, M. 2012. "Gender justice and right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Opportunities and pitfalls." *Ethics and Social Welfare* 6(3): 275 - 289.
- Tshimambu, J., Nkongolo, B. K., Balamuange, A., & Konde, J. 2025. "Health and social consequences of water collection among adolescent girls (aged 11 - 17) in the Yangala rural health zone, Kasai Central Provinc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2024." *Journal of Global Health Economics and Policy* 5: e2025039.
- USAID Adapt Asia Pacific & The Center for People and Forests. 2017.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Report : *Developing a demonstration site in Nepal on community forestry, gender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USAID Regional Development Mission for Asia.
- van Daalen, K. R., Kallesøe, S. S., Davey, F., Dada, S., Jung, L., Singh, L., ... & Nilsson, M. 2022. "Extreme events and gender based violence: a mixed methods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Planetary Health* 6(6): e504 - e523.
- Zavala, M. D., Cejas, C., Rubinstein, A., & Lopez, A. 2024. "Gender inequities i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ealth: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1(8): 1093.
- 강석영. 2020. "폭염대책 '격월검침' 지킨 가스점검원들 무더기 정직, 법원 '부당.'" <매일노동뉴스>. 2020.8.1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114> [검색일: 2026.2.27.]
- 고용노동부. 2024.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썬가이드, 자율점검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500927](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500927) [검색일: 2025.11.27.]
- \_\_\_\_\_. 2024. "2024년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OPS 및 자율점검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500927](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500927)

- 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1200059 [검색일: 2025.11.27.]
- 김연정. 2024. “‘폭염 속 노동’에 6년간 온열질환 산재 147건 · 사망사고 22건.” <연합뉴스>. 2024.6.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9034200001> [검색일: 2026.2.11.]
- 이도윤. 2025. “삼고초려만에... ‘폭염작업 20분 휴식’ 다음주부터 의무화.” <KBS News>. 2025.7.11. <https://youtu.be/5zgYdG6gHZM?si=o7i1XL4TmSYtp75H> [검색일: 2026.2.11.]
- 행정안전부. 2024.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 폭염) 대책 본격 추진(보도자료, 2024.5.16. 발표).”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9257](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9257) [검색일: 2026.4.17.]
- \_\_\_\_\_. 2025.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 대응 태세 돌입: 정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 폭염) 종합대책 발표(보도자료, 2025.5.14. 발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7696](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7696) [검색일: 2026.4.17.]

Abstract

## Occupational Health Experiences of Korean Women Outdoor Worker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An Exploratory Study

Kim, Hyangsu  
(Sungkonghoe University)

Ryu, Jia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climate-related occupational health experiences of women workers through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structural factors that intensify health risks. To this end,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igrant women agricultural workers and female outdoor workers in sectors such as shipbuilding, logistics, and gas meter reading.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igrant women agricultural workers are placed in institutional blind spots due to their exclusion from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unstable residency status, and insuffici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s. Long hours of continuous labor under extreme heat are routinely practiced, and inadequate risk assessments in open fields and high-temperature, high-humidity environments such as greenhouses expose them to hazardous conditions, resulting in substantial violations of their right to health. Second, women outdoor workers in urban settings experience the “privatization of risk,” wherein individuals bear the full burden of climate-related hazards. This stems from gendered job segregation, lack of control over working conditions, and the systematic undervaluation of women’s occupational health risks. Climate-induced



health risks extend beyond individual physical vulnerability and are exacerbated by the intersection of gendered labor division, precarious employment, migration status, and gender-bli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must move beyond the model of the “universal worker” and transition toward a gender-responsive preventive framework that accounts for the complex and intersecting vulnerabilities of diverse worker groups.

**Key words:** Climate crisis, Occupational health, Gender, Women worker, Intersectionality

- 투 고 일 : 2026년 3월 1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3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7일



#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환경정의’ 연구 지형

—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중심으로\*

배혜정\*\*

## | 목차 |

- |                      |                       |
|----------------------|-----------------------|
| 1. 머리말               | 4. 인정 정의 연구: 비가시적 폭력과 |
| 2. 분배 정의 연구: 위험의 불평등 | 낙인, 타자화               |
| 3. 절차적 정의 연구: 정보독점과  | 5. 에코페미니즘적 성찰: 교차성·다중 |
| 기술 관료주의              | 정의·상호 돌봄의 접속          |

## | 초록 |

본 논문은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중심으로 환경정의 연구의 지형도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올리히 벡이 ‘위험사회’ 담론을 통해 설파했듯 핵 위험은 국경과 계급을 초월하는 보편적 위협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실제 사고의 현장에서는 지역과 계급, 젠더와 종(species)의 위치에 따라 위험이 차등적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환경 부정의가 작동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체르노빌 연구를 분배·절차·인정 정의라는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우선 환경정의 연구는 원전 편익과 방사능 오염 부담의 불균형을 다루는 ‘분배 정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어 구소련 당국의 정보 은폐와 테크노크라시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절차적 정의’ 논의가 심화했다. 최근에는 미래 세대로의 위험 전가를 문제 삼는 분배 정의의 확장과 더불어, ‘체르노빌인’이라는 낙인 및 타자화, 그리고 비가시적으로 축적되는 ‘느린 폭력’을 규명하는 ‘인정 정의’ 연구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imbaessi@puan.ac.kr

나아가 본 논문은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기존 환경 정의론이 원전 사고의 젠더 중립성이라는 외피 속에서 '젠더화된 취약성'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또 인간중중심적 인권 담론에서 비인간 자연/다종의 문제를 충분히 포착해 왔는지 점검한다. 끝으로 체르노빌이라는 만성적 위기 속에서 성장과 효율의 논리가 아닌 생명, 돌봄, 공존의 윤리를 회복하는 환경 정의론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체르노빌 원전 사고, 환경정의, 에코페미니즘, 느린 폭력, 교차성, 다종 정의

## 1. 머리말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에서 현대 사회의 위험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성격을 띤다고 주장한다. 현대문명이 직면한 위험은 방사능이나 미세플라스틱처럼 감각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비가시성을 띠며, 국경을 초월해 전지구적으로 확산하고 인간의 예측과 통제 범위를 쉽사리 벗어난다는 것이다(Beck, 1992). 이러한 위험의 특징을 가장 응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였다. 그 결과는 가공할 만한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초래했다.

여태껏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한 모든 고통과 곤궁, 폭력은 '타자'라는 범주(유대인, 흑인, 여성, 난민, 반체제 인사, 공산주의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울타리, 수용소, 도시 구역, 군사 구역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실제적이거나 상징적 경계인 타자들의 사망 벽이 존재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듯 보이는 사람들은 이 벽 뒤로 몰려나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르노빌 참사 이후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타자'의 종말이요, 우리가 애지중지해 왔던 모든 '거리 두기 가능성'의 종말을 의미한다. 핵 오염에 직면하여 체감하게 된 것이다. 곤궁은 경계를 지을 수 있으나 핵 시대의 위험은 경계 지을 수가 없다(Beck, 1992: 41).

백의 말처럼, 체르노빌 참사는 인종과 젠더, 종교, 정치색, 나이 등과 무관하게 인간을 ‘평등하게’ 죽이거나 병들게 했다는 점에서 ‘경계 없는 위험’을 초래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는 4호기 원자로 하나가 폭발한 것이었지만, 열흘간 이어진 화재로 요오드와 세슘 등 200여 종의 핵물질이 기류를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이때 퍼진 방사성 물질의 양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 방출된 양보다 적게 잡아도 400배 이상이었다(Kinly, 2006: 10). 안전한 핵이라고 자부하던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보다 더 큰 피해와 위력을 드러내며, ‘평화적 핵’과 ‘군사적 핵’이라는 이분법의 한계를 여실히 폭로했다. 결국,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방사선 사고 등급제에서 최고 단계인 7등급으로 평가되며, 현대 인류가 겪은 가장 심각한 핵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위험’이라는 진술이 성립하는 범위와 방식은 더 세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핵 위험의 민주화’라는 백의 주장은 핵 재난이 현대문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보편적 위협임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핵 재난의 보편성 담론은 자칫 위험의 ‘물리적 확산’과 그 위험을 ‘감당하는 사회적 능력’을 뒤섞어 재난의 정치학을 탈정치화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혼동할 때 보편성의 언어는 재난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비가시화하는 효과를 낳는다(Nixon, 2011: 5). 차원이 다른 핵 참사의 물리적 영향은 가히 무차별적이었다 해도, 실제 사고의 현장에서는 지역과 계급, 젠더, 종(species) 등에 따라 위험을 전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거리 두기’의 경계가 엄격히 작동한다. 초기 연구들은 체르노빌을 인류 공동의 비극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그 비극이 누구의 몸을 통해 구체화되고 어떤 구조 속에서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보편성이라는 수사 뒤에 숨어 특정 집단에게 위험의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를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체르노빌을 둘러싼 환경정의 연구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환경정의 연구는 환경 문제가 단지 '자연 보호'나 '오염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누가 피해를 떠안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분배의 정의), 누가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는지(절차의 정의), 어떤 존재가 애초에 '가치 있는 주체'로 인정되는지(인정의 정의)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Coolsaet, 2020: 143).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주로 연구가 쓰리마일과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의 사고가 촉발한 위험과 피해 부담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같은 '분배 정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공정한 대우와 의미 있는 참여'라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가 널리 인용되면서 핵시설 · 핵폐기물 부지선정에서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연구의 중심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불평등이 결국 단순히 자원의 분배 문제를 넘어 문화적 · 사회적 무시에서 비롯된다는 인정 정의 영역으로 그 외연을 넓히고 있다(Kyne & Bolin, 2016).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축으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관한 환경정의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되, 기존 연구가 무엇을 밝혀 왔는지뿐 아니라 특히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무엇을 상대적으로 덜 포착했는지도 점검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비인간 생명체를 비롯한 다종간 정의를 주장하며 가부장제와 발전주의(성장주의), 식민주의, 인간중심주의, 과학기술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 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회복하고 성장과 효율이 아니라 생명, 돌봄, 공존의 윤리를 중시한다.<sup>1)</sup> 이러한 관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환경 부정의, 곧 오염 · 유해물질 · 위험시설 · 기후재난 등의 환경 피해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

1) Karen J. Warren, 2000, *Ecofeminist Philosophy: A Western Perspective 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Greta Gaard ed., 1993, *Ecofeminism: Women, Animals, Na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Val Plumwood,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 Maria Mies and Vandana Shiva, 1993, *Ecofeminism*, London: Zed Books 참조.

층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특정 집단과 비인간 자연에 불균등하게 부가되는 구조를 지적한다(Plumwood, 1993).

실제로 환경정의 연구는 환경 문제가 단순히 ‘환경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과 계급 등의 권력관계와 결부된 ‘사회 정의의 문제’임을 정교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젠더 문제를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 각종 재난이 젠더 중립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가공할 만한 방사능 피폭 앞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은 무의미해 보인다. 하지만 인종 및 계급과 마찬가지로 젠더를 포함하여 그 교차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원전 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 연구와 정책은 남성이 인간 모두를 대표하는 것처럼 일반화되어 여성 고유의 경험과 위험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한편, 기존 환경정의 연구는 ‘정의’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주로 접근한다. 환경정의는 대체로 ‘인간의’ 환경적 정의일 뿐, ‘환경의’ 정의나 아니면 적어도 ‘환경을 위한’ 정의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환경불평등을 비판하고 다양한 비주류의 환경권을 수호하지만, 원전 사고의 가장 큰 피해 주체인 자연을 비주류 가운데 한 존재로 충분히 사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환경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둘의 공존과 상호 돌봄의 관계성을 회복하려는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이 요청된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 ‘모든 인간’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구 생명체’의 안전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의 목적은 체르노빌 이후 축적된 환경정의 논의를 에코페미니즘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환원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체르노빌을 둘러싼 연구가 어떤 경로로 분화·심화되며 연구 지형을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 지형의 틈새에 어떤 공백이 남아 있는지를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관련 환경정의 논의를 분배, 절차, 인정이라는 세 축으로 나누어 그 핵심 주제와 쟁점을 짚어본다.<sup>2)</sup> 이를

통해 핵 재난의 피해가 '보편적'으로 확산한다는 진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위험의 불평등한 전가와 의사결정의 배제, 타자화 및 비가시화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왔는지를 연구사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형도 위에서, 기존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해 온 젠더화된 취약성과 인간/비인간의 위계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체르노빌 이후 환경 정의론이 확장될 수 있는 이론적 접점(교차성·다중정의·상호 돌봄)을 모색해 볼 것이다.

## 2. 분배 정의 연구: 위험의 불평등

분배 정의는 환경적 편익과 부담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배분되는가에 주목하며, 특히 위험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부정의를 지적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주류 환경주의가 백인 중산층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유색인종과 빈곤층이 직면한 생명 및 건강의 위협을 장기간 외면해 왔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로버트 불라드(Robert Bullard)는 환경 문제가 단순히 '오염'의 차원을 넘어 그 피해가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 편중되는 사회적 역학으로 분석했다. 실증적 데이터를 토대로 폐기물 매립지, 소각장, 화학 공장과 같은 유해 시설이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입증했다(Bullard, 2000). 즉, 산업 발전의 혜택은 사회 전체가 누리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질병이라는 비용은 가난한 유색인종 공동체가 전담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폭로한 것이다. 앨리스 마(Alice Mah) 또한 현대 사회를 유해한 매립지와 산업 현

2) 본고는 해외 연구에 집중하여 체르노빌 환경정의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깊이 있게 고찰한 연구나 원전 문제에 중점을 둔 환경정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두 주제를 결합하여 환경정의의 틀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의 논의를 전개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된 국내 연구들은 참고문헌으로 언급해 둔다.



장이 도처에 널린 “유독성의 세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유독성이 현대성의 특징임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독성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 및 소수자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Mah, 2020: chap. 10).

원자력 발전 역시 이러한 분배 부정의의 연장선에 있다. 원전의 이익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반면, 핵연료의 채굴, 농축, 운송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노출 위험은 발전소 인근 주민과 특정 소외 지역에 불균등하게 집중된다. 특히, 고준위 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폐기물이 각 발전소 부지에 임시 저장되는 현실은 인근 공동체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이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Xiang & Zhu, 2011: 3-4). 스테파니 말린(Stephanie Malin) 역시 ‘에너지 불평등’이라는 용어로, 원자력 편익은 널리 향유되는 반면 위험과 비용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가난한 공동체에 편중된다는 점을 부각했다(Malin, 2015: 24-28). 이처럼 분배 정의 연구의 핵심은 ‘환경 부담의 불평등’을 실증하고, 그 편중이 제도 · 권력 · 경제구조와 맺는 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둘러싼 분배 정의 연구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위험을 발생시킨 주체와 피해를 감내하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지리적 · 사회적 불균형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거론된다. 크리스틴 슈레이더-프레철허(Kristin Shrader-Frechette)은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었으나, 실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벨라루스였음을 지적한다. 또한 전체 사망 및 부상 인원 절반 이상이 구소련 외부인 유럽 등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Shrader-Frechette, 1999: 71). 스웨덴 사례에서 보듯, 사고 주체로부터의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접국이 피해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구조는 환경 부정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에머라 아큐즈(Emrah Akyüz)는 분배 정의를 ‘산업 사회의 부담이 공동체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는지에 관한 문제로 정의한다(Akyüz, 2021:

370). 가령, 체르노빌 원전 반경 30km 이내의 '출입금지구역(exclusion zone)'에 거주하던 11만 6천 명의 주민이 강제 이주를 당해 고향과 재산을 잃은 반면, 그 구역 밖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기를 사용하며 혜택을 누리는 지리적 분배의 불평등을 지적한다(Akyüz, 2021: 371-373). 나아가 요한나 호프켄(Johanna Höffken) 등은 원자력 산업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에 위협을 전가하는 '주변화' 과정을 분배 부정의의 본질로 본다. 예를 들어, 사고 수습에 투입된 80만 명의 '사고 수습 노동자'(liquidator)들이 적절한 보호 장비나 정보 없이 고선량 방사능 위험을 전담한 것은 가난한 노동계급에게 생명 위협이 집중된 심각한 분배 정의의 실패로 제시된다(Höffken & Ramana, 2024: 4).

체르노빌 분배 정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받는 쟁점 중 하나는 세대 간 분배 문제다. 거의 모든 환경 담론이 미래 세대에게 미칠 환경 오염의 악영향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지만, 원전 사고는 방사능 오염의 반영구성과 가공할 만한 파괴력 때문에 아동은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전면에 배치된다.

우선 연구자들은 아동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지적한다. 슈레이더-프레철허트는 아동이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고 해독 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성인보다 오염 물질에 약 10배 더 민감하고 특히 영아가 동일한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갑상선암 발생 위험은 성인보다 33~39배나 높다는 사실을 증명했다(Shrader-Frechette, 2010: 4). 또한 린 바넷(Lynn Barnett)은 방사능 노출이 태내 발달 단계에 따라 인지 장애, 지능 지수 저하, 정서 장애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갑상선암 같은 병에 걸린 아동들이 PTSD 등 정신 질환도 성인보다 더 많이 겪는다고 보고했다(Barnett, 2007: 53-54).

다음으로 현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에 보상 불가능한 짐을 지우는 부정의 문제를 짚는다. 상(H. Xiang)과 주(Y. Zhu)은 핵폐기물이 수십만 년 동안 방사능을 유지하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매년 고준위 폐기물이 발생해 미래 세대가 되

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떠안는 세대 간 부정의를 강조한다(Xiang & Zhu, 2011: 6-7). 딘 카인(Dean Kyne)과 밥 볼린(Bob Bolin) 등은 이에 더해 핵시설 사후 관리와 석관 처리 비용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전력 혜택(현재) 대신 관리 부담(미래)이 '상속'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세대 간 부정의 문제를 제기한다(Kyne & Bolin, 2016: 522-523; Höffken & Ramana, 2024: 470). 아큐즈는 환경권 침해의 차원에서 논의하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에도 현세대의 기술적 결정과 사고의 여파로 그 권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박탈된다고 역설한다(Akyüz, 2021: 373-374).

이처럼 체르노빌 분배 정의 연구는 지리, 계급, 세대라는 중요한 쟁점을 통해 환경불평등의 양상을 예리하게 해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피해의 비대칭적 분포에 주목했을 뿐,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 시스템 자체를 더 근본적으로 문제화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찰스 페로(Charles Perrow)는 원전 사고를 기술적 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상 사고(normal accident)'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즉, 원전 시스템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결합 구조로 인해 사소한 고장이나 작은 실수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 예측 불가능한 대참사로 비화할 고도의 위험 집약체라는 것이다(Perrow, 1984). 따라서 원전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사고 이면에 도사린 구조적 불평등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인종주의'와 '환경불평등' 같은 환경정의 이전 개념에서 알 수 있듯, 체르노빌 연구 흐름은 오랫동안 인종과 계급을 분석 도구로 활용해 온 반면, 젠더를 분배 부정의의 핵심 범주로 충분히 조직화하지는 못했다. 슈레이더-프레철헤트럼, 국제 방사선 보호 표준이 20~30대 백인 남성을 모델로 한 '기준인'에 맞춰져 있음을 비판하며, 이 모델이 방사능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 아동과 여성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간과했음을 지적한 학자도 없지 않다(Shrader-Frechette, 2010: 5). 하지만 이

러한 논의조차 생물학적 차이에 집중했을 뿐,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분배 정의의 핵심 요소로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다.

세릴린 맥그리거(Sherilyn MacGregor)는 젠더를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범주가 아니라 환경정의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분석 렌즈로 제시한다. 젠더는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권,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기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MacGregor, 2020: chap 18). 실제로 여성은 젠더 불평등한 상시적 조건으로 인해 환경 재난 국면에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특히 빈곤과 인종차별이 중첩된 위치에 있는 여성은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Neumeyer and Plümper, 2007). 따라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치 때문에 고유한 환경적 부정의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Unger, 2008: 115).

환경정의 담론에서 젠더 관점이 요구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젠더 취약성'(gendered vulnerability)이다. 이는 여성의 본질적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관계의 역학 속에서 자원·안전·시간·이동성·의사결정권 등이 차등적으로 배분됨으로써 취약성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현상을 뜻한다(Enarson, 2000: 49 - 50). 그리고 이러한 젠더 취약성은 재난이 일어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성별화된 삶의 조건이 위기에서 증폭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환경 재난 시 여성은 식량, 연료, 물 확보의 1차 담당자로서 환경 훼손에 따른 이동 거리 증가와 신체적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된다. 재난 구호 시설조차 임신부나 수유부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간과하거나 재난 이후 증가하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안전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은, 환경적 위협의 분배가 사회구조적 젠더 불평등과 어떻게 결합되어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지를 보여준다(Enarson, 2000: 52-54).

체르노빌의 경우에도 사고 후 가정 폭력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재정착과 생활 환경 변화, 가족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

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하면(Alexis-Martin, 2015), 사고 전 젠더 불평등이 사고 후 더욱더 심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피난민 어머니들은 PTSD와 우울증, 심리적 고통을 겪는 비율이 더 높았고(Adams et al., 2011: 640-641),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장기간 고위험군으로 남았으며, 그 주요 요인은 자녀 건강에 대한 지속적 공포였다(Bromet, Havenaar, and Guey, 2011: 6). 즉,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존재’로 구성되는 젠더 규범이 체르노빌 이후 여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그 고통은 종종 사적인 영역, 곧 어머니의 불안, 가족 걱정으로 환원되어 공식 인정에서 배제될 위험이 컸다. 결국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야기하는 분배 부정의는 단지 ‘사고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불평등이 재난을 매개로 가속화·재배치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분배 정의 연구들은 체르노빌 사고의 위험이 국경과 세대를 넘어 어떻게 불평등하게 투사되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 냈다. 그러나 주로 인종이나 계급, 지리적 위치라는 변수에 집중함으로써, 사회구조의 기저에 흐르는 젠더 역학이 (그리고 중첩된 불평등 구조가) 위험의 배분과 수용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포착하지는 못했다. 분배 불평등은 단순히 결과의 치우침이 아니라, 누가 위험을 정의하고 배분할 권력을 가졌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배의 부정의를 가능하게 한 의사결정 구조의 비민주성과 정보독점의 문제를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3. 절차적 정의 연구: 정보독점과 기술관료주의

분배 정의 연구가 위험의 결과적 배분에 집중해 왔다면, 절차적 정의 연구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라는 정치적 메커니

점을 분석의 핵심으로 삼는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고위험 기술 재난에서 절차적 정의는 정보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의 실질성, 기술주의적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분석 틀로 기능해 왔다. 초기 연구는 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외된 공동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주목했으나, 점차 지식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권력 역학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폭이 확장되었다. 절차적 정의는 단순히 참여자의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당한 처사에 대한 사법적 구제 권한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한다(Suiseeya, 2020: chap 4).

원전처럼 고위험·고전문성 기술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다. 위험은 비가시적이고, 판단에는 특수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비상사태에서는 정보의 속도와 정확성이 생존을 좌우하는 탓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보의 독점과 기술관료주의(technocracy)가 결합하면, 절차적 정의는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곧 원자력 산업은 소수 전문가 그룹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기술주의적 폐쇄성을 띠며, 이는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절차적 부정의로 이어진다.

연구자들은 체르노빌 이전과 이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공통된 양상을 추적해 왔다. 대표적으로 1979년 발생한 처치 록 Church Rock) 우라늄 유출 사고를 다룬 누를 하산(Nurul Habibah Nor Hassan)은 핵 정책이 소외된 공동체에 미치는 절차적 장벽을 상세히 규명한다. 사고 당시 현지 주민들과 나바호(Navajo) 부족 당국은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지연된 통지'는 주민들이 오염된 강물을 가축용이나 개인용으로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나바호 부족은 우라늄 공장 운영이나 위험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거의 갖지 못했다(Hassan, 2025: 46-50). 이러한 연구는 핵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 당사자의 대표성 부족이 공동체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절차적 부정의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정보 소외는 노동 현장에서도 발생한다. 슈레이더-프레철헤트는 미국 당국이 원자력 관련 노동자의 개인별 공기모니터기(personal-radiation air monitors)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실제 노출량을 최대 1,000배까지 과소평가함으로써, 관련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미칠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동의하는 ‘사전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Shrader-Frechette, 2010: 5-6). 상과 주 역시 정부와 산업계가 원자력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시 즉각적 정보 공유와 대처 교육은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이는 필수적인 절차적 권리라고 강조한다(Xiang & Zhu, 2011: 4). 다시 말해 핵사고의 피해는 ‘폭발’과 ‘누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지연·왜곡·침묵이라는 절차적 실패가 결합할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원전 사고는 ‘기술의 실패’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패’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체르노빌 사고는 국가 권력이 정보를 독점했을 때 발생하는 절차적 실패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사례로 연구되어 왔다. 그래서 체르노빌에 관한 절차적 정의 연구의 중심에는 ‘정보의 불투명성’과 ‘국가의 알 권리 침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구소련 체제의 폐쇄성과 기술주의적 오만이 결합하여 일어난 정보의 왜곡은 사고 수습 과정 전반을 부정의로 점철시켰다는 것이다.

우선, 정보의 은폐와 지연된 보도를 문제 삼는다. 사고 초기 소련 당국은 체제의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확한 방사능 수치와 낙진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소련 당국이 사고 발생 사실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데 18일이나 걸렸으며(Petryna, 2011: 30), 주요 언론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거론된다(Anisimov & Ryzhenkov, 2016: 270-271). 베키 알렉시스-마틴(Becky Alexis-Martin)은 이러한 체르노빌의 핵심 메커니즘을 ‘비밀주의’로 정리한다. 소련 당국은 정치적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를 지연했고, 사고의 규모를 축소하는 짧은 뉴

스만 제공하여 정보를 통제했다는 것이다(Alexis-Martin, 2015: 2-3). 아드리아나 페트리나(Adriana Petryna)는 소련 정부가 방사선 노출에 대한 '비밀 지침'을 내려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했으며, 기록에서 '방사능' 관련 언급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인과관계 증명을 방해한 것도 밝혀냈다(Petryna, 2002: 43).

이러한 정보 접근권의 박탈이 더 큰 비극을 초래했음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사고 직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이 요오드제 복용과 같은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할 기회를 앗아갔으며, 결과적으로 예방가능했던 아동의 갑상선암 등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짚었다(Petryna, 2002: 77). 또한 약 80만 명의 '사고 수습 노동자'들은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불투명한 체제가 낳은 비극적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Alexis-Martin, 2015: 3-4). 당국이 상황의 정상성을 과시하기 위해 노동절 퍼레이드 축제를 강행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방사선에 추가로 노출시켰다는 점도 지적되었다(Anisimov & Ryzhenkov, 2016: 271). 이렇게 국가의 정보 독점 및 은폐는 특정 계급의 신체를 국가적 위기 극복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도구로 만들거나 피해 확산을 방지할 기회를 박탈해 참사를 더욱더 키웠다는 것이다.

체르노빌 이후의 심리적·사회적 후유증을 분석한 연구 또한 정보 통제의 결과를 강조한다. 바넷은 체르노빌의 핵심 영향을 신체질환보다 정신건강에서 찾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 배경으로 위험에 대한 부실한 소통, 정부/산업체의 정보 은폐와 지연, 잘못 관리된 대응이 공포와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점을 든다(Barnett, 2007). 에브린 브로멧(Evelyn J. Bromet) 등도 사고 초기 오도된 정보와 모순된 보도가 주민들의 자기 보호 기회를 가로막고, 정부 불신과 장기적인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Bromet, Havenaar, and Guey, 2011: 2).

피해 규모의 축소와 과학의 도구화 문제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역시 쟁점이 된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 등 원자력 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하



는 기관들은 사고 사망자를 대폭 축소 집계하여 피해를 의도적으로 과소 평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Shrader-Frechette, 1999: 71-72). 또한 IAEA가 주민들의 신체적 고통을 방사선 노출보다는 ‘방사선 공포증’(radiophobia)과 같은 비합리적인 심리적 불안 탓으로 돌림으로써 실제 피해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한다(Petryna, 2011).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는 ‘사실의 은폐’뿐 아니라 ‘프레임 독점’을 통해 피해자의 경험과 요구를 무력화하는 권력 작동으로 읽힌다.

끝으로 체르노빌 연구들은 국가와 과학 기술 관료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참여를 배제하는 ‘테크노크라시적 의사결정’을 비판한다. 가령,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가 도입한 단일 단계 면허 절차나 공청회 참여를 위한 짧은 기한과 막대한 법적 비용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된다(Kyne & Bolin, 2016: 6-7). 매튜 코튼(Matthew Cotton)은 기술적 권위주의에 기반한 ‘결정-발표-방어’ 식의 전통적인 핵 정책 결정 방식이 환경 부정의를 재생산한다고 비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평등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정치적 평등’의 실천을 요구한다(Cotton, 2020: 216-217).

이처럼 체르노빌에 관한 절차적 정의 연구는 기술주의 전문성의 최첨단을 보여주는 원자력 정책 결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배제와 구조적 주변화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규명해 왔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젠더화되어 있고, 그 참여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체르노빌의 절차적 정의 연구의 경우에도, 젠더 관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환경정의 논의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

젠더 접근을 요구하는 연구는 기존 절차적 정의 논의가 정보 접근권이 나 투표권 같은 형식적 절차 개선에만 머물러 젠더화된 권력 역학을 간과해 왔음을 지적한다. 우선, 정책 결정 기구에서의 여성 과소 대표성을 문제 삼는다. 수반카르 만달(Subhankar Mandal)은 구조적 문제를 회피한 채 기술적 처방과 시장기제 중심 해결이 강화되면서, 여성·유색인종·원주민 등 대표성 낮은 집단이 리더십과 의사결정에서 배제된다고 강조한다.

그 결과, 현지의 지식과 여성의 경험을 배제한 기술 중심의 사고 수습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환경 부정의를 생산한다는 것이다(Mandal, 2025: a840 - a841). 나아가 과학적 전문주의와 젠더 위계도 문제다. 과학적 전문주의가 전문가(남성/권력자)와 비전문가(여성/약자)라는 이분법적 위계를 형성하여, 피해 당사자 여성들의 목소리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Plumwood, 1993; Vangeli, 2023/2024).

이런 절차적 부정의의 근거에는 역시 젠더화된 취약성이 놓여 있다. 자원, 안전, 이동성에서의 불평등은 여성이 환경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시간적 여유를 앗아 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참여 기회 부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에 엘레인 에너슨(Elaine Enarson)은 여성 단체들과 네크워크가 재난 회복력의 촉매제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비공식적 리더십을 공식적인 정책 결정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Enarson, 2000: 193). 결국, 절차적 정의 연구는 '정보 공개와 참여'라는 형식적 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젠더화된 지식 위계와 대표성 구조를 함께 해체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배제는 필연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공식적인 담론에서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다음 4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실패가 어떻게 특정 집단의 정체성과 경험을 타자화하고 그 피해를 비가시화했는지, '인정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 4. 인정 정의 연구: 비가시적 폭력과 낙인, 타자화

최근 환경정의 연구의 지평은 위험 분배 불평등과 절차적 배제의 기저에 흐르는 더 근본적인 층위인 '인정 정의'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정체성·삶의 방식·경험·지식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

아들여지지 않는 한, 재분배나 참여 확대는 형식적 조치에 그치기 쉽다. 이에 인정 정의 연구는 ‘누가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존중받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특정 집단의 정체성과 그들 고유의 생활 방식 및 지식 체계가 지배 담론에서 어떻게 삭제되거나 왜곡되는지를 규명해 왔다.

연구의 출발은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과 지식 체계를 존중하는 문제였다. 예컨대 스탠딩 룩의 #NoDAPL 운동에서 원주민은 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성스러운 ‘친족’ 관계로 이해했고, 시위의 목표는 오염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물화하는 지배적 논리를 거부하고 관계적 세계관을 인정하라는 요구였다(Holland, 2020: chap 6). 이 사례는 인정 정의가 ‘피해 인정’뿐 아니라, 원주민의 삶과 문화 그 자체를 인정하는 정의권과 연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는 인정 정의를 ‘환경 식민주의’와도 연결한다. 카인과 볼린은 나바호 영토에서 대규모 우라늄이 채굴되고 주민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곳을 ‘황무지’로 간주함으로써 개발을 정당화하고 원주민의 삶과 고통을 무시했음을 지적한다(Kyne & Bolin, 2016: 8-10). 마찬가지로 넬타 에드워즈(Nelta Edwards)는 식민 강대국과 핵 산업계가 핵 실험이나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을 의도적으로 ‘낙후된’, ‘텅 빈’, ‘인구가 희박한’ 곳으로 묘사해 왔다고 비판한다(Edwards, 2011: 109-110). 또한 식민 권력이 ‘다수의 보호를 위해 소수의 희생은 정당하다’는 공리주의적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정작 희생을 강요받은 당사자가 아닌 권력자의 입장에서 주창된 기만적 논리라고 일갈한다(Edwards, 2011: 112). 이로써 인정 정의는 문화 존중의 차원을 넘어, ‘어떤 삶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은 희생 가능하다’는 위계가 생산되는 기제를 밝히는 연구로 확장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정 정의 연구는 비주류가 경험하는 비가시화, 낙인, 타자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지평을 넓혀 왔다. 우선 비가시화의 문제는 롭 닉슨(Rob Nixon)이 제안한 ‘느린 폭력’(Slow Violence)의

개념과 결합해 심화된다. 기후 변화와 독성 물질의 축적, 삼림 파괴 같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느린 폭력'은 눈에 띄지도 않고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기에,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망각' 속에서 더욱더 사라진다는 것이다(Nixon, 2011). 제임스 라이스(James Rice)는 DDT 등 합성화학물질 문제를 다루며 이 논의를 '시간'의 정치로 확장한다. 위험의 노출과 결과 발현 사이의 시간적 간극은 위험이 일상화되어 문제를 문제로 인식되지 않게 만들며, 지배층은 이런 약한 신호를 이용해 의심·회피·부정을 조장할 여지가 커진다고 지적한다(Rice, 2016: 177-178).

이런 '느린 폭력'은 원전 사고 이후의 피해와 영향을 다층적으로 해석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었다.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이나 유전적 변이, 정신적 피해는 즉각적인 폭발 사고와 달리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며 시공간적으로 흩어져 존재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재난의 특성이 피해의 인정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파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르노빌의 여파는 국가의 공식 통계나 보상 체계에서 누락되기 십상인 탓이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재난의 책임을 개인의 질병이나 불운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구조적 부정을 생산한다.

따라서 체르노빌의 인정 정의 연구는 단지 폭발 순간이 아니라 사고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생물학적·사회적 침전 과정이야말로 재난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바넷은 체르노빌 트라우마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누적 스트레스'로서, 강제 대피, 재산·직업 상실, 사회적 네트워크 붕괴, 실업과 빈곤, 보건의료 체계 붕괴, 안전한 음식에 대한 혼란, 기형아 출산 공포, 보상 미이행 등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적 스트레스라고 역설한다(Barnett, 2007: 47 - 48). 에릭 코졸라(Erik Kojola)와 데이브드 펠로우(David N. Pellow)는 체르노빌의 비가시적 해악은 방사선 노출이라는 물리적 손상만이 아니라, 공포와 무시가 공동체 전체에 장기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고통을 남기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고 주장한다(Kojola &

Pellow, 2021: 116-117). 이처럼 인정 정의의 렌즈는 체르노빌을 수치로 환원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의미·관계·기억을 파괴하는 폭력으로 복원한다.

에카테리나 주코바(Ekatherina Zhukova)는 느린 폭력에 더해 ‘만성적 위기’라는 틀로 환경 재난을 일시적 사건이 아닌 인간 삶의 조건으로 바라보며, 재난 이후의 삶이 불평등을 변혁하기보다 오히려 재생산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Zhukova, 2020). ‘느린 폭력’이 비사건화와 가시성 소거를 강조한다면, ‘만성적 위기’는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의식하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행위자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Zhukova, 2020: 590). 체르노빌 피해자들의 삶은 바로 이 두 층위, 곧 비가시화되는 고통과 그 속에서 살아내는 실천 사이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인정 정의가 다루는 또 다른 핵심은 낙인과 타자화다. 전문가 집단이 부여하는 ‘과학적 낙인’과 일반인이 부여하는 ‘사회적 낙인’이 환경적 부정의를 강화했다(Zhukova, 2020). 브로멧 등은 체르노빌 피난민들이 오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주지에서 일반 대중, 심지어 의료계로부터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제시한다(Bromet, Havenaar, and Guey, 2011: 2). 사고 지역 주민들은 ‘체르노빌인’(Chernobylites)이라는 별칭으로 묶이며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차별받았고(Akyüz, 2021: 373), ‘체르노빌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흔히 ‘비정상’ 혹은 ‘지체’라는 사회적 낙인을 동반했다(Zhukova, 2020: 598).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신체적 질병보다 더 깊은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들이 정당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즉 방사능 오염은 물리적 상태인 동시에 사회적 결격의 표지가 된 것이다.

페트리나는 체르노빌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손상된 신체를 증명해야만 했던 과정을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Petryna, 2002). 구 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상을 받기 위해

서는 엄격한 의료적·관료적 기준을 통과하여 '피해자'임을 공인받아야 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건강 상태와 생물학적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은, 국가가 인간의 존엄을 온전하게 인정하기보다 도구적인 보상 체계 안에 가두어 두었음을 드러내는 인정 정의의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주코파는 인정과 낙인의 역설을 포착한다. 국제 과학계가 갑상선 암만을 직접적 인과관계로 인정하며 피해의 범위를 제한할 때, 생존자들은 기관지염이나 천식, 부인과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체르노빌과 결부하여 협소한 과학적 정의에 도전한다. 동시에 사회적 낙인이 가해질 때면 스스로가 '정상'임을 피력하며, 외부에서 규정한 피해자 정체성을 거부하고 존엄성을 지키려 한다(Zhukova, 2020: 600-602). 여기서 인정 투쟁은 역설적이다. 피해자라는 '라벨'을 수용하면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편견에 걸러지고, 이를 거부하면 정상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축소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결국 만성적 위기는 개인적·과학적·대중적 의미가 끊임없이 길항하며 공존하는 상태로 나타난다(Zhukova, 2020: 596).

이런 인정 정의 연구는 젠더 문제와 맞물릴 때 한층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 체르노빌 사고 피해에서 여성의 고유한 고통과 피해는 비가시화되기 십상인 탓이다. '환경정의'라는 범주에서 체르노빌 여성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극히 부족하지만 사고 피해와 고통이 젠더화되며 희석된 사실을 규명한 연구는 적지 않다.

줄리 츠윅켈(Julie Cwikel) 등은 체르노빌 이후 이스라엘로 이주한 여성들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실제 가임력 감소·난임 치료 증가 같은 반대 증거를 통해 저선량 노출이 가임력에 영향이 없다는 국제기구의 결론을 반박한다(Cwikel et al., 2020: 6-7). 또한 사고 직후 오염 지역 여성들이 기형아 출산 불안 속에서 높은 비율로 임신 중지를 선택했고, 유럽 각 지에서도 임신 중지나 임신 연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방사능 공포가 여성의 재생산 결정권을 어떻게 압박했는지를 보여준다(Cwikel, 2020: 2-3).

돌봄 노동과 가사 노동 현장의 비가시성은 사고 후 더욱 두드러진다. 조 반나 디 키로(Giovanna Di Chiro) 등은 재난 이후 오염된 식재료를 선별하고, 가족의 건강을 챙기며, 이주 후 파괴된 일상을 재건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재생산 노동'이 환경적 피해나 기여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비판한다(Di Chiro, 2020; Enarson, 2012; MacGregor, 2017). 여성들은 방사능 위험의 최전선에서 '끝나지 않는 일'을 수행하며 가장 밀접하게 오염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은 공적 영역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가시적 폭력 아래 놓여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젠더와 결합했을 때, 인정 정의 연구가 얼마나 깊이를 더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체르노빌 사고에 관한 인정 정의 연구는 환경 부정의가 단순히 '무엇'을 덜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서 존중받지 못했는가의 문제임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이 흐름이 성별화된 고통과 재생산권 침해, 젠더화된 낙인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정받지 못한 또 하나의 존재인 자연의 문제를 다음 장에서 다뤄볼 것이다.

## 5. 에코페미니즘적 성찰: 교차성 · 다종 정의 · 상호 돌봄의 접속

이제 지금까지 고찰한 분배 · 절차 · 인정 정의의 성과를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환경정의 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특히 교차성, 다종 정의, 돌봄의 윤리라는 에코페미니즘의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체르노빌 환경정의 연구를 어떻게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을지 타진해 볼 것이다.

환경정의 연구는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워런 카운티(Warren County)에서 발생한 독성 PCB 매립지 반대 시위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Coolsaet, 2020: 1). 초창기 연구들은 주로 유색인종 공동체에 유해 시설

이 집중되는 '환경인종주의'를 고발하며, 불평등의 근본 동력이 인종인지 계급인지에 관한 학술적 논쟁을 전개했다(Kojola & Pellow, 2021: 102). 이런 흐름은 환경정의의 연구가 오염의 분배 문제를 사회구조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최근의 환경정의의 연구는 이러한 초기 연구의 토대 위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이론적 관여를 통해 환경적 부정의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보상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계급,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장애 여부, 토착성, 시민권 등 다양한 지배체제가 교차하여 환경 부정의를 양산하는 방식에 대해 더욱 폭넓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Kojola & Pellow, 2021: 102).

그러나 본고의 체르노빌 논의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환경정의는 두 가지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고 있다. 하나는 교차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인종·계급에 비해 특히 젠더가 환경정의의 핵심 범주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환경정의가 인종과 계급의 틀에 주로 갇혀 분석될 때, 재난의 젠더화된 취약성은 부차적 문제로 밀려나기 쉽다(Sze, 2017: 160-161). 다른 하나는 기존 환경정의가 인간 중심적인 정의에 머물며, 원전 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비인간' 존재의 주체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분배 정의는 주로 가난과 인종을, 절차적 정의는 비주류의 배제를, 인정 정의는 원주민이나 피해자의 타자화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방사능 오염이 생태계 전반(토양·대기·동식물)에 남기는 장기적 손상을 '정의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재규정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이 지점에서 에코페미니즘은 환경정의에 필요한 윤리적·존재론적 확장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에코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발전주의가 여성과 자연을 함께 지배하고 평가절하하는 구조적 산물임을 드러내며, 환경 문제를 단순한 오염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체계와 지배 논리의 문제로 재정의한다(Isla, 2017: 378-379). 따라서 체르노빌 이후의 환경정의가 분



배·절차·인정이라는 세 축을 넘어 젠더화된 취약성과 인간-비인간 관계의 위계를 동시에 쟁점화하기 위해서는 에코페미니즘적 정의 개념이 요청된다.

에코페미니즘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환경 부정의가 단일한 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권력관계가 중첩되어 발생한다는 ‘교차성’ 이론을 도입한 것이다. 즉 젠더 불평등과 자연 파괴를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억압 구조가 얹힌 결과로 파악하고, 자본주의·과학주의·식민주의·인종주의·이성에 차별·종 차별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교차성 관점이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MacGregor, 2017: 1). 특히 환경 부정의는 상호 얹히며 증폭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에, 교차성을 놓치면 다중 억압 집단의 피해와 필요, 목소리가 환경 연구와 운동, 정책에서 지워질 위험이 있다(Malin & Ryder, 2018). 따라서 교차성은 단일 축 분석에서 보이지 않게 된 인간과 비인간, 곧 여러 범주가 교차하면서 더욱더 소외된 집단의 고통을 드러내는 강력한 비판 도구로 기능한다(Di Chiro, 2020: chap 24).

체르노빌 사례에서 교차적 분석은 피해자의 고통을 다층적으로 규명하게 한다. 환경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해나 고통이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권력과 특권의 불평등한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통이 가시화되지 않거나 기존의 취약성이 증폭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난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은 경제적 자원으로부터의 소외(계급)와 가사 및 돌봄 전담(젠더)이라는 위치가 결합되어 다층적인 위험에 노출된다(Enarson, 2000: 48-49).

또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을 조사하여 젠더 취약성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연구도 있다(Adams et al., 2011; Bromet, 2014). 앞서 본 것처럼, 어린 자식을 둔 어머니는 아이 건강에 대한 공포로 정신 질환 유병률이 높지만, 리처드 애덤스(Richard E. Adams) 등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 상태이거나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경우

그 유병률은 훨씬 더 높아졌다(Adams et al., 2011: 641-642). 이는 젠더 규범과 가난, 경제위기가 겹칠 때 여성의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심화하는지 잘 보여준다(Bromet, 2014: 209). 게다가 질병과 경제적 빈곤은 가정 폭력, 이혼,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져 여성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Petryna, 2002: 191-214).

이처럼 에코페미니즘 정의 연구는 젠더화된 사회구조가 다른 권력 범주와 교차할 때 환경적 부정의가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더 정교하게 파헤칠 수 있다. 나아가 체르노빌에서 드러난 분배·절차·인정의 부정의를 다층적 권력관계의 산물로 재해석하며 '가장 소외된 위치의 경험'을 분석의 중심으로 이동시킨다(Pellow, 2020: chap 22).

에코페미니즘이 환경정의에 더하는 두 번째 핵심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확장, 곧 '다종 정의'(multi-species justice) 혹은 종간 정의(inter-species justice)로의 이동이다(Cooke, 2020; Gaard, 2017; Tschakert, 2021).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인간을 지배자로, 자연을 피지배자로 상정하는 위계 구조가 환경 파괴의 근원임을 지적한다(Plumwood, 1993; Vangeli, 2023/2024). 그런데 원전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자연을 주체적으로 상정하고 비주류 가운데 한 존재로 접근하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그간 '정의'의 문제를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 주로 조망해 온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예를 들어, 환경정의 담론에서 하나의 지향점으로 제시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경제' 또한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자연 자본'으로 정의하고 생태계를 재화·서비스로 화폐화함으로써 새로운 수탈을 낳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런 '녹색화'는 그 유지 비용을 여성·아동·농민·원주민·자연 같은 "여성화되고 가치평가 절하된 것"에 전가해왔기 때문이다(Isla, 2017: 372-373). 이에 진정한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예외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적·공존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정의의 관점이 필요하다.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는 인간 외에도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을 위협에 빠뜨렸다. 잘 알려진 ‘붉은 숲’(Red Forest)을 비롯해 대기와 토양, 산림이 오염되면서 그곳에 살던 동식물이 피폭되었고, 강과 호수, 바다가 오염되어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수중생물도 피폭을 피하지 못했다(Chubina et al, 2023). 그런데 최근 미디어와 일부 환경 담론은 체르노빌 출입금지구역(CEZ)을 인간이 사라진 후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에텐동산’ 혹은 ‘야생의 낙원’으로 묘사한다(Wilson, 2019; Kelsey, 2014: 68).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늑대와 멧돼지, 들소, 독수리, 사슴 등 야생동물 개체 수가 증가했음을 입증하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Deryabina et al., 2015: R824-R826).

이러한 ‘재야생화’(Rewilding) 담론은 ‘인간 없는 자연 회복’이라는 낭만적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언뜻 인간의 오만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인간중심적 시각에서 자연을 다시금 타자화하는 고도의 환경 부정의를 내포할 위험이 있다(Plumwood, 1993:163-164). ‘자연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인간이 가한 폭력을 가리는 면죄부로 작동할 위험이 있으며, 자연을 여전히 인간의 간섭 여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관찰 대상으로 타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없는 ‘자연 회복 담론’은 방사능이 동식물의 유전적 변이와 생태계 사슬에 미치는 ‘느린 폭력’을 은폐한다. 다양한 생물들이 방사능 수치가 높은 지역에서도 생존하고 번식하고 있지만, 유전적 불안정성과 면역 기능 및 생식 능력 저하 등 방사능의 직격이 크게 줄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Møller and Mousseau, 2016; Evangelizou et al, 2014).

따라서 다종 정의는 인간과 비인간이 동시에 겪는 만성적 위기 속에서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의 안녕을 정의의 영역에 포함하고, 인간과 대등하게 자연의 피해와 권리를 정치적으로 재기입할 가능성을 연다. 나아가 다종 정의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동시에 종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성으로 환경 정의론의 지향점을 변경한다(Tschakert, 2021: 4).

결국 에코페미니즘의 환경 정의론은 남성/여성, 인간/비인간과 같은 이분법적 위계 구조를 비판하며, 환경정의와 상호 돌봄의 윤리가 결합한 가치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지배·정복·고립의 서사를 해체하고 관계적 사유를 통해 상호의존·돌봄·공존을 생존의 조건으로 재규정함으로써, 환경정의를 '권리의 분배'에만 묶어두지 않고 '관계의 재구성'과 '공생의 윤리' 차원으로 확장한다(Mandal, 2025: a841).

체르노빌 맥락에서 이러한 공생 윤리는 자발적 귀환자를 뜻하는 '사모셀리'(samosebly)의 삶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출입금지구역이 된 땅으로 다시 돌아와 흙을 일구고 숲에 기대며 살아가는 고령 여성들의 선택은 흔히 비이성이나 무지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소개 이후 난민의 상실과 고립을 피하려는 시도이자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축적된 '고향'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알렉시예비치, 2011: 229; Morris, 2012: 38). 물론 그 삶은 상·하수도나 통신이 부족한 열악한 조건 속의 자급자족을 요구하기에(정영주, 2019: 230) 단지 목가적으로만 그려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오염을 이유로 자연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분리하기보다, 상처 입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은 '오염된 공간은 곧 죽음의 공간'이라는 단선적인 등식을 흔들고, 폐허가 된 장소에서도 일상과 생태의 리듬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는 중국적으로 체르노빌 이후의 정의가 단순한 보상과 격리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파괴된 생태·기억·생활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회복하는 윤리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요컨대 에코페미니즘적 성찰은 기존 환경정의 담론이 지닌 젠더적 공백과 인간 중심주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교차성 분석을 통해 부정의의 다층적 구조를 파헤치고 다중 정의를 통해 생태주의의 지평을 넓히며 돌봄의 윤리를 통해 공생의 정치를 제안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은 체르노빌의 비극을 넘어선 새로운 '정의의 문법'을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 체르노빌 사고를 둘러싼 환경정의 연구는 이제 기술주의적 관리를 넘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정의로운 관계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에코페미니즘과 환경정의의 접속은 체르노빌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성찰하는 강력한 도구이자,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정의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윤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인류 공존의 미래에 한 발짝 다가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 김덕호 · 박진희 · 이내주 · 이정희. 2016. “원전 사고와 원전 체제의 변화: TMI와 체르노빌 사고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55: 83-120.
- 김소진. 2020.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민주법학』 78: 179-203.
- 김현미. 2020.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 『젠더와 문화』 13(2): 41-77.
- 김효정. 2023. “기후위기의 페미니즘 정치학과 생태시민되기.” 『문화연구』 11(2): 33-61.
- 박언진. 2024.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적 쟁점.” 『환경철학』 37: 125-154.
- 박진희. 2013. “원전 위험 인식의 사회적 구성 -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비교.” 『환경철학』 15: 117-143.
- 박태현. 2022. “자연의 권리론.” 『환경법연구』 44(3): 95-140.
- 알렉시예비치, 스베틀라나. 2011.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김은혜(역), 서울: 새잎.
- 윤순진. 2004. “에너지와 환경정의: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7: 78-114.
- 이상원 · 송아람 · 박노옥. 2012. “공간정보 모델링을 이용한 원전 사고의 환경 영향 평가: 체르노빌 사례연구.”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8(1): 129-143.
- 이상호. 2025. “환경정의와 역량: 쉐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전망』 125: 208-234.
- 이영환. 2022. “동물권, 인권 그리고 종차별주의.” 『환경철학』 33: 95-121.
- 임소라. 2025. “브라질 환경 담론의 전환과 자연의 권리 법제화 동향.” 『이베로아메리카』 27(2): 113-152.
- 장은하. 2016. “재난과 젠더: 취약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43: 16-25.
- 정미선 · 진영우. 2011. “체르노빌 사고의 건강 영향.”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7(4): 237-249.
- 정영주. 2019. “삶의 공간으로서의 체르노빌: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 연구논집』 64: 119-246.
- 최진이. 2024.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의 권리 연구.” 『법학논총』 44(2): 99-123.
- 한면희. 2015. “탈핵의 환경윤리.” 『생명연구』 37: 131-172.
- 한상진. 2013. “삼척시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을 둘러싼 반핵운동의 대응과 환경정의: 스케일 관점에서 본 원전 레짐과 탈핵.” 『경제와사회』 98: 77-105.
- 한정숙. 2013. “체르노빌 원전사고-20세기가 보내온 생명 파괴의 경고.” 『역사비평』 103: 199-232.
- 허라금. 2012.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환경철학』 13: 65-90.

- Adams, Richard E., Lin T. Guey, Semyon F. Gluzman, and Evelyn J. Bromet. 2011.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isk perceptions of mothers in Ukraine, Kyiv, 19 years after the Chornobyl disa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7(6): 637 - 645.
- Akyüz, Emrah. 2021. "Environmental Justice and Nuclear Accidents: The Case of Chernobyl Disaster,"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 and Geoinformatics* (IJEGEO) 8(3): 369-375.
- Alexis-Martin, Becky. 2015. "The Chernobyl Necklace: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Female Radiation Emergency Survivors," *Belgeo* 1: 1-11.
- Anisimov, Aleksey Pavlovich and Anatoliy Jakovlevich Ryzhenkov. 2016. "Thirty years after the accident at the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historical causes, lessons and legal effects," *Journal of Energy & Natural Resources Law* 34(3): 265-283.
- Barnett, L. 2007. "Psychosocial Effects of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Medicine, Conflict and Survival* 23(1): 46-57.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Mark Ritter(trans). London: SAGE Publications.
- Bromet, Evelyn, J., J. M. Havenaa, and L. T. Guey. 2011. "A 25 Year Retrospective Review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the Chernobyl Accident," *Clinical Oncology* 30: 1-9.
- Bromet, Evelyn J. 2014. "Emotional Consequences of Nuclear Power Plant Disasters," *Health Physics* 106(2): 206-210.
- Bullard, Robert D. 2000. *Dumping in Dixie: Race, Class, and Environmental Quality*, 3rd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 Chubina, Tetiana Dmytrivna et al. 2023. "Environmental and Socio-Demographic Consequences of the Chornoby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 Historical Retrospective after 36 Years," *Studia Regionalne i Lokalne* 91: 101-109.
- Cooke, Steve. 2020. "Justice beyond Hmanity," chap 21.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oolsaet, Brendan(ed). 2020.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 Routledge.
- Cotton, Matthew. 2020. "Nuclear Power and Environmental Justice - the Case for Political Equality," 202-229. A. Kaijser, M. Lehtonen, and J-H. Meyer(eds).

- Engaging the Atom. The History of Nuclear Energy and Society in Europe from the 1950s to the Present*, Morgantown: West Virginia University Press.
- Cwikel, Julie et al. 2020. "Reproductive Effects of Exposure to Low-Dose Ionizing Radiation: A Long-Term Follow-Up of Immigrant Women Exposed to the Chernobyl Accident,"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9(6): pp. 1-11.
- Deryabina, Tatiana G. at al. 2015. "Long-term Census Data Reveal Abundant Wildlife Populations at Chernobyl," *Current Biology* 25(19): R824-R826.
- Di Chiro, Giovanna. 2020. "Mobilizing 'Intersectionality' in Environmental Justice Reserch and action in a Time of Crisis," chap 24.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Edwards, Nelta. 2011. "Nuclear Colonialism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Landscape in Alaska," *Environmental Justice* 4(2): 109-114.
- Enarson, Elaine. 2000. *Women Confronting Natural Disaster*, Boulder, CO: Lynne Rienner.
- Evangelizou, Nikolaos et al. 2014. "Wildfires in Chernobyl-contaminated Forests and Risks to the Population and the Environment: A New Assessment," *Scientific Reports* 4(1): 1-11.
- Gaard, Greta. 2017. "Posthumanism, Ecofeminism, and Inter-species Relations," 115-129. S. MacGregor(ed). *The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Hassan, Nurul Habibah Nor at al. 2025. "Preventing Nuclear Accidents: The Need for Public Awareness, Safety Protocols and Environmental Justice," *Semarak International Journal of Chemical Process Engineering* 3(1): 37-51.
- Höffken, Johanna & M. V. Ramana. 2024. "Nuclear Power and Environmental Injustice," *WIREs Energy and Environment* 13(1): 1-7.
- Holland, Breana. 2020. chap 6. "Capabilities, Well-being, and Environmental Justice,"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Isla, Ana. 2017. "Whose Debt for Whose Nature? Gender and Nature in Neoliberalism's War against Subsistence," 372-383. S. MacGregor(ed). *The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Kelsey, Elin. 2014. "Beyond Doom and Gloom: An Exploration through Letters," *RCC Perspectives* 6: 1 - 73.



- Kinly, D. III(ed). 2006. *Chernobyl's legacy: Health,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and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of Belarus, the Russian Federation and Ukraine. The Chernobyl Forum 2003-2005. Second revised version*. Vienn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Kojola, Erik & David N. Pellow. 2021. "New directions in Environmental Justice Studies: Examining the State and Violence." *Environmental Politics* 30(1-2): 100-118.
- Kyne, Dean and Bob Bolin. 2016. "Emerging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in Nuclear Power and Radioactive Contamination,"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3(7): 1-19.
- MacGregor, Sherilyn(ed). 2017.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MacGregor, Sherilyn. 2020. "Gender matters in environmental justice," chap 18.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ah, Alice. 2020. "Toxic legacies and environmental justice," chap 10.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Malin, Stephanie. 2015. *The Price of Nuclear Power: Uranium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Justice*.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 Malin, Stephanie A. & Stacia S. Ryder. 2018. "Developing Deeply Intersectional Environmental Justice Scholarship," *Environmental Sociology* 4(1): 1-7.
- Mandal, Subhankar. 2025. "Ecofeminism and Environmental Justice: Intersections of Gender and Ecology." *IJNRD* 10(6): a839-a842.
- Møller, Anders Pape, and Timothy A. Mousseau. 2016. "Are organisms adapting to ionizing radiation at Chernobyl?"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31(4): 281-289.
- Nixon, Rob. 2011. *Slow Violence and the Environmentalism of the Po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ellow, David N. 2020. "Critical Environmental Justice," chap 22.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errow, Charles. 1984.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New York: Basic Books.
- Petryna, Adriana. 2002. *Life Exposed: Biological Citizens after Chernobyl*.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Chernobyl's Survivors: Paralyzed by Fatalism or Overlooked by Scienc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67(2): 30-37.
- Plumwood, Val. 1993.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London: Routledge.
- Rice, James. 2016. "Slow Violence and the Challenges of Environmental Inequality," *Environmental Justice* 9(6): 176-180.
- Schlosberg, David, 2007. *Defining Environmental Justice: Theories, Movements, and N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ze, Julie. "Gender and Environmental Justice." 159-168. S. MacGregor(ed). 2017. *The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Shrader-Frechette, Kristin. 1999. "Chernobyl, Global Environmental Injustice and Mutagenic Threats," 70-89, Nicholas Low(ed). *Global Ethics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_\_\_\_\_. 2010. "Environmental Injustice, Climate Change, and Nuclear Power: Flawed Standards for Ionizing Radiation," *Journal of Applied Ethics and Philosophy* 2: 1-11.
- Suiseeya, Kimberly R. Marion. 2020. "Procedural Justice Matters: Power,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Governance," chap. 4. Brendan Coolsaet(ed). *Environmental Justice: Key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schakert, Petra at al. 2021. "Multispecies Justice: Climate-Just Futures with, for and beyond Humans," *WIREs Climate Change* 12(2): 1-10.
- Unger, Nancy C. 2008. "The Role of Gender in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1(3): 115-120.
- Vangeli, Alice, 2023/2024. "Ecofeminism and Environmental Justice: human/non-human interconnections," M.D thesis in Ca' Foscari Universtiy of Venice.
- Wilson, Jeff. 2019. "Forests," *Our Planet*, season 1, episode 8. Netflix.
- Xiang, H., & Y. Zhu. 2011. "The Ethics Issues of Nuclear Energy: Hard Lessons Learned from Chernobyl and Fukushima," *Journal of Health Ethics* 7(2): 1-10.
- Zhukova, Ekatherina. 2020. "Nuclear Disaster as Chronic Crisis: Accounts of Radiation Embodiment by Survivors of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from Belarus Born before, in and after 1986," *Health Volume* 24(5): 589-605.

Abstract

## An Ecofeminist Reading of Research Trends on “Environmental Justice”

### – The Case of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Bae, Hyeje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races environmental justice scholarship on the 1986 Chernobyl nuclear disaster and offers an ecofeminist reappraisal. While Ulrich Beck’s “risk society” thesis casts nuclear risk as a universal threat transcending borders and social class, this article argues that structural environmental injustice has, in practice, unevenly offloaded risk onto marginalized groups along hierarchies of region, class, gender, and species. It maps Chernobyl-related environmental justice research into three major strands — distributive, procedural, and recognition justice — showing how the field has shifted over time. Early studies primarily addressed distributive justice by emphasizing the imbalance between nuclear benefits and the burdens of radiation exposure. Subsequent work moved toward procedural justice, critiquing Soviet authorities’ information suppression and technocratic decision-making. More recent scholarship foregrounds recognition justice by examining the stigmatization of “Chernobylites,” making “slow violence” legible, and attending to intergenerational risk transmission. Building on these developments, the article asks whether ostensibly gender-neutral environmental justice frameworks obscure gendered vulnerability, and whether anthropocentric rights-based approaches inadequately account for nonhuman nature and multispecies harm. The article concludes by proposing an expanded environmental justice framework grounded in intersectionality, multispecies justice, and mutual care — one that prioritizes an ethics of life and coexistence over growth and efficiency.

**Key words:** Chernobyl Nuclear Disaster, Environmental Justice,  
Ecofeminism, Slow Violence, Gendered Vulnerability,  
Intersectionality and Multi-Species Justice

■ 투 고 일 : 2026년 3월 2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1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4일

정연보 | 광장의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시민성

- '응원봉 시위'의 물질들을 중심으로

배홍철 | 성차별적 호칭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 1990~2025년 전국 일간지의 “여류(女流)” 표현 사례 분석

김경미 |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젠더화

- 시간 접근권의 불평등

문지선 | 가사육아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2015~2025년 성별 일자리 질 비교를 중심으로

최이숙 | 팬데믹 시기 60대 여성들의 자기 계발과 그 의미

- 나이듦 그리고 불안과 마주하기

홍지현 | 조선 후기 『受教輯錄』 소재 여성 관련 수교 연구

- 여성 규범의 법제화 작용 사례에 대한 고찰

권영승 | 나이지리아 힙합의 (서)아프리칸 페미니즘 실천

- 아티스트 '시미(Simi)' 사례연구



# 광장의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시민성

— ‘응원봉 시위’의 물질들을 중심으로\*

정연보\*\*

## | 목차 |

- |                           |                               |
|---------------------------|-------------------------------|
| 1. 서론                     | 시간성: 민주화운동과                   |
|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 페미니즘/퀴어광장                     |
| 3. 물질과 정치, 관계적 물질성과<br>정동 | 5. 응원봉 시위의 관계적 물질성과<br>연대의 정동 |
| 4. 한국의 기존 시위와 물질들의        | 6. 나가며                        |

## | 초록 |

집회 현장의 물질들은 단순한 도구나 상징을 넘어 운동의 전략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며, 연대의 정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작용한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의 탄핵집회는 ‘응원봉 시위’ 또는 ‘빛의 혁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연구에서는 탄핵집회에서 주목된 응원봉 등의 사물을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중요한 참여자로 본다. 광장은 단순한 물리적 집합 장소가 아니라 시간-공간-물질이 얽혀 생성되는 세계, 물질, 기억 자체이다. 이미 존재하는 빈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응원봉의 흔들림, 빛과 어둠의 만남,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들, 차가운 아스팔트 바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A2A01010411). 또한 이 연구는 2023년도 성공회대학교 교내연구활동지원사업에 의한 연구임. 이 논문은 2025년 5월 31일 한국과학기술학회에서 발표한 이후 심층면접과 분석을 추가하고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어준 연구참여자분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공회대학교 jeongyb@skhu.ac.kr

닥, 핫팩과 은박담요의 열, 스마트폰과 디지털기술의 연결성, 구호와 음악의 진동, 마주치고 부딪치는 신체들, 민주화운동과 페미니즘/퀴어 광장의 기억, 폭력, 희망 등이 얽힌 관계 속에서 광장은 물질화된다. 광장의 참가자들과 물질들은 미리 존재하는 선형적 주체나 본질적 속성의 실재가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들과의 내부-작용을 통해 저항적 시위와 저항적 주체로 되어 간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주체를 고립된 인간 개체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넘는 관계적 존재론에 기반하여,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시민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불가능한 즐거움, 긴장 속에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함, 서로에게 빛을 지며 돌보고 연결되는 정동의 형성에 주목하면서, 민주주의를 다양한 존재들이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응원봉 시위, 관계적 물질성, 연대의 시민성, 정동, 광장

## 1. 서론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2025년 초까지 한국 사회의 광장에서는 새로운 정치적 실천들과 목소리들, 물질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응원봉 시위' 또는 '빛의 혁명' 등으로 불린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이하 '탄핵집회')에서는 공연장의 응원 도구였던 '응원봉'이 집회 현장에서 대규모로 등장하며, 기존 촛불의 위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물질적 행위자가 되었다. 케이팝 문화와 함께 성장해온 이 도구는 정치적 현장에서 단순한 빛을 내는 물질적 도구를 넘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연대의 가능성, 감각적 실천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주목받았다. 또한 깃발, 핫팩과 간식, 은박담요, 난방버스, 화장실, 쓰레기, 스마트폰 등은 기후변화와 혹한, 바람, 폭설, 일몰 후에도 계속된 시위 현장의 어둠, 인간 몸의 허기와 고단함, 물질성들과 연동하며 광장의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응원봉 시위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정치



적 행위자로 작동하는가, 이러한 물질-인간 얽힘은 어떠한 정동과 시민성을 구성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민주주의와 광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제도적·담론적 측면에 집중한 반면, 시민성과 민주주의의 물질적·감각적 층위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그 물질성과 행위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집회 현장의 물질들은 단순한 도구나 상징을 넘어 운동의 전략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응원봉 시위’라는 새로운 형식이 나타난 현재 참여자들의 감각적 경험과 그들을 둘러싼 물질, 인간, 비인간의 관계적 얽힘에 대한 탐구는 더 많은 논의의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응원봉 시위를 통해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자한다. ‘관계적 물질성’은 바라드의 관계적 존재론(Barad, 2007)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물질이 고정된 속성이나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실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바라드는 ‘얽힘들(entanglements)’을 이론화하는데, 얽혀 있다는 것은, 단지 분리된 개별 개체들이 꼬여 있다는 것이 아니다. 개체들은 관계 이전에 미리 존재하는 독립적, 자기-충족적 존재가 아니며, 얽힌 상-관하기(inter-relating)의 일부로서, 관계를 통해 출현한다. 그는 현실의 완벽한 재현을 목표로 한 기존 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대안으로, 파동들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간섭 현상인 “회절(diffraction)”의 개념을 통해 새롭게 얽힌 관계성에 주목한다. 응원봉, 깃발, 은박담요, 스마트폰 등의 인공물들도 미리 존재하는 현실의 절대적 재현물이 아니기에 하나의 의미나 도구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얽힘의 관계 속에서 광장을 시위의 현장으로, 집회의 참여자를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회절하며 함께 출현하게 하는 사물들이다. 광장은 단지 어떤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서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물질성과 관계성, 시간성(역사성)을 통해 의미화되고 물질화된다. 특히 응원봉 시위에서의 물질들은 집회 현장에서 참

여자들과의 관계 안에 특정한 정동을 불러일으키며, 개인들을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실천으로 '연대의 시민성' 출현이 가능하게 한다.

이 글은 먼저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관계적 물질성과 정치, 정동에 관한 이론과 사례들을 검토한 뒤, 기존 시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쇠파이프에서 촛불로 상징이 변화한 의미, 페미니즘과 쿼어 광장에서의 물질 등을 살펴봄으로써 중첩된 시간성을 검토한다. 이어 응원봉 시위에서 나타난 다양한 물질-담론들이 집회 문화를 어떻게 바꾸거나 지속시켰는지를 보다 미시적으로 보면서, 이 과정에서 형성된 연결과 돌봄의 정동에 기반한 연대의 시민성 실천을 조명한다.

##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최근 탄핵 광장에 관한 연구가 빠르게 출판되고 있다. 광장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최나현 외, 2025; 이유정 외, 2025; 김유정 외, 2025), 인터뷰에 기반한 단행본 및 논문(이슬기, 2025; 조소연 외, 2025; 최지향 외, 2025; 희주, 일석, 구구, 2025; 강문민서, 송소연, 조용환, 2025), 발언문 분석(유현미 외, 2025) 등이 출판되었고, 시위 현장 이미지, 성명서, 발언, 온라인 글들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아카이브들<sup>1)</sup>도 구축되고 있다. 광장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들(정원옥 외, 2025; 신진옥 외, 2025; 박지하, 2026 등)도 다수 출판되고 있다. 특히 합창, 구호, 함성 같은 음향 요소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화의 조건을 만들었는지 분석하는 연구

1) 1203아카이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록과정보 · 문화연구모임), 2024년 12월의 목소리들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2030여성의 시선으로 본 탄핵 광장 (남태령 대첩 아카이빙팀), 20241203 비상계엄 이후 기록 등의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있다.

(임태훈, 2025), 몸짓, 말, 소리, 이미지 실천에 주목하는 연구(박상은, 2025)는 몸과 감각적 분석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몸과 물질에 보다 주목한 연구로 홍보람·한우리(2025)의 연구는 광장에서 전개된 물질성과 몸의 정치에 주목하며 인간의 신체가 강력한 저항과 연결의 매체임을 중요하게 분석했다. 이들은 자기책임, 비의존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에 대한 비판 이론으로 “퀴어 마르크스주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 이론의 분석과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명하면서도, 기존 사회과학이론이 물질 분석을 마르크스주의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물질과 인간의 이분법을 넘어 물질의 관계성, 행위성을 보다 강조하는 신유물론과 페미니스트/퀴어 과학기술학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김환석, 2018; Barad, 2007; 2012; 2023).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광장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물질성을 중심으로 다시 분석하고, 광장 참여자 6인과의 심층면접을 추가로 실행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기존 국내외 시위의 물질문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 사례, 언론보도 자료, 온라인 SNS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들, 필자 자신의 광장 현장 참여 기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심층면접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진행하였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먼저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탄핵찬성집회에 참여한 이들 중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참여 경험을 공유한 여성들을 섭외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이후 주변의 소개를 통해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했다. 서울 중심이 되지 않도록 지역의 집회나 활동에도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였다. 지역 거주자가 상경하여 참여한 경우, 서울 거주자가 지역에 연대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다. 5명은 약 2시간 내외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E는 개인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인터뷰 전후 추가로 메모와 사진, 영상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자에게 보내주기도 했다.

〈표 1〉 연구참여자

| 연구참여자 | 연령     | 참여지역       | 인터뷰 방식 |
|-------|--------|------------|--------|
| A     | 20~30대 | 서울, 대구, 경북 | 대면     |
| B     | 20~30대 | 서울, 충북     | 대면     |
| C     | 20~30대 | 서울, 광주     | 대면     |
| D     | 20~30대 | 서울, 제주     | 대면     |
| E     | 20~30대 | 서울         | 온라인    |
| F     | 40대    | 부산         | 대면     |

모집 과정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취지에 동의하며 참여 의지를 보인 참여자를 면접하였다. 설명서와 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참여의 동기, 참여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과 물질 및 감정, 일상과의 연결성, 페미니즘 관점과의 연결성, 참여 중 겪은 어려움, 제언과 전망 등을 포함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었고, 녹취록 작성 후 키워드 분석을 통해 분류 및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시위현장의 물질성과 정동을 중심으로 인용하였으나, 다른 내용들도 연관된 경우 포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인터뷰 내용은 익명으로 기록하였다.

### 3. 물질과 정치, 관계적 물질성과 정동

최근 사회과학에서는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이 강조되며, 신유물론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 사물, 몸 등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 신유물론은 물질성을 관계적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인간과 비인간, 언어와 물질의 이분법을 넘는 관점으로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라투르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 이하 ANT)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그로 인한 정치적 효과를 고찰하는데, 사물이 단순한 도구나 수동적 배경이 아닌 행위성을 지닌 핵심 구성요소라는 점과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관계망을 강조한다(Latour, 2005).

신유물론과 페미니스트/퀴어 과학기술학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바라드(Barad, 2007)도 비인간 물질의 행위성을 주목하지만, ANT와 달리 개체, 실체로서 사물이 선형적으로 존재하여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구분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존재가 함께 생성되는 과정으로 “내부-작용(intra-action)”을 강조한다. 즉 이미 존재하는 독립된 행위자들이 모이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양자 얽힘처럼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관계적 존재이며, 물질 자체가 의미와 행위성을 응축한다. 바라드는 “공간시간물질화(spacetime mattering)”(Barad, 2023: 27)의 개념을 통해, 기억은 단지 인간 정신의 주관적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정신’은 세계의 시공간-물질화의 일부임을 드러낸다.

기억은 개별적 뇌 주름 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은 우주에 새겨진 시공간-물질의 접힘(enfoldings)이며, 더 정확히 말해, 그 물질화 속에서 우주가 스스로를 접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기억하기(re-membering)는 일련의 순간들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보다 더 큰 과거와 미래를 생동하게 하고 재배치하는 것이다(Barad 2007, ix).

즉 기억은 “세계짓기(worlding)”의 과정에 새겨져 있으며, 세계의 반복적 재-구성들/재-구성하기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Barad, 2023: 28). 이렇게 보면 광장은 이미 존재하는 독립된 행위자들이 모이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출현한다.

이는 기존에 인간과 언어, 문화로만 해석해왔던 정치적 행위와 사회운동 참여의 감각적 측면을 조명하는 데 유용하며, 언어와 물질의 이분법을

넘어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관계 속의 수행성(performativity)과 물질-담론적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시위참여자들은 광장에 참여하면서 응원봉과 소리, 깃발 등 다양한 물질 참여자들과 광장에 “휘말림”으로써(서보경, 2023)<sup>2)</sup> 참가 전 가지고 있던 의도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기보다는 회절하여 새로운 관계와 의미가 형성되는 힘으로 읽을 수 있다.

다른 이론적 자원으로 정동(affect) 이론은 감정을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몸, 물질,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본다. 마수미에게 정동은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작용하고, 지각하고, 생각하도록 새로운 변이를 표현하려고 요동치는” 힘으로 몸과 세계가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직 언어로 완전히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인 흐름을 의미한다(마수미, 2018: 8). 아메드는 감정이 특정한 신체나 사물을 향하게 하는 방향성과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한다(아메드, 2023: 444). 이 연구들은 주체의 인지 과정을 우월하게 여긴 기존의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성/감정의 이분법을 넘어, 몸과 사물, 감각이 경험하는 관계 속의 정동과 감정에 주목한다. 한국에서도 정동 이론은 정치·사회 현상의 새로운 미시적 접근 틀로 활용되고 있는데, 권명아(2016)는 “여자 떼”와 소수자 등 “다스릴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역사적 공포 등을 정동이론으로 고찰하였고, 소영현(2022)은 응원봉 이전의 광장과 젠더를 정동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동은 정치적 집합이 이루어지는 감각적 기반이며, 특히 시위와 같이 다중의 몸들이 모인 공간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처럼 신유물론과 정동이론 등은 언어로만 포착되지 않는 몸과 물질

2) 서보경(2023)은 바이러스 등 비인간과 인간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행위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능동(감염시키다)과 피동(감염되다)의 이분법을 넘어 중동태로서 ‘휘말리다’를 사용한다. 본 연구자도 “행하면서 당하는 일”(서보경, 2023: 349)로서 ‘휘말리다’가 시위 참여자들과 사물들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으로 분리된 사건이 아닌 광장에서 영향을 입고 말려들어가는 과정을 포착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았다.

의 정치를 강조하면서 시민성과 민주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물질과 감각, 정동의 역할을 재평가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전통적 시민성 이론은 시민을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율적 개인으로 상정해왔다(Marshall, 1950; Rawls, 1971). 또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행위와 의사소통을 시민성의 핵심으로 보는 논의도 제시되었다(Arendt, 1958; Habermas, 1989). 이러한 접근은 인간 행위자, 제도, 구조, 언어가 중심이었으나, 바라드의 접근과 정동이론은 사물, 기술 등 비인간 물질들과 몸, 감정과 감각 등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독립된 자율성을 전제로 하거나, 공적 행위에 참여하는 인간 주체를 중심에 두는 자유주의적 시민성을 넘어, 인간-비인간 물질들이 얽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동적, 물질적 실천의 효과로서 ‘연대의 시민성’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사물에 주목한 구체적 연구사례로, 콜먼(Coleman, 2019)은 쿼어축제에서 종종 사용되는 반짝이는 물질(glitter)이 단지 시각적 장식이 아닌, 정동을 생산하고 관계를 조직하는 정치적 매개체로 작동한다고 분석한다. 반짝이 가루 입자들은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존재로, 끈적이고 남는다는 물질의 특성이 기억, 정서, 감각의 지속성을 표현한다. 이는 종종 여성적, 쿼어한, 축제적인 정체성과 연결되는데, 빛나고 눈에 띈다는 특성은 소수자성과 연결되며 비가시화되었던 존재성 혹은 집단의 가시화를 위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반짝이는 물질은 유쾌한 감정, 기쁨, 놀이를 통한 저항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분노나 결기로 묘사되어온 시위 문화의 정동을 변형시킨다. 또한 정리하기 어렵고 흩어지는 반짝이 가루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생동하는 물질”(vibrant matter)로(Bennet, 2010), 축제 현장을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경계의 흐트러짐, 물질의 통제불가능성과 정체성의 혼성성을 가시화한다.

민주주의적 저항운동뿐 아니라 지배권력의 동원 정치에서도 정동적 물질성이 작동한다. 로겐호퍼와 다실바(Rogenhofer & da Silva, 2023)는 논쟁적 정치를 이해하려면 아이디어, 텍스트, 기회 구조 뿐아니라, 사회적·정

치적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물들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군용 차량과 대중 집회, 체육 행사 등에서 사용된 'Z' 문양이 국가주의, 전쟁의 정당화, 정서적 결속을 조직하는 물질적 매개체로 작동한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이는 물질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핵심적인 정동적 행위자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푸시햇(pussyhat)' 니트모자 시위 역시 일상적 물질과 감각이 정치적 저항과 연결되는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2017년 1월 워싱턴 여성 행진(Women's March)에서는 대선과정 내내 여성혐오 시각을 노출한 트럼프의 발언에 반대하여, 참여자들이 분홍색 '푸시햇' 니트 모자를 쓰고 행진했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이 모자를 트럼프 반대의 상징, 여성의 강인함, 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니트 모자는 집단적 뜨개질이라는 행위를 통해 비가시화된 손노동, 돌봄노동을 가시화하며, 신체를 감싸고, 여성 혐오에 대한 저항, 감각적·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정치적 주체성을 물질화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푸시햇이 잠재적인 인종주의와 트랜스젠더 배제를 내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Malcom et al, 2020).

이외에도 잘 알려진 홍콩의 우산시위에서는 우산이 비를 막는 일상적 개인적 물건에서, 경찰의 최루탄과 폭력을 막으며, 동시에 카메라 채증을 통한 신분 노출을 방해하는 공동체의 방패이자 시위의 상징이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시위에서 등장한 냄비는 시끄러운 금속음을 통해 혼란 요리 도구에서 정치적 저항의 매개가 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원래 노동을 위한 장비였던 형광조끼가 비가시화된 이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정치적 가시성의 장치로 변했다(Esmoris and Ohanian, 2022). 냄비의 소리는 주의를 끌고, 노란 우산의 색과 형광 조끼는 시각적 연대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감각적 자극은 정동 정치의 차원에서 작동했다(위의 글).

이와 같이 일상적인 물질들이 정치적 수행의 관계들에 얹히면서 특정한 연대감 또는 배제를 낳기도 한다. 광장의 참가자들과 물질들은 미리 존



재하는 선험적 주체나 본질적 속성의 실재가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들과의 내부-작용(Barad, 2007)을 통해 정치적 주체와 물질적 실재로 되어간다.

#### 4. 한국의 기존 시위와 물질들의 시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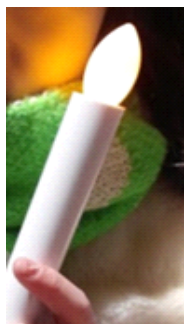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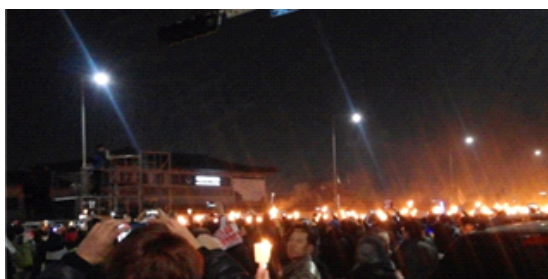
##### 민주화운동과 페미니즘/퀴어광장

김은성(2022)은 한국 사회운동의 물질문화를 분석하면서, 시위대가 사용하는 인공물의 상징적 의미와 감각적 경험을 다루었다. 그에 따르면, 집회 현장에서 쇠파이프, 화염병, 최루탄, 촛불, 차벽 등의 시위 인공물은 서로 다른 물질정치를 행한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집회에서 주로 나타났던 쇠파이프는 촛불보다 위계적이며 남성중심적인 시위 문화를 만들었지만, 촛불과 같은 새로운 시위 인공물의 등장은 새로운 시위의 양상으로 이어졌다. 촛불을 든 시위 참여자는 뛰기도, 폭력을 행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위 인공물은 시위 참여자의 행위를 제약하며, 인간들의 감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권력이 생산되고 재생산된다. 즉, 감각은 몸 뿐만 아니라 사물을 매개로 실천되며, 새로운 인공물의 출현은 감각 권력을 변화시킨다(김은성, 2022).

쇠파이프로 상징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군사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이었음(Kwon, 2005)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성들은 언제나 광장에,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에 있었으나 비가시화되었다. 시위 참여 여성들은 돌을 찾아 전달하기도 하고 다친 학생들을 치료하기도 했으며,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다. 1987년 투쟁에서 “보물찾기”처럼 돌을 찾아다녔던 행동조 이경란은 인터뷰에서, “전경들이 최루탄을 쏘거나 백골단들이 덮칠 때 일단 돌을 던지면 그만큼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돌은 “우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초등학교때 소풍가서 찾던 “보

물”만큼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한다(하현중, 2018). 간호대생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은 다른 시민들이 다친 경우 치료와 돌봄, 이송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이 돌봄의 역할에 머무르기만 한 것은 아니며 여성들 역시 전투조로 활동하고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위의 글). 또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여성들은 삼베수건을 쓰거나, 전경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주며 최루탄 추방운동을 벌이는 등 쇠파이프 외의 다양한 물질들이 1980년대 광장에도 등장하였다. 쇠파이프로만 민주화 시위를 기억할 때에는 돌봄이나 다른 물질들과의 얽힘으로 이루어진 시위참여형식들은 비가시화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sup>3)</sup>

〈그림 1〉 2016년 탄핵집회의 촛불과 종이컵 (필자 촬영)



〈그림 2〉  
2016년 탄핵집회에서  
사용된 LED 촛불  
(필자 촬영)

3)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기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 평화집회를 주도한 시민운동의 대표적 사례로서 주목받아 왔다.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의 사망에 대한 촛불시위로부터 시작하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집회, 2016-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 등에서 촛불이 중요한 시위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촛불의 빛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상징적·물질적 행위자로, 빛의 파동이 성찰적이며 공동체적인 정동을 만들어내었다. 또한 촛농이 떨어지지 않게 종이컵을 받친 초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만들었다(김은성, 2022). 당시 중학생, 유모차를 끈 여성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청소년과 여성이라는 새로운 정치 주체를 ‘발견했다’는 평가들이 이어졌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광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김영옥(2009)은 2008년 촛불집회가 다양한 여성들의 주도적 역할 아래 진행되었고, 기존의 운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하며, 생활정치와 생명정치의 연관성을 밝혔던 점을 분석했다. 또한 촛불집회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의례(ritual)와 참여자들의 퍼포먼스(performance)를 강조한 분석(한우리, 허철, 2010)은 참여자들이 복잡한 정치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 중요하게 주목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도 촛불집회가 이어졌는데,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는 한 정치인의 발언은 촛불과 바람의 상호작용과 취약성을 정치적 유약함, ‘민심의 변덕스러움’으로 비유하면서 촛불집회의 민주주의적 요구들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목소리로 폄하하려 했다. 이에 분노한 시위현장에서는 커다란 햇불이 등장하기도 했고, 바람에 꺼지지 않는 LED 촛불도 등장했다(그림 2). 이러한 LED 촛불은 다양한 색은 아니었지만 휴대성이 개선된 촛불로 응원봉과 연관된다. 또한 2016년 대학가 첫 시국선언을 시작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투쟁가로 불렀으며, 이것이 2024년 탄핵집회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촛불집회에서 배제와 소외의 비가시화 문제도 있었다. 집회의 평화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집회에 여전히 남아있던 혐오와 차별, 폭력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겪어야 했던 소수자들의 자리”와 “광장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의 존재”를 지울 수 있었다(소영현, 2022: 40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서 광장 참여를 이끈 정동의 하나가 여성 혐오였음을 분석한 연구는(소영현, 2022; 장은애, 2023) 이러한 배제의 정치학이 사소한 과제가 아님을 상기시킨다.

한편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시민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이기 시작한 포스트잇 추모 메모 현상은 여성들과 시민들이 쓴 메시지가 물리적으로 붙고 겹치며, 일상적 도시 공간에 의미변화를 만들었다. 포스트잇은 텍스트와 물질이 결합한 비인간 행위자로서, 분노, 슬픔, 공감과 연대의 사회적 감정을 매개하고 재조직했다. 강남역 출구는 애도의 장소, 분노의 장소, 여성 연대의 장소로 재기호화되며, 그 공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읽거나 붙이고, 추모의 메모와 꽃을 남기며 이 정치적 정동의 일부가 되었다. 사무용품으로 분류되는 포스트잇이라는 사소한 보이는 물질은 애도와 공감의 관계 속에서 공간을 중요하게 재구성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7)로 불리는 다양한 페미니즘 논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하던 당시, 자유롭게 붙였다 뗄 수 있는 포스트잇의 물성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익숙한 해시태그를 떠올리며 접속과 만남, 연대를 상징하기도 했다. 해시태그는 우연적이고 창발적인 다양한 얽힘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후 다룰 응원봉 시위의 온라인 연결성으로도 이어진다. 또한 2016-19년 낙태죄 반대를 위한 ‘검은 시위’에서의 검은색 옷, 모자, 장갑, 2018년 해화역의 불법촬영편파수사 규탄 시위에서의 붉은 옷, 양산, 모자 등은 여성들의 애도, 분노, 저항 등을 표현하였고 신분 노출의 위협에 대한 보호라는 의미도 있었다. 이번 탄핵 광장에서 많이 등장한 무지개 깃발과 케이팝, 응원봉은 퀴어문화축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노하우가 현재의 광장으로 이어져왔으나 중

중 삭제되어왔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희주, 일석, 구구, 2025: 249).

이와 같이 다양한 광장에서 사용된 물질들은 단순한 소품을 넘어 시민성과 정치적 실천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민주화 운동, 페미니즘, 퀴어 광장의 역사성 속에서 바라볼 때 응원봉 시위에서 나타난 물질과 정동들이 단지 새롭거나 단일한 기원을 가졌다고보다는 “두꺼운 현재(thick now)”(Barad, 2023: 27)로서 과거의 억압, 저항이 현재에 겹쳐지고 기억이 물질적으로 다시 구성되는 장임을 이해할 수 있다. 선형적 시간성에 도전하는 바라드의 관점에서 응원봉 광장은 국가 폭력의 기억, 민주화의 경험, 억압의 잔재,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 등을 포함하며, 현재에만 속해있지 않다. 즉 이미 지나간 시간들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이 겹쳐지는 장소로서 광장을 사유할 필요가 있다.

## 5. 응원봉 시위의 관계적 물질성과 연대의 정동

### 1) 응원봉의 가시성과 다양성

2024~2025 탄핵집회에서 중요하게 등장한 인공물인 응원봉은 아이돌 팬덤의 물품으로만 여겨졌던 사물이 어떻게 정치적 장에 얹히며, 다른 상징과 정동의 결합체로 작동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과 소수자들은 언제나 민주주의의 시위 및 사회변화의 핵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지만, 역사적으로 그 기여가 종종 지워졌다. 응원봉은 팬덤과의 역사적 얹힘 속에 드러나기에 비가시화되었던 여성 참여자들을 조명하고, 촛불의 성찰성과 다소 다른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다양성, 즐거움, 축제성과 접속한다. LED 불빛은 높은 광량으로 멀리서도 식별되며, 동시에 다수의 응원봉이 흔들리면 시각적 파급효과가 크다.

빛은 응원봉 자체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빛의 입자와 파동, 배터리의

전기, 광장의 어둠, 가로등과 빌딩의 조명과 반사, 다른 응원봉이나 인공 물의 움직임, 인간참여자들의 망막세포와 시신경, 참여자 군중들의 몸의 움직임 등과 얹히면서 출현한다. 주로 겨울에 진행된 집회의 특성상 일몰 시간이 빨랐는데, 어둠이 내리면 많은 경우 두려움, 공포가 더 강해질 수 있지만, 어둠은 응원봉의 빛과 내부 작용하여 오히려 빛의 소중함을 더욱 중요하게 부각하였다. 실제로 응원봉이 등장한 시위에서는 종종 저녁 무렵부터 행진하면서 춤추고 축제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춤과 노래, 공연과 응원봉이 어우러진 흥의 정동은 위계적인 시위 문화를 바꾸며 참여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응원봉에 더해 집단적 구호와 케이팝 노래는 성대, 호흡, 물리적 진동으로 신체와 결합하고, 주변 사람과 스피커의 울림이 공동의 울림으로 퍼지면서 연대의 정동을 형성하였다(임태훈, 2025).

응원봉은 빛이라는 측면에서는 촛불과 유사하지만 촛불보다 안정적이다. 응원봉은 “그립감이 좋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높이 들기에 적합”한 것으로 언급된다(이유진, 2024). 바람이나 비와 같은 외부 환경에서도 꺼지지 않으며, 광량을 조절할 수 있고,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촛불’보다 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응원봉과 참여자들이 모인 광장은 다양한 말할 수 없는 목소리와 고민을 응축한 기억의 물질화이다. ‘탄핵’ 등 다양한 문구나 이미지를 더하여 꾸미는(‘봉꾸’) 등 다양한 응원봉을 만드는 문화가 있었고, 직접 새로 제작하기도 하며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는 게임매니아로 게임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한지와 전구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응원봉을 만든 경우도 있고(그림 4), 좋아하는 드라마의 굿즈를 사용하거나, 소속된 단체에서 자체 제작한 응원봉, 야구팬으로서 야구응원배트를 가지고 나간 경우 등 다양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집회 초기에 들고 나가던 응원봉이 작은 배터리를 너무 자주 갈아야 해서,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손전등과 좋아하는 배우가 그려진 종이컵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응원봉을 만들어 가져가기도 했다. 또한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친구의 것을 빌리기도 하고, 기존 행사에서 받은 야광 팔찌 등 빛을 내는 무엇이든 가져가거나, 자신의 주먹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응원봉은 내가 즐기는 어떤 것, 나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변주가 가능했고, 다양한 정체성을 담고 있었으며, 투쟁하는 주먹의 연장이기도 하며, 일상에서 표현하지 못한 억눌린 어떤 것을 드러내는 매개이기도 했다.

〈그림 3〉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응원봉

(연구참여자 제공)



〈그림 4〉

자체 제작 햇불 응원봉

(한지 안의 전구로 불을 밝힐 수 있음. 연구참여자 제공)

나는 이걸 좋아하면서 동시에 이런 신념을 드러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 (중략)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그 만족감? 그래도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낀다는 표식, 존재감을 드러내면

서 다닐 수 있다는 행복감 같은 것. 왜냐하면 저는 고향에서 존재감을, 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녔으니까 거의 뭐 어느 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다녔는데... 거기서는 OO 좋아하는 것도 얘기하기 힘들었어요. 덕질은 그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성소수자라던가 퀴어라던가 이런 정치적 성향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해받기 어려웠고요(참여자 A).

이와 같이 팬덤 활동은 소수자성이나 정치적 성향과 다른 층위로 종종 생각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이나 가치 지향을 숨겨야 했던 검열을 뚫고 나온 표현이라는 점에서 집회 현장에서 엿히게 된다. 이는 광장에서의 사물이 그 자체의 특성이 아닌 관계 속의 수행의 결과로 의미화됨을 보여준다. 원래 공연장에서 특정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도록 고안되었더라도, 응원봉은 거리에서 팬덤이라는 단일한 의미를 넘어 회절된다.

광장과 거리는 평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장소이기에 신체를 거기에 두는 것 자체로 '불법'을 감수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응원봉을 함께 들고 나온 이들과 연대감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이 해방감과 안도감이라는 정동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이는 선형적 특성이 아니라, 사물과 몸들이 함께 있음으로서 새롭게 의미화·물질화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광장에서 민주주의, 저항, 연대, 소수자성의 고민과 몸, 사물들이 내부 작용한다.<sup>4)</sup>

참여자들은 아끼던 응원봉 또는 소중한 무엇을 꺼내 광장으로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한 물질적 재활용을 넘어 감정적 얹힘, 기억의

4) 잘 알려진 과학기술학연구 중 전화기는 초기에 남성 중심의 비즈니스·업무 통신 도구로 인식되었으나, 가정에서의 여성 사용자들이 이를 사회적 네트워킹과 교류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전화의 사회적 의미가 재정의되었다. 벨 전화회사는 초기에 “사소한 수단”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며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수많은 여성 사용자들은 결국 전화회사로 하여금 기존의 접근 방식을 변경하도록 압박했으며, 그 결과 전화의 사회적 영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Martin, 1991). 이는 인공물의 초기 설계의도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새롭게 구성한 주요 사례이다.



물질화를 보여준다. “나의 최애”를 포함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광장에 섰다는 이들(희주, 일석, 구구, 2025)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좋은 세상’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드러내기도 하고, 응원봉을 통해 그간 말하지 못했던 나의 목소리나 고민들을 드러내고자 하기도 한다. 응원봉은 단지 빛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 소외감, 말하지 못한 의미들, 애착이 중첩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다. 즉 응원봉 시위는 각각의 다른 색과 모양보다 더 많은 다중적 위치들을 보여준다.

응원봉의 전용은 바라드(Barad, 2007)가 말한 관계적 얽힘을 상기시킨다. 사물은 본래 목적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재구성하며 정치적 효과를 생산한다. 응원봉은 공연장과 시위현장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을 가로지르며, 정체성의 분할선과 경계를 흐린다. 이 흐려짐은, 젠더, 연령, 성적체성, 계급 등에서 고정된 정치적 주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2030 아이돌 팬 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소비될 수 없는 다양한 참여자들<sup>5)</sup>은 다양한 의제와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응원봉과 정치라는 기존에 겹치지 않는 정체성이라 보였던 조합을 통해 이 다중적 정체성들을 드러내려 하지만 단순화된 미디어의 프레임들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기도 했다. 기존의 시위에서 ‘유모차 부대’로 불린 여성참여자가 모성적 정체성으로, ‘촛불소녀’가 교복을 입은 학생의 정체성으로 고정되어 재현되었던 것처럼, 응원봉을 든 여성들이 아이돌 팬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으로만 재현될 수 있었다. 실제로 초기에는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놀러나간다’라는 식의 폼하, K-팝과 응원봉이 ‘탈정치화’한다는 우려와 같은 문화/정치 이분법, 팬덤 여성의 고정 이미지가 작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은 이러한 이분법과 고정관념과 다르다. 이에 대해 한 참여자는 “아이돌 응원봉 들고 왜 비장

5)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응원봉들이 시위 현장 매대에도 등장했고, 다양한 연령과 젠더의 참여자들도 이를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하면 안 되나요?”라고 적절하게 되물으며, “시위 동기가 사소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의 모든 여성이 사실 대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가고 있다”<sup>6)</sup>고 적었다. 이는 사소함과 비장함에 대한 쉬운 이분법적 가정과 젠더화된 편견에 도전한다.

과거의 시위가 때로는 ‘활동가’ 중심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면, 응원봉의 빛과 케이팝의 개사를 통한 메시지가 만드는 축제적인 성격은 집회참여경험이 없는 이들과 청소년, 소수자 등 그간 주변화되었던 주체들을 끌어들이는 접촉면을 제공했다. 참여자 F는 기존시위에서 느꼈던 “군사주의적 문화가 없어져서 좋았다”고 언급하며, 시위문화의 변화에 대해 기대를 표현했다. “분노를 흥에 녹이면 오히려 더 오래 화낼 힘이 생긴다”(오세연, 2025: 109)는 한 참여자의 이야기는 저항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축제성과 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응원봉은 감정의 장벽을 낮추고, 정동적 접근성을 높이며, ‘참여하고 싶은 광장’을 구성하는 행위자가 된다.

이와 함께 팬덤이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역할들을 해온 점도 조명되었다(김주미, 2025; 조소연 외, 2025; 김세원, 2024 등).<sup>7)</sup> 팬들은 소속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적극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던 경험부터 민주화시위, 성소수자, 환경,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제기 등 더 넓은 시민적 행동으로 연결되어왔다. 팬덤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플랫폼은 뉴스보다 빠르게 집회 소식이나 긴급한 사회 이슈를 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다.

6) 차차@k1kuv, 의 X(구 트위터)(작성일: 2024. 12. 8.) <https://share.google/axNGEyZ6DliYHW4eH> (검색일: 2025. 2. 28).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즐거움이 운동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7) SNS를 활용한 팬덤과 시위의 교류는 2008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국면에서도 사용되었으나,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며 응원봉이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한 2024년의 집회는 이를 보다 전면화하고 있다.

케이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사회문제 이슈에 다가가기도 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통로였어요. 보통 케이팝이나 다른 콘텐츠의 팬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트위터엔 지에 넘어가는데, 트위터에서는 딱 케이팝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 이슈들도 많이 넘어 들어오게 되니까. 오히려 뉴스에서 보다 트위터에서 ‘오늘 이런 집회가 있고, 이런 이슈들이 지금 문제이다’ 하는 걸 좀 빨리 알 수 있었어요. 덕질을 하는 플랫폼에서 바로 또 사회 문제 이슈들도 바로바로 전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케이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페미니즘 관련해서 어떤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 어디까지 ‘여성’이고, 아이돌의 남성성, 여성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문제들도 케이팝에서 아이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제가 팬으로서 보게 되면서 이런 문제는 난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D).

회절적 시각으로 읽는다면, 겉보기에는 쉽게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사물과 담론과 사람들, 여기에서는 인터넷, 정치적 논쟁, 응원봉, 팬덤 활동 등이 유발하는 다양한 얽힘들이 드러나며, 응원봉이 광장에서 빛나고 흔들리며 음악, 구호 속에 맞추어지면서 참여자들의 몸들과 함께 저항적 행위가 되고, 여러 사물과 관계 속에서 광장은 이들을 아우른다.

하지만 탄핵광장에서 응원봉 사용과 상징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도 없지 않았다. 한 탄핵 촉구 집회 홍보물에서 응원봉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에서 이를 업로드한 일에 대해 퀴어 커뮤니티가 응원봉을 전유했다며 팬덤 간 논란이 가열되었던 일도 있었다(희주, 일석, 구구, 2025). 하지만 또한 광장에는 많은 퀴어 커뮤니티가 참여했고, 응원봉을 하나의 의미만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한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우리 아이들한테 퀴어 묻히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다가, 또 본인 이 퀴어면서 아이돌 팬이면서 광장에 나오는 팬들이, 그냥 내가 들고 나가는데 이게 왜 묻히는 거냐, 야 너네 팬덤 안에 퀴어가 없을 것 같냐, 퀴어 여기 있다, 내가 퀴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참여자 C).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소수자성을 집회 참여의 동기 중 하나로 중요하게 이야기하였다. 장애당사자로서, 퀴어로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과로하는 노동자로서, 젠더 갈라치기 정치 혹은 여성 혐오 정치에 분노한 여성으로서, 다른 소수자의 형제나 친구로서 생각했던 고민들과 그간의 답답함으로 광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장에서는 다양한 소수자가 자신의 '취약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발언하였고 이를 경청하는 문화가 있었다(박지하, 2026). 응원봉의 빛들은 하나로 단순화할 수 없는 다양한 고민들을 담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광장에 휘말리면서 점점 더 자신의 억압된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이를 열망하게 된다.

저는 탄핵 광장에서 제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었던 게 좋은 거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었으면, 그런 자신의 말을, 발언을 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장소라던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필요해요(참여자 A).

참여자들은 소수자들의 발언에 경청하고 호응해 주었던 경험을 인상 깊게 말하며, 안전한 공간의 실험으로 광장을 사유하였다. 이는 인간참여자들만이 아니라 응원봉 등의 사물들과 함께 만든 정동 속에 형성되었다. 참여자 C는 응원봉 시위가 새로움과 스펙터클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응원봉의 다양성이 “저렇게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해 그걸 보여줬다에 그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단지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응원봉의 다양성 안에는 그간 말하지 못했던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충분히 언어화되지 않은 변화의 열망들도 담겨있음을 말해준다. 탄핵 이후 지금까지도 ‘빛의 혁명’이라는 상찬의 말들 속에 어떤 의제들이 선별되고 주변화되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응원봉의 정동은 빛과 케이팝음악을 넘

어 오래된 차별과 배제에 대한 깊은 상처, 분노, 변화의 열망, 그리고 이를 말하고 경청하는 연대의 정동이 얹힌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정청의 공간이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깃발의 이동성과 수고로움

다양한 깃발들은 응원봉이 다 말하지 못한 의제들을 문구나 그림으로 드러내며, 응원봉, 음악, 시위현장의 빛과 바람과 함께 어우러졌다. 기존의 운동조직들의 깃발도 있었지만 이번 광장에는 특정 단체가 아닌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했는데, “주7일 배송이 필요 없는 소비자 모임” “(내향인)” “집회 오느라 집이 난장판 된 1인 가구 모임”, “전국과체중고양이연합” 등 다양한 존재와 의제를 포함한 메시지들이 풍자적으로 표출되었다.<sup>8)</sup> 깃발의 문구들은 현실의 반영을 넘어 회절적인 공감과 의미를 확산했다. 신속함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주변화된 가치들을 떠올리게도 하고, 노동, 돌봄, 소수자들, 비인간 동물 등의 소외된 이슈와 주체를 가시화하고 공감을 부르며, 시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제가 탄핵만은 아님을 시사하였다.

또한 체격이 큰 몸뿐 아니라 작은 체구의 여성들을 포함한 다양한 몸들이 때로는 자신의 몸보다 큰 깃발을 흔드는 모습은 물질-몸-환경의 내부작용을 잘 보여주었다. 응원봉의 휴대성과 달리 깃발은 번거로운 수고로움을 동반한다.

---

8) 깃발들의 아카이빙 사이트는 <https://flaaags.com/>를 참고할 수 있음.

〈그림 5〉 깃발과 응원봉 (필자 촬영)



저도 깃발을 제작해서 휘두르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디자인, 발주, 배송, 깃대 및 기타 제품 주문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매 시위마다 그것을 챙겨 들고와 휘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보관하기에는 가족에게 들킬 위험이 있고, 들고다니기에는 번거롭고, 매번 휘두르기에는 체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깃발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듭니다. 친구가 깃발을 챙기는 모습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깃발을 맡아주거나, 친구가 주문한 깃발 스티커를 배달해주거나, 잠시 깃발을 흔든 경험이 있는데, 깃발의 물질성과 정동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깃발이 주는 정동은 이러한 물질성과 수고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A).

깃발은 주문제작을 해야 하고, 매번 무거운 짐으로 이동의 제한을 낳는다. 따라서 높은 가시성에도 불구하고 깃발 흔들기라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깃발의 정동은 바람, 기수의 몸과의 내부작용을 통해만 들어진다. 때로는 바람이 협조적이지 않기도 하고, 깃발들 사이에 흔들리는 박자가 서로 맞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잘 못 하면 부딪힐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깃발의 가시성이 높아 서로 흐름을 잘 맞추는 일이 집회의 질서가

잡히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바람이 많이 불어 깃발들이 휘날릴 때 그리고 배경음악이 잘 어우러질 때 정동이 고조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응원봉보다 휴대와 보관이 어렵고, 제작의 부담도 있는 깃발은 기수 혼자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물질, 과정들이 응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깃발이 혼자 존재할 때보다 다른 깃발과 사람들 사이의 협력에서, 집회공간과 바람, 응원봉, 음악 등과의 얽힘 속에서 연대의 정동을 만들 수 있다.

한 기수는 “어느 순간, 깃발이 곧 ‘나’이고 내가 ‘깃발’이라고 느꼈다”(‘내향인’ 기수 인터뷰, 이슬기, 2025:89)고 말한다. 탄핵집회 이후에도 다양한 집회현장에 나가고 있는 연구참여자 B는 최근 깃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개인 깃발이 점점 더 커지면서 단체 깃발들은 그보다 더 커야한다며 경쟁적으로 깃발의 크기가 커져 최근 3미터짜리 깃발도 등장하고도 있다고 전했다. 깃발이 커지면서 가시성은 높아지지만, 그에 따르면 깃발을 드는 사람은 깃발을 뺏기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잘 뛰어어야하고, 체력과 몸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광장에서 깃발을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과 깃발이 낯선 물건에서 점점 더 익숙하고 내 몸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그의 이야기는, 깃발, 조직정체성, 자기정체성, 몸이 광장에서 얽힘을 보여준다. 깃발이 몸과 물리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깃발에 담은 자신의 정체성과 수고로움이 얹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현장에서 느슨해진다. 이와 같이 현장의 정동은 언어와 담론만이 아니라 물질적 장치의 행위성과의 얽힘에서 형성된다.

또한 깃발은 다양한 목소리들의 가시화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함께함과 연결의 감각을 만든다.

깃발들과,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 이 단체들도 이 의제에 함께하고 있구나. \*대 ○○위원회도 항상 여기에 오네 하면서 내가 어느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였던 거 같아요(참여자 D).

전국 응원봉 연대의 계정주이자 기수는 '전국 깃발 여행'을 제안해 대전 집회에 다녀오고 광장 스티커를 발송하는 프로젝트도 기획했다. 그는 “유명한 깃발이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상징성”(이슬기, 2025:116-117)을 위해 깃발 여행의 중요성이 강조하였다. 서울 중심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의 한계, 소외된 감정을 물질의 전달을 통해 연대로 가시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서울 지역 집회의 경험은 더 많이 조명될 필요가 있는데, 한 참여자는 W시 집회에서 아스팔트 도로 한 쪽의 일부를 빌려서 장소가 협소했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경적 등도 위협적이었다고 말했다. Y시 집회에서는 집회 초기에 시위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아 불안했는데, 기존에 들어서 알던 익숙한 노조 깃발을 보고 다소나마 안심했던 사례도 있었다.

“OO노조”이런 깃발과 연단이 높고 스크린이 크고, 거리에 시위 인파가 많은 걸 보고 안전하다고 느꼈고(중략). 내란의 밤 이후로는 거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잠도 거의 못자고 매일 뉴스를 보던 입장이라서 내 일상이 심하게 파괴되었는데.....그걸 주변 지인과 공유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더욱더 심리적 고립을 느껴서 괴로웠는데, 집회현장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참여자 F).

일상에서 고립감을 느꼈던 참여자는 집회에서 펴럭이는 깃발들, 높은 연단, 많은 사람들을 보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함께 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깃발의 가시성과 지역을 넘는 연대는 시위참여자자 소수로 느낀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연대의 정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광장에서 깃발과 함께 시위 군중으로 접촉하며 마주치는 신체들, 사물들과 내부 작용하면서 감각되는 정동으로, 고립되어있을 때의 위협감, 절망감이 안도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깃발은 담론적 기호로서뿐 아니라, 제작과 운반에 드는 여러 사람들의 노동과 물성, 기수와 그를 돕는 주변인들의 몸과 노동, 바람과



다른 깃발/기수, 주변 사람들과 거리와 혼드는 박자, 구호와 음악, 응원봉과 이를 혼드는 사람들, 어둠과 가로등, 도심의 거리와 공간들과의 관계 속에 얹히면서 함께함의 정동을 형성한다.

### 3) 물질의 돌봄성과 몸의 취약성

인간의 몸은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먹고 배설해야 하며, 추위와 더위를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한겨울 추위, 혹한, 바람, 폭설, 일몰 후에도 밤샘연속으로 진행된 탄핵집회에서는 핫팩, 간식, 은박담요, 쓰레기 봉투 등 일상적이고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물질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면서 공동체적 정동이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광장에서 혼잣말로 배고프다고 한마디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누군가 간식을 나누어주었다거나, 많은 택배와 배달로 집회 근처에 먹을거리가 도착하여 이를 분류하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전달한 경험, 자신도 비상약과 간식, 핫팩 등을 여분으로 준비하여 나누는 경험 등을 공유했다.

길거리에서 핫팩이라던가 은박담요나 간식 나눠주는 사람들은 진짜 흔하게 있었고 저도 항상 여분을 들고 다녔어요. 은박담요 한 3개 들고 다니고 간식 한 파우치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상비약 한 파우치 들고 다니고.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누가 아플까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자 이거 먹어봐 이리고. 또 구호를 외치다 보니 목청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목에 좋은 것도 들고 다니고요(참여자 A).

시위 한 번 나가면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접이식 수레를 끌고 다녀요. (.....) 한강진 갈 때는 제가 스케치북에다 “장갑, 모자, 방석, 손난로, 발난로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서 올려놔있거든요. (중략) 장갑이나 모자같은 건 다 쓰시고 돌려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음에 또 쓰고 그런 식이에요(최나현 외, 2025: 102).

이와 같이 이번 시위에서는 특정 운동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물건의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를 보고 80년 광주를 떠올리는 사람

들도 많았다. 광주에서는 주먹밥 등 먹을 것을 만들어 시위대와 나누고, 부족한 혈액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하기도 했다(강주비, 2025). 이번 집회에서도 자신이 싸온 간식들을 처음 본 사람들과 나누거나 나눔 받은 경험들이나 주변 상점에 카드 선결제로 참여시민들이 무료로 먹거리나 음료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음식 지원이 아니라 관계와 연결을 매개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광장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도 나눔이 가능해진 낯선 타인과의 상호 돌봄, 물질의 공유로 가능한 공동체적 정동을 만들었다.

난방버스도 돌봄 인프라로 작동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멀리서 보낸 난방버스는 남태령에서 처음 시작된 연대방식으로, 저체온증 위험자들을 쉬게 하는 의료 공간, 핸드폰 충전 등이 가능하게 했다(김후주, 2025). 또한 인근에 있던 한 수도회는 밤샘시위에 연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을 개방하였다. 영유아를 데리고 집회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이 기부한 키즈버스는 영유아의 기저귀를 갈거나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자를 돌보는 이들도 집회에 참석하고 좀 더 머물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다수의 장소에서 여러 시민들이 함께 인파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변 화장실 지도를 만들어 SNS에 공유하였고 누구나 참여하여 화장실의 구체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정인선, 2024).

한 참여자는 무겁고 복잡한 고민들이 가득했지만, 집회 현장의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청소를 할 때만은 순수하게 기쁨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때한강진의 밤샘 시위 경험 중에서 저한테 뜻깊었던 거는 화장실을 개방해줬던 근처 건물들에 봉사하는 다른 분들이랑 같이 화장실을 청소했던 거거든요. 아니면 그 집회 현장 곳곳에서도 쓰레기를 중간 중간에 처리를 하고 (중략) 집회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에 관심이 있었긴 했는데, 특히 그렇게 밤새고 있고 근처에 화장실도 계속해서 쓰고 그런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을 치우면서 아 진짜 내가 약간 돌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중략) 화장실을 치우면서 이 집회를 구성하는

그런 몸의 존재를 느꼈어요. (중략) 사람들이랑 같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휴지를 채우고 그 순간만은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고 다른 잡생각이 들어올 게 없었거든요. 순수하게 기뻐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생리대가 이만큼 쌓여있어 가지고 사이즈도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못 갖고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생리가 갑자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이거를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화장실에도 들어갔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긴 정말 집회의 공간이구나 [생각했어요] (참여자 A).

화장실에 쌓인 생리대와 쌓이고 치워지는 쓰레기는 기존 시위에서 비가시화되기 쉬웠던 몸의 존재와 돌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집회에서는 무대에서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주로 빛나 보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민주화운동 시위에서 다친 시위대를 돌본 이들, 주먹밥을 지은 이들처럼 비가시화되었지만 취약한 몸들을 돌보는 사람들과 쓰레기를 치우고 생존과 버티기 위한 물질들을 준비하는 노동은 매우 핵심적이다. 이는 단지 여성과 돌봄을 연관시키는 기존의 여성성을 재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행위와 가치야말로 모두에게 필요한 시민성의 기본임을 보여준다. 즉 연대란 동일한 주장이나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함께 버티게 하는 서로 돕는 실천이다.

또한 광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키세스단’은 한 강진에서 밤샘 시위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시위대를 감싼 은박담요와 흰 눈과의 얽힘이다. 은박담요는 원래 1967년 NASA에서 개발한 우주담요(Space Blanket)로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도록 고안된 인공물이었는데, 이후 스포츠, 재난 구조, 캠핑, 군사, 의료 분야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원리로 최대 90% 이상의 체온을 반사하여 유지하고 반짝임은 구조신호로 활용되도록 고안되었다.<sup>9)</sup> 이 물

9) 물리학자 김상욱은 이러한 맥락에서 키세스단을 ‘우주전사’로 불렀다(김상욱, 2025).

질이 시위 현장에서 폭설과 혹한을 견딜 수 있는 물질로 전용되면서 눈, 추위, 체온, 과학, 정치의 얽힘을 드러낸다. 같은 기술도 정치적 맥락의 재배치로 다른 의미와 정동을 형성한다. 인간의 의도만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씨락눈과 기온이 기술과 취약한 몸들과 함께 새로운 복합적 얽힘을 만들어낸다. 추운 겨울의 날씨와 아스팔트, 하얀 눈, 은박담요는 추위 속에서 역설적 따뜻함의 정동을 전달하였고 민주주의의 간절함을 느끼게 하여 많은 언론에서 조명하였다. 이와 같이 은박담요와 같은 물질들은 원래의 설계의도를 벗어나 다른 관계와 얽히면서 창조적인 다른 얽힘을 만들었다.

집회가 끝난 후 쓰레기들이 많이 생산되거나 정리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로 쓰레기봉투를 나눔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시위대도 있었고, 사용한 은박담요를 다음에 오는 이들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떠날 때 도로 한쪽 바리케이드에 묶어두고 가기도 하였다. 응원봉 역시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사용하던 것을 빌리거나, 앞서 언급한대로 꼭 응원봉이 아니라도 집에 있는 빛나는 물건이나 소중한 물건을 갖고 나오면 된다고 강조하는 경우 등 쓰레기의 생산을 우려하고 최대한 줄이려는 목소리들이 있었다(SBS 뉴스, 2024).

냉난방이 잘 되는 실내나 비교적 쉽게 먹거리와 전기를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몸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곤 한다. 하지만 차가운 아스팔트와 바람에 노출된 광장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표면화된다. 현장을 지킨 옆 사람의 체온과 공유된 물질들은 저항의 지속성과 공동체적 정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고립된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상과 달리, 취약성과 상호의존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는 '관계적 존재론'은 주변화된 위치에 처했을 때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약자의 인식론을 옹호한다.

---

1. 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hare/p/17bLEEqS6/> (최종접속일: 2025. 10. 31.)

#### 4)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의 연결성과 ‘안전’

스마트폰은 응원봉이 없을 때 손전등 기능으로 불을 밝히고 피켓 대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집회 현장의 이미지, 영상 등은 디지털 기술과 연결되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 이는 연대와 안전이라는 이슈와 깊이 연관되었다. 현장의 즐겁고 아름다운 빛 뿐 아니라 긴급하기도 한 모습들이 담긴 사진과 영상의 공유는 달려나가 ‘참여하고 싶은 광장’을 만들어갔고(신지현, 2025), 먼 곳으로부터의 연대도 가능하게 했다. 해외 체류자나, 공항장에 등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광장에 나오기 힘든 경우 앞서 언급한 난방버스를 보내거나 먹거리를 선결제하여 참여자들을 돕고 온라인 상황 공유로 돕는 등의 활동으로 연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과의 얽힘은 현장에 있지 못한 이들도 감정적 연결과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적 행위자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자체가 안전함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어떤 관계 속에 얽히는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낳는다.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위해 실시간 중계를 할 때, 카메라는 방패이자 무기였지만, 다른 관계 속에서 반대로 신분 노출이나 채증의 우려도 낳았다. 한 참여자는 실시간 녹화, 카메라 촬영이 너무 많은 나머지, 현장에는 ‘근접 촬영 금지’ 배지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실시간성이 높은 SNS가 트위터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은 연대가 트위터를 통해서 일어났었잖아요. (중략)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이거는 강남역 시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지만, 2차 남태령 때 아침에 끝나고 가는데, 역 가는 길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양 옆에서 정말 온갖 별별 욕을 다 해가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서, 가는 사람들을 찍고 그러고 시비 걸고 하고 있더라고요(참여자 B).

이와 같이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술이 '안전성'만 보장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욕설과 조롱을 하며 사진을 찍는 이들이 많았던 동덕여대 집회, 혜화역 시위 등 여성들이 대부분인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이와 이어진다.

서울의 큰 규모의 집회와 달리, 소규모인 지역 집회일수록 신분 노출 위험은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다. 포항의 한 집회에서는 이삼십대 여성들이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발언했다(정보라, 2025: 67). 사회적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 사회적 조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의제 외에 참여자들이 사회변화를 위해 말하고자 했던 다른 의제들이 쉽게 말해지기 어려웠던 현실도 시사한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집회 초반에는 여성혐오적, 장애차별적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점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sup>10)</sup>이 온라인과 매 집회에서 공유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광장에서 나타났던 성별, 성적지향, 장애, 연령, 국적 등에 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박이현, 2025: 354).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경찰이 없는 공간에서도 스스로 질서유지 자원봉사를 하였고, 사람이 많거나 위험해보일 때는 함께 '천천히' 구호를 외치며 자발적으로 질서 유지의 구성원이 되었다.

따라서 여성과 소수자 등이 대규모 광장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맥락에 대해 '안전해서 나올 수 있었다'는 설명은 한계가 있다. 여성과 소수자의 적극적 참여는 '안전해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 안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광장에서는 계엄을 시도한 세력이 '무슨 짓을 할지 모

10) 「윤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안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2024. 12. 18.)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ivilnet.net/act/?bmode=view&idx=134767724>.

른다는 공포와 보복성 체포, 군사적 행위의 우려, 극우 단체와 그에 동조하는 이들의 반대시위, 혐오적 폭언과 조롱, 폭력 시위 등 복잡한 위험 요소가 상존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참여자, 물질의 얽힘을 통한 상호적 돌봄과 연대를 통해 ‘안전함’을 창출해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위협이 되었던 디지털 기술이 역설적으로 이러한 안전함의 창출에 기여하기도 했고, 때로는 위협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물리적 몸이 다른 얽힘 속에서는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함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했다.

## 6. 나가며

살펴본 바와 같이 광장의 물질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정동적 정치의 핵심적 행위자로서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다른 감각들을 만들어냈다. 응원봉은 빛과 소수자성과 얽혀 그간 비가시화되어왔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응원봉의 다양한 빛깔과 흔들림, 참여자들의 구호, 노래와 스피커의 울림, 몸과 바람과 연결된 깃발들은 몸과 연결되며 함께 하고 있다는 감각을 만들었다. 또한 한겨울 추위와 바람, 때로는 눈이 내리는 현장에서의 시위는 몸의 취약성을 돌보는 물질들을 통해 돌봄과 연대의 시민성을 형성했다.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폰은 때로는 위협적인 도구였으나, 폭력을 방어하며 참여하고 싶은 광장을 알리고 먼 곳으로부터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광장은 사람과 사물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관계적 행위들의 장으로 물질적-담론적 얽힘의 힘을 드러내며, 시간-공간-물질이 얽혀 생성되는 세계, 물질, 기억 자체이다.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고 부딪치는 신체들과 물질들, 민주화운동과 페미니즘/퀴어 광장의 기억, 폭력, 희망 등이 관계 속에서 내부 작용하여 물질화된다.

물질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일이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환원론이나 기술결정론으로 오해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물질성은 그 본래 특성이 아니라 여러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동적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유동적 실재이다. 광장의 정동은 인간의 의도만이 아니라 물질-담론적 얽힘과 함께 발생한다. 참여자들과 물질들은 집회 현장 이전에 이미 완성된 주체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 되어갔다. 정동적 물질의 정치가 만들어낸 새로운 광장 시민성은 고립된 인간 개체가 아닌, 얽히고 연결된 존재들 사이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연대의 정동을 구성하였다.

기존 신유물론의 논의가 주로 이론적 논의에 집중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회운동에서의 함의를 밝히며, 이를 통해 물질을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관계성에 주목한 의의가 있다. 신유물론으로 볼 때, 겉보기엔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으로 보이는 물질들과 몸들이 얽히면서 생산적인 영향을 주는 연결성과 가능성들이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주체를 고립된 인간 개체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 다양한 요소들이 내부 작용하는 관계적 존재론에 기반한 연대의 시민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연대의 시민성'은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관계적 상호의존의 존재론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시민성이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불가능한 즐거움, 긴장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함', 서로에게 빛을 지며 돌보고 연결되는 정동의 형성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언어와 제도 뿐 아니라 몸, 정동, 사물, 환경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적 효과이다.

각자도생 담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연대와 연결의 감각과 실천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고립된 개인의 이익을 기계적으로 재단하고 강조하는 생존경쟁 담론에 도전하고 관계적 존재론과 연대의 시민성을 확산하는 일이 오늘날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관계적 존재론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볼 때 어느 누구도 고립되어 따로 떨어져 살 수 없다는 연결망 속 상호의존의 관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탄핵집회에서 드러난 다양한 목소리들은 과연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진 현재 가시화되고 있을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탄핵은 이루어졌지만 ‘사회대개혁’으로 주장되었던 의제들이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감을 힘주어 이야기했다. 광장에서 드러난 다양한 목소리들은 단지 거대 정당의 정권교체 이슈로만 흡수되지 않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탄핵집회 이후에도 장애인 이동권, 차별금지법, 해고노동자, 기후위기, 팔레스타인 연대 등 중요하지만 소외된 운동에 계속 연대하고 있었고, 광장 이후 변화하지 않은 현재 상황의 답답함을 많이 이야기했다.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광장의 모든 물질들과 참여자들의 관계들을 고찰하지는 못한 한계도 분명하다. 앞으로 더 많은 인간, 비인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면서 연대의 시민성을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문민서 · 송소연 · 조용환. 2025. 『내란의 밤, 시민의 기록』. 서울: 진실의힘.
- 강유정 외. 2025. 『다시 만날 세계에서: 내란 사태에 맞서고 사유하는 광장의 여성들』. 서울: 안온북스.
- 권명아. 2016. “비교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정치적 의제: ‘여자 떼’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자들의 힘.” 『여성문학연구』 39: 7-38.
- 김영옥. 2009.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아시아여성연구』 48(2): 7-34.
- 김은성. 2022. 『감각과 사물: 한국 사회를 읽는 새로운 코드』. 서울: 갈무리.
- 김주미. 2025. “촛불집회에 나타난 K-pop 아이돌 팬덤의 증여행위: 여초 팬덤 커뮤니티를 사례로.” 『민주주의와 인권』 25(2): 117-154.
- 김환석. 2018.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유물론.” 『지식의 지평』 25: 81-89.
- 김후주. 2025. “남태령: 꺼지지 않을 연대의 불꽃.” 강유정 외(편). 『다시 만날 세계에서』. 서울: 안온북스.
- 마수미, 브라이언. 2018. 『정동정치』. 조성훈(역). 서울: 갈무리.
- 박상은. 2025. “도랑, 강, 바다 그리고 비—12·3 내란의 ‘작은 광장’들과 몸짓, 말, 소리, 이미지 실천.” 『역사비평』 152: 400-440.
- 박이현. 2025. “평등하고 역동적인 광장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매개자로서 활동가.” 정원옥 외(편). 『광장의 문화정치』. 서울: 동연.
- 박지하. 2026. 『윤석열 퇴진 광장 참여자 경험 연구: ‘취약한’ 정체성들을 드러낸 발언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보경. 2023.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 서울: 반비.
- 소영현. 2022. 『광장과 젠더』. 서울: 갈무리.
-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혐오의 시대를 뚫고 나온 목소리들』. 서울: 나무연필.
- 신지현. 2025. “우리의 작은 빛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 서울: 톨링다이스.
- 신진옥 · 이재정 · 양승훈 · 이승운. 2025.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파주: 문학동네.
- 아메드, 사라. 2023. 『감정의 문화정치』. 파주: 오월의봄.
- 오세연. 2025. “우리가 이긴다.” 강유정 외(편). 『다시 만날 세계에서』. 서울: 안온북스.
- 유현미 · 김이선 · 김정환 · 장진범 · 박상은. 2025. “광장에서 만난 세계—윤석열 퇴진 집회 시민발언문 분석.” 『경제와 사회』 146: 153-193.

- 이슬기. 2025. 『광장을 바꾼 청년 여성들의 정치력: 우리는 우리가 놀랍지 않다』. 파주: 틈새의시간.
- 임태훈. 2025. “12·3 이후의 청각 정치학-광장의 소리와 이론의 탐색” 『대중서사연구』 31(2): 463-496.
- 장은애. 2023. “다중의 광장을 위한 모색.” 『여성문학연구』 59: 242-254.
- 정보라. 2025. “연대하는 우리들은 강력하다.” 강유정 외(편). 『다시 만날 세계에서』. 서울: 안온북스.
- 정원옥 외. 2025. 『광장의 문화정치』. 서울: 동연.
- 조소연·정성조·이나영. 2025. “팬덤과 광장의 조우.” 『미디어, 젠더 & 문화』 40(3): 115-155.
- 최나현·양소영·김세희. 2025. 『백날 지워봐라, 우리가 사라지나: 광장에 선 딸들의 이야기』. 파주: 오월의봄.
- 최지향·전현지·백지연. 2025. “2030 여성은 왜 광장으로 나갔으며, 광장은 이들을 어떻게 바꾸었나?: 대통령탄핵촉구집회 여성 참가자의 참여 동기, 사회자본 및 연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33(3): 5-54.
- 한우리·허철. 2010. “보여주기의 문화정치학: 촛불집회, 퍼포먼스, 수행적 정체성” 『평화연구』 18(2): 41-83.
- 홍보람·한우리. 2025. “말벌들, 기수들, 그리고 고공의 노동자들: 물질성/신체성의 퀴어정치학” 『여/성 이론』 52: 18-39.
- 희주·일석·구구. 2025. 『케이팝 응원봉 걸스-광장에서 만난 팬걸에게 묻다』. 파주: 클레이하우스.

- Ahmed, Sara. 2004.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ad, Karen.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arad, Karen. 2012. “On Touching—The Inhuman That Therefore I Am,”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23(3): 206 - 223.
- Barad, Karen. 2023. “Nuclear Hauntings & Memory Fields, For the Time-Being(s).” *Apocalyptic* 2(1): 24 - 39.
- Bennett, Jane.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oleman, Rebecca. 2019. “Glitter, Visibility and a Politics of Sparkles: Looking at the Camp in Affective Culture,” *Body & Society* 25(4): 79 - 104.
- Esmoris, M. F. B. and Ohanian, M. J. 2022. “Material Protests: A Contribution from the

- Cultural Biography of Things.” *Ethnologia Polona* 43: 179 - 182.
- Habermas, Jürgen.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IT Press.
- Kwon, Insook. 2005. “How Identities and Movement Cultures Became Deeply Saturated with Militarism: Lessons from the Pro-Democracy Movement of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1(2): 7-40.
- Latour, Bruno.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lcom, N. L., Martindale, A. K., Paulins, V. A. et al. 2020. “Unifying Yet Dividing: Voices of Pussyhat Maker - Wearers Who Participated in the 2017 Women’s Marches.” *Fashion and Textiles* 7: 32.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 Michèle. 1991. *Hello, Central? Gender, Technology, and Culture in the Formation of Telephone Systems*.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ogenhofer, J. M. and da Silva, F. C. 2023. “Politics with Objects? On the Affective Materiality of Contentious Politics.” *Acta Sociologica* 67(1): 6 - 19.
- 강주비. 2025. “금남로주먹밥이 카드 선결제로…되살아난 오월 공동체.” 〈무등일보〉. 2025. 4. 30. <https://www.mdilbo.com/detail/4EoQ4t/742159> [검색일: 2026. 4. 19.]
- 김세원. 2024. “케이팝의 정치화?… 팬덤은 항상 정치적 주체였다.” 〈여성신문〉. 2024. 12. 3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452> [검색일: 2026. 1. 30.]
- 이유진. 2024. “소중한 것을 지키려 ‘가장 소중한 빛’ 들었다.” 〈경향신문〉. 2024. 12. 1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40600001#ENT> [검색일: 2026. 1. 30.]
- 정인선. 2024. “여행비로 ‘키즈버스’, 화장실 지도 개발…‘탄핵’ 시민들의 연대.” 〈한겨레〉. 2024. 12. 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555.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555.html) [검색일: 2026. 1. 30.]
- SBS 뉴스. 2024. “집회 뒤 쓰레기 하나 없어…질서 있는 퇴장 빛났다.” 〈SBS뉴스〉. 2024. 12. 1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328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13284) [검색일: 2026. 1. 30.]
- 하현중. 2018. “1987년 그곳에 여성들이 있었다.” 〈SBS뉴스〉. 2018. 1. 2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2519](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2519) [검색일: 2025. 10. 31.]

Abstract

## Relational Materiality in the Public Square and Solidarity-Based Citizenship – The Materials of the “Light Stick Protests”

Jeong, Yeonbo  
(Sungkonghoe University)

The materials present at protest sites function not merely as tools or symbols but as significant actors that shape social meanings of the movement while reinforcing the affect of solidarity. The impeachment rallies held from late 2024 to early 2025 have been referred to as “light stick protests” or a “revolution of light.” In this study, objects such as light sticks – highly visible in these rallies – are understood not as passive objects but as active participants. The public square is not simply a physical site of gathering, but a world constituted through the entanglement of time, space, and materiality – it is itself matter and memory. Rather than people assembling in a pre-existing empty space, the square is materialized through relational dynamics: the swaying of light sticks, the encounter of light and darkness, flags fluttering in the wind, the cold asphalt ground, the warmth of hand warmers and thermal blankets, the connectivity of smartphones and digital technologies, the vibrations of chants and music, bodies meeting and colliding, and the memories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feminist/queer protests, along with violence and hope. Participants and materials in the square are not pre-existing transcendental subjects or entities with essential properties; rather, they become resistant protesters and resistant subjects through intra-actions among diverse human and nonhuman relations within the protest site. Grounded in a relational ontology that moves beyond viewing democratic subjects as isolated individuals, this study emphasizes “relational materiality” and “solidarity-based citizenship.” In doing so, it attends to the

formation of affect — such as joys impossible alone, a collectively produced sense of safety amid tension, and relational bonds of care, indebtedness, and connection — thereby understanding democracy as a complex process shaped by the participation and influence of multiple beings.

**Key words:** Lightstick Protest, Relational Materiality, Solidarity-Based Citizenship, Affect, Public Square

- 투 고 일 : 2026년 3월 18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6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1일

## 성차별적 호칭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 1990~2025년 전국 일간지의 “여류(女流)” 표현  
사례 분석

배홍철\*

### | 목차 |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시사점 |
|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             |

### | 초록 |

본 연구는 1990-2025년 전국 종합 일간지 9종의 “여류(女流)” 관련 기사 9,089건을 분석하여, 여성 전문가를 지칭하는 성차별적 용어가 살아남게 된 배경을 밝힌다. 한국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단어 빈도와 TF-IDF 지표를 집계하고, 구조적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시기·매체별 주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여류”는 정치·외교·문학·미술 등 다수 직군에서는 존재감이 줄어들었지만, 바둑과 일부 공연예술 영역에서는 결합이 강화되거나 단기간 급증하는 양상도 보였다. 또한 역사적 인물을 예스럽게 수식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거듭나면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즉, 성평등한 미디어 지형을 위해서는 차별적 용어의 사용 여부를 단순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직군과 시대에 따라 재배치되는 용어의 양상을 추적·점검하는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여류, 여성 전문가, 성평등 보도, 보도준칙, 신문 기사, 구조적 토픽 모델링

---

\* 서울시립대학교 realconte@gmail.com

## 1. 서론

사전적으로 여류(女流)란, ‘전문적인 일에 능숙한 여자’를 뜻한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여류”라는 표현은 각 분야의 여성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쓰였다. “여류”는 한 세기 전 대중신문에서부터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權基玉, 1901~1988)을 지칭하는 “여류비행가(女流飛行家)”였다(동아일보, 1926).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언론 지형에서 “여류비행가”라는 용어는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여류”라는 표현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플랫폼 빅카인즈에서 “여류”의 등장 빈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평등 보도 준칙의 확산과 언론의 성찰이 만들어 낸 긍정적 변화라 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한해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여류바둑기사”다. 국내 여성 바둑기사들의 활약에 힘입어 관련 소식이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여류”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게 된 결과였다. “여류”의 의미가 바뀌어 살아남은 사례도 있다. “여류 화가”가 그중 하나다. “여류”는 오늘날 활동하는 여성 미술가를 언급할 때는 좀처럼 쓰이지 않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성 대가를 뜻하는 고풍스러운 말로 등장한다.

이처럼 “여류”라는 성차별적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직군을 옮기고 의미를 바꾸며 재배치되었을 뿐이다. 이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차별적 표현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존했는가이다. 본 연구는 ‘여류’라는 표현의 존속을 단순히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그것이 직군과 시대를 가로지르며 재배치·재기능화되는 과정을 통해 젠더 위계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과 방법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플랫폼 빅카인즈에서 1990년부터



2025년까지 간행된 전국 일간지 9종의 기사 가운데 “여류”가 등장한 9,089건을 대상으로, 빈도 분석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젠더 위계를 재생산하는 차별적 호명의 작동 조건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미디어가 여성 전문가를 재현하는 방식

다양한 고전적 연구들은 미디어가 여성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일으키는 과장과 생략, 확대와 축소의 양상들을 지적해왔다. 대표적으로 터크먼(Tuchman, 1978)은 대중매체가 여성의 존재를 지우거나 주변화하는 관행을 상징적 말소(symbolic annihilation)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여성 인물이 아예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전통적 젠더 역할에 한정된 모습으로만 다뤄지는 문제를 비판했다. 고프먼(Goffman, 1979)은 미디어가 특정 직업과 관련 종사자를 다루는 방식에도 젠더의 문제가 개입한다고 보았다. 직업의 내용 자체보다는 ‘누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별’이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여성 정치인을 조명한 연구들은 미디어가 여성 정치인의 정책이나 전문성보다는 성별, 외모, 가족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지적한다(Gidengil & Everitt, 1999; Ette, 2020). 미디어의 시선(media gaze)이 여성 전문가의 역량보다는 머리 모양·옷차림·체중·자녀 여부와 같은 부수적 요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편향성은 정량적인 지표로도 나타난다. 정치 이슈 보도에서 여성 전문가는 남성 전문가에 비해 적게 인용될 뿐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을 때도 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Ozer, 2023).

관행적 재현 방식은 여성 경영인을 다룬 보도에서도 나타난다(김희진 · 이수민, 2012). 여성은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보다 워킹맘과 같은 정체성으로 소개되는 일이 많다. 스포츠 보도 분야도 다르지 않다(유상건, 2016). 여성 감독은 남성 감독과 달리 “엄마/언니 리더십”과 같은 성별 특성에 얽매이곤 한다(서재철 · 문민권 · 박찬우,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전문가 이전에 “여성”으로 호명되는 구조, 다시 말해 직업 재현의 차원에서 젠더 위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 2) 직업 명칭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

여성 전문가는 남성과 달리 독자적인 칭호를 부여받기도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여류”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직업에 성별을 표시하는 일은 어떤 업무가 어느 성별에 더 어울리는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언어에 새겨 넣는 관행이기도 하다. 영어의 fireman이나 policeman처럼 남성형을 기본으로 두는 직함은 남성을 그 직업의 기본 수행자로, 여성을 예외적인 수행자로 상정하는 체계를 반영한다. 우리말에서는 여의사, 여교수와 같이 여성에게만 성별을 덧붙이는 호칭이 널리 쓰여 왔다. 남성은 비표지(unmarked) 집단으로, 여성은 표지된(marked) 집단으로 규정되어 온 것이다(Goffman, 1977).

문화적 배경에 따라 명칭의 방식은 다르지만, 성별화된 직업 호칭은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이정복, 2010; 박은하, 2019). 가령 직업명에서 남성형을 기본값으로 사용할 경우, 직업 수행자를 자동적으로 남성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여성 수행자의 존재 가능성은 낮게 그려진다(Sczesny et al., 2016).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Verveckken et al., 2013)는 젠더 중립(gender-fair)적 직업 표현을 사용할 경우, 남녀 아동 모두 해당 직업군에서 여성의 비율을 상대적으

로 높게 추정한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성별을 “기본 수행자(default job holder)”로 상정하는 언어 관습이야말로 성 역할을 공고히 하는 원인 중 하나임을 드러낸 셈이다.

성별 표시가 갖는 영향력은 업무의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대학생 대상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연구(Gaucher et al., 2011)에 따르면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의 공고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성을 시사하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고, 그로 인해 여성들은 이 직업이 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며 지원 의향도 낮았다. 직업을 설명하는 몇몇 단어들이 특정 성별에게는 배제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00년대 국내에서도 성차별적 언어가 범람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대표적으로 2007년 국립국어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신문, 방송, 광고, 출판 영역을 조사하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표했다(안상수·백영주·양애경·강혜란·윤정주, 2007). 이 연구는 국내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표현을 체계적으로 수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다양한 신문 및 방송 언어 연구(이주행, 2003; 양영하, 2011; 조태린, 2017)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나아가 보도준칙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을 공동 제정하면서 성평등 항목을 두어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2011). 또한 세부 조항에서 성별을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호칭, 특정 성에만 특정 직업·역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표현, 가부장적 표현 등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성적 대상화·성 상품화 보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근래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2023년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성평등 보도를 위해 지양해야 할 관행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별한 맥락 없이 성별에 따른 비대칭적 어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여류”를 지목하였다(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2023:21). 여성을 예외적인 수행자로 상정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적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 3) 연구 문제 설정

다수의 선행연구와 언론계의 노력에 힘입어 미디어에서 성차별적 용어가 등장하는 일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류”는 2016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성차별적 용어의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성차의 위계까지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별화된 용어인 “여류”가 일부 영역에 집중적으로 남는 양상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성차별적 표기가 특정 직업에 몰리는 현상은 그 직업군 자체에 새로운 정체성이 새겨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허은, 2013). “여류”라는 표식이 되풀이될수록 그 직업군은 직무 난이도나 전문성과는 별개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상징을 떠안게 될 여지가 있다. 여성에게는 여성으로서 선택할 만한 직업이라는 자기 인식을, 남성에게는 본업이 되기에는 덜 매력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면서, 직업군 자체에 성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Formanowicz et al., 2013).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2023:68) 역시 “남성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분야(경제, 정치 등)”와 “여성적 영역(소비, 문화 등)”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여류”라는 용어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류 비행사”를 비롯해 “여류 대통령”, “여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언젠가부터 문화·예술 영역에 한정하여 등장하는 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여류”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무대를 옮겨가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여지가 있다.

“여류”를 둘러싼 환경에서 변화한 요소는 직업만이 아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차별적 표현 또한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한다(김지혜,

2022). 오늘날 문화예술 영역에서 “여류”라는 용어는 더 이상 여성 전문가라는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예술계의 여성 원로, 굵직한 업적을 기록한 여성 위인,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여성 인사들을 고풍스럽게 수식하는 수사(rhetoric)로 등장한다.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다수의 기관 및 언론사가 보도 준칙을 내걸고 성차별적 용어를 포위한 상황에서도 “여류”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즉, 성차별적 용어의 지속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초를 찾으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의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문제1. “여류”는 어떠한 주제 혹은 직군을 경유하여 지금에 이르렀는가?

연구문제2. “여류”의 의미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BigKinds)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빅카인즈는 국내 신문 기사를 통합 수집·관리하는 플랫폼으로, 1990년 이후 생산된 기사에 대해 검색과 통계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9종(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반 뉴스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매체의 보도 지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2018년 이전의 기사는 제공하지 않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의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검색어 “여류”를 포함하는 기사를 조건으로 설정하고, 199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기사 자료로 분석용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연구 시기를 1990년으로 설정한 것은,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여류”의 직업군 구성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1990년대에는 “여류 화가”를 포함한 미술 영역의 비중이 두드러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여류 바둑기사” 보도가 증가했다. 이러한 대목을 고려하여 1990~2025년 사이 간행된 9개 종합 일간지의 기사 9,089건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는 각 언론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기사 원문 전체는 제공하지 않는다. 독자적인 형태소 분석기(Bareun)를 적용한 명사 토큰화(tokenized) 데이터만을 공개하고 있다. 명사형 토큰으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는 문장 수준의 문맥 분석이나 발화 주체 분석에는 제약을 주지만, 단어의 동시 출현 패턴과 분포 기반의 방법론에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에 본 연구는 명사 토큰 정보와 기사 단위 메타데이터(발행일, 발행처 등)를 활용할 수 있는 BOW(Bag of Words) 기반의 빈도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여 데이터 구조와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두 층위로 구성된다. 첫째는 단어 빈도와 분포에 기반한 기술적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 단계에서는 “여류”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의 출현 빈도와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을 계산하여, 어떤 직업군과 주제들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TF-IDF는 개별 단어의 출현 빈도와 희귀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라는 점에서 다양한 세부 주제를 가늠하기에 효과적이다.

둘째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잠재 주제 구조와 시간·매체별 변화를 추적하는 분석이다. 토픽 모델링은 대규모 문서에서 단어들의 동시 출현 패턴을 분석하여 N개의 토픽을 추출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으로, 문서 간 유사성과 주제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각 토픽을 단어 분포로 가정하는 확률 모형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은 오랫동안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Blei, Ng, & Jorda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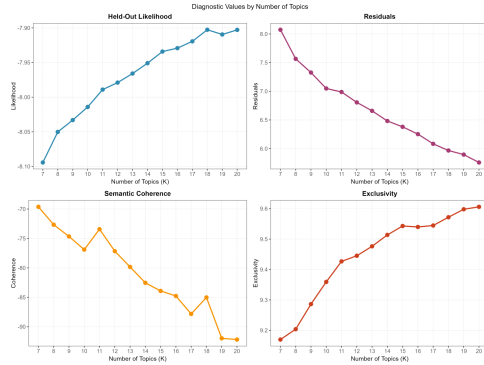
근래에는 LDA 모형을 확장하여 문서 수준 공변량을 토픽 분포와 토픽 내용에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이하 STM)을 적용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Roberts et al., 2013). STM은 발행일이나 발행처 같은 각 문서의 메타데이터에 따라 주제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즉, 시기별·매체별 토픽 비중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STM의 강점을 활용하여 “여류” 관련 기사의 주제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언론사별로 나타나는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TM의 적용에 앞서 자료의 전처리와 차원 축소를 진행하였다. 먼저 불용어 처리 단계에서 “경우”, “이날”과 같은 단어처럼 여러 문서에 등장하지만 주요 내용과는 접점이 적은 명사 토큰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이들”과 “아동”, “여자”와 “여성”과 같이 의미상 동일한 단어쌍들은 “아동”, “여성” 등으로 유의어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류” 토큰을 분석 단계에서 제거하였다. “여류”는 연구 대상을 구성하는 핵심 검색어지만, 모든 문서에 포함되어 있어 토픽 구분에 기여하지 못하고 계산량만 늘리는 변수에 가깝다. 따라서 문서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한 단어를 제거하여 어휘 공간을 줄이고 토픽 간 차이를 보다 잘 드러낼 필요가 있다(Grimmer & Stewart, 2013). 이와 같이 불용어 처리와 유의어 통합, 핵심 검색어의 제거를 통해 단어-문서 행렬의 차원을 조정한 뒤 STM을 추정하였다.

### 3) STM 토픽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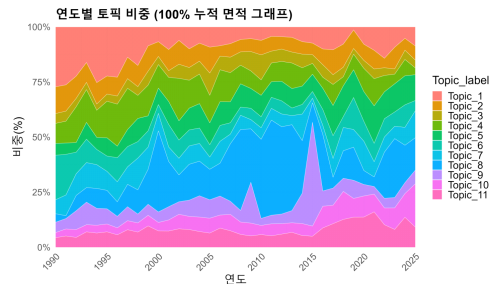
토픽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픽 수를 결정하는 일이다. 최적의 토픽 수를 결정하고자 stm 패키지의 searchK 함수를 이용하여 토픽 수 7에서 20까지 설정한 뒤, 네 가지 진단 지표(held-out likelihood, residuals,



〈그림 1〉 토픽수 7~20개의 4대 지표 계산 결과

semantic coherence, exclusivity)를 계산하였다(Roberts et al., 2019). 〈그림 1〉은 각 지표의 변화를 시각화한 결과로, 토픽 수가 증가할수록 held-out likelihood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residuals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semantic coherence와 exclusivity는 서로 상충하는 경향을 보여, 일정 수준 이후에는 토픽을 늘릴수록 주제 간 구분은 뚜렷해지지만 개별 토픽 내부의 결속력은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든 지표가 안정적인 균형점을 보이는 K=9-12 사이에서 의미적 일관성(semantic coherence)이 가장 높은 K=11을 최종 토픽 수로 선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는 11개 토픽의 연도별 비중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로, 각각의 토픽이 시기별로 확대 혹은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토픽별 세부 내용은 4장에서 후술한다.



〈그림 2〉 토픽수 11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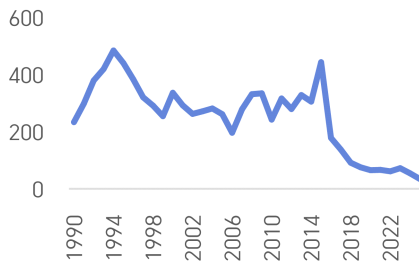


한편 전처리와 기초 분석은 파이썬 3.11.0 환경에서 공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실행하였으며, 분석 코드와 결과는 주피터 노트북(ipynb) 형식으로 저장하여 연구 과정의 투명성과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였다.<sup>1)</sup> 단 STM 알고리즘은 아직 파이썬 환경에서 활용할 수 없어 R을 이용하였으며 콰르토(qmd)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 4. 분석 결과

### 1) 기초 분석 결과

〈그림 3〉은 연간 기사 건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세부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점진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후 2015년 급등했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했



〈그림 3〉 “여류” 관련 기사수 추이

다. 2015년 나타난 증가세는 영화 〈도리화가〉의 개봉과 맞물리며 “여류 판소리꾼”이라는 표현이 급증한 결과였다.

반면 2016년부터 “여류”라는 용어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는 하나로 단

1) 연구 과정에서 작성한 코드 및 분석 결과 자료는 다음 GitHub 저장소를 통해 공개하였다. 언론사별 보도 건수 세부 내역, 빈도수 상위 300개 단어, 연도별 상위 20개 단어 등의 기초 분석 결과는 authoress\_Freq.xlsx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의 세부 내용, 각 토픽별 상위 50개 문서 목록은 STM\_11.xlsx에 수록하였고, 토픽별 추이 및 언론사별 분석 결과 그래프는 각 STM\_11 폴더에 정리하였다.  
<https://github.com/Fix8inSex/Marking-Women-Expe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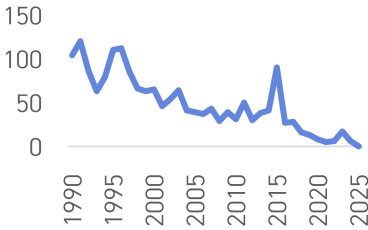
정하기 어렵다. 정황상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젠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미디어가 성차별적 용어에 대해 보다 민감해진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각 언론사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젠더 관련 이슈만으로 “여류”라는 용어의 퇴장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 언론사별 “여류”가 등장하는 기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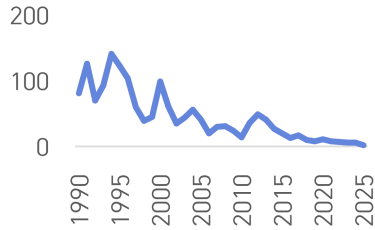
| 발행처   | 중앙<br>일보 | 동아<br>일보 | 경향<br>신문 | 세계<br>일보 | 서울<br>신문 | 문화<br>일보 | 국민<br>일보 | 한국<br>일보 | 한겨레  | 계     |
|-------|----------|----------|----------|----------|----------|----------|----------|----------|------|-------|
| 기사(건) | 1,751    | 1,598    | 1,225    | 926      | 851      | 802      | 783      | 755      | 398  | 9,089 |
| 비율(%) | 19.26    | 17.58    | 13.47    | 10.18    | 9.36     | 8.82     | 8.61     | 8.3      | 4.37 | 100   |

〈표 1〉은 언론사별 “여류”가 등장한 기사 수를 정리한 것이다. 단순 기사 건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중앙일보, 동아일보 순이었다. 〈그림 4〉와 〈그림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 신문사는 1990년대 초반 높은 건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가장 빠르게 줄어들었다. 감소세는 2000년대까지 이어졌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여타 언론사와 대동소이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세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한 경향신문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앞선 두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부터는 홀로 증가세를 보였고 이러한 흐름은 2015년까지 이어졌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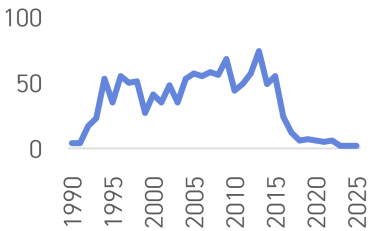
한편 한겨레신문은 9개 신문사 중 “여류”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했지만, 〈그림 7〉에서 드러나듯이 2010년 전후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며 여타 신문사보다 많은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림 8〉 문화일보와 〈그림 9〉 서울신문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을 전후로 급증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다른 언론사와 차별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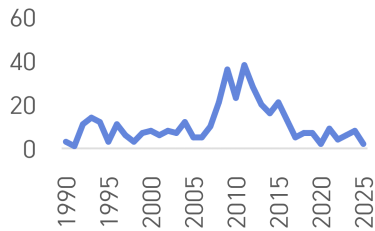
〈그림 4〉 중앙일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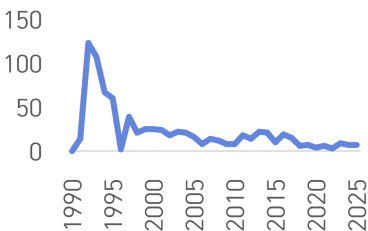
〈그림 5〉 동아일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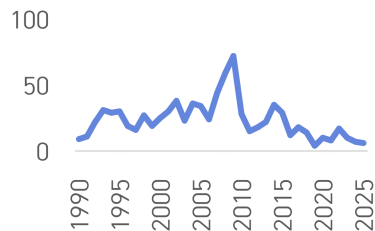
〈그림 6〉 경향신문의 추이



〈그림 7〉 한겨레신문의 추이



〈그림 8〉 문화일보의 추이



〈그림 9〉 서울신문의 추이

이처럼 언론사별 추이는 “여류”라는 용어가 시기별 의제나 발행처의 의중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별적 용어의 증감만으로 전체 언론 지형을 진단하거나 특정 언론사의 성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셈이다. 이어서 전체 기사에 등장한 단어의 빈도분석 및 TF-IDF 지표를 살펴보았다.

〈표 2〉 빈도수 및 TF-IDF 상위 10개 단어

| 빈도수 순 |    |        |          |       | TF-IDF순(빈도수 상위 300개 중) |       |          |       |
|-------|----|--------|----------|-------|------------------------|-------|----------|-------|
| 순위    | 단어 | 빈도수    | TF-IDF   | 기사수   | 단어                     | 빈도수   | TF-IDF   | 기사수   |
| 1     | 여성 | 10,334 | 0.012639 | 3,205 | 나혜석                    | 574   | 0.295261 | 157   |
| 2     | 한국 | 8,839  | 0.015243 | 3,425 | 루이                     | 2,231 | 0.277127 | 725   |
| 3     | 인간 | 8,648  | 0.007746 | 3,371 | 노래                     | 1,205 | 0.264717 | 670   |
| 4     | 작가 | 8,388  | 0.020883 | 3,211 | 가정                     | 518   | 0.235091 | 359   |
| 5     | 작품 | 7,972  | 0.013086 | 3,089 | 소설                     | 4,163 | 0.197037 | 1,538 |
| 6     | 바둑 | 6,642  | 0.089075 | 1,497 | 강연                     | 556   | 0.184175 | 324   |
| 7     | 세계 | 5,188  | 0.009634 | 2,647 | 우승                     | 2,658 | 0.177731 | 1,049 |
| 8     | 일본 | 5,102  | 0.077042 | 1,910 | 뮤지컬                    | 683   | 0.158914 | 259   |
| 9     | 영화 | 4,956  | 0.017942 | 1,406 | 명창                     | 719   | 0.148217 | 221   |
| 10    | 사랑 | 4,860  | 0.011714 | 2,028 | 타이틀                    | 922   | 0.14017  | 532   |

〈표 2〉는 빈도수 및 TF-IDF 기준 상위 10개 단어를 정리한 것으로, “여류”가 어떠한 직업군과 주로 이어지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작가”, “작품”, “영화”, “노래”, “소설”, “뮤지컬”처럼 문화예술 직군이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냈으며, 이밖에 “바둑”과 여성 바둑 기사 “루이(나이웨이)”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기초 빈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11개 토픽의 구조와 시기별 비중 변화를 통해 “여류” 보도 기사의 장기적 재편 양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3〉 토픽별 기여도 상위 10개 단어

| 주요 주제  | 토픽 번호     | 비중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8순위          | 9순위          | 10순위         |
|--------|-----------|--------|-------------|-------------|--------------|--------------|-------------|--------------|--------------|--------------|--------------|--------------|
| 여류의 직군 | 문학·강의 여성들 | 4      | 작가 (0.0244) | 소설 (0.0241) | 인간 (0.0179)  | 작품 (0.0127)  | 사랑 (0.0118) | 이야기 (0.0094) | 세계 (0.0081)  | 미국 (0.0076)  | 자신 (0.0068)  | 프랑스 (0.0066) |
|        |           |        | 시인 (0.0319) | 문학 (0.0279) | 작가 (0.0191)  | 한국 (0.0123)  | 교수 (0.0123) | 작품 (0.0115)  | 시집 (0.0106)  | 소설 (0.0088)  | 소설가 (0.0086) | 문단 (0.0073)  |
|        | 미술과 전시    | 1      | 작품 (0.0303) | 전시 (0.0264) | 작가 (0.0245)  | 회화 (0.0185)  | 미술 (0.0159) | 개인전 (0.0111) | 화가 (0.0109)  | 한국 (0.0109)  | 서울 (0.0076)  | 작업 (0.0072)  |
|        | 바둑과 승부    | 8      | 바둑 (0.0380) | 기사 (0.0162) | 대회 (0.0160)  | 우승 (0.0150)  | 한국 (0.0146) | 중국 (0.0129)  | 루이 (0.0128)  | 여성 (0.0118)  | 세계 (0.0108)  | 프로 (0.0097)  |
| 용범의 재편 | 음악과 공연    | 7      | 공연 (0.0235) | 음악 (0.0158) | 무대 (0.0129)  | 연주 (0.0117)  | 연극 (0.0108) | 소리 (0.0090)  | 피아노 (0.0085) | 판소리 (0.0079) | 명창 (0.0069)  | 뮤지컬 (0.0067) |
|        | 정치와 외교    | 2      | 일본 (0.0192) | 중국 (0.0139) | 한국 (0.0125)  | 대통령 (0.0099) | 미국 (0.0097) | 북한 (0.0078)  | 정부 (0.0075)  | 인간 (0.0074)  | 정치 (0.0045)  | 사건 (0.0045)  |
|        | 역사 속 여성   | 10     | 문화 (0.0167) | 한국 (0.0125) | 지역 (0.0100)  | 서울 (0.0078)  | 도시 (0.0064) | 역사 (0.0061)  | 행사 (0.0057)  | 건물 (0.0052)  | 조선 (0.0048)  | 여행 (0.0048)  |
|        | 가부장제 비판   | 11     | 여성 (0.0819) | 남성 (0.0243) | 남편 (0.0113)  | 사회 (0.0109)  | 자신 (0.0108) | 결혼 (0.0089)  | 인간 (0.0088)  | 어머니 (0.0048) | 아내 (0.0047)  | 나혜석 (0.0045) |
| 단발성 이슈 | 치유의 낭송    | 5      | 인간 (0.0232) | 사랑 (0.0129) | 마음 (0.0104)  | 시인 (0.0085)  | 자신 (0.0072) | 어머니 (0.0068) | 이야기 (0.0067) | 세상 (0.0066)  | 아버지 (0.0053) | 노래 (0.0052)  |
|        | 영화홍보      | 9      | 영화 (0.0527) | 감독 (0.0225) | 드라마 (0.0134) | 작품 (0.0112)  | 배우 (0.0110) | 사랑 (0.0086)  | 연기 (0.0081)  | 출연 (0.0081)  | 수지 (0.0078)  | 개봉 (0.0076)  |
|        | 여성의학      | 3      | 아동 (0.0089) | 행사 (0.0078) | 환자 (0.0067)  | 강연 (0.0057)  | 미국 (0.0050) | 독일 (0.0049)  | 인간 (0.0049)  | 인터넷 (0.0048) | 지원 (0.0048)  | 치료 (0.0048)  |

## 2) 토픽 분석 결과

STM으로 도출한 11개 토픽의 지형을 소개하고자 각 토픽의 비중과 상위 단어를 <표 3>으로 정리하였다. 본 절에서는 주요 연구 문제에 집중하고자 11개의 토픽을 세 개의 대주제로 재분류하였다. 먼저 ‘여류의 직군’에서는 ‘여류’라는 낱말이 어떤 직업군에 고착되는지 살펴본다. ‘용법의 재편’에서는 “여류”가 과거와는 다른 맥락에서 소환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양상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 ‘단발성 이슈’라는 주제에서는 성차별적 용어가 일회성 이슈에 노출되는 부분을 조명하였다.

### (1) 여류의 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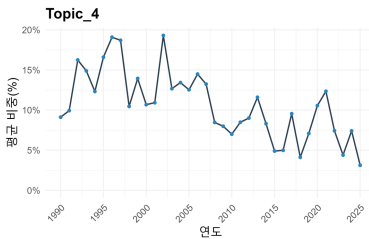
이 범주에는 문학, 미술, 바둑, 공연예술, 정치·외교 등 특정 직업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토픽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문학 분야를 보면, 토픽 4와 토픽 6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기까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그림 10>, <그림 11>). 두 토픽은 소설가·시인·문학평론가 등 문학장 안팎의 여성 활동을 다루는 기사들로 구성되며, 이 시기 문학 분야 여성 창작자를 “여류 작가”, “여류 시인”으로 소개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두 토픽의 그래프는 2000년대 이후 점차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문학 영역에서 “여류”라는 표식이 서서히 퇴조하였음을 환기한다.

토픽 1은 미술 분야를 대변한다. <그림 12>를 보면 1990년대에는 문학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빠르게 쇠퇴했다. 이밖에 토픽 7(음악과 공연, <그림 13>)은 시기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하며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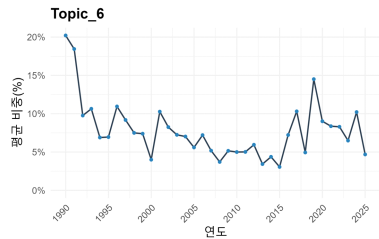
정치·외교 영역에 해당하는 토픽 2는 다른 토픽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았고, 특정 시기 이후로는 눈에 띄는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그림 14>).

반면 바둑과 관련된 토픽 8은 유일하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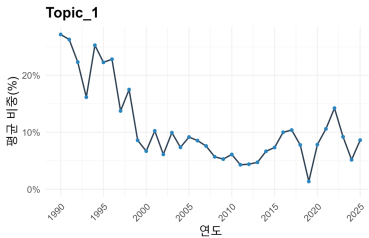
여성 프로기사의 등장과 국제대회 성과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류 기사”라는 표현이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직군의 비중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혼자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토픽 중 하나다. 문학·미술에서 점차 퇴조하던 “여류”라는 표식이 바둑이라는 특정 직군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결합하는 과정이 포착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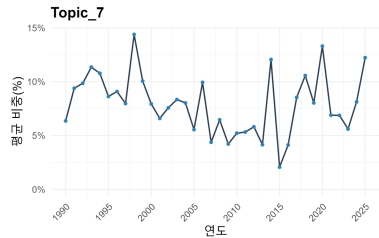
〈그림 10〉 토픽 4(문학장의 여성들1)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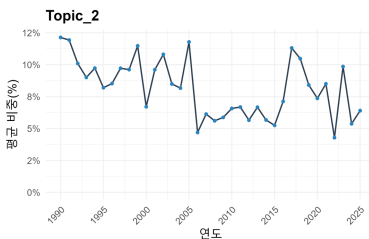
〈그림 11〉 토픽 6(문학장의 여성들2)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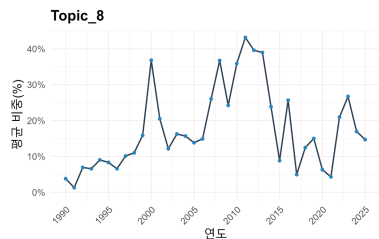
〈그림 12〉 토픽 1(미술과 전시)의 추이



〈그림 14〉 토픽 7(음악과 공연)의 추이



〈그림 14〉 토픽 2(정치와 외교)의 추이



〈그림 15〉 토픽 8(바둑과 승부)의 추이

위 토픽들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해 보면, “여류”라는 호칭의 사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균등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성차별적 용어는 문학과 미술,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바둑과 공연예술 일부에서는 기존의 관습이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류의 직군’ 범주는 “여류”라는 표식의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용법의 재편

이 범주에는 토픽 10(역사 속 여성), 토픽 11(젠더와 비판의식), 토픽 5(치유의 낭송)가 포함된다. 세 토픽은 “여류”가 “여성 전문가”라는 기존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활용되는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세 토픽은 2016년을 전후해 비중이 상승했다는 공통점으로도 묶을 수 있다(그림 16-18)). 젠더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생존한 토픽들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토픽 10(역사 속 여성)의 경우, 2010년대까지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가 최근에 와 비중이 높아진 항목이다(그림 16)). 조선시대 예술가나 근대 여성 지식인, 지역 문화행사에서 재조명되는 여성 인물 등이 “여류 ○○”라는 옛 표현과 함께 언급되는 기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과거의 여성 예술가·전문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호칭을 인용하거나, “당대에는 ‘여류 ○○’로 불렸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류”는 현재의 직업 호칭이라기보다 역사적 맥락을 환기하는 인용구에 가까운 용례를 점점 더 많이 갖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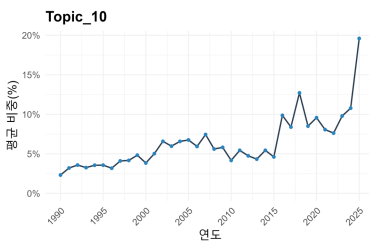
토픽 11(가부장제 비판)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관련 어휘들로 밀집된 토픽이다. 〈그림 17〉을 보면 2010년대 이전까지 비중이 거의 없던 이 토픽은 2016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을 크게 높이더니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젠더 폭력, 혐오 표현, 가부장제 비판을 전면에 내세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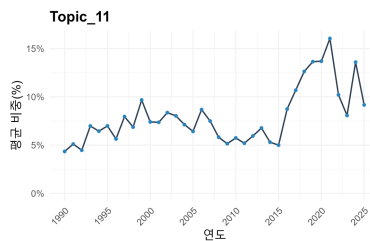
칼럼·기획 기사 속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상징하는 장치로 자주 동원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토픽 11에서 “여류”란, 여성에게만 붙었던 표식의 비대칭성과 차별성을 비판적으로 환기하는 기호로 기능한다.

토픽 5(치유의 낭송) 역시 2010년대 이후 비중이 높아진 주제이지만, 세부 내용은 토픽 11과 대비를 이룬다. 이 토픽은 “사랑”, “마음” 등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며, 주로 시 낭송회, 북콘서트, 치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8〉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중이 서서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시인이나 낭송가를 “여류 시인”, “여류 낭송가”로 부르면서 개인의 생애사와 감정 노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보도가 눈에 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기점으로 강화된 젠더의식과는 별개로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치유·공감의 언어로 포장하는 흐름 속에서 “여류”라는 표식이 정서적 친근감과 함께 소비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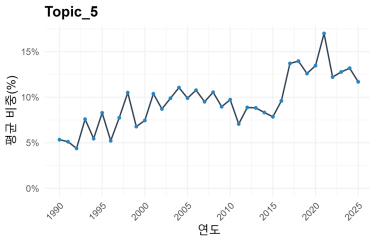
세 토픽은 “여류”라는 표현이 젠더 관계를 둘러싼 재검토와 역사적 재독해의 맥락 속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여류 ○○”가 성차별적 보도의 관행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인용구로 쓰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삶과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운 감수성의 상징으로 활용된다. 2010년대 후반부터 비중이 높아진 위 범주들은 “여류”라는 말이 단순히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제들과 결합하거나 용어의 정체성을 탈바꿈하는 방식으로 재배치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6〉 토픽 10(역사 속 여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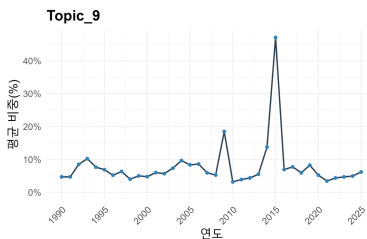
〈그림 17〉 토픽 11(젠더와 비판의식)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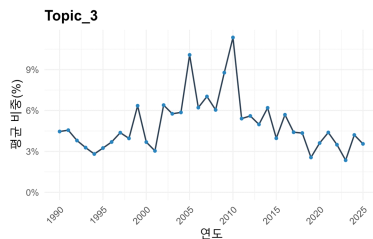
〈그림 18〉 토픽 5(치유의 낭송)의 추이

### (3) 단발성 이슈

토픽 9(영화홍보)와 토픽 3(여성의학)은 특정 시점에서만 나타난 일회성 사례들이다. 토픽 9는 2015년 영화 〈도리화가〉 개봉과 함께 “여류 판소리꾼”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기획 기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토픽 3은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캠페인과 연계된 의료·공익 기사에서 “여류” 표현을 반복 사용한 결과로 형성되었다.



〈그림 19〉 토픽9(영화홍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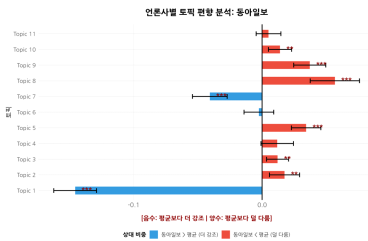


〈그림 20〉 토픽3(여성의학)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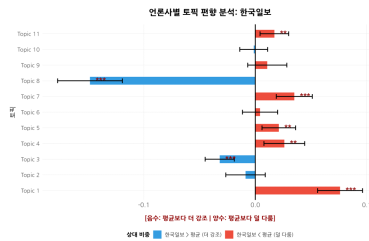
두 토픽은 단발성 이벤트만으로도 “여류” 사용량이 단기간에 증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 류마티스 관절염 캠페인의 경우는 캠페인 명칭 자체에 “여류(여성+류마티스)”가 포함되어 있어, 기사 작성자가 표현을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영화 〈도리화가〉의 경우, 영화의 공식 홍보 문구인 “조선 최초 여류 소리꾼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류”라는 표현이 언론 전반에 노출된 결과다. 두 토픽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 및 홍보 문구에 기반한 기사의 경우, 보도준칙이 쉽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지금의 언론 지형에서는 성중립 보도준칙을 비껴가는 일이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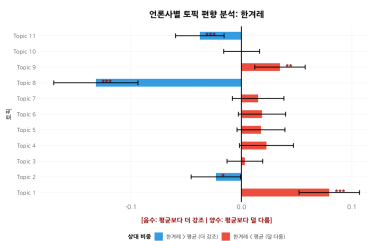
### 3) 언론사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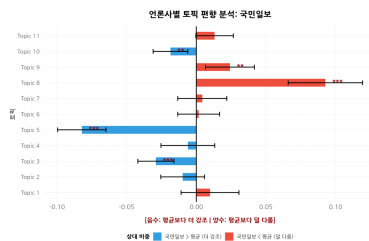
〈그림 21〉 동아일보의 토픽 편향 분석



〈그림 22〉 한국일보의 토픽 편향 분석



〈그림 23〉 한겨레신문의 토픽 편향 분석



〈그림 24〉 국민일보의 토픽 편향 분석

언론사별 토픽 비중을 살펴보면, 앞서 본 기사 수 추이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4〉는 각 언론사가 “여류” 관련 보도에서 어떤 직군과 주제에 더 무게를 두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다. 막대가 좌측(음수)으로 길어질수록 관련 토픽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픽 편향 분석의 결과는 기술 분석에서 확인한 각 언론사의 연도별 기사

수 및 추이(〈표 1〉, 〈그림 4-9〉)와 교차 검토해 볼 때, 보다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동아일보의 사례에서는 토픽 1(미술과 전시)의 비중이 눈에 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동아일보가 여성 화가의 전시·개인전을 활발히 보도하면서 “여류 화가”, “여류 서예가”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결과라고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확인하였듯이, 동아일보의 “여류” 관련 기사 수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했다(〈그림 5〉). 두 결과를 함께 놓고 보면, 2000년대 이후 동아일보에서 “여류”라는 용어가 줄어든 것은 미술계 내부에서 “여류”라는 표현을 자제한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반대로 동아일보가 미술 기사에서 의도적으로 성별 표식을 줄여 나간 덕분에 미술 영역에서 만큼은 “여류” 호칭이 조기에 사라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즉, 성차별적 용어의 사용량이 많았다고 해서 해당 언론사가 젠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하거나, 반대로 감소했다고 하여 보도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토픽 8(바둑과 승부)의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그림 22〉, 〈그림 23〉). 2010년대 들어 바둑 토픽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흐름(〈그림 15〉)에서 볼 때, 두 신문사가 바둑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여류 기사”, “여류 기사전” 등의 표현을 자주 언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9개 신문사 중 “여류” 표현을 가장 적게 사용한 언론사였지만(〈표 1〉), 바둑 분야에서만큼은 기존의 관행을 따르며 “여류”의 표식을 유지해 온 것이다.

한편 국민일보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24〉에서 토픽 5(치유의 낭송)의 비중이 유독 두드러지는데, 기독교 계열 신문이라는 정체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토픽 5에 속한 기사 중 다수는 시 낭송회, 간증 형식의 강연, 신앙 체험을 나누는 모임 등에 참여한 여성 작가들에게 “여류”의 칭호를 붙였다. 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류” 작가의 위로, 헌신과 봉사의 서사가 반복되면서, 종교적 정체성과 감정의 이미지가 결합하는 경

향을 보인 것이다. 같은 토픽이라도 다른 신문사에서는 문학·문화 기획으로 배치될 법한 내용이, 국민일보에서는 종교 공동체의 미담과 신앙 실천의 사례로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연도별 추이, 토픽 구조, 언론사별 차이를 교차해 보면, “여류”라는 표현은 사용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직군·의제·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남겨지고 조정되어 온 표식임을 알 수 있다. 문학·미술·정치·외교와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성 중립적 호칭으로 전환이 진행된 반면, 바둑이나 공연예술 그리고 역사적 인물과 연계된 보도에서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으며 살아남았다. 또한 각 언론사들은 토픽 구성과 비중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선택적 젠더 마킹의 지형을 형성해 왔다. 다음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류” 표현의 재편 과정이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의 신문 기사 데이터를 통해 ‘여류(女流)’라는 성차별적 호칭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쇠퇴하고, 동시에 변칙적으로 생존해 왔는지를 구조적 토픽 모델링(STM) 기법으로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는 성차별적 언어가 점진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군과 맥락으로 재배치되며 명맥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류”는 문학, 미술, 정치 등 주류 공론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 결과는 한국 언론 지형의 긍정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용어의 퇴장이 모든 분야에서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바둑 영역에서의 결과는 성차별적 호칭이 특정 직업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 결과, 여성 기사들이 활약하는 무대는 “여류”라는 표식이 불

은 별도의 경기장으로 설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류 기사”라는 말은 바둑계 여성들의 성취를 가시화하기도 했지만, 남성 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는 존재로 고착화하는 효과도 불러일으킨다. 2020년 여성 바둑기사 최정 9단의 인터뷰는 이러한 역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둑엔 성별차 없고 실력차만… 女帝 아닌 皇帝 될래요”(문화일보 2020.7.10.)  
 최정(24) 9단은 여자바둑계에서 ‘천하무적’이다. 별명은 ‘바둑여제’ […] 최 9단은  
 “바둑에서 성별의 차이는 없고 실력의 차이는 있다고 믿기에 여제를 넘어 황제  
 라는 칭호를 얻고 싶다”면서 “남녀 통합 메이저대회에서 꼭 우승하겠다”고 다짐  
 했다. […]

(최정 9단은) 2011년 제5기 지지옥션배에서 8연승을 달렸다. 지지옥션배는 여류  
 기사 12명과 45세 이상 남자기사 12명이 팀을 이룬 반상의 성 대결. (이하 모든  
 인용문의 밑줄은 연구자 강조 표시)

위 기사는 “바둑엔 성별차 없고 실력차만” 있다는 최정 9단의 발언을 제목으로 내세우면서도 본문에서는 “여류기사 12명”과 “남자기사 12명”이라고 서술한다. 여성 기사의 선언과는 달리 “여류 기사”는 여전히 표지된 수행자로 재현된다. 이처럼 “여류”라는 용어는 여성 기사들의 성취를 부각하면서도, 동시에 그 성취를 여성만의 영역에 가두는 이중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가 성별화된 직업관을 재현할 때, 특정 영역을 표지(Marked)된 범주로 묶어두는 오랜 질서(Goffman, 1979)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편 “여류”는 오늘날 현직 여성 전문가를 부르는 말에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과거의 여성 인물을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자주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역사 속 여성 토픽의 비중이 2010년대 이후 커진 점과 더불어, <표 2>의 TF-IDF 기준 상위어 가운데 나혜석이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한 결과 역시 “여류”가 과거의 여성들을 소환하는 매개체로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명 이미지 표현한 여류화가 박래현(동아일보, 2021.10.12)

“여자는 화가가 될 수 없다.” 이는 조선왕조 시대의 불문율이었다. [...] ‘여류화가’의 탄생,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나혜석과 백남순, 그리고 박래현과 천경자. 이들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전자는 유화가, 후자는 채색화가로 화단에서 입지를 다졌다.

위 기사는 박래현과 함께 나혜석, 백남순, 천경자를 “여류화가”라는 범주로 묶어두고 이들의 등장을 새로운 시대의 징후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류화가”는 단지 성별을 표시하는 기술적 용어가 아니라, 과거의 제약을 뚫고 등장한 여성 예술가들을 한 시대의 상징으로 묶어 세우는 말로 기능한다. 동시에 이 표현은 여성 화가들의 활동 무대를 조선왕조의 불문율을 깨고 등장한 여류라는 배경 안에 위치시키면서, 특정 시기의 예외적 인물로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낳고 있다.

위 맥락에서 ‘여류’는 동시대의 직업적 주체로 호명하는 표현이라기보다, 과거의 여성 예술가나 지식인을 회고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표지로 기능한다. 여기서 ‘여류’는 단순히 성별 정보를 덧붙이는 명칭이 아니라, 근대 문예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낡은 분류 범주를 현재로 호출하는 명명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 표현은 여성‘들’을 현재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자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시대에 속한 인물이나 기념되어야 할 문화적 대상으로 배치하는 효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여류’는 직업적 정체성을 정확히 지시하는 중립적 호칭이라기보다, 대상에게 복고적이고 장식적인 어조를 덧씌우는 수사적 장치로 소비되며, 이 점에서 해당 표현은 오늘날에도 성별화된 표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여류’가 단순한 잔존 표현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역사화하고 장식화하는 방식으로 재기능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즉, ‘여류’라는 용어는 단순히 사용 여부의 차원만이 아니라 사용 맥락과 효과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대상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낱말의 사용법이 변화한 결과, 현

대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이 다시 소환되기도 한다. 좋은 사례로 1920년대 여성 비행사 권기옥을 지칭하던 “여류비행사”라는 말은 오늘날 여성 비행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좀처럼 쓰이지 않지만 과거를 이야기할 때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 최초 여류비행사, 조국독립 꿈을 창공에 띄우다(중앙일보, 2025.5.7)  
1925년 2월 기옥은 원난항공학교 제1기로 졸업했고 비행과 12명 졸업생 중 유일한 여성이자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가 되었다. [...] 권기옥 지사는 불굴의 의지로 어려서부터 가진 여류 비행사라는 꿈을 이루었고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으며 대한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위 기사는 “여류비행사”가 단순히 ‘여성 비행사’의 옛말이 아니라, 과거 특정 인물과 시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활용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기고자는 “여류비행사”를 직업 범주가 아닌 한 인물의 정체성과 운명을 규정하는 이름처럼 사용한다. “여성 비행사”로 바꾸어도 정보 전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독립운동, 선구자적 여성상, 1920년대라는 역사적 시간대를 한꺼번에 호출하기 위한 상징적 표지로 활용한다. “여류”는 더 이상 여성 전문가를 뜻하는 일반 명사가 아닌, 여성 위인의 서사를 품은 수사로 재탄생한다.

이처럼 성차별적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다. 직군을 옮기고 의미를 바꾸며 재배치되었을 뿐이다. “여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여전히 명맥을 이어간다. 하나는 바둑처럼 특정 직업 안에 머물며 여성의 활동 무대를 젠더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특정 시기에 잠입하여 살아남는 것이다. 전자는 여성의 성취를 남녀 통합 경쟁과는 다른 급의 경기로 분리해 버리고, 후자는 여성을 특정 시간의 경계 안에 묶어 세우면서 현재와 동등한 전문가가 아닌 예외적인 존재로 보이게 만든다. 표면상 사라진 듯한 성차별적 용어가 실제로는 특정 직군과 과거의 시간대에 모여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 몇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현재의 보도 준칙은 주로 성차별적 표현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여류”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가파르게 감소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적 표현은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직군을 옮기거나 의미를 바꾸는 방식으로 생존하기도 한다. 또한 외부 기관이나 제도의 공식 명칭, 대회 명칭, 홍보 문구 등이 보도 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이를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관행은 결과적으로 해당 표현을 보도 준칙의 직접적 규제 범위 바깥에 두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언론의 성평등 준칙은 특정 표현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그 표현이 사용되는 조건과 기능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차별적 표현의 문제는 단순한 금지 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위치에 놓고 어떤 맥락 속에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신문 기사 데이터로 바탕으로 “여류”의 사용 양상과 의미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데 초점을 둔 결과, 개별 기사 문맥에서 형성되는 어휘들의 미세한 의미 차이까지는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였다. 가령 “여류”, “여성”, 나아가 “남성” 등의 표현이 동일한 기사 안에서 어떠한 문맥적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지, 또 언론사별 편집 방향이나 기사 관행의 차이가 표현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살펴볼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매체별 성향과 기사 유형의 차이를 보다 면밀히 비교하고, “여류”와 대체 표현들이 실제 기사 문맥에서 어떠한 의미 경쟁을 벌이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후속 연구가 축적된다면, 성차별적 표현의 사용 여부를 넘어 사용 맥락과 재인용 관행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보도 방안 역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지혜. 2022. “차별적 언어 표현 연구: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롭게 인식된 차별 표현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12: 5-37.
- 김희진 · 이수민. 2012. “언론에 재현된 여성 경제리더의 모습: 주요 일간지의 기업 고위직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중심으로(1990~2011년).” 『미디어, 젠더&문화』 23: 79-110.
- 박은하. 2019. “직업 차별적 언어 사용과 인식에 대한 말뭉치 용례 연구.” 『사회언어학』 27(4): 89-116.
- 서재철 · 문민권 · 박찬우. 2018. “‘여성 감독’의 탄생: 미디어가 박미희/이도희 감독을 재현하는 양상에 대한 젠더 및 여성주의 관점의 비판적 논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1(4): 43-64.
- 안상수 · 백영주 · 양애경 · 강혜란 · 윤정주. 2007.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영하. 2011. “신문 언어의 공공성 척도와 사례 분석.” 『한말연구』 28: 115-140.
- 유상건. 2016. “여성, 스포츠 그리고 미디어.”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4): 39-53.
- 이정복. 2010. “한국 직업 이름의 위계와 차별.” 『우리말글』 49: 1-36.
- 이주행. 2003. “신문의 언어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6: 1-41.
-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2023.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 조태린. 2017. “방송언어 개선 연구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학』 74: 169-197.
- 허은. 2013.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수직적/수평적 분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241-266.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Ette, M. 2020. “Journalism and Gendered Mediation.” In T. P. Vos & F. Hanusch (Ed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Journalism Studies*. Hoboken, NJ: Wiley-Blackwell.
- Formanowicz, M., Sczesny, S., & Moser, F. 2013. “Side Effects of Gender-Fair Language: How Feminine Job Titles Influence the Evaluation of Female Applica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1): 62-71.
- Gaucher, D., Friesen, J., & Kay, A. C. 2011. “Evidence That Gendered Wording in Job Advertisements Exists and Sustains Gender Ine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1): 109-128.

- Gidengil, E., & Everitt, J. 1999. "Metaphors and Misrepresentation: Gendered Mediation in News Coverage of Canadian Leaders."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4(2): 48-65.
- Goffman, E. 1977. "The Arrangement Between the Sexes." *Theory and Society* 4(3): 301-331.
- \_\_\_\_\_. 1979. *Gender Advertisement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immer, J., & Stewart, B. M.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3): 267-297.
- Ozer, A. L. 2023. "Women Experts and Gender Bias in Political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87(2): 293-315.
- Roberts, M. E., Stewart, B. M., Tingley, D., & Airolidi, E. M. 2013. "The Structural Topic Model and Applied Social Science."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Workshop on Topic Models: Computation, Application, and Evaluation*.
- Roberts, M. E., Stewart, B. M., & Tingley, D. 2019. "stm: An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91(2): 1-40.
- Tuchman, G. 1978. "The Symbolic Annihilation of Women by the Mass Media." In G. Tuchman, A. K. Daniels, & J. Benét (Eds.), *Hearth and Home: Images of Women in the Mass Media* (pp. 3-3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Vervecken, D., Hannover, B., & Wolter, I. 2013. "How Gender Fair Job Descriptions Impact Children's Perceptions of Traditionally Male Jobs." *Social Psychology* 44(4): 258-266.
- 동아일보. 1926. "中國蒼空에 朝鮮의 鵬翼." <동아일보>. 1926.5.21, 2면.
- 동아일보. 2021. "생명 이미지 표현한 여류화가 박래현(윤범모의 현미경으로 본 명화)." <동아일보>. 2021.10.12.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011/109654708/1> [검색일: 2026.2.3.]
- 정세영. 2020. "바둑엔 성별차 없고 실력차만... 女帝 아닌 皇帝 될래요." <문화일보>. 2020.7.10. <https://www.munhwa.com/article/11193230> [검색일: 2026.2.3.]
- 중앙선데이. 2025. "한국 최초 여류비행사, 조국독립 꿈을 창공에 띄우다." <중앙일보>. 2025.5.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3334> [검색일: 2026.2.3.]
- 한국기자협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7) [검색일: 2026.2.3.]

Abstract

Marking Women Experts  
– Gendered Naming of Women Experts  
in Korean Newspapers, 1990~2025

Bae, Hongchul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analyzes 9,089 articles containing the term yeoryu (女流, denoting female professionals) from nine major Korean national dailies (1990-2025), sourced from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Kinds database, to elucidate the persistence of a gender-discriminatory label. Employing word frequency, TF-IDF metrics, and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it examines temporal and outlet-specific shifts in thematic structures. Findings reveal a decline in yeoryu usage across politics, diplomacy, literature, and fine arts, contrasted by strengthened associations or surges in Go (baduk) and select performing arts. The term endures as a conventional modifier for historical figures, evoking archaic connotations. These results suggest gender-reporting guidelines that monitor profession- and era-specific reallocations of such term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simple usage checks.

**Key words:** yeoryu, women experts, gender-equal reporting, reporting guidelines, newspaper articles, structural topic modeling

■ 투 고 일 : 2026년 2월 26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1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17일

#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젠더화

## — 시간 접근권의 불평등

김경미\*

### | 목차 |

- |           |            |
|-----------|------------|
| 1. 서론     | 4. 분석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논의 및 결론 |
| 3. 연구방법   |            |

### | 초록 |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배분되고 조직되는지를 분석했다. 기존 디지털 불평등 논의의 기술 접근이나 이용 역량의 차원을 넘어 ‘시간 접근권’의 문제로 재개념화하고,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재량 시간과 조건부 시간으로 구분하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202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만 20~75세 유배우자 성인 13,338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더 많이 확보했으며, 미디어·오락 중심의 자기 지향적 활동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의 혼자 있는 시간은 소통형 활동 비중이 높아 관계지향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필요 가구원의 존재는 여성의 시간을 남성보다 더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이러한 성별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전통적 성별분업 인식은 남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 자율성이 구조적 제약과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의해 젠더 관계 속에서 비대칭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젠더화된 시간 질서가 지속되고 있으며, 디지털 평등이 기술 접근의

---

\* 연세대학교 kyungmi60@gmail.com

확대를 넘어 시간 자율성의 평등, 즉 '시간적 정의'의 관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 시간 자율성, 재량 시간, 젠더 불평등, 시간적 정의

## 1. 서론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은 일상적 시간 사용의 구조와 의미를 재편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그러나 디지털 접속의 보편화가 곧 기술 활용의 형평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술 접근성은 확대되었지만, 그 기술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은 여전히 불평등하게 배분된다. 디지털 접속 가능성과 시간 자원의 확보 사이에는 구조적 간극이 존재하며, 이 간극은 젠더 질서 속에서 비대칭적으로 조직된다.

기존 디지털 불평등 연구는 주로 기술 접근성, 디지털 리터러시, 이용 수준의 격차에 주목해 왔다(Hargittai, 2002; van Dijk, 2017).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된 오늘날, 불평등의 핵심은 기기 보유 여부를 넘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성격의 시간을 통해 디지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시간 자원의 확보와 통제 권한은 디지털 기술의 실질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실증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디지털 기술이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한다는 통념과 달리,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시간 구조를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Wajcman, 2015). 디지털 기술이 시간 구조를 재조직한다면, 그 방식은 성별·계층 등 기존 사회 구조를 따라 불균등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 불평등은 기술 자본의 차이를 넘어, 시간을 누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시간 접근권'의 문제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은 타인이 물리적으로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활동을 수행한 시간으로 정의된다. 이는 고립이나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시간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자원이다(Long and Averill, 2003).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이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 자원은 젠더 중립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여성은 가사노동과 돌봄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되며,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순간에도 ‘돌봄의 대기 상태(on-call caregiving)’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Doucet, 2023). 여성주의 시간 연구는 재량 시간이 성별에 따라 접근 가능성과 안정성에서 차별적으로 조직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Bittman and Wajcman, 2000; Goodin et al., 2008).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과 파편화된 여가 구조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손문금, 2005; 김진옥·고은주, 2015).

시간 자율성의 차이는 구조적 조건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요인과의 관련된다. 성별분업 인식은 시간 사용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을 젠더화하는 규범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West and Zimmerman, 1987; Hochschild, 1989). 동일한 가구 조건에서도 성역할 규범은 여성과 남성의 시간 확보 양상을 젠더화된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총량과 활동 구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돌봄 부담과 노동 조건은 디지털 시간의 성별 격차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셋째, 성별분업 인식은 시간 자율성의 성별 차이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배우자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분리 회귀모형과 성별·돌봄 조건 상호작용 모형을 적용하여,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성별 격차가 어떤 구조적·규범적 맥락에서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10세 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돌봄 맥락에서 성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시간 자율성의 성별 격차가 어떤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재구성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시간 불평등과 ‘혼자 있는 시간’

시간은 모든 개인에게 하루 24시간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자원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통제하고 배분할 수 있는가는 사회적 권력과 젠더 관계 속에서 불균등하게 구성된다. 시간 사용 연구는 여가나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히 ‘노동 후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구 내 권력 구조와 돌봄 책임의 배분에 따라 결정되는 희소 자원임을 보여준다(Bittman and Wajcman, 2000; Mattingly and Bianchi, 2003).

여성주의 시간 사회학은 ‘재량 시간(discretionary time)’을 생존을 위한 필수 시간과 유급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하며, 이 영역이 성별에 따라 접근 가능성과 안정성에서 다르게 구성되는 젠더화된 공간임을 강조한다(Goodin et al., 2008). 개인이 자신의 시간 사용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외부의 침해를 차단할 수 있는가, 즉 ‘시간 자율성’의 차원이 시간 불평등의 핵심이다. 재량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개인이 시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타인으로부터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자율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본 연구는 이 논의를 디지털 맥락으로 확장하는 분석틀로서 ‘시간 접근권(right to time access)’ 관점을 제안한다. 시간 접근권은 재량 시간의 양적 확보를 넘어, 특정 활동이 배치되는 시간의 경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외부의 침투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재량 시간이 노동과 필수



활동을 제외한 잔여 시간이 ‘얼마나 남는가’의 문제라면, 시간 접근권은 그 시간이 ‘누구에 의해 통제되고 보호받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혼자 있는 시간’은 시간 자율성이 가장 뚜렷하게 가시화되는 지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타인의 즉각적 요구나 돌봄 책임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자기 성찰과 정서적 재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 자원이다(Long and Averill, 2003). 그러나 선행연구는 여성의 혼자 있는 시간이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외부 요구에 의해 중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지적해 왔다.

특히 어머니들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순간조차 가족 구성원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심리적 대기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Mattingly and Bianchi, 2003). 두세(Doucet, 2023)는 돌봄 책임이 시계열적 단위로 포착되는 행위 차원을 넘어, 과거·현재·미래를 가로지르는 관계적이고 비선형적인 ‘과정 시간’으로 작동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혼자 있는 시간은 돌봄의 심리적 연장선에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 돌봄은 시간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을 크게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 상시적 주의와 즉각적 대응이 요구되는 돌봄 조건에서는 물리적 분리조차 충분한 시간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젠더화는 한국 사회의 생활시간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손문금(2005)은 맞벌이 부부 분석을 통해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현저히 길고, 여성은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을 담당하는 반면 남성은 선택적이고 간헐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 사용의 질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은기수(2010) 또한 남성의 여가 및 미디어 이용 시간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나며, 여성의 여가는 노동과 돌봄 사이의 파편화된 틈새에 배치되는 경향이 강함을 밝혔다. 김진욱·고은주(2015)는 한국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여성의 개인관리 및 여가시간 결핍이 구조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고, 시간 자율성의 성별 격차가 주관적 시간압박 경험과 밀접히 연관됨을 제시했다.

## 2)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혼자 있는 시간의 젠더화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구성하는 핵심적 실천 양식이 되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활동은 개인적 몰입과 휴식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이러한 기술 환경이 젠더화된 시간 구조를 자동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현(2005)의 ‘시간 재할당 가설’이 시사하듯, 새로운 미디어 이용은 기존의 생활시간 구조—유급 노동, 가사 및 돌봄, 여가—와 긴밀히 연동되고 재배치된다.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의 제약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젠더 분업 구조를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하거나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이동성과 상시 접속성은 시간의 경계를 흐리며, 노동·돌봄·여가의 영역을 중첩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미국의 시간일지 선행연구는 여성의 미디어 이용이 노동과 돌봄 사이의 틈새 시간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Robinson and Godbey, 1997; Mattingly and Bianchi, 2003). 한국에서도 남성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여성보다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은기수, 2010; 김복수, 2011). 이는 단순한 선호 차이의 결과라기보다, 여성의 시간이 구조적으로 파편화되어 배치되는 맥락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파편화 경향은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는데, 상시 연결성은 개인이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에서도 관계적 요구와 업무적 요구에 동시 노출되는 조건을 만든다.

최근 연구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젠더화된 방식으로 조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후와 치엔(Hu and Qian, 2024)은 유럽 29개국 자료 분석을 통해 여성이 가족 중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집중되는 반면 남성은 업무 중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이 높아질수록 여성은 업무와 가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에 담당하는 ‘디지털 이중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고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돌봄 수행과 긴밀히 결합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조차 관계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공간은 여성에게 이중적 성격을 띤다. 홍남희(2012)는 초기 모성 수행기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돌봄의 고립감을 완화하는 동시에, 그 매체가 돌봄 수행을 보조·확장하는 도구로 기능을 보여주었다. 터클(Turkle, 2011)의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상태(alone together)’ 개념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으면서도 디지털 매개를 통해 지속적으로 타인과 연결된 상태를 설명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이러한 상시 연결성은 단순한 관계 유지의 통로를 넘어, 가족 돌봄 요구와 정서적 노동이 혼자 있는 시간으로 침투하는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재량 시간과 조건부 시간으로 구분하는 분석틀을 구성한다. 재량 시간은 외부의 개입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통제 가능한 시간이며, 조건부 시간은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는 상태에서도 돌봄 책임이나 관계적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정한 시간이다.<sup>1)</sup>

### 3) 시간 자율성의 구조적 제약과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에 대한 접근권은 가구 내 자원 배분이라는 구조적 제약과, 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 즉,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시간이 누구에게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누구에게 쉽게 중단될 수 있는가는 가구 내 권력 구조와 규범적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

구조적 차원에서 ‘시간 빈곤’은 여성의 시간 자율성을 제한하는 핵심 기

1) 다만, 이 구분은 이론적 분석틀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본 연구의 시간일지 자료는 물리적 분리 여부만을 측정할 뿐 심리적 대기 상태나 중단 가능성을 직접 포착하지는 못한다. 물리적 분리 조건이 충족된 시간이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이다(Vickery, 1977). 유급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의 중첩은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기획하고 통제할 여지를 축소시킨다. 시간 빈곤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을 저해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한 형태이다(Giurge, Whillans, and West, 2020). 특히 맞벌이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시간 압박을 경험하는데(Bianchi, Robinson, and Milkie, 2006),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에서도 미취학 자녀의 존재나 가구 내 돌봄 수요는 여성의 시간 구조를 타인 중심으로 고착화하고,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확보를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동한다(차승은, 2010; 김진옥·고은주, 2015). 특히 어린 자녀는 상시적 주의와 정서적 응답성을 요구하는 특성이 강해, 돌봄 책임이 시간 전반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조차 안정적인 재량 시간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 배분은 구조적 조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별분업 인식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규범적 기제로 작동한다. 호실드(Hochschild, 1989)는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무엇이 ‘정당한’ 시간 사용인지를 규정하는 문화적 각본으로 기능함을 지적했다. 웨스트와 지머먼(West and Zimmerman, 1987)의 젠더 수행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시간 사용을 통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개인적 시간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의 시간 확보를 가족에 대한 헌신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식하도록 사회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구조적·태도적 요인이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그린스타인(Greenstein, 1996)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반면, 여성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최근 치엔과 루(Qian and Lu, 2025)는 영국 부부 자

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성별분업 인식이 여성 배우자의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남성 배우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특히 여성 배우자의 시간 배분은 부부 양측의 이데올로기에 모두 영향을 받는 반면, 남성 배우자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배분이 젠더 권력 관계 속에서 비대칭적으로 조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맥락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된다. 김소영·진미정(2016)은 성별분업 인식이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에 상이하게 작동함을 보고했으며, 최유정·최미라·최섯별(2019)은 여성의 경제적 자원이 증가하더라도 젠더 수행 논리에 따라 돌봄 노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은 구조적 제약과 이데올로기적 정당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량 시간으로 작동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특정 조건에서만 간헐적으로 허용되거나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조건부 시간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돌봄 책임이 강화되는 조건(10세 미만 자녀 존재 등)에서는 시간 접근권의 성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돌봄 책임과 성별분업 인식은 성별에 따라 시간 접근권의 배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특히 어린 자녀 돌봄은 시간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을 크게 제한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돌봄 필요 가구원 중에서도 10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시간 자율성의 성별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확보하고, 활동 유형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돌봄 부담은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며, 그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전통적 성별분업 인식은 남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증가시키는 한편, 여성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또한, 위의 가설 검증을 보완하기 위해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활동 구성과 생애주기별 패턴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스크린 기반 여가의 성별 격차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García Román and Gracia, 2022), 돌봄 집중기와 은퇴 이후 시기 등 생애 전환점에서 그 양상이 재편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이 2024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활용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24시간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시간일지(Time-diary) 방식을 통해 활동 수행 시점, 활동 내용, 동반자 여부를 10분 단위로 기록한다(통계청, 2025).

시간일지 방식은 회상식 설문에 비해 기억 오류 및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며(Juster and Stafford, 1985; Gershuny, 2000), 활동 수행의 맥락과 동반자 유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틀간 조사 중 2일차 시간일지를 활용했다. 조사 초기에는 응답자가 기록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반응성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Kan and Pudney, 2008)를 고려하여, 응답이 안정화된 2일차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대상은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유배우자 성인으로 한정했다. 생활 맥락 및 시간 책임 구조가 유배우자 가구와 근본적으로 상이한 타 가구 형태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최종 분석 표본은 여성 6,951명, 남성 6,387명

으로 총 13,338명이다.

본 연구는 모집단 추정보다는 집단 내 관계 구조와 변수 간 연관성 추정에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목적의 분석에서는 비가중 회귀모형이 널리 활용된다.

## 2) 변수 구성 및 측정

### (1) 종속변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

종속변수는 시간일지에 ‘함께 있던 사람’이 없는 경우 수행한 디지털 활동의 일일 총합(분)으로 구성했다. 부활동은 활동의 주된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가사·돌봄 노동과 중첩될 가능성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했다(Kan and Pudney, 2008).

디지털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소통형 활동(영상·음성 통화, 문자메시지, SNS 교제), 둘째, 미디어·오락형 활동(동영상 시청, 게임, 음악 감상), 셋째, 소비·실용형 활동(정보 검색, 온라인 쇼핑)이다.

이러한 유형화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지향적 휴식인지, 관계 유지의 연장선에 있는 활동인지 등 시간의 질적 성격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시간 자율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과 이를 정당화하는 인식·태도 요인으로 구성했다. 구조적 조건 변수로는 경제활동 여부, 근무·등교 여부, 맞벌이 여부, 돌봄 필요 가구원과 10세 미만 자녀의 존재 여부를 포함했다. 특히 10세 미만 자녀 변수는 돌봄 강도가 높은 생애 단계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 성별 간 상호작용 모형에 투입했다.

인식·태도 변수로는 시간부족 인식(4점 척도), 성별분업 인식(4점 척

도), 가사분담 만족도(5점 척도)를 활용했다. 성별분업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강함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 규모, 주말/평일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연령은 생애주기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20~39세, 40~59세, 60~75세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중간 범주를 기준 집단으로 설정했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의 세 범주로 구분했으며 고등학교 범주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거주 지역 규모는 특별·광역시 거주 여부로 측정했다. 또한 요일에 따른 시간 사용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일지 작성일의 평일/주말 여부를 변수로 포함했다(주말=1, 평일=0).

〈표 1〉 변수 구성 및 측정

| 구분   |        | 변수명       | 측정 문항/방법                                        | 척도/단위          |
|------|--------|-----------|-------------------------------------------------|----------------|
| 독립변수 | 구조적 조건 | 종속 변수     |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                                    | 일일 총 디지털 시간(분) |
|      |        |           | 시간 일지상 ‘함께 있던 사람’이 없는 경우 수행한 디지털 활동 시간의 합       |                |
|      |        |           | - 소통형 활동: 영상·음성 통화, 문자메시지, SNS 교제               |                |
|      |        |           | - 미디어·오락형 활동: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시청, PC·모바일 게임, 음악 감상 |                |
|      |        |           | - 소비·실용형 활동: 인터넷 정보 검색, 상품 및 서비스 온라인 구입         |                |
|      | 구조적 조건 | 경제활동 여부   |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니까?”         | 일합=1, 그 외=0    |
|      |        | 근무/등교     | 시간일지 작성일에 근무 또는 등교 여부                           | 해당=1, 비해당=0    |
|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존재, 부부 모두 취업 상태인 경우                         | 맞벌이=1, 그 외=0   |
|      |        | 돌봄 필요 가구  | 가구 내 10세 미만(손)자녀 또는 돌봄 필요 가족 존재 여부              | 해당=1, 비해당=0    |
|      |        | 10세 미만 자녀 | 가구 내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여부                          | 있음=1, 없음=0     |



| 구분    | 변수명      | 측정 문항/방법                             | 척도/단위           |
|-------|----------|--------------------------------------|-----------------|
| 인식·태도 | 시간부족 인식  | “평소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 4점 척도           |
|       | 성별분업 인식  |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점 척도           |
|       | 가사분담 만족도 | “귀댁의 가사분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5점 척도           |
| 통계 변수 | 연령       | 만 연령(20~39세, 40~59세, 60~75세)         | 범주형             |
|       | 교육 수준    | 최종학교(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 범주형             |
|       | 거주지역 규모  | 행정구역 기준                              | 특별·광역시=1, 그 외=0 |
|       | 주말 여부    | 시간일지 작성일 기준                          | 주말=1, 평일=0      |

### 3) 분석방법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했다. 첫째,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양적·질적 차이를 검증했다(가설 1).

둘째, 성별 집단을 분리하여 회귀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구조적·태도적 요인이 각 집단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했다(가설 2, 3 검증). 분리 모형은 동일 변수의 계수 비교를 통해 성별 간 작동 메커니즘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셋째, 성별과 10세 미만 자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통합 회귀모형을 추가했다. 이는 단순한 계수 크기 비교를 넘어, 돌봄 맥락에서 성별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성별 분리 모형의 다중공선성(VIF)을 점검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는 3.1 이하로 나타났다. 통합 모형에서는 돌봄 필요 가구원 변수와 10세 미만 자녀 변수를 동시에 포함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0세 미만 자녀 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했다.

4.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은 40~59세 비중이 가장 높았고(49.0%), 남성은 60~75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9.0%).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 여성(6,951명) |       | 남성(6,387명) |       | 비고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 연령               | 20~39세 | 1,121      | 16.1  | 816        | 12.8  | $\chi^2=41.671^{***}$   |
|                  | 40~59세 | 3,408      | 49.0  | 3,081      | 48.2  |                         |
|                  | 60~75세 | 2,422      | 34.8  | 2,490      | 39.0  |                         |
| 교육수준             | 중등 이하  | 1,246      | 17.9  | 721        | 11.3  | $\chi^2=154.801^{***}$  |
|                  | 고등     | 2,346      | 33.8  | 2,011      | 31.5  |                         |
|                  | 대학 이상  | 3,359      | 48.3  | 3,655      | 57.2  |                         |
| 거주지역<br>규모       | 특별·광역시 | 3,328      | 47.9  | 3,073      | 48.1  | -                       |
|                  | 기타 지역  | 3,623      | 52.1  | 3,314      | 51.9  |                         |
| 주말 여부            | 평일     | 4,204      | 60.5  | 3,854      | 60.3  | -                       |
|                  | 주말     | 2,747      | 39.5  | 2,533      | 39.7  |                         |
| 경제활동             | 일함     | 3,968      | 57.1  | 5,291      | 82.8  | $\chi^2=1040.003^{***}$ |
|                  | 휴직/무직  | 2,983      | 42.9  | 1,096      | 17.2  |                         |
| 근무·등교<br>(일지 기준) | 해당     | 2,840      | 40.9  | 4,006      | 62.7  | $\chi^2=636.895^{***}$  |
|                  | 비해당    | 4,111      | 59.1  | 2,381      | 37.3  |                         |
| 맞벌이              | 해당     | 3,447      | 49.6  | 3,252      | 50.9  | -                       |
|                  | 비해당    | 3,504      | 50.4  | 3,135      | 49.1  |                         |
| 돌봄 필요<br>가구원     | 있음     | 1,469      | 21.1  | 1,387      | 21.7  | -                       |
|                  | 없음     | 5,482      | 78.9  | 5,000      | 78.3  |                         |
| 시간부족 인식 수준       |        | 2.61       |       | 2.67       |       | $t=3.644^{***}$         |

주: \*p<.05, \*\*p<.01, \*\*\*p<.001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지위에서는 뚜렷한 성별 격차가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남성 57.2%, 여성 48.3%),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남성(82.8%)이 여성(57.1%)을 크게 상회했다. 시간일지 작성일에 실제 근무·학업을 수행한 비율 또한 남성(62.7%)이 여성(40.9%)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의 시간 구조가 유급 노동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성별로 유사하게 분포했다. 다만 동일한 돌봄 조건이 돌봄 책임의 동일한 배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시간 조직 방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주관적 시간부족 인식은 남성(2.67)이 여성(2.6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3.644$ ,  $p<.001$ ). 흥미롭게도 객관적 시간 제약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보다 남성의 시간부족 인식이 더 높았다.

## (2) 성별분업 인식과 가사분담 만족도

성별분업 인식과 가사분담 만족도에서는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표 3)). 남성(2.20)은 여성(1.85)보다 전통적 성별분업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t=-24.610$ ,  $p<.001$ ), 가사분담 만족도 역시 남성(3.60)이 여성(3.19)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t=-24.618$ ,  $p<.001$ ).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성별분업 인식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20~39세의 청년층에서도 남성(1.93)이 여성(1.65)보다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강했으며, 가사분담 만족도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이 가사분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를 보고한 점은, 동일한 가구 조건에서도 시간 배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 성별분업 인식 및 가사분담 만족도: 성별 및 연령대별 비교

| 구분 | 성별분업 인식 |        |        |      |             |
|----|---------|--------|--------|------|-------------|
|    | 20~39세  | 40~59세 | 60~75세 | 전체   | 통계량         |
| 여성 | 1.65    | 1.72   | 2.12   | 1.85 | t=24.610*** |
| 남성 | 1.93    | 2.12   | 2.39   | 2.20 |             |

| 구분 | 가사분담 만족도 |        |        |      |             |
|----|----------|--------|--------|------|-------------|
|    | 20~39세   | 40~59세 | 60~75세 | 전체   | 통계량         |
| 여성 | 3.51     | 3.12   | 3.12   | 3.19 | t=24.618*** |
| 남성 | 3.86     | 3.60   | 3.52   | 3.60 |             |

주: \*\*\*p<.001, 전체 평균에 대한 성별 차이 검정 결과임

종합하면, 여성과 남성은 교육 수준, 경제활동, 성별분업 인식, 가사분담 만족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성별 격차가 구조적·규범적 요인과 결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성별 차이

(1) 시간 총량 및 활동 구성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4〉), 남성의 일일 평균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은 113.9분으로 여성(103.0분)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t=-5.606, p<.001$ ). 이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조건에서 확보된 디지털 시간의 양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가설 1 지지).

활동 구성 측면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소통형 활동에 남성보다 두 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했다(여성 12.9분, 남성 6.8분;  $t=17.290, p<.001$ ). 물론 본 자료의 특성상 소통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을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소통형 활동은 그 성격상 타인과의 연결 상태를 전제한다. 따라서 여성이 홀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순간

에도 타인과 연결되거나 관계 유지 맥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남성은 미디어·오락형 활동에서 여성보다 현저히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남성 98.5분, 여성 80.5분;  $t=-9.967, p<.001$ ). 남성의 혼자 있는 시간은 영상 시청이나 게임과 같은 몰입적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sup>2)</sup>

소비·실용형 활동의 경우 여성(9.6분)이 남성(8.6분)보다 높았으나 ( $t=2.296, p<.05$ ), 다른 활동 유형에 비해서는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표 4〉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성별 비교 (단위: 일일, 분)

| 구분       |        | 여성    | 남성    | 통계값              |
|----------|--------|-------|-------|------------------|
| 활동<br>유형 | 소통     | 12.9  | 6.8   | $t=17.290^{***}$ |
|          | 미디어·오락 | 80.5  | 98.5  | $t=-9.967^{***}$ |
|          | 소비·실용  | 9.6   | 8.6   | $t=2.296^*$      |
| 전체       |        | 103.0 | 113.9 | $t=-5.606^{***}$ |

주: \* $p<.05$ , \*\* $p<.01$ , \*\*\* $p<.001$

(2) 생애주기별 접근

연령대별 분석(〈표 5〉) 결과,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성별 격차는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게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20~39세 청년층에서의 격차는 약 2.9분으로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40~59세 중장년층에서는 오히려 여성(101.4분)이 남성(95.5분)보다 다소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급 노동 강도나 자녀 돌봄 단계 등 생애주기적 조건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2) 본 연구의 미디어·오락형 활동에는 실시간 방송 시청과 동영상 스트리밍을 포함한 디지털 영상 시청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통적 TV 시청과 디지털 영상 시청을 완전히 구분하여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활동은 이동성, 개인화, 상시 접속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고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 TV 시청과는 이용 맥락이 다를 수 있다.

〈표 5〉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 성별 및 연령대별 비교 (단위: 일일, 분)

| 구분 |        | 여성     |        |        | 남성     |        |        |
|----|--------|--------|--------|--------|--------|--------|--------|
|    |        | 20~39세 | 40~59세 | 60~75세 | 20~39세 | 40~59세 | 60~75세 |
| 유형 | 소통     | 11.8   | 12.3   | 14.2   | 5.6    | 5.7    | 8.5    |
|    | 미디어·오락 | 51.5   | 77.4   | 98.3   | 67.1   | 80.3   | 131.3  |
|    | 소비·실용  | 13.1   | 11.7   | 5.1    | 6.6    | 9.4    | 8.2    |
| 전체 |        | 76.4   | 101.4  | 117.5  | 79.3   | 95.5   | 148.1  |

그러나 60~75세 노년층에서는 남성(148.1분)이 여성(117.5분)보다 더 많은 디지털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 남성의 미디어·오락형 활동 시간(131.3분)은 여성(98.3분)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에서 비교적 작게 나타났던 성별 격차가 노년층에서 다시 크게 확대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시간 접근권의 성별 격차가 생애 주기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총량과 활동 구성 모두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가설 1을 지지한다.

### 3)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과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성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성별 분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6〉).

먼저, 돌봄 필요 가구원의 존재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력의 크기는 여성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돌봄 필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여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은 약 38.7분 감소한 반면( $\beta = -0.154, p < .001$ ), 남성의 감소폭은 약 16.5분 수준에 그쳤다( $\beta = -0.057, p < .001$ ). 이는 동일한 돌봄 조건 하에서도 여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남성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가설 2 지지).

또한, 경제활동 참여의 효과 역시 성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유급 노동에 참여할 경우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약 30.1분 감소했다( $\beta = -0.095$ ,  $p < .001$ ). 이는 유급 노동 참여가 남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에 보다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 집단에서는 경제활동 참여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유급 노동 참여 여부보다 돌봄 및 가구 내 구조적 요인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6〉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에 미치는 영향

|                    |        | 여성        |       |         |     | 남성         |       |         |     |
|--------------------|--------|-----------|-------|---------|-----|------------|-------|---------|-----|
|                    |        | B         | S.E.  | $\beta$ | p   | B          | S.E.  | $\beta$ | p   |
| 연령<br>(기준: 40~59세) | 20~39세 | -0.477    | 3.748 | -0.002  | -   | -3.005     | 4.569 | -0.008  | -   |
|                    | 60~75세 | -5.888    | 3.176 | -0.027  | -   | 11.800     | 3.661 | 0.048   | *** |
| 교육<br>(기준: 고등학교)   | 중학교 이하 | -6.816    | 3.749 | -0.025  | -   | 0.191      | 4.997 | 0.001   | -   |
|                    | 대학 이상  | -14.315   | 2.825 | -0.069  | *** | -13.239    | 3.258 | -0.055  | *** |
| 거주지역(특별·광역시 = 1)   |        | 2.962     | 2.339 | 0.014   | -   | -0.414     | 2.785 | -0.002  | -   |
| 주말 여부(일지 기준)       |        | -8.469    | 2.559 | -0.040  | *** | 2.633      | 3.156 | 0.011   | -   |
| 경제활동 여부(일함 = 1)    |        | -3.704    | 4.860 | -0.018  | -   | -30.136    | 5.340 | -0.095  | *** |
| 맞벌이 가구             |        | -0.380    | 4.184 | -0.002  | -   | 10.584     | 3.137 | 0.044   | *** |
| 돌봄 필요 가구           |        | -38.740   | 3.327 | -0.154  | *** | -16.524    | 3.720 | -0.057  | *** |
| 근무·등교(일지 기준)       |        | -56.257   | 3.659 | -0.268  | *** | -69.782    | 3.944 | -0.281  | *** |
| 시간부족 인식            |        | -13.350   | 1.424 | -0.123  | *** | -10.808    | 1.728 | -0.085  | *** |
| 성별분업 인식            |        | 1.529     | 1.519 | 0.012   | -   | 7.051      | 1.686 | 0.050   | *** |
| 가사분담 만족도           |        | -4.485    | 1.141 | -0.046  | *** | -5.917     | 1.619 | -0.043  | *** |
| 상수                 |        | 194.237   | 6.656 |         | *** | 216.910    | 9.499 |         | *** |
| 수정된 R <sup>2</sup> |        | .143      |       |         |     | .182       |       |         |     |
| F-값                |        | 87.934*** |       |         |     | 106.442*** |       |         |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특히 맞벌이 여부는 남성에게만 정(+)적 영향( $\beta=0.044$ ,  $p<.001$ )을 미쳤다. 맞벌이 가구일 때 남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증가했다. 다만 이것이 돌봄 분담 변화에 기인하는지, 가구 자원의 증가 효과에 따른 것인지는 본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근무·등교 여부는 남녀 모두에서 가장 큰 부(-)적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 당일의 시간 제약이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분업 인식의 효과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가장 선명하게 뒷받침한다. 남성의 경우 전통적 성별분업 인식이 강할수록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beta=0.050$ ,  $p<.001$ ).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남성의 시간 배분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여성 집단에서 성별분업 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설 3 지지).

주말 효과 또한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주말일 경우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beta=-0.040$ ,  $p<.001$ ), 남성에서는 이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말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여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만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 자원의 활용 방식이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조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사분담 만족도는 여성( $\beta=-0.046$ ,  $p<.001$ )과 남성( $\beta=-0.043$ ,  $p<.001$ ) 모두에서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4) 돌봄 조건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이 절에서는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성별과 10세 미만 자녀 유무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모형을 분석했다(표 7). 성별 분리 모형의 돌봄 필요 가구원 변수는 10세 미만 자녀 변수와 중첩되어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



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모형에서는 주요 돌봄 맥락인 ‘10세 미만 자녀’ 변수만 투입했다.

〈표 7〉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 10세 미만 자녀 돌봄과 성별의 상호작용

|                    |        | B          | S.E.  | $\beta$ | p   |
|--------------------|--------|------------|-------|---------|-----|
| 연령<br>(기준: 40~59세) | 20~39세 | 0.226      | 2.946 | 0.001   | -   |
|                    | 60~75세 | 4.900      | 2.381 | 0.021   | *   |
| 교육<br>(기준: 고등학교)   | 중학교 이하 | -5.170     | 3.001 | -0.017  | -   |
|                    | 대학 이상  | -13.476    | 2.135 | -0.061  | *** |
| 거주지역 규모(특별·광역시=1)  |        | 1.114      | 1.796 | 0.005   | -   |
| 주말 여부(일지 기준)       |        | -3.457     | 1.997 | -0.015  | -   |
| 경제활동 여부(일함=1)      |        | -14.740    | 3.351 | -0.061  | *** |
| 맞벌이 가구             |        | 10.008     | 2.411 | 0.045   | *** |
| 근무·등교(일지 기준)       |        | -63.944    | 2.664 | -0.288  | *** |
| 시간부족 인식            |        | -12.201    | 1.101 | -0.104  | *** |
| 성별분업 인식            |        | 3.801      | 1.122 | 0.029   | *** |
| 가사분담 만족도           |        | -5.216     | 0.942 | -0.047  | *** |
| 성별(남성=1)           |        | 30.549     | 2.169 | 0.138   | *** |
| 10세 미만 자녀(있음=1)    |        | -41.458    | 3.575 | -0.147  | *** |
| 성별×10세 미만 자녀       |        | 14.099     | 4.598 | 0.037   | **  |
| 상수                 |        | 184.382    | 5.330 |         | *** |
| 수정된 R <sup>2</sup> |        | .164       |       |         |     |
| F-값                |        | 170.183*** |       |         |     |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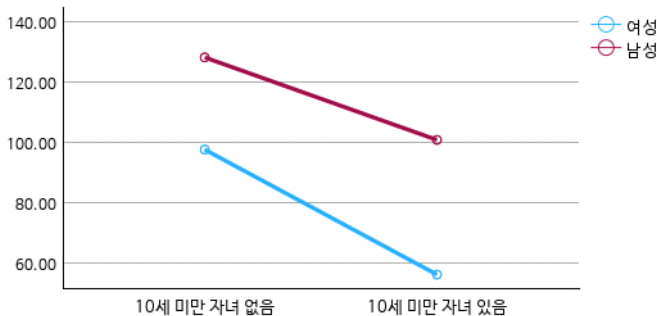
분석 결과, 10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beta = -0.147$ ,  $p < .001$ ), 성별과 10세 미만 자녀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 = 0.037$ ,

$p<.01$ ). 성별을 남성=1로 코딩한 상태에서 상호작용항이 정(+)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자녀 존재로 인한 디지털 시간 감소 효과가 여성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그림 1>의 예측값을 기준으로 보면, 1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약 30분 수준이었던 성별 간 시간 격차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약 44분 수준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라 여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은 약 41분 감소한 반면, 남성의 감소 폭은 약 27분 수준에 그쳤다.

종합하면,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은 돌봄 구조, 노동 조건, 그리고 성별 분업 인식이 결합된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돌봄 부담은 여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 감소와 더 크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상호작용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그림 1> 10세 미만 자녀 유무에 따른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의 성별 차이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배분되고 조직되는지를 분석했다. 이

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을 기술 접근성이나 이용 역량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기획할 수 있는 ‘시간 자율성’의 문제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재량 시간과 조건부 시간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도 젠더화된 시간 질서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은 총량뿐 아니라 활동 구성의 질적 차원에서 성별화되어 있었다(가설 1 지지).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그 시간은 주로 미디어·오락형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여성은 소통형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매팅리와 비안치(Mattingly and Bianchi, 2003)가 지적한 여성 여가의 중단 가능성과 다과업적 특성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터클(2011)의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상태’ 개념을 적용하면, 여성의 혼자 있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관계적 연결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일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는 여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순수한 재량 시간이라기보다 관계적 요구가 침투할 수 있는 ‘조건부 시간’의 성격을 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구조적 제약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가설 2 지지). 돌봄 필요 가구원의 존재는 여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을 남성보다 더 크게 감소시켰다. 이는 돌봄이 단순한 시간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구 내에서 누구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조정되는 자원으로 간주되는가와 관련된 가능성을 보여준다(Bianchi, Robinson, and Milkie, 2006).

특히 10세 미만 자녀 유무를 포함한 상호작용 분석에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성별 시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돌봄 조건에서도 여성의 시간이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즉, 돌봄 부담은 여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 감소와 더 크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일 경우 남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만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가구 내 자원 배분 구조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실제 돌봄 부담의 변화에 기인하는지, 가구 자원의 증가에 따른 시간 여유 효과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본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젠더 규범과 자원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간 배분을 조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Syrda, 2023).

가사분담 만족도가 높을수록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은 성별 구분 없이 나타났다. 이는 가구 내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 개인 시간보다 공유 시간을 우선하는 경향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효과 역시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가설 3 지지). 전통적 성별분업 인식은 남성의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 증가와 유의한 관련을 보인 한편, 여성 집단에서는 이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남성에게는 개인 시간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혹실드(1989)의 논의처럼 문화적 각본은 중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젠더 권력 관계 속에서 비대칭적으로 발현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비대칭성이 디지털 시간 배분에 서도 동일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넷째, 시간 자율성의 성별 격차는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는 그 격차가 작았고, 중장년층에서는 부분적으로 역전 양상이 나타났다으나, 노년층에서는 다시 성별 간 격차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남성의 재량 시간은 확대되는 데 반해, 여성의 시간 구조는 생애 후반에도 상대적으로 돌봄 중심 구조를 지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구딘 외(Goodin et al., 2008)의 재량 시간 논의를 디지털 맥락으로 확장하여, 시간 자율성이 디지털 이용의 실질적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조건임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불평등은 기술 접근이나 역량 격차를 넘어, 시간 접근권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시간적 정의(temporal justice)’의 분석 틀을 디지털 사회에 적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책적 함의 역시 명확하다. 돌봄 책임의 젠더 편향적 구조와 노동시간의 경직성이 완화되지 않는 한, 기술 접근성 확대 정책만으로는 디지털 삶의 질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간 불평등은 돌봄의 사회적 재분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김수영, 2024), 성평등 정책은 인식 개선을 넘어 돌봄의 사회화, 유연근무제 확대, 가사·돌봄 노동의 성별 재분배 등 시간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하는 구조적 개입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유배우자 가구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여 다양한 가구 형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물리적 분리를 기준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서적 자율성이나 중단 가능성을 직접 측정하지 못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구소득은 시간 자율성과 디지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지만, 생활시간조사에서 해당 항목의 무응답 비율이 높아 제외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고 질적 연구를 수행해 시간 자율성의 변화 과정과 그 의미를 풍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포함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디지털 시간의 정서적 질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 역시 과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성별에 따라 구조적으로 다르게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혼자 있는 디지털 시간은 개인적 취향의 산물이 아니라, 돌봄 구조와 노동 조건, 그리고 젠더 규범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자원이다. 디지털 시대의 평등은 기술 접근의 확대를 넘어, 시간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평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김복수. 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학』 34(2): 185-218.
- 김소영 · 진미정. 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4(3): 65-84.
- 김수영. 2024. “초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본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16(1): 1-63.
- 김진옥 · 고은주. 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 손문균. 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5: 239-287.
- 은기수. 2010.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 시청 시간의 성별 차이.” 『한국학』 33(4): 395-427.
- 이재현. 2005. “인터넷, 전통적 미디어, 그리고 생활시간 패턴: 시간 재할당 가설의 제안.” 『한국언론학보』 49(2): 224-254.
- 차승은. 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최유정 · 최미라 · 최샛별. 2019. “가정 내 역할 수행 및 돌봄 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50(1): 1-28.
- 홍남희. 2012. “초기 모성수행기 여성들의 스마트폰 이용.” 『미디어, 젠더 & 문화』 21: 135-164.

Bianchi, Suzanne M., John P. Robinson, and Melissa A. Milkie.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Bittman, Michael and Judy Wajcman. 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165-189.

Doucet, Andrea. 2023. “‘Time Is Not Time Is Not Time’: A Feminist Ecological Approach to Clock Time, Process Time, and Care Responsibilities.” *Time & Society* 32(4): 434-460.

García Román, Joan and Pablo Gracia. 2022. “Gender Differences in Time Use across

- Age Groups: A Study of Ten Industrialized Countries, 2005-2015.” *PLoS ONE* 17(3): e0264411.
- Gershuny, Jonathan.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urge, Laura M., Ashley V. Whillans, and Colin West. 2020. “Why Time Poverty Matters for Individuals, Organisations and Nations.” *Nature Human Behaviour* 4(10): 993-1003.
- Goodin, Robert E., James M. Rice, Antti Parpo, and Lina Eriksson. 2008. *Discretionary Time: A New Measure of Free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stein, Theodore N. 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3): 585-595.
- Hargittai, Eszter. 2002. “Second-Level Digital Divide: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s.” *First Monday* 7(4).
- Hochschild, Arlie Russell. 1989.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Viking.
- Hu, Yilin and Yue Qian. 2024. “Gendering Digital Labor: Work and Family Digital Communication across 29 Countries.” *Community, Work & Family* 27(5): 588-611.
- Juster, F. Thomas and Frank P. Stafford, eds. 1985. *Time, Goods, and Well-Being*. Ann Arbo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 Kan, Man-Yee and Stephen Pudney. 2008. “Measurement Error in Stylized and Diary Data on Time Use.” *Sociological Methodology* 38(1): 101-132.
- Long, Christopher R. and James R. Averill. 2003. “Solitude: An Exploration of Benefits of Being Alon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3(1): 21-44.
- Mattingly, Marybeth J. and Suzanne M. Bianchi. 2003. “Gender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ree Time: The U.S. Experience.” *Social Forces* 81(3): 999-1030.
- Qian, Yue and Xiaonan Lu. 2025. “Whose Gender Ideology Matters? A Dyadic Analysis of Gender Ideology and Housework Time in the United Kingdom.” *European Societies* 27(2): 320-347.
- Robinson, John P. and Geoffrey Godbey. 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 Americans Use Their Time*,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yrda, Joanna. 2023. "Relative Earning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7(3): 563-582.
- Turkle, Sherry. 2011. *Alone Together: Why We Expect More from Technology and Less from Each Other*, New York: Basic Books.
- Van Dijk, Jan A. G. M. 2017. "Digital Divide: Impact of Access." Patrick Rössler(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Effects*, Malden, MA: Wiley-Blackwell, 1-11.
- Vickery, Clair. 1977. "The Time-Poor: A New Look at Poverty."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1): 27-48.
- Wajcman, Judy. 2015. *Pressed for Time: The Acceleration of Life in Digital Capit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st, Candace and Don H. Zimmerman. 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1(2): 125-151.

통계청. 2025.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Abstract

## The Gendering of Alone Digital Time – Inequality in the Right to Time Access

Kim, Kyungmi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ime spent alone using digital media is distributed and organized differently by gender in a society where digital media use has become ubiquitous. Going beyond conventional frameworks of digital inequality that focus on technological access or digital skills, this study reconceptualizes digital inequality as a matter of the right to time access and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distinguishes between discretionary time and conditional time. Using data from the 2024 Korean Time Use Survey, the analysis focuses on married adults aged 20-75 ( $N = 13,338$ ).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s t-tests, and gender-stratified OLS regression models are employed. The findings reveal significant gender disparities in both the amount and composition of time spent alone using digital media. Men have more such time than women and tend to use it primarily for media and entertainment-oriented, self-directed activities. In contrast, women's time is more oriented toward communication activities, suggesting a more relationally oriented pattern of use. The presence of care-dependent household members reduces women's alone digital time to a significantly greater extent than men's, with the gender gap widening further in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age 10. In addition,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increase time spent alone using digital media only among men.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both structural constraints and ideological

factors operate asymmetrically within gendered power relations. The results confirm that a gendered temporal order persists even in digital environments and suggest that achieving digital equality requires moving beyond technological access toward equality in time autonomy—that is, a perspective of temporal justice.

**Key words:** alone digital time, time autonomy, discretionary time, gender inequality, temporal justice

- 투 고 일 : 2026년 3월 1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3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4일

# 가사육아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2015~2025년 성별 일자리 질 비교를 중심으로\*

문지선\*\*

## | 목차 |

1. 서론
2.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3. 분석 결과
4. 결론 및 논의

## | 초록 |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가사육아직의 양적 규모 외에도 임금, 노동시간, 근속기간 등의 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성별로 비교 분석했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여성은 임시일용직, 남성은 1인 자영업자 중심’의 증가가 강화돼 남성의 비임금 노동자화라는 풍선효과가 의심됐다. 또 고용계약기간을 안 정한 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단시간 노동을 장기간 해온 면이 강했고, 상용직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종사상 지위별 임금 불평등이 성별 불평등보다 더 크고, 각 범주 간 불평등보다 범주 내 불평등이 더 크지만,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전체 임금 불평등이 증가한 면이 있었다. 또 여타 직종에 비해 전체적인 노동시장 취약계층 비율도 내내 가장 높았다. 따라서 가사육아직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많고, 성별과 고용형태별 그리고 그 내부의 임금 불평등도 크지만, 특히 경제 위기 때 성별을 중심으로 임금 불평등이 더 커지는 등 가장 열악한 노동시장이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한 제대로 된 규모 추정 조사, 직종 및 플랫폼 업체 등의 업종 분류 체계 재정비, 직종 세분류까지의 데이터 공

\* 글이 정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논평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moonjisun@keli.kr

개, 노무제공자 지정을 통한 전체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 근속수당 도입 같은 인사 노무 관리의 체계화 등 무엇보다 가사육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집중한 정책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다.

**주제어 :** 가사육아직, 돌봄노동시장, 노동자 부족, 일자리의 질, 플랫폼 경제

## 1. 서론

가사육아 노동자가 없다고 난리다. 공급 부족을 들어 2024년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돌봄서비스업을 고용 허가제 업종에 포함하고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채민석 외, 2024). 그런데 본래 가사노동시간은 가 전제품이 보편화되는 등 가사기술이 발전해도 잘 줄지 않는다. 오히려 가 전제품의 발전이 청결에 대한 기준을 높이면서 가사일 양을 늘려 가사노동시간이 증가되는 ‘코완의 패러독스’가 있고, 기술 자체가 ‘여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생활이 보장되는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도 했다(김덕호, 2021: 288-289; 321-322). 더욱이 보육정책 중 필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로 국공립시설확충이 양육비지원에 이어 뽑히고(안윤숙 · 이상호, 2010: 248)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등(양미선 외, 2016: 50, 57) 공보육 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할수록 가사육아노동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면도 있다(『월간조선』, 2024. 2월.). 그렇다면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왜 축소되고 있는 것일까.

가사일의 일차적 책임을 요구받는 여성이 시장노동을 한다는 것은 노동의 기회비용이 대체비용 곧 가사일의 외주화 비용보다 더 크다는 뜻이

다. 따라서 가사육아 노동자의 임금은 여성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일 수밖에 없다(우에노 지즈코, 2024: 248). 그렇다면 가사육아노동자는 열악한 일자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의 하층계급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가사육아시장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도 모순적으로 축소되는 이유가 다름 아닌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질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작년 9월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폐기를 발표한 만큼(『세계일보』, 2025. 9. 7.), 이제는 국내 노동자로 충원 가능할 정도의 양질의 가사육아 일자리 육성이 중요한 때다. 즉 가사육아 노동시장이 열악할수록 인력이 부족하고 돌봄의 질도 저하되어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잃게 됨으로써 결국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되므로, 일자리 질 분석을 통해 가사육아노동이 저평가된 현실을 짚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동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일자리 질 측면에서 천착하면서, 가사육아시장의 축소 변화 이면에 있는 일자리 질의 특성을 면면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간 가사노동자는 법적으로 ‘가사사용인’으로 불리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2022년 6월부터 가사육아노동자 대상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가사근로자’라는 법적 지위를 얻어 4대보험, 퇴직금 등을 적용받고,<sup>1)</sup> 2023년부터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설립돼 상담, 교육 등도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규모 파악도 안 되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직종 소분류까지 구분해 가사육아직을 살펴볼 수 있지만, 기숙시설이나 집단 거주시설 거주자는 제외한 채 일반 가구만 조사하고, 국적을 구분하지 않아 내·외국인 취업자 수도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가사육

1) 가사랑 홈페이지(<https://www.gasarang.go.kr>)상 2026년 3월 기준 128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이 존재한다.

아 노동자는 10만 명대에서 최대 60만 명까지 추정되는데(조선비즈, 2023.6.5.),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약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로 보며 이 중 약 10%인 5만 명 내외를 중국동포로 추산한다(최영미, 2021: 5; 최영미, 2022: 3).

또 돌봄보건의서비스 노동시장과 함께 60세 이상 여성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보건의서비스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고 시간당 임금도 더 낮다. 더욱이 ‘음식과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보다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이 낮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규용, 2023: 12, 17, 23). 실제로 가사육아직의 저임금 노동자는 2022년 기준 여성 47.4%, 남성 64.8%로 남녀 모두 열악하다(김난주, 2023: 35-36). 하지만 가사육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성별로 비교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나마 개발도상국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제 적용을 강조한 글이 성별 임금을 비교하면서 여성 지배적인 가사노동도 남성보다 임금이 더 낮음을 보였는데, 2000년대 중반 여성 임금이 터키만 남성보다 더 높았을 뿐(1.2배)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성의 50~60% 수준밖에 안 됐고, 브라질(73%), 남아프리카(77%), 베트남(88%)만 남성에 근접했다. 그래도 2010년대 중반에는 다른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자도 성별 임금격차가 좁혀졌는데, 그럼에도 코스타리카(여성이 남성의 1.6배), 말리(99%), 베트남(1.1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전체 업종의 평균 임금격차보다 더 컸다(Oelz and Rani, 2015: 6).

더욱이 가사노동자는 다른 업종보다 임금이 낮으면서 더 하락하는 면도 있는데, 이는 돌봄노동을 정서적 유대와 책임 등 도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간주해 내적 동기 등 본질적 특성을 강조하면서(폴브레, 2007: 74, 108) 돌봄노동자의 협상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백안시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실제로 육아, 의료, 교육, 치료사, 사회복지사, 성직자까지 포함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직종을 분석한 연구는 고정효과분석으로 성별 구

성을 비롯해 기술 요구 사항, 자격 등의 직업 특성, 그리고 학력, 경력 기간 등 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낮아, 똑같은 조건의 여성이 돌봄노동을 할 때 이 요인들 외에도 예컨대 ‘돌봄대상자의 지불 능력 부족, 돌봄노동을 모성과 연관지으며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평가절하 인식, 생산성을 임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노동집약적인 돌봄 노동 특성, 내재적 동기 즉 이타주의로 낮은 임금도 감수하는 노동자의 선호’ 등에 의해 남성이나 다른 직종의 여성들보다도 ‘임금 불이익(wage penalty)’이 있음을 보였다(England et al., 2002). 문제는 이같이 돌봄을 노동으로 보지 않고 여성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치부하는 ‘재생산 노동의 자연화’ 내지 ‘감정노동의 자연화’로 인해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돌봄의 강제성’ 특성이(갯비, 2024: 100, 164, 192) 가사육아시장을 비롯한 돌봄시장에서 어떻게 성별로 다른 노동조건 등으로 투영되는지 분석한 글이 적다는 데 있다.

더구나 2015년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미소’ 같은 가사서비스 플랫폼이 시작된 이후 2016년 ‘당신의 집사’, 2017년 ‘청소연구소’를 거쳐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어 왔다. 2016년에는 ‘짜깁악어’, ‘자란다’, ‘놀담((주)잘노는)’, ‘맘시터’ 등 양육 및 교육서비스 플랫폼도 본격 등장했다. 따라서 가사육아시장은 2015년부터 플랫폼 경제로 들어와 노동의 변화가 크고, 특히 2020년에는 가정 내 노동의 특성상 코로나19 영향도 컸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시적 분석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통계 자료 한계상 ‘지역별 고용조사(상반기)’를 활용하여 직종을 기준으로 가사육아 노동시장을 구분하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에 걸쳐 규모와 인적 구성 등의 양적 특성을 비롯해 노동시간과 임금, 근속기간 등의 일자리의 질을 성별로 비교한다. 또 ‘돌봄보건서비스 노동시장’, 이 두 직종을 제외한 ‘기타 노동시장’,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과도 비교하여,<sup>2)</sup> 똑같이 여성이 다수이면서 돌봄노동 일자리인 돌봄보건서비스시장과의 차이점 및 전체 한국 노동시장 맥락에

서의 합의를 고찰해본다.

구체적으로 2장은 질적 및 양적 가사육아 노동 특성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3장은 기술분석 및 타일지수 분해분석을 이용해 규모와 임금, 노동시간, 근속기간, 임금 불평등 등의 일자리 질을 성별로 비교한다. 마지막 4장은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변화, 구체적으로 축소 과정에서 드러난 일자리 질의 특성을 종합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 2.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은 같은 돌봄노동이지만 이질적인데, 가사노동은 노동 자체와 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어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지만, 육아노동은 돌봄대상자와 돌봄제공자 간 상호행위성의 맥락에서 이뤄져 노동과 행위자가 잘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우에노 지즈코, 2024: 230). 하지만 가사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가사서비스도 점점 전문화되면서 가

- 
- 2) ‘지역별 고용조사’의 직종 소분류상 이 연구의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가사 및 육아 도우미(951)’를 지칭한다. 제7차 한국표준 직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가사 도우미’에는 ‘가사보조원, 파출부, 가정부, 가사쇼핑 대행원’, ‘육아 도우미’에는 ‘유모와 보모’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가정과 아동을 돌보는 기능을 함에도 대분류상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9)’로 분류된다.

반면 ‘돌봄보건서비스 노동시장’은 소분류상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421)’로서, 돌봄보건서비스직에 해당되는 하위 직업 항목으로는 ‘돌봄서비스 종사원’에 속하는 ‘요양 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인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교사 교육 보조원’,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에 해당하는 ‘산후조리 종사원, 치료사 보조원, 그 외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이 있다. 그런데 ‘가사육아 노동시장’과 똑같이 돌봄노동을 수행함에도 직종 대분류상 ‘서비스 종사자(4)’로 구분된다(통계청, 2017).

한편 2025년부터는 8차 직업분류에 따라 기존의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421)’가 ‘교사 보조 및 아동 돌봄 종사자’(421),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422),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423),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429)로 분리되었다(통계청, 2024: 944-945). 이에 2025년 ‘돌봄보건서비스 노동시장’은 이 4개 직종을 포함하여 분류했다.



사노동자 역시 고객관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생산노동 담당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또 빈곤가구 여성일지라도 가사노동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게 됐고, 모성정체성도 돌봄이 아닌 생계노동에 근간해 긍정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강석금, 2015: 261-265).

그러나 가사육아노동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여성이 다수인 일자리로 돌봄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 및 가사육아 일 자체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까지 중첩되어 임금이 더 낮은 특성이 있다. 또 가족의 문화를 강조해 일에 대한 통제권도 없으며, 감정부조화로 인해 몸이 아플 정도로 감정노동 강도도 세다(문희숙 외, 2024). 특히 육아 노동자는 사투리 여부, 아이 돌봄 교육 이수, 학력 및 경력 등 세밀한 검증을 받기도 한다(주수인, 2023: 68). 하지만 주된 노동자인 중고령층 여성으로서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가사노동자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같이 진입장벽은 낮으면서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돌봄노동뿐이어서 이를 감내하게 된다. 그만큼 돌봄노동은 그간 해오던 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막다른 일의 성격이 강하다(김도균, 2021: 179; 황덕순, 2013: 12).

코로나19는 가사육아 노동시장을 더욱 황폐화시켰다. 주 평균 노동시간이 가사노동자는 코로나19 이전 21.7시간으로 15~36시간 노동(42.4%)이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 이후 13.2시간으로 줄고 15시간 미만 노동(46.6%)이 가장 많아졌다. 아이돌보미도 22.8시간으로 15~36시간 노동(44.2%)이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 이후 15.3시간으로 감소하고 15시간 미만 노동(약 41.4%)이 가장 많아져, 코로나19로 가사육아 일의 시간제 노동 특성이 초단시간 노동으로 강화됐음을 시사했다.

또 월 평균 수입도 가사노동자는 코로나19 이전 112.3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63.9만원으로 줄었고, 아이돌보미도 123.5만원에서 코로나19 이후 88.1만원으로 줄었다. 더욱이 가사노동자는 국민연금(52.8%)과 고용보험(84.1%) 미가입률도 아이돌보미(각각 14.8%, 4.8%)보다 더 높았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2020년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약 80%의 가사노동자가 수입이 줄었는데, 사회보험 가입률이 국민연금 35%, 고용보험 18%, 건강보험 72%, 산재보험 10%로 상술한 조사와 비슷했고, 사회보험이 전무한 경우도 21%나 되었다(최영미, 2021: 45). 이처럼 가사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임금과 사회보장률이 더 낮다 보니, 코로나19 당시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는 ‘재난지원금 등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과 보조금’, 2순위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이 높았다. 반면 아이돌보미는 1순위 ‘기초근무시간 보장’, 2순위는 ‘교통비, 점심식사비 등 부대 비용 지원’ 비율이 높았다(김난주 외, 2020: 12-47).<sup>3)</sup>

플랫폼 경제에서 가사육아노동자는 고용도 불안정하다. 2019년 (주)홈토리생활은 플랫폼 업계 중 최초로 대리주부 소속 가사노동자(홈 매니저)와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직업안정법 33조 3항 1호는 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에만 허가하고 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관련 동법 시행령 2조 1항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파견대상 업무도 아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무효라 홈 매니저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2019.11.27.)가 허가해 법률을 무시했다고도 비판받았다(이준희, 2021: 166-168).

그러다 2022년 파견법의 예외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3) 그나마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인증 기관의 가사육아노동자는 최대 3년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보험 가입 벽이 낮아졌다. 하지만 가사육아노동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은데, 65세가 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고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는 실업급여 대상자도 못 되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액 중 선택 지원을 바라는 상황이다(최영미, 2022: 6).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계약자일 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가사근로자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frac{1}{100}$ 도 안 되는 1,500여 명 내외에 불과하다(이춘희, 2024: 153). 현재 유명 가사노동 플랫폼 업체 중에서도 (주)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 외에는 '미소', '당신의 집사', '청소연구소' 등 어느 곳도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성격의 가사육아 플랫폼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 내 사적 고용 상태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노동자는 소속 업체에 따라 달라 노동의 공식성 여부에 따른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양분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외국 인력이 도입되면 전일제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소득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구분되며 일자리뿐만 아니라 가사육아서비스도 양극화될 위험이 있다(최영미, 2023: 9).

이밖에도 외국인 가사육아노동자의 도입은 첫째, 휴식 시간과 거주지, 노동시간 등 적정 근로조건의 보장(조혁진, 2023), 둘째, 상호작용적 돌봄행위의 가능성(장주영, 2023; 최영미, 2023), 셋째, 주로 중고령 내국인 여성이 담당했던 일자리의 잠식과 사회 분열(Choi, 2011; 최영미, 2023),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돌봄노동을 공적 돌봄이 아닌 초국적 돌봄노동 분업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비판(김양숙, 2022) 등 크게 네 가지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고용허가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 사업 종류별 구분 가능 조항에 의거한 돌봄서비스업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돌봄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돼 저숙련 돌봄서비스직의 임금이 더 하락하면, 고숙련 돌봄서비스직이나 생산성이 높은 다른 산업으로 노동 이동이 증가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것도 한 이유이다(채민석 외, 2024: 16-17, 23).

그러나 가사육아직 등의 공급 부족은 1차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기피 때문으로,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이주 노동자마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 인력 도입은 불법체류와 차별 등의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저출생과 정채된 여성고용률 등을 고려하면 돌봄노동의 노동생산성을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로 돌봄노동을 공공화하여 ‘공공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비판된다(이춘희, 2024: 154-155).

또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면 노동 공급 증가로 임금이 하향평준화되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내국인 인력풀이 더 적어지고, 남은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더 열악한 하층민으로 전락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더 격화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주로 맞벌이 여성이 가사노동을 소비하며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해 온 한국사회의 공고한 성별노동분업, 중고령 여성 중심의 열악한 일자리, 그리고 이제 외국인까지 유입돼 돌봄노동의 가치 절하가 심화될 위기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국가 주도로 돌봄이 사회화 되더라도 오히려 성별, 연령별, 직종별, 인종별 범주가 중첩된 교차적 차별에 의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김화연 외, 2024: 201). 따라서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는 양적 특성은 여성 고령층 중심의 노동력과 열악한 임금 및 노동환경, 그리고 이주 노동자 유입에 따른 계속적인 일자리 질 하방 압력 등이 결부된 질적 특성의 구조적 결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공급 부족도 단순히 외국 인력 유입으로 해결하기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식의 접근이 요구된다(주수인, 2023: 71).

이에 본 연구는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에 주목하여 노동자 부족 등의 노동 상황을 분석하고, 계도화되는 가사육아 노동시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Kalleberg(2011: 9-10)는 좋은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근속 기간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기회, 건강보험과 연금 수

당 등의 부가급여, 일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 기회, 근무 일정과 고용 조건에 대한 유연성과 통제권, 일의 종료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하는 일자리로 규정한다. 즉 일정 수준의 소득과 사회보험의 보장 외에도 업무 내용, 일정,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이 중요한데, 실제로 많은 실증 연구들은 좋은 일자리의 주요 지표로 '임금, 정규직이나 전일제 상용직 등의 고용안정성, 적절한 노동시간'을 활용하면서(이순국, 2024: 316), 이밖에 직업의 사회적 위세,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근무시간 등 직무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직무만족도, 직무 자율성과 결정권, 숙련향상 가능성과 승진가능성, 노동자 이해대변 등 발언권, 상호호혜적인 인간관계, 일가정 양립, 산재보험 적용률 등 안전한 작업환경, 경력개발 교육과 훈련 등도 고려하고 있다(홍성우, 2008; 남기성 외, 2021; 박은하, 2011; 방하남 외, 2007; 이성균, 2011; 문순영 외, 2010; 이문호 외, 2018).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적정 노동시간 여부를 반영한 '고용안정성', 소득 증가와 진급 가능성 등의 '직업안정성', 근무환경에 관한 '작업장안정성', 교육훈련 기회가 있거나 자신의 교육수준과 기술을 활용 가능한지의 '기술재생산 안정성',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지의 '옹호 안정성', 저임금 노동이 아니고 부가급여가 있는지의 '소득안정성' 등 6가지 안정성 지표를 수정해 전문서비스직, 단순서비스직, 가사육아직을 비교한 연구는 가사육아직이 야말로 노동시간이 양극화되어 있는 등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음을 보인 바 있다(백학영, 2016).

그런데 '지역별 고용조사'는 4대보험과 근무 일정, 유연근무제, 승진이나 교육훈련 경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일자리 질의 여러 요건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임금과 임금 불평등, 노동시간 그리고 근속기간만을 고려해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을 성별로 비교하고, 양적 및 질적 특성을 종합해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 3. 분석 결과

#### 1)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규모와 인적 구성

2015년 21만 8천여 명의 취업자가 일했던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10년이 지난 2025년 11만여 명, 약 46%로 거의 반토막 났다(〈표 1〉 참조). 임금노동자도 2025년 10만 3천여 명으로 2015년 16만 6천여 명의 약 62.3%로 급감했다. 반면 유사한 돌봄노동을 하는 돌봄보건서비스직 취업자는 2배 이상 증가해 대조를 보인다(〈표 2〉 참조).

성별로 보면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 남녀 모두 취업자와 임금노동자가 증가했고, 남성은 역대 최대였다(취업자 4,178명, 임금노동자 3,911명). 최근 2024~2025년에도 남성 취업자가 늘었고, 임금노동자도 2023~2024년에는 여성 주도로 많아졌지만, 2025년의 경우 남성이 전년도 약 4배 증가했다(〈표 1〉 참조). 그래도 여성이 항상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돌봄보건서비스 노동시장도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은 늘 90% 이상이었다(〈표 2〉 참조). 거의 항상 남성 취업자 비중은 6%대인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약 11배에서 18배 많았다. 가사육아직 취업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최소 약 32배(2020년)에서 최대 약 248배(2016년) 더 많았고, 취업자 중 남성 비율은 2020년 3.1%로 가장 높았을 뿐 대부분 1% 이내였다. 그러나 가사육아직이나 돌봄보건서비스직이 아닌 기타 직종의 여성은 취업자 중 40%대, 남성의 70% 정도에 불과했다가 최근인 2024~2025년에야 남성의 약 80%로 증가했다. 따라서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규모가 축소되지만 돌봄보건서비스직보다도 더 큰 성차의 강한 여성지배직종’이라 할 수 있다.

〈표 1〉 가사육아직 취업자와 임금노동자의 10여 년 전과 최근 구성  
(단위: 명, %)

|      |    | 임금노동자          |                  |                  |                    | 고용원<br>있는<br>자영업자 | 고용원<br>없는<br>자영업자 | 무급<br>가족<br>종사자 | 전체<br>취업자          |
|------|----|----------------|------------------|------------------|--------------------|-------------------|-------------------|-----------------|--------------------|
|      |    | 상용<br>근로자      | 임시<br>근로자        | 일용<br>근로자        | 세로<br>합계           |                   |                   |                 |                    |
| 2015 | 전체 | 7,343<br>(3.4) | 99,902<br>(45.6) | 59,304<br>(27.1) | 166,549<br>(100.0) | 182<br>(0.1)      | 51,944<br>(23.7)  | 304<br>(0.1)    | 218,979<br>(100.0) |
|      | 남성 | 0<br>(0.0)     | 1,057<br>(65.0)  | 0<br>(0.0)       | 1,057<br>(0.6)     | 0<br>(0.0)        | 568<br>(35.0)     | 0<br>(0.0)      | 1,625<br>(100.0)   |
|      | 여성 | 7,343<br>(3.4) | 98,845<br>(45.5) | 59,304<br>(27.3) | 165,492<br>(99.4)  | 182<br>(0.1)      | 51,376<br>(23.6)  | 304<br>(0.1)    | 217,354<br>(100.0) |
| 2020 | 전체 | 5,348<br>(3.9) | 82,052<br>(60.0) | 32,157<br>(23.5) | 119,558<br>(100.0) | 0<br>(0.0)        | 17,205<br>(12.6)  | 44<br>(0.03)    | 136,807<br>(100.0) |
|      | 남성 | 0<br>(0.0)     | 3,911<br>(93.6)  | 0<br>(0.0)       | 3,911<br>(3.3)     | 0<br>(0.0)        | 267<br>(6.4)      | 0<br>(0.0)      | 4,178<br>(100.0)   |
|      | 여성 | 5,348<br>(4.0) | 78,142<br>(58.9) | 32,157<br>(24.3) | 115,647<br>(96.7)  | 0<br>(0.0)        | 16,938<br>(12.8)  | 44<br>(0.0)     | 132,629<br>(100.0) |
| 2021 | 전체 | 8,670<br>(6.8) | 73,503<br>(58.0) | 30,326<br>(23.9) | 112,498<br>(100.0) | 0<br>(0.0)        | 14,285<br>(11.3)  | 0<br>(0.0)      | 126,783<br>(100.0) |
|      | 남성 | 0<br>(0.0)     | 2,002<br>(75.9)  | 40<br>(1.5)      | 2,043<br>(1.8)     | 0<br>(0.0)        | 595<br>(22.6)     | 0<br>(0.0)      | 2,637<br>(100.0)   |
|      | 여성 | 8,670<br>(7.0) | 71,500<br>(57.6) | 30,286<br>(24.4) | 110,456<br>(98.2)  | 0<br>(0.0)        | 13,690<br>(11.0)  | 0<br>(0.0)      | 124,145<br>(100.0) |
| 2022 | 전체 | 4,825<br>(4.5) | 71,339<br>(66.7) | 22,086<br>(20.7) | 98,250<br>(100.0)  | 0<br>(0.0)        | 8,709<br>(8.1)    | 0<br>(0.0)      | 106,959<br>(100.0) |
|      | 남성 | 0<br>(0.0)     | 513<br>(61.2)    | 101<br>(12.0)    | 614<br>(0.6)       | 0<br>(0.0)        | 225<br>(26.8)     | 0<br>(0.0)      | 839<br>(100.0)     |
|      | 여성 | 4,825<br>(4.6) | 70,826<br>(66.7) | 21,985<br>(20.7) | 97,636<br>(99.4)   | 0<br>(0.0)        | 8,485<br>(8.0)    | 0<br>(0.0)      | 106,120<br>(100.0) |
| 2023 | 전체 | 4,863<br>(4.2) | 76,360<br>(66.5) | 24,538<br>(21.4) | 105,761<br>(100.0) | 0<br>(0.0)        | 9,128<br>(8.0)    | 0<br>(0.0)      | 114,890<br>(100.0) |
|      | 남성 | 0<br>(0.0)     | 289<br>(40.0)    | 227<br>(31.5)    | 516<br>(0.5)       | 0<br>(0.0)        | 206<br>(28.5)     | 0<br>(0.0)      | 722<br>(100.0)     |
|      | 여성 | 4,863<br>(4.3) | 76,071<br>(66.6) | 24,311<br>(21.3) | 105,245<br>(99.5)  | 0<br>(0.0)        | 8,922<br>(7.8)    | 0<br>(0.0)      | 114,168<br>(100.0) |

|      |    | 임금노동자          |                  |                  |                    | 고용원<br>있는<br>자영업자 | 고용원<br>없는<br>자영업자 | 무급<br>가족<br>종사자 | 전체<br>취업자          |
|------|----|----------------|------------------|------------------|--------------------|-------------------|-------------------|-----------------|--------------------|
|      |    | 상용<br>근로자      | 임시<br>근로자        | 일용<br>근로자        | 세로 합계              |                   |                   |                 |                    |
| 2024 | 전체 | 8,031<br>(7.0) | 78,096<br>(68.1) | 21,086<br>(18.4) | 107,213<br>(100.0) | 0<br>(0.0)        | 7,426<br>(6.5)    | 0<br>(0.0)      | 114,639<br>(100.0) |
|      | 남성 | 0<br>(0.0)     | 462<br>(31.7)    | 0<br>(0.0)       | 462<br>(0.4)       | 0<br>(0.0)        | 998<br>(68.4)     | 0<br>(0.0)      | 1,460<br>(100.0)   |
|      | 여성 | 8,031<br>(7.1) | 77,634<br>(68.6) | 21,086<br>(18.6) | 106,751<br>(99.6)  | 0<br>(0.0)        | 6,428<br>(5.7)    | 0<br>(0.0)      | 113,179<br>(100.0) |
| 2025 | 전체 | 4,949<br>(4.5) | 79,208<br>(72.0) | 19,572<br>(17.8) | 103,729<br>(100.0) | 0<br>(0.0)        | 6,328<br>(5.8)    | 0<br>(0.0)      | 110,057<br>(100.0) |
|      | 남성 | 0<br>(0.0)     | 861<br>(38.4)    | 838<br>(37.4)    | 1,699<br>(100.0)   | 0<br>(0.0)        | 540<br>(24.1)     | 0<br>(0.0)      | 2,239<br>(100.0)   |
|      | 여성 | 4,949<br>(4.6) | 78,347<br>(72.7) | 18,734<br>(17.4) | 102,030<br>(100.0) | 0<br>(0.0)        | 5,788<br>(5.4)    | 0<br>(0.0)      | 107,818<br>(100.0) |

〈표 2〉 직종별 취업자의 10여 년 전과 최근 성별 구성비 (단위: 명, %)

|      |    | 가사육아<br>노동시장 |       | 돌봄보건서비스<br>노동시장 |       | 기타<br>노동시장 |       | 전체         |       |
|------|----|--------------|-------|-----------------|-------|------------|-------|------------|-------|
| 2016 | 전체 | 183,649      | 100.0 | 392,119         | 100.0 | 25,748,948 | 100.0 | 26,324,715 | 100.0 |
|      | 남성 | 739          | 0.4   | 25,560          | 6.5   | 15,164,195 | 58.9  | 15,190,494 | 57.7  |
|      | 여성 | 182,910      | 99.6  | 366,559         | 93.5  | 10,584,753 | 41.1  | 11,134,221 | 42.3  |
|      | 성비 | 247.5        |       | 14.3            |       | 0.7        |       | 0.7        |       |
| 2020 | 전체 | 136,807      | 100.0 | 532,162         | 100.0 | 25,893,201 | 100.0 | 26,562,170 | 100.0 |
|      | 남성 | 4,178        | 3.1   | 32,542          | 6.1   | 15,200,101 | 58.7  | 15,236,821 | 57.4  |
|      | 여성 | 132,629      | 97.0  | 499,620         | 93.9  | 10,693,100 | 41.3  | 11,325,349 | 42.6  |
|      | 성비 | 31.7         |       | 15.4            |       | 0.7        |       | 0.7        |       |
| 2021 | 전체 | 126,783      | 100.0 | 591,289         | 100.0 | 26,495,520 | 100.0 | 27,213,592 | 100.0 |
|      | 남성 | 2,637        | 2.1   | 37,174          | 6.3   | 15,474,606 | 58.4  | 15,514,417 | 57.0  |
|      | 여성 | 124,145      | 97.9  | 554,116         | 93.7  | 11,020,914 | 41.6  | 11,699,175 | 43.0  |
|      | 성비 | 47.1         |       | 14.9            |       | 0.7        |       | 0.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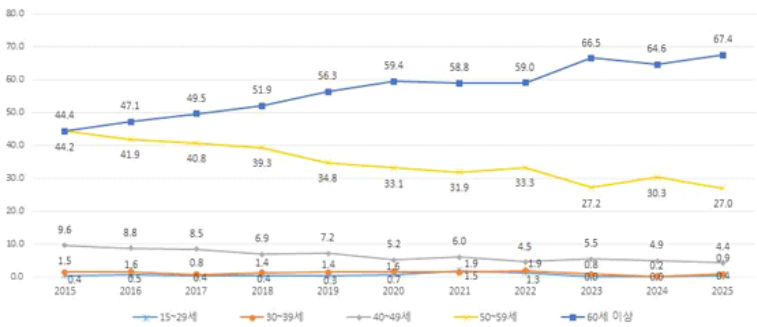


|      |    | 가사육아<br>노동시장 |       | 돌봄보건의서비스<br>노동시장 |       | 기타<br>노동시장 |       | 전체         |       |
|------|----|--------------|-------|------------------|-------|------------|-------|------------|-------|
| 2022 | 전체 | 106,959      | 100.0 | 646,509          | 100.0 | 27,324,841 | 100.0 | 28,078,310 | 100.0 |
|      | 남성 | 839          | 0.8   | 42,070           | 6.5   | 15,890,540 | 58.2  | 15,933,449 | 56.8  |
|      | 여성 | 106,120      | 99.2  | 604,440          | 93.5  | 11,434,301 | 41.9  | 12,144,861 | 43.3  |
|      | 성비 | 126.5        |       | 14.4             |       | 0.7        |       | 0.8        |       |
| 2023 | 전체 | 114,890      | 100.0 | 672,182          | 100.0 | 27,644,995 | 100.0 | 28,432,067 | 100.0 |
|      | 남성 | 722          | 0.6   | 45,784           | 6.8   | 15,895,979 | 57.5  | 15,942,485 | 56.1  |
|      | 여성 | 114,168      | 99.4  | 626,399          | 93.2  | 11,749,016 | 42.5  | 12,489,582 | 43.9  |
|      | 성비 | 158.1        |       | 13.7             |       | 0.7        |       | 0.8        |       |
| 2024 | 전체 | 114,639      | 100.0 | 721,509          | 100.0 | 27,857,278 | 100.0 | 28,693,426 | 100.0 |
|      | 남성 | 1,460        | 1.3   | 49,060           | 6.8   | 15,911,152 | 57.1  | 15,961,672 | 55.6  |
|      | 여성 | 113,179      | 98.7  | 672,449          | 93.2  | 11,946,126 | 42.9  | 12,731,754 | 44.4  |
|      | 성비 | 77.5         |       | 13.7             |       | 0.8        |       | 0.8        |       |
| 2025 | 전체 | 110,057      | 100.0 | 791,798          | 100.0 | 27,985,168 | 100.0 | 28,887,023 | 100.0 |
|      | 남성 | 2,239        | 2.0   | 53,136           | 6.7   | 15,939,301 | 57.0  | 15,994,676 | 55.4  |
|      | 여성 | 107,818      | 98.0  | 738,662          | 93.3  | 12,045,867 | 43.0  | 12,892,347 | 44.6  |
|      | 성비 | 48.2         |       | 13.9             |       | 0.8        |       | 0.8        |       |

주: 성비는  $\frac{\text{여성}}{\text{남성}}$  으로 측정함.

〈그림 1〉 연령별 가사육아취업자의 변화

(단위: %)



그렇다면 누가 가사육아시장에서 일하고 있을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만 계속 증가했고, 50대 중고령층과 40대 장년층은 감소세를 보였다(〈그림 1〉 참조). 15~29세를 청년층이라고 할 때 이들 청년층과 30대는 줄곧 2% 이내에 불과했다. 가사육아직이 여성지배직종임을 감안하면, 점점 고령층 여성만 선택하는 일자리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력집단을 고졸 이하 ‘저학력집단’과 초대졸 이상 ‘고학력집단’으로 나누고 연령과 학력을 교차하면 다른 모습도 드러난다. 여성은 저학력 60대 이상이 지배적이었다(〈표 3〉 참조). 반면 남성은 대체로 저학력 60대 이상 비율이 가장 높지만, 2018년에는 고학력 50대(33.1%), 2020년에는 고학력 60대 이상(43.4%)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는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용직’,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임시직’, 1개월 미만인 ‘일용직’으로 구분한다. 남성 고학력자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2018년 존재했던 고학력 50대는 모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지만, 2020~2021년 존재했던 고학력 30대와 2022년 존재했던 고학력 40대는 모두 임시직이었다. 고학력 60대 이상은 2017년 무급가족종사자(49.0%), 임시직(37.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3.9%) 순으로 많아 무급가족종사자도 상당했으나, 2015년과 2019~2022년에는 모두 임시직, 2024년은 모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였고, 최근인 2025년은 전년보다 약 3.4배 증가한 가운데 임시근로자(65.5%)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4.5%)만 존재했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나 임시직으로 가사육아 일을 하는 고령층 고학력 남성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성 취업자는 2015, 2017, 2019, 2020년에 증가했는데, 특히 2020년에는 고학력 30대가 새롭게 등장하고, 고학력 60대 이상이 전년 대비 약 12배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다양한 연령대의 고학력 남성들까지 가사육아직 일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sup>4)</sup> 그렇지만 고학력 청년층 남성은 내내 전무했고, 2020~2021년 저학력 청년층 남성만 새로 등장했다.

반면 여성은 2020년 고학력 40대~60대 이상뿐만 아니라 고학력 청년층도 증가했는데, 특히 고학력 청년층은 2020~2022년 3년 동안 증가세였고, 2021년 저학력 청년층 비율도 1.3%로 역대 가장 높았다.

〈표 3〉 성별 가사육아 취업자의 연령 및 학력별 구성 변화 (단위: 명, %)

|    |      | 저학력<br>청년층<br>(15~29세) | 고학력<br>청년층<br>(15~29세) | 저학력<br>30대    | 고학력<br>30대    | 저학력<br>40대    | 고학력<br>40대  | 저학력<br>50대    | 고학력<br>50대    | 저학력<br>60대<br>이상 | 고학력<br>60대<br>이상 | 전체               |
|----|------|------------------------|------------------------|---------------|---------------|---------------|-------------|---------------|---------------|------------------|------------------|------------------|
|    |      | (15~29세)               | (15~29세)               | 30대           | 30대           | 40대           | 40대         | 50대           | 50대           | 60대<br>이상        | 60대<br>이상        | 전체               |
| 여성 | 2015 | 291<br>(17.9)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1,206<br>(74.2)  | 128<br>(7.9)     | 1,625<br>(100.0) |
|    | 2016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739<br>(100.0)   | 0<br>(0.0)       | 739<br>(100.0)   |
|    | 2017 | 243<br>(13.1)          | 0<br>(0.0)             | 403<br>(21.7)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634<br>(34.1)    | 576<br>(31.1)    | 1,856<br>(100.0) |
|    | 2018 | 0<br>(0.0)             | 0<br>(0.0)             | 231<br>(19.0) | 0<br>(0.0)    | 0<br>(0.0)    | 0<br>(0.0)  | 294<br>(24.1) | 403<br>(33.1) | 290<br>(23.8)    | 0<br>(0.0)       | 1,218<br>(100.0) |
|    | 2019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189<br>(12.1) | 0<br>(0.0)  | 37<br>(2.3)   | 0<br>(0.0)    | 1,181<br>(75.6)  | 155<br>(9.9)     | 1,562<br>(100.0) |
|    | 2020 | 288<br>(6.9)           | 0<br>(0.0)             | 0<br>(0.0)    | 514<br>(12.3) | 0<br>(0.0)    | 0<br>(0.0)  | 55<br>(1.3)   | 0<br>(0.0)    | 1,507<br>(36.1)  | 1,814<br>(43.4)  | 4,178<br>(100.0) |
|    | 2021 | 386<br>(14.6)          | 0<br>(0.0)             | 0<br>(0.0)    | 313<br>(11.9) | 0<br>(0.0)    | 0<br>(0.0)  | 48<br>(1.8)   | 0<br>(0.0)    | 1,285<br>(48.7)  | 606<br>(23.0)    | 2,637<br>(100.0) |
|    | 2022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62<br>(7.4) | 46<br>(5.5)   | 0<br>(0.0)    | 383<br>(45.7)    | 348<br>(41.5)    | 839<br>(100.0)   |
|    | 2023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227<br>(31.5) | 0<br>(0.0)    | 495<br>(68.5)    | 0<br>(0.0)       | 722<br>(100.0)   |
|    | 2024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98<br>(6.7)   | 0<br>(0.0)  | 0<br>(0.0)    | 0<br>(0.0)    | 1,097<br>(75.1)  | 265<br>(18.1)    | 1,460<br>(100.0) |
|    | 2025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353<br>(15.8) | 0<br>(0.0)    | 974<br>(43.5)    | 912<br>(40.7)    | 2,239<br>(100.0) |

4)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 분석에서도 남성 취업자가 2017~2018년과 2020년에 증가했는데, 특히 2018년은 40~60대, 2020년에는 고학력의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증가하여,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 때 다양한 학력 및 연령대의 남성들이 가사육아 노동시장에 취업했음을 뒷받침한다.

|    |      | 저학력<br>청년층<br>(15~29세) | 고학력<br>청년층<br>(15~29세) | 저학력<br>30대     | 고학력<br>30대     | 저학력<br>40대      | 고학력<br>40대     | 저학력<br>50대       | 고학력<br>50대      | 저학력<br>60대<br>이상 | 고학력<br>60대<br>이상 | 전체                 |
|----|------|------------------------|------------------------|----------------|----------------|-----------------|----------------|------------------|-----------------|------------------|------------------|--------------------|
| 여성 | 2015 | 583<br>(0.3)           | 0<br>(0.0)             | 2,114<br>(1.0) | 1,125<br>(0.5) | 18,711<br>(8.6) | 2,191<br>(1.0) | 89,892<br>(41.4) | 6,961<br>(3.2)  | 92,547<br>(42.6) | 3,230<br>(1.5)   | 217,354<br>(100.0) |
|    | 2016 | 996<br>(0.5)           | 0<br>(0.0)             | 2,043<br>(1.1) | 918<br>(0.5)   | 13,927<br>(7.6) | 2,176<br>(1.2) | 70,514<br>(38.6) | 6,496<br>(3.6)  | 81,483<br>(44.6) | 4,355<br>(2.4)   | 182,910<br>(100.0) |
|    | 2017 | 368<br>(0.2)           | 139<br>(0.1)           | 578<br>(0.3)   | 468<br>(0.3)   | 12,139<br>(6.6) | 3,693<br>(2.0) | 69,187<br>(37.6) | 6,520<br>(3.6)  | 86,664<br>(47.1) | 4,157<br>(2.3)   | 183,913<br>(100.0) |
|    | 2018 | 400<br>(0.3)           | 296<br>(0.2)           | 1,394<br>(0.9) | 526<br>(0.3)   | 7,779<br>(5.0)  | 3,137<br>(2.0) | 54,299<br>(34.7) | 7,094<br>(4.5)  | 77,637<br>(49.6) | 4,054<br>(2.6)   | 156,615<br>(100.0) |
|    | 2019 | 344<br>(0.3)           | 0<br>(0.0)             | 785<br>(0.7)   | 870<br>(0.8)   | 6,840<br>(6.0)  | 1,261<br>(1.1) | 34,942<br>(30.8) | 5,022<br>(4.4)  | 58,174<br>(51.3) | 5,269<br>(4.6)   | 113,507<br>(100.0) |
|    | 2020 | 307<br>(0.2)           | 339<br>(0.3)           | 858<br>(0.7)   | 810<br>(0.6)   | 5,109<br>(3.9)  | 1,974<br>(1.5) | 36,771<br>(27.7) | 8,462<br>(6.4)  | 72,503<br>(54.7) | 5,497<br>(4.1)   | 132,629<br>(100.0) |
|    | 2021 | 1,576<br>(1.3)         | 390<br>(0.3)           | 1,045<br>(0.8) | 520<br>(0.4)   | 4,405<br>(3.6)  | 3,232<br>(2.6) | 29,880<br>(24.1) | 10,451<br>(8.4) | 68,475<br>(55.2) | 4,173<br>(3.4)   | 124,145<br>(100.0) |
|    | 2022 | 684<br>(0.6)           | 695<br>(0.7)           | 949<br>(0.9)   | 1,066<br>(1.0) | 3,671<br>(3.5)  | 1,122<br>(1.1) | 27,208<br>(25.6) | 8,380<br>(7.9)  | 58,203<br>(54.9) | 4,140<br>(3.9)   | 106,120<br>(100.0) |
|    | 2023 | 41<br>(0.04)           | 0<br>(0.0)             | 540<br>(0.5)   | 427<br>(0.4)   | 4,536<br>(4.0)  | 1,760<br>(1.5) | 23,302<br>(20.4) | 7,662<br>(6.7)  | 69,211<br>(60.6) | 6,688<br>(5.9)   | 114,168<br>(100.0) |
|    | 2024 | 0<br>(0.0)             | 0<br>(0.0)             | 169<br>(0.2)   | 0<br>(0.0)     | 3,023<br>(2.7)  | 2,540<br>(2.2) | 24,881<br>(22.0) | 9,887<br>(8.7)  | 62,330<br>(55.1) | 10,349<br>(9.1)  | 113,179<br>(100.0) |
|    | 2025 | 397<br>(0.4)           | 0<br>(0.0)             | 730<br>(0.7)   | 259<br>(0.2)   | 3,339<br>(3.1)  | 1,472<br>(1.4) | 20,050<br>(18.6) | 9,307<br>(8.6)  | 59,810<br>(55.5) | 12,454<br>(11.6) | 107,818<br>(100.0) |

지면 관계상 표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일한 업종을 보면, 저학력 청년층 남성의 일자리는 2020년 모두 산후도우미 파견 같은 ‘비거주 복지 시설 운영업’이었고, 2021년은 모두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다. 반면 저학력 청년층 여성은 2020년에는 ‘가구 내 고용활동(74.7%)’과 ‘기타 협회 및 단체(25.4%)’였고, 2021년은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9.8%)’이 새로 등장한 가운데 ‘가구 내 고용활동(52.0%)’, ‘기타 교육기관(21.3%)’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2022년은 모두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였다. 저학력 청년층 여성은 남성과 달리 내내 가정에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sup>5)</sup>

또 저학력 청년층 여성은 2020년 ‘가구 내 고용활동’은 일용직, ‘기타 협회 및 단체’ 종사자는 임시직이었고, 2021년은 ‘가구 내 고용활동’과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만 임시직, 나머지 업종은 모두 일용직이었으며, 2022년에는 ‘가구 내 고용활동’ 노동자 모두 임시직이었다. 반면 고학력 청년층 여성은 모두 2020년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상용직이었지만, 2021년 ‘가구 내 고용활동’을 임시직으로, 2022년은 ‘가구 내 고용활동(60.8%)’, ‘스포츠 서비스업(22.1%)’ 등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부침을 보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0~2021년 저학력의 남성 청년층도 가사육아직에 새로 진입했고, 여성 청년층은 저학력자뿐만 아니라 고학력자까지 대거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 고학력자는 2020년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상용직으로 일했지만 점차 다른 저학력자처럼 불안정한 임시직 지위로 주로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어린이집 등이 휴원하면서 대학생 놀이 시터를 표방한 ‘놀담(잘노는)’ 플랫폼 등을 통한 청년층 육아도우미 수요가 있었던 것 등이 작용한 결과로 사료된다.<sup>6)</sup>

5)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오락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가사육아직의 청년층이 이 업종에서 집계된 것은 키즈카페에서 육아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 등일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육아 도우미 직업에 관해 유모와 보모의 예를 들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어린이의 피복을 수선, 세척, 다림질하기도 한다’고 설명하는 데 반해(통계청, 2024 : 896) 가사육아직이 이처럼 ‘기타 협회 및 단체, 기타 교육기관’ 등 가정 외 업종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술하겠지만 ‘직종 및 업종 분류의 재정비 및 세분류까지의 정보 공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6) 성준맘. 2020.6.21. “돌지난 아기 두신 분들 요즘 아기랑 뭐하고 지내시나요?”

성준맘. 2020.12.30. “20대, 30대 하원도우미(시터)고용해보신분 계신가요?”

맘스홀릭. 2020.7.13. “째깍악어나 자란다에서 영어시터 써보신분?”

종사상지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9%에서 2025년 5.8%까지 비교적 감소했지만, 임시직은 2015년 45.6%에서 2025년 72.0%까지 거의 계속 증가해 비임금 노동자 감소분이 임시직 임금노동자로 이동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표 1〉 참조).

특히 여성은 2015년 45.5%였던 임시직이 2025년 72.7%로 늘어 남성보다 임시직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가 더 분명하다(〈그림 2〉 참조). 임시일용직도 2015년 72.8%에서 2025년 90.1%로 되는 등 증가세가 명확하다.

또 여성은 남성과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곧 고용주와 ‘상용직’이 존재한다. 그런데 2015~2017년 0.1~0.2%가 다였던 여성 고용주와 달리, 상용직 여성은 금융위기가 있던 2018년 2.2%로 감소하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도 4.0%로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줄곧 존재해 왔다. 예컨대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상용직 여성은 2020년 상반기만 해도 5,348명으로 전년 4,835명보다 514명이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심해졌던 2020년 하반기에는 4,513명으로 전년 7,353명보다 2,840명이 급감해, 코로나19 시기에 월 단위로 상용직 여성의 변동이 컸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도 2021년 상반기(8,670명), 하반기(6,825명)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다가 2022년 상반기(4,825명)와 하반기(3,665명)에 감소한 후 2023년 하반기 7천명대로 증가하여(7,032명), 코로나 19로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상용직 여성은 증가했다. 반면 남성은 2023년 하반기에 상용직이 처음으로 48명(16.9%) 등장했으나 2024년 상반기에 자취를 감췄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성차가 컸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하다가 2025년 감소한 반면, 여성은 2015년(23.6%)에서 2025년(5.4%)까지 거의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 성별 가사육아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변화

(단위: %)



2025년만 봐도 유추할 수 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가사육아직은 돌봄 보건 서비스직에 비해 줄곧 ‘상용직’ 비중이 낮고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높았다(〈표 4〉 참조). 특히 일용직은 돌봄보건 서비스직 및 기타 직종, 그리고 전체 취업시장과 비교해도 내내 비중이 높았고, 임시직은 2016년까지는 돌봄보건 서비스직 내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7년부터는 가사육아직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따라서 가사육아 노동 시장은 ‘남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여타 노동시장에 비해 일용직 비율이 높으며, 임시직 비중도 2010년대 후반부터 가장 높아진 가운데 특히 임시직 여성의 증가세가 강한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2025년 노동시장별 종사상지위 구성

(단위: 명, %)

|                  | 상용<br>근로자            | 임시<br>근로자           | 일용<br>근로자        | 고용원<br>있는<br>자영업자  | 고용원<br>없는<br>자영업자   | 무급가족<br>종사자      | 전체                    |
|------------------|----------------------|---------------------|------------------|--------------------|---------------------|------------------|-----------------------|
| 가사육아<br>노동시장     | 4,949<br>(4.5)       | 79,208<br>(72.0)    | 19,572<br>(17.8) | 0<br>(0.0)         | 6,328<br>(5.8)      | 0<br>(0.0)       | 110,057<br>(100.0)    |
| 돌봄보건의서비스<br>노동시장 | 444,204<br>(56.1)    | 331,354<br>(41.9)   | 10,829<br>(1.4)  | 2,198<br>(0.3)     | 2,618<br>(0.3)      | 595<br>(0.1)     | 791,798<br>(100.0)    |
| 기타<br>노동시장       | 16,227,767<br>(58.0) | 4,454,953<br>(15.9) | 842,481<br>(3.0) | 1,399,099<br>(5.0) | 4,205,708<br>(15.0) | 855,160<br>(3.1) | 27,985,168<br>(100.0) |
| 전체               | 16,676,920<br>(57.7) | 4,865,515<br>(16.8) | 872,882<br>(3.0) | 1,401,298<br>(4.9) | 4,214,654<br>(14.6) | 855,754<br>(3.0) | 28,887,023<br>(100.0) |

한편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남성 상용직은 2023년 하반기에만 존재했고, 여성 상용직도 2024년(7.1%) 예년보다 늘었지만 2021년 수준(7.0%)이었으며 2025년에는 4.6%로 급감했다. 오히려 남성은 2025년 임시일용직이 늘어 1인 자영업자 비가 다소 완화됐지만(24.1%) 2024년 68.4%까지 느는 등 임노동자가 1인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일종의 ‘풍선효과’를 보였고, 여성은 임시직이 계속 늘었다.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비임금노동자’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임금노동자’로 구분할 때, 남성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돌봄보건의 서비스직’, ‘기타 직종’, ‘전체 직종’에 비해서도 유일하게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여성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임금노동자 비중이 줄곧 돌봄보건의 서비스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노동시장에 비해 ‘가사육아직 남성의 비임금노동자화’ 경향이 강화됐고, 여성은 다른 직종보다 임노동자 비율이 높지만 처우가 나은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의 증가세만 더 커져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육아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단속적인 단시간 노동을 통한 근무기간 연장

주당 노동시간은 비임금 노동자가 더 긴 가운데 연도별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일용직이 짧고 상용직과 임시직은 비슷한 수준이었다(〈표 5〉 참조).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노동시간이 계속 감소해 2025년 최근에는 평균 노동시간이 25.7시간에 불과했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대체로 단시간 근로에서도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비중이 높고 최근 들어 15시간 미만 근무 비율도 높아졌다. 반면 여성은 2020년까지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부터 주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비율이 높아졌다. 가사육아직의 평균 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길지만, 최근 들어 남녀 공히 단시간 노동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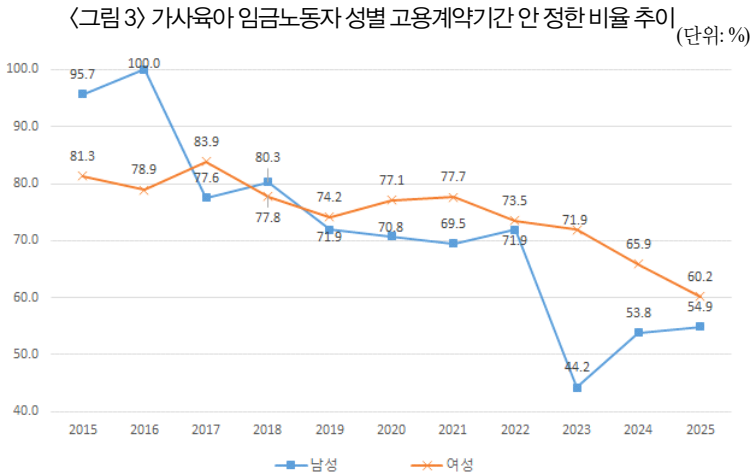
〈표 5〉 가사육아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 (단위: 시간, 명,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전체                | 34.6 | 32.5 | 31.9 | 32.7 | 29.9  | 29.2  | 27.7  | 27.4 | 26.1 | 25.3  | 25.7  |
| 상용직               | 32.6 | 32.4 | 32.0 | 31.0 | 33.9  | 28.3  | 32.2  | 27.1 | 27.2 | 26.7  | 28.5  |
| 임시직               | 35.4 | 32.4 | 31.4 | 34.0 | 30.7  | 30.0  | 26.8  | 28.2 | 25.5 | 26.0  | 26.8  |
| 일용직               | 29.7 | 28.6 | 27.5 | 26.6 | 25.5  | 24.1  | 25.6  | 22.8 | 25.6 | 21.6  | 19.2  |
| 고용원있는<br>자영업자     | 30.0 | 48.7 | 42.0 | -    | -     | -     | -     | -    | -    | -     | -     |
| 고용원없는<br>자영업자     | 39.2 | 38.6 | 38.8 | 37.6 | 32.1  | 35.4  | 34.2  | 32.9 | 32.1 | 26.73 | 29.1  |
| 무급가족종사자           | 31.9 | 30.2 | 34.4 | 37.8 | 45.0  | 31.4  | -     | -    | -    | -     | -     |
| 남성                | 34.3 | 26.4 | 31.0 | 23.6 | 19.8  | 25.3  | 27.1  | 26.0 | 26.0 | 17.7  | 20.4  |
| 15시간미만            | 45   | 58   | 414  | 0    | 325   | 315   | 186   | 216  | 184  | 699   | 748   |
|                   | 2.8  | 7.8  | 22.3 | 0.0  | 20.8  | 7.5   | 7.0   | 25.8 | 25.5 | 47.9  | 33.4  |
| 15시간이상~<br>30시간미만 | 291  | 384  | 315  | 826  | 1,036 | 1,893 | 1,544 | 280  | 104  | 496   | 1,177 |
|                   | 17.9 | 51.9 | 17.0 | 67.8 | 66.3  | 45.3  | 58.5  | 33.4 | 14.5 | 34.0  | 52.6  |

204 가사육아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30시간이상~<br>40시간미만 | 716    | 203    | 354    | 392    | 201    | 698    | 0      | 102    | 227    | 0      | 0      |
|                   | 44.1   | 27.5   | 19.1   | 32.2   | 12.9   | 16.7   | 0.0    | 12.2   | 31.5   | 0.0    | 0.0    |
| 40시간이상            | 573    | 94     | 773    | 0      | 0      | 1,271  | 908    | 240    | 206    | 265    | 314    |
|                   | 35.2   | 12.8   | 41.6   | 0.0    | 0.0    | 30.4   | 34.4   | 28.7   | 28.5   | 18.1   | 14.0   |
| 여성                | 34.6   | 32.5   | 31.9   | 32.8   | 30.1   | 29.3   | 27.7   | 27.5   | 26.1   | 25.4   | 25.8   |
| 15시간미만            | 23,403 | 21,301 | 23,389 | 20,464 | 15,164 | 18,513 | 16,114 | 16,513 | 17,355 | 19,478 | 19,267 |
|                   | 10.8   | 11.7   | 12.7   | 13.1   | 13.4   | 14.0   | 13.0   | 15.6   | 15.2   | 17.2   | 17.9   |
| 15시간이상~<br>30시간미만 | 53,826 | 56,452 | 54,039 | 43,049 | 39,403 | 43,396 | 51,868 | 41,666 | 48,993 | 48,548 | 45,354 |
|                   | 24.8   | 30.9   | 29.4   | 27.5   | 34.7   | 32.7   | 41.8   | 39.3   | 42.9   | 42.9   | 42.1   |
| 30시간이상~<br>40시간미만 | 45,249 | 33,795 | 36,342 | 28,451 | 18,701 | 26,009 | 21,419 | 15,201 | 21,970 | 21,891 | 18,264 |
|                   | 20.8   | 18.5   | 19.8   | 18.2   | 16.5   | 19.6   | 17.3   | 14.3   | 19.2   | 19.3   | 16.9   |
| 40시간이상            | 94,876 | 71,362 | 70,143 | 64,652 | 40,239 | 44,711 | 34,745 | 32,740 | 25,850 | 23,262 | 24,932 |
|                   | 43.7   | 39.0   | 38.1   | 41.3   | 35.5   | 33.7   | 28.0   | 30.9   | 22.6   | 20.6   | 23.1   |

주. 노동시간에 미응답자가 있어 결측치를 반영한 수치임.



주: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는 정년제로 일하는 경우까지 포함됨.

가사육아 임금노동자 중 정년제인 경우까지 포함된 ‘고용계약기간을 안 정한’ 비율은 대체로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는 남성이 더 강했고, 특히 2019년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확연히 더 낮았다(〈그림 3〉 참조). 고용계약기간 미정 곧 ‘기한의 규정 없는 고용계약’은 일본과 선진국의 경우 해고 규제가 도입되면서 ‘장기고용이 보장되는 고용계약’으로 의미가 변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용계약 자체의 불명확성 즉 계속 고용이 어려운 불안정 고용을 상징한다(요코타 노부코, 2007: 85). 그렇다면 이는 남성을 중심으로 가사육아 임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일까.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임시직에서, 여성은 2015, 2017, 2019년을 제외하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비율이 높았다(〈표 6〉 참조). 임시직 중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비율이 남성은 2024년에 전년보다 거의 절반이 줄긴 했지만(53.5%p) 2019년부터, 여성은 2022년부터 증가세였는데, 남녀 모두 대체로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정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2025년에 여성 상용직을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고용계약을 정한 비율이 역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여성 상용직도 2022년(55.8%) 외에는 고용계약기간을 안 정한 경우가 매해 절반 이상이었고, 정해도 ‘3년 초과’(2019~2020년)나 ‘2년 초과~3년 이하’(2022, 2025년)가 있는 4개 연도를 제외하면 매년 ‘1년’이 83% 이상이었다. 또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비율이 여성은 2025년 약 34%로 가장 높았지만 내내 높아야 20%대였고, 남성은 거의 전무한 가운데 2019년(29.3%), 2022년(12.5%), 2025년(36.0%)이 유일했다.

〈표 6〉 남녀 가사육아 임금노동자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계약기간  
(단위: 명, %)

|      | 남성               |                         |                        |                | 여성               |                  |                       |                   |                         |                        |                   |  |
|------|------------------|-------------------------|------------------------|----------------|------------------|------------------|-----------------------|-------------------|-------------------------|------------------------|-------------------|--|
|      | 임시직              |                         |                        | 일용직            | 상용직              |                  |                       | 임시직               |                         |                        | 일용직               |  |
|      | 전체               | 1개월<br>이상~<br>6개월<br>미만 | 6개월<br>이상~<br>1년<br>미만 | 전체             | 전체               | 1년               | 1년 초과                 | 전체                | 1개월<br>이상~<br>6개월<br>미만 | 6개월<br>이상~<br>1년<br>미만 | 전체                |  |
|      | 정합               |                         |                        | 정합             | 정합               |                  |                       | 정합                |                         |                        | 정합                |  |
| 2015 | 1,057<br>(100.0) |                         |                        | 0<br>(0.0)     | 7,343<br>(100.0) |                  |                       | 98,845<br>(100.0) |                         |                        | 59,304<br>(100.0) |  |
|      | 45<br>(4.3)      | 0<br>(0.0)              | 45<br>(100.0)          | 0<br>(0.0)     | 3,270<br>(44.5)  | 3,270<br>(100.0) | 0<br>(0.0)            | 14,750<br>(14.9)  | 4,044<br>(27.4)         | 10,707<br>(72.6)       | 12,912<br>(21.8)  |  |
| 2016 | 306<br>(100.0)   |                         |                        | 265<br>(100.0) | 5,050<br>(100.0) |                  |                       | 92,970<br>(100.0) |                         |                        | 51,498<br>(100.0) |  |
|      | 0<br>(0.0)       | 0<br>(0.0)              | 0<br>(0.0)             | 0<br>(0.0)     | 1,853<br>(36.7)  | 1,552<br>(83.7)  | 301<br>(16.3)         | 20,228<br>(21.8)  | 4,286<br>(21.2)         | 15,942<br>(78.8)       | 9,531<br>(18.5)   |  |
| 2017 | 610<br>(100.0)   |                         |                        | 656<br>(100.0) | 6,064<br>(100.0) |                  |                       | 97,853<br>(100.0) |                         |                        | 45,523<br>(100.0) |  |
|      | 284<br>(46.6)    | 170<br>(60.0)           | 114<br>(40.0)          | 0<br>(0.0)     | 1,675<br>(27.6)  | 1,675<br>(100.0) | 0<br>(0.0)            | 12,737<br>(13.0)  | 2,314<br>(18.2)         | 10,423<br>(81.8)       | 9,681<br>(21.3)   |  |
| 2018 | 654<br>(100.0)   |                         |                        | 0<br>(0.0)     | 3,406<br>(100.0) |                  |                       | 92,233<br>(100.0) |                         |                        | 37,359<br>(100.0) |  |
|      | 129<br>(19.7)    | 0<br>(0.0)              | 129<br>(100.0)         | 0<br>(0.0)     | 1,302<br>(38.2)  | 1,302<br>(100.0) | 0<br>(0.0)            | 21,321<br>(23.1)  | 4,414<br>(20.7)         | 16,907<br>(79.3)       | 6,951<br>(18.6)   |  |
| 2019 | 896<br>(100.0)   |                         |                        | 268<br>(100.0) | 4,835<br>(100.0) |                  |                       | 62,324<br>(100.0) |                         |                        | 25,400<br>(100.0) |  |
|      | 248<br>(27.7)    | 37<br>(14.7)            | 212<br>(85.3)          | 78<br>(29.3)   | 1,239<br>(25.6)  | 1,220<br>(98.5)  | (3년초과)<br>19<br>(1.5) | 16,242<br>(26.1)  | 3,539<br>(21.8)         | 12,703<br>(78.2)       | 6,447<br>(25.4)   |  |
| 2020 | 3,911<br>(100.0) |                         |                        | 0<br>(0.0)     | 5,348<br>(100.0) |                  |                       | 78,142<br>(100.0) |                         |                        | 32,157<br>(100.0) |  |
|      | 1,143<br>(29.2)  | 983<br>(86.1)           | 159<br>(14.0)          | 0<br>(0.0)     | 2,251<br>(42.1)  | 2,198<br>(97.7)  | (3년초과)<br>53<br>(2.4) | 18,105<br>(23.2)  | 2,061<br>(11.4)         | 16,044<br>(88.6)       | 6,126<br>(19.1)   |  |
| 2021 | 2,002<br>(100.0) |                         |                        | 40<br>(100.0)  | 8,670<br>(100.0) |                  |                       | 71,500<br>(100.0) |                         |                        | 30,286<br>(100.0) |  |
|      | 624<br>(31.16)   | 13<br>(2.0)             | 611<br>(98.0)          | 0<br>(0.0)     | 2,857<br>(33.0)  | 2,707<br>(94.7)  | 150<br>(5.3)          | 15,895<br>(22.2)  | 3,464<br>(21.8)         | 12,431<br>(78.2)       | 5,940<br>(19.6)   |  |

|      | 남성             |               |                |                | 여성               |                  |                             |                   |                 |                  |                   |
|------|----------------|---------------|----------------|----------------|------------------|------------------|-----------------------------|-------------------|-----------------|------------------|-------------------|
|      | 임시직            |               |                | 일용직            | 상용직              |                  |                             | 임시직               |                 |                  | 일용직               |
|      | 전체             |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전체             | 전체               | 1년               | 1년 초과                       | 전체                |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1년 미만     | 전체                |
|      | 정합             |               |                | 정합             | 정합               |                  |                             | 정합                |                 |                  | 정합                |
| 2022 | 513<br>(100.0) |               |                | 101<br>(100.0) | 4,825<br>(100.0) |                  |                             | 70,826<br>(100.0) |                 |                  | 21,985<br>(100.0) |
|      | 160<br>(31.19) | 104<br>(64.8) | 56<br>(35.2)   | 13<br>(12.5)   | 2,692<br>(55.8)  | 2,622<br>(97.4)  | (2년초과~3년이하)<br>70<br>(2.6)  | 19,324<br>(27.3)  | 2,884<br>(14.9) | 16,441<br>(85.1) | 3,843<br>(17.5)   |
| 2023 | 289<br>(100.0) |               |                | 227<br>(100.0) | 4,863<br>(100.0) |                  |                             | 76,071<br>(100.0) |                 |                  | 24,311<br>(100.0) |
|      | 288<br>(99.7)  | 0<br>(0.0)    | 288<br>(100.0) | 0<br>(0.0)     | 2,132<br>(43.8)  | 2,020<br>(94.8)  | 112<br>(5.2)                | 22,261<br>(29.3)  | 3,672<br>(16.5) | 18,589<br>(83.5) | 5,184<br>(21.3)   |
| 2024 | 462<br>(100.0) |               |                | 0<br>(0.0)     | 8,031<br>(100.0) |                  |                             | 77,634<br>(100.0) |                 |                  | 21,086<br>(100.0) |
|      | 213<br>(46.2)  | 0<br>(0.0)    | 213<br>(100.0) | 0<br>(0.0)     | 3,842<br>(47.9)  | 3,842<br>(100.0) | 0<br>(0.0)                  | 28,228<br>(36.4)  | 4,023<br>(14.3) | 24,204<br>(85.8) | 4,309<br>(20.4)   |
| 2025 | 861<br>(100.0) |               |                | 838<br>(100.0) | 4,949<br>(100.0) |                  |                             | 78,347<br>(100.0) |                 |                  | 18,734<br>(100.0) |
|      | 464<br>(54.0)  | 0<br>(0.0)    | 464<br>(100.0) | 302<br>(36.0)  | 2,335<br>(47.2)  | 2,139<br>(91.6)  | (2년초과~3년이하)<br>196<br>(8.4) | 31,899<br>(40.7)  | 4,136<br>(13.0) | 27,763<br>(87.0) | 6,338<br>(33.8)   |

주: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음’에는 정년제로 일하는 경우까지 포함됨.

고용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근속기간을 구하면, 2019~2024년 동안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의 근속기간이 더 긴 여성 상용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녀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고용계약기간을 안 정한 경우의 평균 근속기간이 더 길었다(〈표 7〉 참조). 또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비율이 낮으면서 근속기간이 짧은 남성 일용직도 평균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고, 여성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모두 고용계약기간 기준보다(각각 1년 이상, 1년 미만, 1개월 미만) 평균 근속기

간이 더 길었다. 그러므로 가사육아직은 고용계약기간 미정(未定)이 무조건 계속 고용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설정한 고용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이보다 더 길게 일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한 연구는 가사육아직이 의료복지서비스직보다 평균경력과 근속기간이 더 길며, 가사육아직에서도 특히 일용직이 상용직이나 임시직보다도 경력이 더 길어 가사육아 노동시장에 ‘일용직 형태로 장시간 일하는 불안정한 고용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황덕순, 2013: 11-12). 하지만 현재는 모든 종사상지위가 정해진 것보다 더 길게 일하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근속기간이 더 깊을 알 수 있다. 평균 근속기간만 봐도 2021년부터 30개월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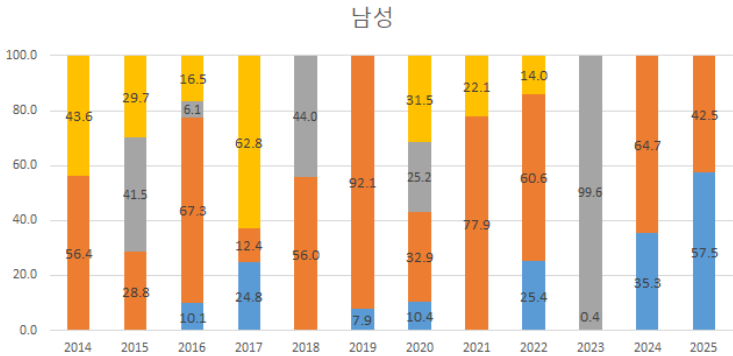
〈표 7〉 가사육아 취업자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평균 근속기간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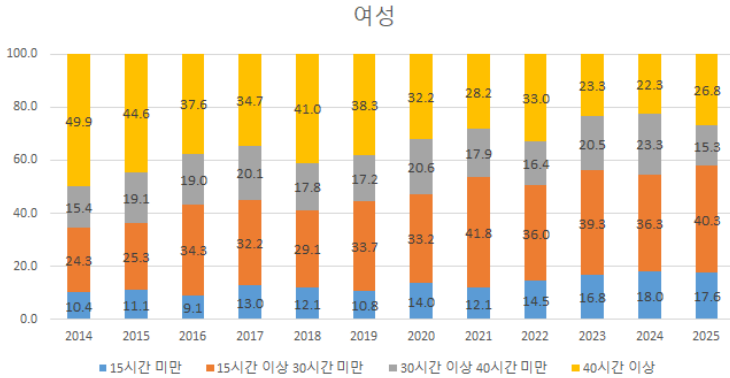
|      | 성별   |      |      | 남성        |      |         |                         |                        |      |         |      |                   |                 |
|------|------|------|------|-----------|------|---------|-------------------------|------------------------|------|---------|------|-------------------|-----------------|
|      | 전체   | 남성   | 여성   | 상용<br>근로자 | 임시직  |         |                         |                        | 일용직  |         |      | 고용원<br>없는<br>자영업자 | 무급<br>가족<br>종사자 |
|      |      |      |      |           | 전체   | 안<br>정합 | 정합                      |                        | 전체   | 안<br>정합 | 정합   |                   |                 |
|      |      |      |      |           |      |         | 1개월<br>이상<br>~6개월<br>미만 | 6개월<br>이상<br>~1년<br>미만 |      |         |      |                   |                 |
| 2015 | 28.9 | 47.3 | 28.8 | -         | 44.1 | 46.0    | -                       | 1.0                    | -    | -       | -    | 53.2              | -               |
| 2016 | 30.6 | 28.3 | 30.6 | -         | 34.5 | 34.5    | -                       | -                      | 24.0 | 24.0    | -    | 43.0              | 9.0             |
| 2017 | 29.6 | 9.3  | 29.8 | -         | 7.3  | 13.2    | 1.0                     | 0.0                    | 13.9 | 13.9    | -    | 5.7               | 6.4             |
| 2018 | 35.2 | 14.7 | 35.4 | -         | 19.8 | 24.4    | -                       | 1.0                    | -    | -       | -    | 8.9               | -               |
| 2019 | 29.2 | 8.7  | 29.4 | -         | 8.4  | 11.3    | 0.0                     | 1.0                    | 3.1  | 4.0     | 1.0  | 13.0              | -               |
| 2020 | 28.9 | 13.6 | 29.4 | -         | 12.3 | 16.8    | 1.0                     | 4.7                    | -    | -       | -    | 32.2              | -               |
| 2021 | 35.3 | 25.5 | 35.5 | -         | 29.9 | 41.0    | 1.0                     | 5.4                    | 3.0  | 3.0     | -    | 12.2              | -               |
| 2022 | 35.7 | 35.7 | 35.7 | -         | 41.8 | 51.1    | 13.0                    | 37.0                   | 34.3 | 37.0    | 15.0 | 22.5              | -               |
| 2023 | 39.7 | 19.2 | 39.8 | -         | 23.6 | 137.0   | -                       | 23.2                   | 3.0  | 3.0     | -    | 31.0              | -               |
| 2024 | 33.8 | 12.2 | 34.1 | -         | 1.2  | 1.0     | -                       | 1.4                    | -    | -       | -    | 17.2              | -               |
| 2025 | 39.9 | 14.3 | 40.5 | -         | 1.4  | 2.0     | -                       | 0.9                    | 18.3 | 28.0    | 1.0  | 28.9              | -               |

|      | 여성   |         |      |          |      |         |                         |                        |      |         |      |                   |                   |                 |
|------|------|---------|------|----------|------|---------|-------------------------|------------------------|------|---------|------|-------------------|-------------------|-----------------|
|      | 상용직  |         |      |          | 임시직  |         |                         |                        | 일용직  |         |      | 고용원<br>있는<br>자영업자 | 고용원<br>없는<br>자영업자 | 무급<br>가족<br>종사자 |
|      | 전체   | 안<br>정함 | 정함   |          | 전체   | 안<br>정함 | 정함                      |                        | 전체   | 안<br>정함 | 정함   |                   |                   |                 |
|      |      |         | 1년   | 1년<br>초과 |      |         | 1개월<br>이상<br>~6개월<br>미만 | 6개월<br>이상<br>~1년<br>미만 |      |         |      |                   |                   |                 |
| 2015 | 42.6 | 51.9    | 31.0 | -        | 33.3 | 35.6    | 6.6                     | 25.2                   | 10.5 | 11.0    | 8.7  | 253.0             | 38.4              | 49.9            |
| 2016 | 44.1 | 49.9    | 33.7 | 35.0     | 32.7 | 35.4    | 12.7                    | 26.1                   | 16.5 | 17.2    | 13.6 | 41.9              | 43.2              | 282.3           |
| 2017 | 53.0 | 54.6    | 48.7 | -        | 32.7 | 35.0    | 17.5                    | 17.8                   | 14.4 | 17.6    | 2.7  | 25.5              | 36.9              | 297.2           |
| 2018 | 50.6 | 51.7    | 48.8 | -        | 41.2 | 45.1    | 33.9                    | 27.1                   | 14.6 | 14.1    | 16.5 | -                 | 41.9              | 374.6           |
| 2019 | 54.5 | 51.7    | 60.4 | 209.0    | 28.8 | 32.2    | 20.2                    | 18.8                   | 18.5 | 19.5    | 15.6 | -                 | 38.8              | 59.0            |
| 2020 | 86.4 | 111.1   | 47.3 | 265.0    | 28.4 | 31.3    | 44.8                    | 15.8                   | 15.4 | 15.6    | 14.7 | -                 | 41.4              | 309.6           |
| 2021 | 65.1 | 65.9    | 61.8 | 91.0     | 33.5 | 37.0    | 21.8                    | 21.1                   | 29.7 | 32.6    | 17.5 | -                 | 40.4              | -               |
| 2022 | 66.8 | 65.5    | 68.8 | 28.0     | 40.2 | 42.7    | 28.1                    | 34.5                   | 12.0 | 11.6    | 14.2 | -                 | 41.9              | -               |
| 2023 | 70.5 | 57.8    | 84.0 | 137.0    | 45.1 | 50.5    | 20.4                    | 34.4                   | 12.8 | 14.4    | 6.8  | -                 | 51.5              | -               |
| 2024 | 61.0 | 52.9    | 69.9 | -        | 35.2 | 39.8    | 19.2                    | 28.3                   | 17.9 | 21.7    | 3.3  | -                 | 40.0              | -               |
| 2025 | 66.8 | 74.2    | 61.4 | 27.0     | 44.6 | 48.5    | 36.5                    | 39.3                   | 13.0 | 14.7    | 9.5  | -                 | 50.8              | -               |

주: 조사주단 기간 동안의 주된 일자리에 관한 것으로, -는 사례수 없음 표시

〈그림 4〉 고용계약기간 미정 가사육아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단위: %)





다만 전체 평균을 보면, 남성 임시직은 1년 미만에서 길어야 4년 내로 일하지만, 여성 상용직은 약 3년에서 8년 가까이 일하고, 2018년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처럼 31년을 넘은 때도 있어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력 지속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과 달리(한준, 2001: 164) 가사육아직은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더 긴 특이성이 있었다.

그런데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남녀 모두 대체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일하는 비율이 높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 비율과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주 40시간 이상 노동 비율은 감소 추세였다(〈그림 4〉 참조).

따라서 종합하면 남성은 고용계약기간을 안 정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근속기간이 짧고 변동성도 크다. 반면 여성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율이 높지만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 60%에 달하고, 그나마 평균 근속기간이 긴 특징이 있었다. 또한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상용직조차도 매년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과반수이고,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도 ‘1년’이 대부분이었다. 그래도 가사육아 임금노동시장은 고용기간을 안 정한 경우에 근속기간이 더 긴 면이 있는데, 하지만 이 경우 단시간 노동 비중이 높



아진 것을 감안하면, 이는 선진국과 같은 ‘무기한 고용’이라기보다 애초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호출노동 식으로 단시간 노동을 해온 것일 수 있어 ‘고용 불안정성’은 마찬가지였다. 즉 고용기간은 안 정한 채 단속적으로 일해 온 것으로서, 이 또한 사용자 임의로 언제든 고용계약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실제로 가사·돌봄플랫폼 이용자만 해도 고정적인 전일제 고용은 비용이 부담돼 필요한 때만 단시간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선호되고 있다(『한국경제TV』, 2024. 8. 14.). 단시간 노동을 단속적으로 장기간 해 온 노동 특성에 상응하는 장기근속수당 등 근속수당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 3) 가사육아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

가사육아직 임노동자는 2022년과 2024~2025년을 제외하고는 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이 임시직보다 높고, 시간당 임금도 일용직이 임시직보다 내내 더 높으며, 2015~2017년까지는 일용직의 시간당 임금이 심지어 상용직보다도 더 높아서(〈표 8〉 참조), 가사육아 임노동시장은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없었다.

또 전체 평균 시간당 임금은 2015년에만 최저임금보다 약 1.3배 높았을 뿐 2019년과 2024~2025년에는 최저임금(각 8,350원, 9,860원, 10,030원)에도 못 미쳤다. 특히 임시직 노임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낮았고, 상용직 또한 많아야 2023년 최저임금 대비 약 1.5배 큰 것이어서 가사육아직은 상용직 임금도 최저임금 정도로 낮은 저임금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다.

〈표 8〉 가사육아 임금노동시장의 평균 임금과 노동시간  
(단위: 만 원, 원, 시간)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월평균<br>임금 | 전체           | 92.4  | 86.3  | 86.7  | 97.1   | 95.8   | 94.6   | 92.9   | 100.4  | 100.7  | 98.5   | 97.2   |
|           | 상용직          | 97.5  | 107.3 | 109.5 | 137.4  | 145.9  | 146.4  | 137.8  | 123.6  | 143.4  | 140.5  | 143.8  |
|           | 임시직          | 89.2  | 81.6  | 83.3  | 94.2   | 92.5   | 92.1   | 85.6   | 99.8   | 96.5   | 96.0   | 98.8   |
|           | 일용직          | 97.3  | 92.8  | 90.8  | 100.6  | 94.3   | 92.3   | 97.8   | 97.4   | 105.3  | 91.6   | 79.3   |
| 시간당<br>임금 | 전체           | 7,193 | 7,132 | 7,448 | 8,148  | 8,271  | 9,016  | 8,786  | 9,627  | 9,755  | 9,839  | 9,903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1.29  | 1.18  | 1.15  | 1.08   | 0.99   | 1.05   | 1.01   | 1.05   | 1.01   | 0.998  | 0.987  |
|           | 상용직          | 7,327 | 7,764 | 8,096 | 10,399 | 10,301 | 12,409 | 10,439 | 11,628 | 14,201 | 12,708 | 12,002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1.31  | 1.29  | 1.25  | 1.38   | 1.23   | 1.44   | 1.20   | 1.27   | 1.48   | 1.29   | 1.20   |
|           | 임시직          | 6,493 | 6,345 | 6,962 | 7,339  | 7,667  | 8,222  | 8,044  | 8,986  | 9,350  | 9,288  | 9,725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1.16  | 1.05  | 1.08  | 0.97   | 0.92   | 0.96   | 0.92   | 0.98   | 0.97   | 0.94   | 0.97   |
|           | 일용직          | 8,349 | 8,468 | 8,394 | 9,935  | 9,353  | 10,339 | 10,097 | 11,274 | 10,135 | 10,784 | 10,090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1.50  | 1.40  | 1.30  | 1.32   | 1.12   | 1.20   | 1.16   | 1.23   | 1.05   | 1.09   | 1.01   |

주: 조사주단 기간 동안의 주된 일자리에 관한 것으로, 는 사례수 없음 표시  
임금은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조정된 것임.  
노동시간 결측치가 있어 시간당임금과 주당 노동시간은 결측치 반영 수치임.

또 월평균임금은 여성의 경우 일용직이 임시직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높지만 주당 노동시간이 짧아 2023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임시직과 일용직의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이었고, 2022, 2024, 2025년처럼 오히려 역전되기도 했다. 반면 남성은 2017, 2023년처럼, 일용직이 임시직보다 평균 시간당 임금이 높고 노동시간도 더 길어 임시직과 일용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었다(〈표 9〉 참조). 이는 가사육아 노동시장 내 임시직과 일용직 간 임금과 노동시간의 큰 차이가(황덕순, 2013: 13) 다른 아닌 성별 노동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또 임시직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은 평균상으로는 2018년부터이지만(〈표 8〉 참조), 기실 2015년부터 남성 임시직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표 9〉 참



|      |              | 시간당 임금 |        | 일용직<br>임시직 |       | 주당<br>노동시간 |      | 월평균임금 |           | 일용직<br>임시직 |      |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      |              |        |        |            |       |            |      |       |           |            |      |       |      |
| 2017 | 상용직          | -      | 8,096  |            |       | -          | 32.0 | -     | 1,095,109 |            |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      | 1.25   |            |       |            |      |       |           |            |      |       |      |
|      | 임시직          | 4,379  | 6,979  | 0.6        | 1.51  | 1.21       | 25.3 | 31.4  | 424,176   | 836,013    | 0.5  | 2.19  | 1.09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0.68   | 1.08   |            |       |            |      |       |           |            |      |       |      |
|      | 일용직          | 6,608  | 8,420  | 0.8        |       |            | 33.9 | 27.4  | 927,598   | 907,699    | 1.02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1.02   | 1.30   |            |       |            |      |       |           |            |      |       |      |
| 2018 | 상용직          | -      | 10,399 |            |       | -          | 31.0 | -     | 1,373,613 |            |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      | 1.38   |            |       |            |      |       |           |            |      |       |      |
|      | 임시직          | 10,296 | 7,318  | 1.4        |       | 1.36       | 24.2 | 34.1  | 1,089,767 | 940,599    | 1.2  |       | 1.07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1.37   | 0.97   |            |       |            |      |       |           |            |      |       |      |
|      | 일용직          | -      | 9,935  |            |       |            | -    | 26.6  | -         | 1,006,106  |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      | 1.32   |            |       |            |      |       |           |            |      |       |      |
| 2019 | 상용직          | -      | 10,301 |            |       | -          | 33.9 | -     | 1,459,401 |            |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 1.23   |            |       |            |      |       |           |            |      |       |      |
|      | 임시직          | 8,134  | 7,660  | 1.1        | 1.321 | 1.22       | 17.2 | 30.9  | 618,460   | 929,905    | 0.7  | 1.320 | 1.02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0.97   | 0.92   |            |       |            |      |       |           |            |      |       |      |
|      | 일용직          | 10,747 | 9,338  | 1.2        |       |            | 17.7 | 25.6  | 816,178   | 944,790    | 0.9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1.29   | 1.12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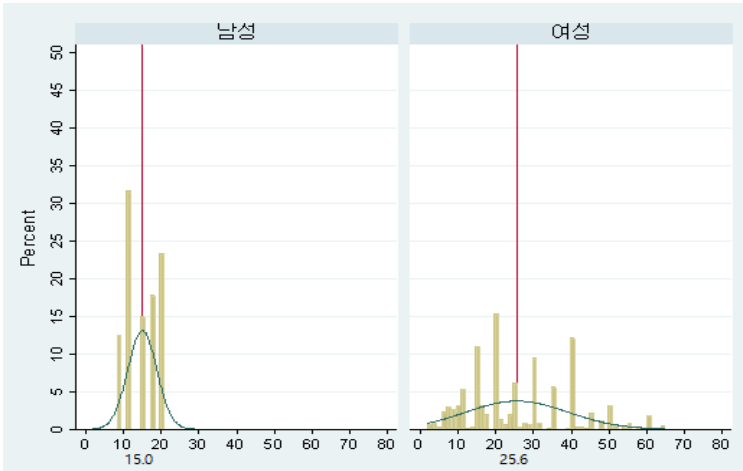
|      |              | 시간당 임금 |        | 남성<br>여성 | 일용직<br>임시직 |      | 주당<br>노동시간 |       | 월평균임금     |           | 남성<br>여성 | 일용직<br>임시직 |      |
|------|--------------|--------|--------|----------|------------|------|------------|-------|-----------|-----------|----------|------------|------|
|      |              | 남성     | 여성     |          | 남성         | 여성   |            |       | 남성        | 여성        |          | 남성         | 여성   |
| 2022 | 상용직          | -      | 14,201 |          |            |      | -          | 27.2  | -         | 1,434,310 |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 1.48   |          |            |      |            |       |           |           |          |            |      |
|      | 임시직          | 8,881  | 9,352  | 0.9      | 1.09       | 1.08 | 11.2       | 25.57 | 476,098   | 966,392   | 0.5      | 2.82       | 1.09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0.92   | 0.97   |          |            |      |            |       |           |           |          |            |      |
|      | 일용직          | 9,666  | 10,140 | 0.95     |            |      | 32.0       | 25.56 | 1,344,086 | 1,050,339 | 1.3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1.00   | 1.05   |          |            |      |            |       |           |           |          |            |      |
| 2024 | 상용직          | -      | 12,708 |          |            |      | -          | 26.7  | -         | 1,405,053 |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      | 1.29   |          |            |      |            |       |           |           |          |            |      |
|      | 임시직          | 8,561  | 9,292  | 0.9      |            | 1.16 | 11.3       | 26.1  | 440,730   | 963,434   | 0.5      |            | 0.95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0.87   | 0.94   |          |            |      |            |       |           |           |          |            |      |
|      | 일용직          | -      | 10,784 |          |            |      | -          | 21.6  | -         | 915,778   |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 1.09   |          |            |      |            |       |           |           |          |            |      |
| 2025 | 상용직          | -      | 12,002 |          |            |      | -          | 28.5  | -         | 1,438,416 |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 1.20   |          |            |      |            |       |           |           |          |            |      |
|      | 임시직          | 5,660  | 9,770  | 0.6      | 1.627      | 1.04 | 15.8       | 26.9  | 357,778   | 994,480   | 0.4      | 1.630      | 0.81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0.56   | 0.97   |          |            |      |            |       |           |           |          |            |      |
|      | 일용직          | 9,210  | 10,129 | 0.9      |            |      | 14.2       | 19.5  | 583,148   | 802,543   | 0.7      |            |      |
|      | 최저임금<br>대비비율 | 0.92   | 1.01   |          |            |      |            |       |           |           |          |            |      |

주: 조사주단 기간 동안의 주된 일자리에 관한 것으로, -는 사례수 없음 표시

임금은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조정된 것임.

노동시간 결측치가 있어 시간당임금과 주당노동시간은 결측치 반영 수치임.

〈그림 5〉 2025년 가사육아 임금노동자의 성별 주당 노동시간 (단위: %)



즉 2019, 2021년에서 알 수 있듯 남성 임시직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고, 남성 일용직도 2019년 최저임금보다 불과 1.3배, 2021년에는 1.4배만 높은 모습을 보이는 등 가사육아직은 남성도 최저임금 정도만 받는 저임금 노동시장인데 특히 경제위기 때는 성별 임금격차까지 큰 것이다. 다만 남녀 가릴 것 없이 임금이 낮고, 평균 및 분포를 보더라도 다수인 여성이 상대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에 월평균 성별 임금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라고 볼 수 있다.

#### 4) 성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 불평등

상술했듯 가사육아 임금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는 코로나19 같은 경제불안 시기에 컸다. 실제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하위집단에 따라 나눠 하위집단 간과 하위집단 내 불평등을 모두 볼 수 있는 타일지수 분해분석을 한 결과,<sup>7)</sup> 성별과 종사상지위에 따라 보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7) 타일지수는 일반화된 엔트로피의 한 형태로서, 소득 분포상 특정 위치의 소득을 민

전체 임금 불평등 지수(0.1340)와 종사상지위 간 불평등(0.0134)이 가장 컸고, 성별 불평등(0.00045)도 2025년(0.00056)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표 10〉 참조). 특히 그간의 변화를 보면 성별 불평등이 이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불평등 지수도 커졌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지수값에서 성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내 1%도 채 안 되어 임금 불평등은 성별 간보다는 주로 성별 내 불평등에 따른 것이었다. 2020년과 2025년 전체 임금 불평등을 비롯해 성별 불평등이 커졌을 때 남성 내 불평등도 커졌는데,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여성 내 불평등이 임금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야말로 최소 96%일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또 상술했듯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일용직 간에도 임금과 노동시간 등의 차이가 큰데, 다만 임금 불평등에 대해서는 ‘종사상지위 간’보다 ‘종사상지위 내’ 불평등의 영향이 더 컸다. 종사상지위 간 불평등 지수가 가장 컸던 2020년을 봐도 전체 임금 불평등에서 종사상 지위 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한 데 반해, 임시직 내 불평등의 비중은 약 57%로 가장 컸다. 또 일용직 내 불평등이 많이 증가하면서(12.7%p) 임금 불평등을 이끈 것도 있었다.

따라서 가사육아 인노동시장은 임금 불평등이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에 가장 커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코로나19 시기에 종사상지위에 따른 불평등이 더 컸지만 성별 불평등도 이례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성별과 종사상지위 각 범주 간 임금 불평등보다 각 집단 내 불평등이 더 컸으며, 구체적으로 여성 내 임금 차이에

---

감하게 반영하지 않고 소득들 간의 거리에 고른 가중치를 둔 경우, 개인의 소득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있는지의 비율에 이 ‘전체 평균소득 대비 개인 소득 비율’의 자연로그 값의 가중치를 곱해 합산해 구한다. 모든 개인의 소득이 같을 때는 0,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한 완전불평등 상태일 때는 1의 값을 갖는다. 불평등을 하위집단 내 불평등과 하위집단 간 불평등으로 분해하여, 집단 내와 집단 간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황선재·김정석, 2013: 211, 213; 신광영, 2013: 143).



따른 불평등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 가사육아 임금노동자 불평등의 타일지수 분해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타일지수         | 0.1238  | 0.1135 | 0.1312 | 0.1660 | 0.1026  | 0.1340  | 0.1163  | 0.1137   | 0.1071   | 0.1007  | 0.1254  |
| 남녀 간 불평등     | 0.00039 | 0.0002 | 0.0003 | 0.0002 | 0.00003 | 0.00045 | 0.00003 | 0.000002 | 0.000007 | 0.00004 | 0.00056 |
|              | 0.31%   | 0.2%   | 0.2%   | 0.1%   | 0.03%   | 0.34%   | 0.03%   | 0.001%   | 0.007%   | 0.04%   | 0.45%   |
| 남녀 내 불평등     | 0.1234  | 0.1133 | 0.1309 | 0.1658 | 0.1026  | 0.1337  | 0.1163  | 0.1137   | 0.1071   | 0.1006  | 0.1248  |
|              | 99.68%  | 99.8%  | 99.8%  | 99.9%  | 99.98%  | 99.75%  | 99.97%  | 99.99%   | 99.993%  | 99.96%  | 99.5%   |
| 남성           | 0.0004  | 0.0003 | 0.0002 | 0.0004 | 0.0023  | 0.0048  | 0.0026  | 0.0014   | 0.0002   | 0.0001  | 0.0010  |
|              | 0.3%    | 0.3%   | 0.2%   | 0.2%   | 2.3%    | 3.6%    | 2.2%    | 1.2%     | 0.2%     | 0.12%   | 0.8%    |
| 여성           | 0.1229  | 0.1130 | 0.1307 | 0.1655 | 0.1003  | 0.1289  | 0.1137  | 0.1123   | 0.1069   | 0.1005  | 0.1238  |
|              | 99.3%   | 99.5%  | 99.6%  | 99.7%  | 97.7%   | 96.2%   | 97.7%   | 98.79%   | 99.8%    | 99.84%  | 98.7%   |
| 종사상 지위 간 불평등 | 0.0077  | 0.0108 | 0.0041 | 0.0114 | 0.0065  | 0.0134  | 0.0070  | 0.0054   | 0.0050   | 0.0051  | 0.0012  |
|              | 6.2%    | 9.5%   | 3.2%   | 6.9%   | 6.3%    | 10.0%   | 6.0%    | 4.8%     | 4.7%     | 5.1%    | 0.9%    |
| 종사상 지위 내 불평등 | 0.1164  | 0.1037 | 0.1273 | 0.1552 | 0.0970  | 0.1256  | 0.1098  | 0.1079   | 0.1021   | 0.0957  | 0.1242  |
|              | 94.1%   | 91.4%  | 97.0%  | 93.5%  | 94.6%   | 93.7%   | 94.4%   | 95.0%    | 95.3%    | 95.1%   | 99.1%   |
| 상용직          | 0.0021  | 0.0009 | 0.0014 | 0.0012 | 0.0032  | 0.0028  | 0.0036  | 0.0042   | 0.0103   | 0.0049  | 0.0027  |
|              | 1.7%    | 0.8%   | 1.1%   | 0.7%   | 3.1%    | 2.1%    | 3.1%    | 3.7%     | 9.6%     | 4.8%    | 2.1%    |
| 임시직          | 0.0743  | 0.0559 | 0.0830 | 0.1099 | 0.0713  | 0.0762  | 0.0728  | 0.0709   | 0.0711   | 0.0688  | 0.1064  |
|              | 60.0%   | 49.2%  | 63.3%  | 66.2%  | 69.5%   | 56.9%   | 62.6%   | 62.4%    | 66.3%    | 68.3%   | 84.9%   |
| 일용직          | 0.0401  | 0.0469 | 0.0428 | 0.0442 | 0.0225  | 0.0465  | 0.0334  | 0.0328   | 0.0208   | 0.0221  | 0.0151  |
|              | 32.4%   | 41.3%  | 32.6%  | 26.6%  | 22.0%   | 34.7%   | 28.7%   | 28.8%    | 19.4%    | 21.9%   | 12.1%   |

주: 반올림하여 성별 내, 종사상지위 내 범주들의 불평등 합이 각 집단 내 불평등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렇다면 경제위기 시 임금불평등이 큰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전체 임금노동시장’을 비롯해 ‘돌봄보건서비스직’, 그리고 ‘가사육아직’과 ‘돌봄보건서비스직’을 제외한 ‘기타직’ 등 여타 노동시장과 비해서도 열악한 것일

까.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1/2 미만을 ‘빈곤계층’, 최저임금 미만을 ‘최저임금 미만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노동자’로 정의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구분하고 성별과 종사상지위에 따라 구성비를 비교해봤다.<sup>8)</sup>

전체 직종과 기타직에 비해 돌봄보건의서비스직과 가사육아직이 전체적으로 ‘빈곤계층, 최저임금 미만자, 저임금계층’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비중이 큰데, 특히 가사육아직이 내내 가장 열악했다(표 11) 참조). 최근 2025년 빈곤계층 비율만 봐도 약 5% 수준인 전체직과 기타직, 약 6%인 돌봄보건의서비스직과 달리 가사육아직은 약 25%에 달했다.

전체 임금노동시장을 보면, 2016년 일용직의 저임금계층 비율이 임시직에서보다 높았지만 2017년부터는 임시직 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용직이 두 번째로 높았다. 빈곤계층과 최저임금 미만자도 최근으로 올수록 임시직 내 비중이 가장 커 최근 들어 임시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었다.

기타직은 저임금계층뿐만 아니라 빈곤계층, 최저임금미만자의 비율과 순위 등의 특성이 전체 임금노동시장과 유사했다. 반면 가사육아직과 돌봄보건의서비스직은 여타 노동시장과 구분되는 면이 강했는데, 가사육아직은 2018~2020년과 2023~2024년 임시직 중 최저임금 미만자와 저임금계층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이외 연도에는 남성 내 비중이 가장 컸고 2017년에

8) 빈곤계층은 OECD를 비롯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계층’ 개념을 이용한 것으로(임완섭·장성현, 2025: 27), 다만 분석 대상을 고려해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 임금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각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시간당 임금은 ‘빈곤계층, 최저임금 미만자, 저임금계층’ 순으로 낮았다.

전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별 소득 구분선 추이(소비자 물가지수 미조정) (단위: 원)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빈곤계층    | 5,077 | 5,394 | 5,753 | 5,753 | 6,329 | 7,192 | 6,760 | 7,192 | 7,479 | 7,846  | 8,183  |
| 최저임금미만자 | 5,580 | 6,030 | 6,470 | 7,530 | 8,350 | 8,590 | 8,720 | 9,160 | 9,620 | 9,860  | 10,030 |
| 저임금계층   | 6,769 | 7,192 | 7,671 | 7,671 | 8,438 | 9,589 | 9,014 | 9,589 | 9,973 | 10,461 | 10,910 |

는 남성 중 저임금계층 비율이 약 99%에 달했다. 또 2018~2020년과 2023년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모든 취약계층 비율이 여성보다도 더 높았다.

돌봄보건의서비스직도 남성의 취약계층비가 여성에서보다 더 높은 때가 있는데, 2019년과 2023~2024년 빈곤계층, 최저임금 미만자, 저임금계층 모두 여성보다 더 높았고, 2025년에는 빈곤계층과 최저임금 미만자 계층비가 더 높은 모습을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 이러한 면이 강했다. 하지만 대체로 여성의 취약계층 구성비가 남성보다 더 높았다. 또 2017년 최저임금 미만자를 제외하고는 일용직의 취약계층 비중이 가장 컸다.

〈표 11〉 직종에 따른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약계층 구성 추이 (단위: %)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전체 | 전체  | ① | 8.2  | 8.5  | 7.7  | 4.5  | 4.9  | 5.5  | 4.2  | 5.4  | 4.8  | 5.3  | 5.3  |
|    |     | ② | 11.8 | 13.9 | 14.0 | 15.4 | 15.2 | 10.1 | 13.4 | 11.3 | 12.6 | 11.2 | 10.5 |
|    |     | ③ | 22.0 | 22.2 | 25.2 | 18.2 | 15.4 | 15.9 | 14.2 | 14.0 | 13.8 | 13.6 | 13.6 |
|    | 남성  | ① | 5.1  | 5.2  | 4.6  | 2.9  | 3.2  | 3.8  | 2.9  | 3.3  | 3.1  | 3.2  | 3.2  |
|    |     | ② | 7.2  | 8.4  | 8.2  | 9.6  | 9.7  | 6.8  | 8.7  | 7.2  | 8.3  | 7.1  | 6.6  |
|    |     | ③ | 13.4 | 13.5 | 15.5 | 11.5 | 9.9  | 10.5 | 9.4  | 8.7  | 9.0  | 8.6  | 8.4  |
|    | 여성  | ① | 12.2 | 12.9 | 11.7 | 6.6  | 7.0  | 7.8  | 5.9  | 8.1  | 6.8  | 7.8  | 7.9  |
|    |     | ② | 17.9 | 21.1 | 21.6 | 22.8 | 22.0 | 14.5 | 19.2 | 16.4 | 17.7 | 16.0 | 15.0 |
|    |     | ③ | 33.5 | 33.5 | 37.7 | 26.8 | 22.3 | 23.0 | 20.2 | 20.6 | 19.5 | 19.6 | 19.6 |
|    | 상용직 | ① | 2.3  | 2.1  | 1.8  | 1.0  | 1.2  | 1.6  | 1.0  | 1.0  | 0.8  | 0.8  | 0.7  |
|    |     | ② | 3.6  | 4.4  | 4.5  | 5.4  | 5.4  | 3.9  | 4.7  | 3.9  | 4.3  | 3.4  | 2.8  |
|    |     | ③ | 9.6  | 9.8  | 12.1 | 7.0  | 5.6  | 7.5  | 5.3  | 5.3  | 5.0  | 5.0  | 4.8  |
|    | 임시직 | ① | 18.0 | 20.2 | 19.3 | 11.0 | 12.5 | 15.6 | 11.8 | 18.1 | 17.6 | 19.5 | 20.1 |
|    |     | ② | 26.5 | 31.7 | 33.2 | 37.0 | 37.3 | 27.3 | 36.3 | 32.5 | 37.9 | 34.8 | 34.2 |
|    |     | ③ | 45.2 | 46.3 | 52.6 | 42.5 | 37.6 | 39.5 | 37.7 | 39.0 | 40.7 | 40.1 | 41.1 |
|    | 일용직 | ① | 22.9 | 24.0 | 20.8 | 15.5 | 15.0 | 18.9 | 13.2 | 12.3 | 9.8  | 11.5 | 10.8 |
|    |     | ② | 29.1 | 35.4 | 33.8 | 35.3 | 34.5 | 28.7 | 30.0 | 23.0 | 26.9 | 24.3 | 23.4 |
|    |     | ③ | 45.1 | 47.2 | 49.7 | 40.0 | 34.7 | 38.6 | 30.8 | 27.9 | 28.1 | 28.2 | 2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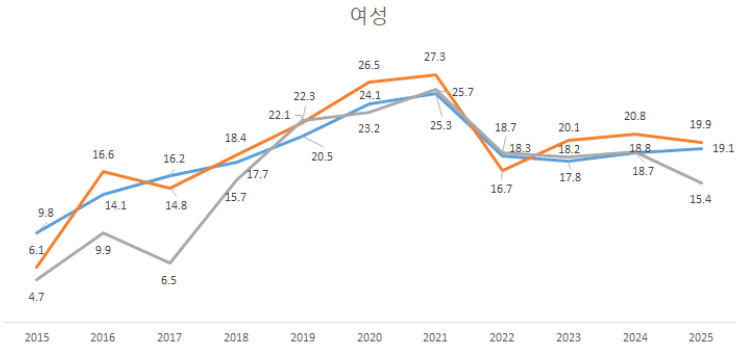
222 가사육아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기타       | 전체  | ① | 7.8  | 8.1  | 7.3  | 4.3  | 4.7  | 5.2   | 4.0  | 5.2  | 4.7  | 5.2  | 5.2  |
|          |     | ② | 11.3 | 13.3 | 13.4 | 14.7 | 14.6 | 9.6   | 12.9 | 10.9 | 12.0 | 10.7 | 10.1 |
|          |     | ③ | 21.2 | 21.3 | 24.2 | 17.3 | 14.8 | 15.1  | 13.7 | 13.4 | 13.1 | 13.0 | 12.9 |
|          | 남성  | ① | 5.1  | 5.1  | 4.5  | 2.9  | 3.2  | 3.8   | 2.8  | 3.3  | 3.1  | 3.2  | 3.1  |
|          |     | ② | 7.2  | 8.3  | 8.1  | 9.5  | 9.6  | 6.8   | 8.7  | 7.1  | 8.2  | 7.0  | 6.5  |
|          |     | ③ | 13.3 | 13.4 | 15.5 | 11.4 | 9.8  | 10.5  | 9.3  | 8.6  | 8.9  | 8.5  | 8.3  |
|          | 여성  | ① | 11.6 | 12.1 | 11.0 | 6.1  | 6.6  | 7.2   | 5.5  | 7.9  | 6.7  | 7.7  | 7.8  |
|          |     | ② | 17.2 | 20.2 | 20.5 | 21.7 | 21.2 | 13.6  | 18.5 | 15.9 | 16.9 | 15.4 | 14.6 |
|          |     | ③ | 32.3 | 32.1 | 36.2 | 25.4 | 21.5 | 21.6  | 19.5 | 19.7 | 18.6 | 18.8 | 18.7 |
|          | 상용직 | ① | 2.1  | 2.0  | 1.7  | 0.9  | 1.2  | 1.5   | 1.0  | 0.9  | 0.7  | 0.7  | 0.6  |
|          |     | ② | 3.4  | 4.2  | 4.2  | 5.1  | 5.1  | 3.6   | 4.4  | 3.7  | 3.9  | 3.1  | 2.6  |
|          |     | ③ | 9.3  | 9.4  | 11.5 | 6.6  | 5.3  | 7.1   | 5.0  | 4.9  | 4.6  | 4.6  | 4.3  |
|          | 임시직 | ① | 17.4 | 19.6 | 18.6 | 10.6 | 12.1 | 14.9  | 11.4 | 18.3 | 17.9 | 19.9 | 20.6 |
|          |     | ② | 25.9 | 31.0 | 32.4 | 36.4 | 36.8 | 26.6  | 36.2 | 32.7 | 38.1 | 35.0 | 34.9 |
|          |     | ③ | 44.3 | 45.3 | 51.5 | 41.7 | 37.2 | 38.5  | 37.6 | 39.0 | 40.8 | 40.3 | 41.4 |
|          | 일용직 | ① | 23.1 | 24.0 | 20.5 | 15.5 | 14.9 | 18.6  | 13.0 | 12.1 | 9.7  | 11.2 | 10.6 |
|          |     | ② | 29.3 | 35.3 | 33.5 | 34.9 | 34.1 | 28.4  | 29.6 | 22.6 | 26.3 | 23.9 | 23.0 |
|          |     | ③ | 45.1 | 47.0 | 49.4 | 39.6 | 34.3 | 38.2  | 30.4 | 27.5 | 27.5 | 27.7 | 27.3 |
| 가사<br>육아 | 전체  | ① | 28.7 | 34.0 | 34.8 | 26.7 | 29.7 | 35.6  | 32.4 | 26.1 | 23.5 | 25.3 | 25.4 |
|          |     | ② | 34.0 | 48.1 | 49.0 | 52.3 | 53.1 | 47.7  | 50.8 | 36.9 | 44.7 | 40.9 | 38.1 |
|          |     | ③ | 56.8 | 62.6 | 66.5 | 58.7 | 53.5 | 59.9  | 51.3 | 47.5 | 46.6 | 45.8 | 44.2 |
|          | 남성  | ① | 66.8 | 69.0 | 39.4 | 0.0  | 31.1 | 35.56 | 49.1 | 40.4 | 35.9 | 46.2 | 38.8 |
|          |     | ② | 71.0 | 89.9 | 80.0 | 23.9 | 52.4 | 35.6  | 73.6 | 64.8 | 35.9 | 46.2 | 70.4 |
|          |     | ③ | 71.0 | 89.9 | 99.2 | 23.9 | 52.4 | 49.2  | 73.6 | 64.8 | 35.9 | 46.2 | 70.4 |
|          | 여성  | ① | 28.5 | 33.8 | 34.8 | 26.8 | 29.7 | 35.58 | 32.1 | 26.1 | 23.5 | 25.2 | 25.2 |
|          |     | ② | 33.8 | 47.9 | 48.7 | 52.4 | 53.1 | 48.2  | 50.4 | 36.8 | 44.7 | 40.8 | 37.6 |
|          |     | ③ | 56.7 | 62.5 | 66.2 | 58.9 | 53.5 | 60.3  | 50.9 | 47.4 | 46.7 | 45.8 | 43.8 |
|          | 상용직 | ① | 16.5 | 4.6  | 12.4 | 0.0  | 4.9  | 0.6   | 5.0  | 7.9  | 10.3 | 1.9  | 3.3  |
|          |     | ② | 17.5 | 17.0 | 23.1 | 11.5 | 32.8 | 5.5   | 26.5 | 21.1 | 18.9 | 13.0 | 17.7 |
|          |     | ③ | 47.1 | 62.0 | 50.3 | 16.7 | 32.8 | 19.4  | 27.8 | 29.7 | 22.3 | 14.2 | 22.8 |
|          | 임시직 | ① | 37.5 | 42.7 | 40.7 | 33.1 | 35.6 | 41.3  | 40.4 | 30.0 | 27.6 | 29.5 | 28.7 |
|          |     | ② | 43.7 | 58.6 | 54.6 | 60.0 | 61.1 | 54.6  | 57.5 | 40.7 | 47.6 | 46.5 | 39.8 |
|          |     | ③ | 67.1 | 71.9 | 73.6 | 66.2 | 61.8 | 66.6  | 57.8 | 52.5 | 49.8 | 51.4 | 44.2 |
|          | 일용직 | ① | 15.6 | 21.3 | 25.2 | 13.3 | 20.2 | 27.8  | 20.9 | 17.6 | 13.5 | 18.5 | 18.1 |
|          |     | ② | 19.9 | 32.4 | 40.6 | 37.1 | 37.4 | 38.3  | 41.7 | 28.0 | 40.6 | 30.8 | 36.6 |
|          |     | ③ | 40.7 | 46.1 | 53.5 | 44.0 | 37.4 | 50.7  | 42.3 | 35.1 | 41.5 | 37.1 | 5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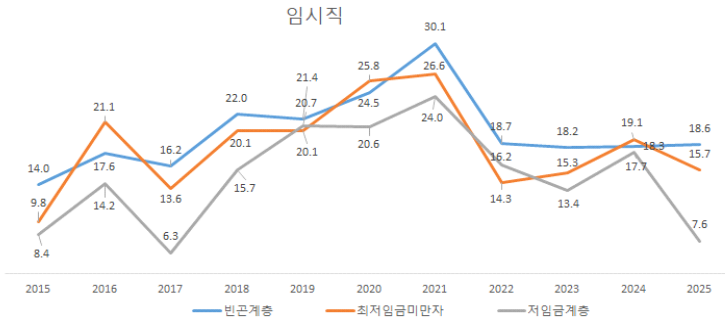
|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돌봄<br>보건<br>서비스 | 전체  | ① | 18.4 | 19.7 | 18.5 | 9.0  | 9.4  | 11.2 | 6.9  | 7.7  | 5.9  | 6.8  | 6.3  |
|                 |     | ② | 27.2 | 31.2 | 33.6 | 33.9 | 31.4 | 21.4 | 22.9 | 20.4 | 24.7 | 20.3 | 17.7 |
|                 |     | ③ | 51.2 | 52.1 | 59.0 | 42.8 | 31.6 | 36.8 | 24.9 | 28.8 | 28.6 | 27.1 | 28.2 |
|                 | 남성  | ① | 15.1 | 19.4 | 16.9 | 7.2  | 12.9 | 6.4  | 7.5  | 7.65 | 7.9  | 11.3 | 9.8  |
|                 |     | ② | 20.8 | 29.4 | 26.0 | 31.9 | 37.1 | 16.7 | 20.1 | 24.9 | 26.3 | 23.5 | 18.1 |
|                 |     | ③ | 42.8 | 44.0 | 45.8 | 37.9 | 37.3 | 32.0 | 20.7 | 30.6 | 30.4 | 28.7 | 24.9 |
|                 | 여성  | ① | 18.7 | 19.8 | 18.6 | 9.1  | 9.2  | 11.5 | 6.8  | 7.72 | 5.7  | 6.5  | 6.1  |
|                 |     | ② | 27.7 | 31.3 | 34.0 | 34.0 | 31.0 | 21.7 | 23.1 | 20.0 | 24.6 | 20.0 | 17.7 |
|                 |     | ③ | 51.9 | 52.6 | 59.7 | 43.1 | 31.2 | 37.0 | 25.2 | 28.7 | 28.4 | 27.0 | 28.4 |
|                 | 상용직 | ① | 10.8 | 11.4 | 10.9 | 5.9  | 4.2  | 6.3  | 3.7  | 4.6  | 3.2  | 3.3  | 3.2  |
|                 |     | ② | 17.5 | 21.1 | 24.9 | 25.7 | 20.7 | 15.4 | 16.1 | 15.2 | 18.8 | 14.6 | 12.6 |
|                 |     | ③ | 41.0 | 42.9 | 49.0 | 33.0 | 21.0 | 29.7 | 17.6 | 22.6 | 22.5 | 21.8 | 21.6 |
|                 | 임시직 | ① | 23.5 | 25.1 | 24.5 | 11.1 | 14.1 | 16.8 | 10.4 | 11.3 | 9.4  | 11.2 | 10.1 |
|                 |     | ② | 33.9 | 37.5 | 41.0 | 39.9 | 41.0 | 28.9 | 31.0 | 26.4 | 32.3 | 27.4 | 24.1 |
|                 |     | ③ | 58.7 | 57.8 | 67.3 | 50.6 | 41.1 | 45.9 | 33.8 | 36.3 | 36.4 | 33.7 | 36.5 |
|                 | 일용직 | ① | 29.6 | 34.9 | 28.3 | 21.8 | 20.4 | 29.0 | 18.0 | 27.0 | 15.5 | 21.9 | 16.9 |
|                 |     | ② | 40.0 | 51.9 | 39.6 | 61.1 | 55.0 | 36.0 | 38.4 | 45.6 | 51.8 | 43.6 | 33.9 |
|                 |     | ③ | 60.0 | 71.1 | 67.7 | 68.7 | 55.0 | 48.4 | 39.3 | 58.5 | 54.0 | 48.3 | 41.6 |

주: ① 빈곤계층, ② 최저임금 미만자, ③ 저임금계층  
노동시간에 결측치가 있어 시간당 임금 결측치를 반영한 수치임.

〈그림 6〉 가사육아직과 돌봄보건서비스직 간 여성, 임시직 임금노동자의  
취약계층 구성비 차이 (단위: %p)



## 224 가사육아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주: 노동시간에 결측치가 있어 시간당 임금 결측치를 반영한 결과임.

한편 가사육아 임금노동자 중 여성과 임시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줄곧 돌봄보건서비스직에 비해서도 빈곤계층, 최저임금 미만자, 저임금계층 비율이 더 높았다(〈그림 6〉 참조). 그런데 2019년 여성과 임시직에서 이들 노동시장 취약계층 모두 약 20%p 이상으로 벌어진 후 2021년 여성은 최대 약 27%p(최저임금 미만자 27.3%p), 임시직은 최대 약 30%p까지(빈곤계층 30.1%p) 격차가 커졌다가 2022년 다시 모두 10%p대로 감소했다.

이처럼 가사육아직과 돌봄보건서비스직 모두 열악하지만, 가사육아직은 남성과 임시직, 돌봄보건서비스직은 여성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많았다. 그런데 가사육아직 여성은 이 열악한 돌봄보건서비스직 여성보다도 내내 취약계층비율이 높을 정도로 임금이 더 낮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사육아직의 여성과 임시직이 똑같이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돌봄보건서비스직의 여성과 임시직에 비해서도 더 취약계층이 확대되었다. 임노동시장 중 가장 열악한 가사육아직에서도 특히 여성과 임시직의 가사육아 노동자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하락을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성별 불평등이 커지면서 전체 임금 불평등이 증가한 면이 있는데, 이는 상술했듯 경제위기 때 고학력 남성을 비롯해 남녀 모두 노동 공급이 늘어 임금의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특히 여성의 임금이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4.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양적 및 질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봤다. 2025년 가사육아직 취업자는 10여 년 전보다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취업자 중 남성은 2020년(3.1%)을 제외하고는 늘 1% 이내인 데 반해 여성은 남성보다 최소 약 32배(2020년) 이상 많았고, 저학력의 60대 이상 여성이 주된 노동자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여성은 고학력 청년층 및 고학력 40대~60대 이상이 증가했고, 남성은 고학력 청년층은 없지만 고학력 30대와 저학력 청년층이 새로 진입한 가운데 고학력 60대 이상도 늘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다양한 연령대에서 특히 고학력 남성들까지 가사육아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종사상지위 변화는 성별 차이가 더 분명해서 여성은 1인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그만큼 임시일용직 특히 임시직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1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다. 또 상용직은 여성만 존재하지만 2022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상용직이 정체됐고 여성은 임시일용직만 늘었으며, 또 남성을 중심으로 1인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되레 임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발견돼 가사육아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가사육아 임금노동자는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안 정한 비율이 높지만, 근속기간은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보다도 더 길었고,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모두 정의상의 고용계약기간보다 근속기간이 더 길었다. 따라서 가사육아직은 고용계약기간 미정(未定)이 반드시 고용불안정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었다. 또 남녀 공히 주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일하는 비율이 높아, 계약기간을 안 정한 채 호출노동처럼 단시간 노동을 했다 안 했다 하며 일을 계속해 온 ‘장기간의 단속적 노동’ 특성이 강했다.

노동시간이 짧은 일용직이 임시직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높지만, 상용직도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저임금 노동시장 특성이 강했다. 그런데 여성

은 일용직이 임시직보다 시간당 임금은 높아도 노동시간이 짧아 월평균 임금에서 일용직과 임시직의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남성은 일용직이 시간당 임금이 높고 노동시간도 더 길다 보니 월 임금의 격차가 더 커지는 해도 있어 가사육아직의 일용직과 임시직 간 차이 또한 성별 노동 차이에 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금융위기가 있던 2018년부터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년까지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시간당 임금이 더 낮지만 주당 노동시간이 더 길어 그나마 월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가 완화될 수 있었다. 가사육아 노동시장이 남녀 가릴 것 없이 저임금 노동시장이지만 특히 경제위기 시 성별 임금격차가 커지는 면도 있는 것이다. 물론 성별 불평등보다 종사상 지위별 불평등이 더 크고, 남녀 간이나 종사상 지위 간보다도 각 범주 내 특히 여성 내부의 불평등이 더 크지만,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에는 성별 불평등이 이례적으로 커지면서 전체 임금 불평등이 증가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2020년 고학력 남성들까지 진입하는 등 남녀 가릴 것 없이 노동 공급이 늘어 시간당 임금이 더 낮아진 가운데 특히 여성들이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었다. 즉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시 성별을 중심으로 더욱 다분화되고 계층화될 위험이 큼을 시사한다.

실제로 가사육아직은 전체적으로 빈곤계층, 최저임금 미만자, 저임금 노동자 등 모든 취약계층 비율이 여타 노동시장을 비롯해 돌봄보건의서비스 직보다 줄곧 더 높아 가장 열악한 일자리가 분명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특히 여성과 임시직이 더 극심한 소득 하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육아직은 노동자가 적어 가사 플랫폼만 해도 서비스 이용자와의 매칭률이 70~80%에 불과한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인데(『월간조선』, 2024. 2월) 이처럼 지난 10여 년 간 축소되는 와중에 임금, 노동시간, 근속 기간 등 일자리 질의 성별 차이가 컸고, 역설적으로 다른 직종보다도 노동시장 취약계층비가 클 정도로 일자리 질 또한 열악했다.

그런데 가사육아 노동자는 2015년부터 플랫폼 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



고 여기에 계속해서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어 인적 구성과 질적 특성의 분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플랫폼 노동이 대변하는 돌봄노동의 디지털화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 등 기존의 성별 불평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의 시장화와 상품화를 틈 타 소비 여력에 따른 여성 내부의 불평등도 심화시키고, 여성 노동을 전통적인 성역할 부문으로 고착화하여 여성의 돌봄역할까지 강화할 것이라 예견된다(이다혜, 2019). 가사육아 노동시장이 성별 차이를 넘어 계층별, 인종별 차이까지 심화되지 않도록 일자리 질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가사육아 노동자가 최대 60만 명까지도 추정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한 조사를 시행하여 양적 규모와 질적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내는 것이 시급하다. 더욱이 코로나19 시기 성별 임금 불평등의 악화가 보여주듯 가사육아 노동시장은 경기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진입과 퇴장 인력을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가사육아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분류 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가사육아 노동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구분되고 있는데, 가사육아 노동자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를 인정한다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로 직종이 변경돼야 한다.

업종 분류와 관련해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즉 알선업적 성격이 강함에도 제각각 분류되는 플랫폼 기업들의 분류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가사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원대에서 2025년 6조원대로 늘어나고, 특히 온라인 가사서비스 시장이 2017년 1,000억 원 미만 수준에서 2025년 8,000억 원대로 8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월간조선, 2024.2.). 실제로 가사·돌봄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이용자(중복 포함)만 해도 2024년 7월 약 45만 7,000명으로, 2021년 7월(약 27만 4,000명) 대비 67%, 1년 전인 2023년 7월(약 28만 9,000명)에 비해서도 약 58%가 증가했고, 2023년 전년

대비 매출액을 보면 가사도우미 플랫폼인 ‘미소’는 90%, ‘청소연구소’도 30% 증가했다. 육아도우미 플랫폼인 ‘맘시터’는 2023년 거래 추산액이 2,600억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00% 급증했다(한경BUSINESS, 2024.8.28.). 이렇듯 알선업적인 가사육아 플랫폼 업체가 확장세이지만, 정부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소속 노동자가 노동관계법령상의 노동자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다면 이런 알선업종의 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인증은 얼마나 받았는지 집계가 되어야, 전체 알선업 기업 모수 중 노동자 지위 보장 집단의 규모와 실제 근무환경 등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사육아직종의 플랫폼 기업들은 직업안정법 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했더라도, 통계 업종 분류상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인 자란다 외에는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인 쉼썬악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인 홈스토리생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 휴브리스같이 자의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기실 현재 법적으로도 노무제공플랫폼 업체가 단순히 ‘노무중개·알선사업자’인지, 아니면 가사육아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지배하여 사용자성이 강한 ‘노무이용자’인지도 논란이 뜨겁다(남궁준, 2025: 28-29). 사용자인데 법적 정의가 잘못될 경우 소속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오분류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도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sup>9)</sup>’ 등의 동

9) 2022년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가사육아 취업자의 업종 중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비중은 2023년 약간 증가했지만 곧 예년 수준으로 되었다. 한편 2023년 특히 남성에서 급증했는데, 이들은 모두 저학력 50대로 일용직 노동자였다.

가사육아 취업시장 산업 내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비중 (단위: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취업자   | 5.3  | 8.5  | 5.4  | 4.2  | 3.6  | 4.3  | 5.6  | 4.3  | 6.0  | 3.2  | 4.8  |
| 남성    | 0.0  | 35.8 | 0.0  | 0.0  | 0.0  | 0.0  | 1.5  | 0.0  | 31.5 | 0.0  | 0.0  |
| 여성    | 5.4  | 8.4  | 5.4  | 4.2  | 3.6  | 4.4  | 5.7  | 4.3  | 5.9  | 3.2  | 4.9  |
| 임금노동자 | 7.0  | 10.4 | 6.6  | 4.9  | 4.4  | 4.9  | 6.3  | 4.7  | 6.4  | 3.2  | 5.1  |
| 남성    | 0.0  | 46.4 | 0.0  | 0.0  | 0.0  | 0.0  | 2.0  | 0.0  | 44.1 | 0.0  | 0.0  |
| 여성    | 7.1  | 10.3 | 6.7  | 4.9  | 4.5  | 5.0  | 6.4  | 4.7  | 6.2  | 3.2  | 5.2  |

일 산업 범주로 명료하게 구분되어야 플랫폼 가사육아 노동자를 제대로 분류해 내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예산액의 추정 하에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책 등도 고안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사육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사육아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분류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것이다.

관련하여 가사직과 육아직 각각의 정확한 규모 추정과 노동실태 분석을 위해 지역별고용조사 등의 데이터를 직종 세분류까지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시기에 남성은 저학력 청년층, 여성은 학력과 상관없이 청년층이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공보육이 마비되면서 가정의 아이돌봄 수요가 커져 청년층이 플랫폼을 통해 육아직에 진입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육아 플랫폼은 돌봄과 교육을 구분해 교육활동의 시급을 더 높게 책정하고, 오래 일할수록 시급도 올리며, 돌보는 아이가 늘거나 근무 시간이 초과되면 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해 플랫폼 경제로 전환되면서 근무조건이 개선된 면이 있지만(신재열 외, 2025), 가사 플랫폼은 그 반대이다. 예컨대 가사 플랫폼 노동자들은 2025년 기준 1년 전보다 일감과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약 44%였고, 일감은 늘었는데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약 35%였으며, 또 일감 미수락 시 단가와 거리에서 좋은 일감 제시를 중단하거나(약 46%), 일시적인 앱 차단(약 12%), 계약 해지와 강제 탈퇴를 하는 비율(약 8%)도 상당했다(최영미, 2025: 44-45). 이처럼 가사직과 육아직은 노동자의 연령과 성별 구성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 특성도 다른 만큼 돌봄노동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두 직종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이 여성 지배 직종에서 남성은 가사직과 육아직 중 진정 어디에 더 있는 것인지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종 세분류까지 정부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이 글에서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설명했듯 법 시행 이후 자영업자로 전환된 남성 가사육아노동자가 상당수 발견된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인증 업체와 비인증 업체로 양분됐지만, 한국

은 유럽과 달리 정부인증을 받지 않아도 인력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보니, 비인증 업체로서는 인증을 받고 노동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등을 계속 보장하기보다 웃돈을 더 주겠다고 유인하면서 인력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한국일보』, 2021. 5. 24.). 가사노동자 또한 인증 업체에만 전속되기보다 직업소개소, 중개업체, 중개 플랫폼, 직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하는 조건의 일감을 선택하며 일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듯 인증업체 소속 노동자는 전체 가사육아노동자의 1%도 안 됐다. 따라서 더 많은 가사육아 노동자들이 제도권 내의 공식 노동시장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인증업체 수를 늘리고, 인증업체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글은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업체의 요구로 혹은 자의에 의해 자영업자로 전환하여 일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된 경우가 남성을 중심으로 상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플랫폼 가사노동서비스가 모성성과 가정중심성 같은 여성의 성역할 수행을 강조하면서 일감 매칭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여성인지의 여부 자체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이상아 외, 2023: 73), 이는 플랫폼 경제로 전환될수록 더 심화될 수 있다. 즉 가사육아서비스가 플랫폼화될수록 남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선호되지 않으면서 비임금노동자로 쏠릴 가능성이 큰 만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육아 노동자를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로 지정해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사회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제 노동을 했다 안 했다 하며 계속해 온 가사육아 임노동자의 노동 특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면, 아이돌보미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버스정류장 등의 아이돌보미 모집 광고는 계속 있지만 인원은 2만 8천여 명으로 일정해 아이돌보미 신청 가정의 대기 기간만 30일이 넘고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실정이다(『노동과 세계』, 2025. 11. 20.).

그런데 가사육아 임노동자들이 단속적인 단시간 노동을 장기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근속수당 등 근속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처우 개선을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이 요구된다. 종사상 지위별과 성별 불평등 및 이들 변수의 각 범주 내 임금 불평등이 큰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사육아 노동자의 인사 노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의 불균등한 임금 분포를 개선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여성 고용과 가구 구성의 변화 등 사회 흐름상 가사육아 노동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에도 왜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지의 변화에 주목해 ‘음지화된 노동시장’의 실체를 분석했다.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축소 현상을 단순히 규모 감소 차원이 아닌 일자리 질 악화와 취약계층 집중이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재조명한 의의가 있다. 또 여성은 임시일용직, 남성은 비임금 노동자로 되는 성별 분화, 여성 내 불평등이 가장 큰데 경제위기 시 성별 임금격차까지 확대되는 현상 등을 드러내면서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젠더 분석이 중요함을 실증했다. 하지만 남성 1인 자영업자의 증가를 ‘플랫폼 경제 전환 속 특고노동자화’로 해석했지만, 왜 종사상 지위별 및 성별로 노동 특성의 차이가 큰지 특히 왜 이렇게 가사육아 노동시장이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조화되는지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 경제위기 때의 성별 임금 불평등 심화 원인을 노동 공급 증가 속 노동시장 취약계층 비율의 차이로 설명했는데, 종사상 지위별 및 성별 임금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이용해 기술분석 수준을 넘어 노동 현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블랙박스 같은 이 노동시장부터 제대로 분석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경쟁을 통해 비용이 조정되게끔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사육아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과 수요자의 비용 부담에만 주목했던 정부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 | 참고문헌 |

- 강석금. 2015. “가사노동자 노동주체와 노동성격 변화.” 『진보평론』 64: 238-267.
- 김난주 · 이선행. 2020. “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자료집(2020.6.18.).
- 김난주. 2023. “고용안전망은 돌봄 노동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포럼.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전망 실태와 개선방안』 (2023.10.19.).
- 김덕호. 2021. 『세탁기의 배신』. 서울: 뿌리와 이파리.
- 김도균. 2021. “팬데믹 국면의 ‘고용주 없는 노동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52(2): 163-186.
- 김양숙. 2022. ““국가 공인 돌봄 전문가”와 “조선족 이모”: 이주민과 비이주민 돌봄 노동자들의 저항과 한계.” 『한국이민학』 9(1): 5-22.
- 김화연 · 이나영. 2024.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인종화된 젠더 질서의 재생산.” 『한국사회정책』 31(3): 181-210.
- 남궁준. 2025. “플랫폼 노동과 국제노동기준”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포럼. 『플랫폼 노동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과제: ILO 논의와 현장 쟁점』 자료집(2025.10.1.).
- 남기성 · 천영민. 2021. “좋은 일자리 새로운 분류 제안 및 분석.” 『직업과 자격 연구』 10(1): 1-18.
- 낸시 폴브레. 2007.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경제학』. 윤자영(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문순영 · 방대욱. 2010. “인증사회적기업의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일자리와의 비교.”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121-154.
- 문희숙 · 최인이. 2024.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의 감정노동 경험: 돌봄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3): 25-58.
- 박은하. 2011. “성별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결정요인 연구.” 『한국여성학』 27(3): 1-38.
- 방하남 · 이영면 · 김기현 · 김한준 · 이상호. 2007. 『고용의 질: 거시 · 기업 · 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백학영. 2016.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 변화 분석.” 『지역과 세계』 40(1): 189-217.
- 신광영. 2013.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 신재열 · 김준영. 2025. “아이돌봄 노동의 플랫폼 전환과 근무조건의 개선.” 『계간 고용이슈』 2025년 여름호: 72-85.
- 안윤숙 · 이상호. 2010. “공보육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영유아보육학』 63 : 227-258.
- 알바 갓비. 2024. 『친밀한 착취 돌봄노동』. 전경훈(역). 서울: 니케북스.
- 양미선 · 이규림 · 정지운 · 김정민. 2016. 『공보육 · 교육 공급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요코타 노부코. 2007.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취업체제의 변화와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일본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장지연 · 요코타 노부코.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노동과 삶』. 파주: 한울 아카데미. 63-109.
- 우에노 지즈코. 2024. 『돌봄의 사회학』. 조승미 · 이혜진 · 공영주(역). 파주: 오월의 봄.
- 이규용. 2023. “돌봄서비스업 노동시장 구조와 외국인 인력 공급.” 『월간 노동리뷰』. 2023년 6월호: 7-28.
- 이다혜. 2019.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60: 365-397.
- 이문호 · 김혜진 · 이병훈 · 진숙영 · 황선웅 · 박명준 · 김한나. 2018. 『서울형 좋은 일자리 표준지표 개발 및 일자리 질 평가 연구』. 서울특별시.
- 이상아 · 이채은. 2023. “플랫폼 가사서비스 노동과정의 특성.” 『플랫폼 가사노동 연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미발간.
- 이성균. 2011.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비교 및 요인분석-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2(2): 5-29.
- 이순국. 2024. “제주 노동시장과 좋은 일자리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2024.2.21.).
- 이준희. 2021. “가사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논의 현황과 대안-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매개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집』 51: 149-202.
- 이춘희. 2024.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관한 소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6(3): 135-160.
- 임완섭 · 장성현. 2025. 『2025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주영. 2023.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Issue Brief』 2023-03: 1-8. 이민정책연구원.
- 조혁진. 2023. “재가서비스 분야의 돌봄노동과 외국인력 수요.” 『월간 노동리뷰』 2023년 6월호: 29-44.
- 주수인. 2023. “외국인 돌봄 노동시장 특징과 쟁점.” 『월간 노동리뷰』 2023년 6월호: 59-72.
- 채민석 · 이수민 · 이하민. 2024.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BOK

## 234 가사육아시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 이슈노트』 제2024-6호: 1-49.
- 최영미. 2021.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 『노동N이슈』 제2021-01호: 1-13.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_\_\_\_\_. 2022.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가사노동자 조직화 과제.” 『노동N이슈』 제2022-05호: 1-4.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_\_\_\_\_. 2023. “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과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과제.” 『노동N이슈』 제2023-04호: 1-1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_\_\_\_\_. 2025. “플랫폼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포럼. 『플랫폼 노동의 국제기준과 한국의 과제: ILO 논의와 현장 쟁점』 자료집 (2025.10.1.).
- 한 준. 2001. “최저일치법을 이용한 남녀간 직업 배열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24(1): 149-176.
- 홍성우. 2008. “광주·전남 노동시장 고용의 질 측정과 향상방안.” 『지역개발연구』 40(2): 17-36.
- 황덕순. 2013. “돌봄노동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노동리뷰』 2013년 3월호: 5-17.
- 황선재·김정석.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47(4): 201-226.
- Sally Choi. 2011. “아시아의 가사노동자 현황.”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4월호: 29-38.
- Kalleberg, A. L. 2011. *Good Jobs, Bad Jobs: The Rise of Polarized and Precarious Emplo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1970s-2000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Oelz, Martin and Uma Rani. 2015. *Domestic Work, wages, and gender equality- Less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ILO,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No. 7.
- Paula England, Michelle Budig and Nancy Folbre. 2002. “Wages of Virtue: The Relative Pay of Care Work.” *Social Problems*, 49(4): 455-473.
- 김다빈. 2024. “‘알바 이모’도 앱으로…가사·돌봄 플랫폼 뜬다.” 〈한국경제TV〉. 2024. 8.14.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4081439611> [검색일: 2025.12.15.]
- 김청환. 2021. “가사노동권 대폭 향상된다고? “영세업체 ‘당근’ 없인 효과 없다.”” 〈한국일보〉. 2021.5.2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316050002032> [검색일: 2025.11.30.]



- 김태림. 2024. “‘이모님, 하루 4시간만 부탁드립니다’, 팽창하는 가사·돌봄 시장.” 〈한경 BUSINESS〉. 2024.8.28.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8216121b?utm\\_source=chatgpt.com](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8216121b?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12.15.]
- 민주일반연맹. 2025. “‘별도 지원 없다더니’…정부·여당, 아이돌봄 민간기관 재정지원 법안 추진 논란.” 〈노동과세계〉. 2025.11.20.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290> [검색일: 2025.11.30.]
- 박소정. 2023.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 불붙었지만… ‘제대로된 통계도 없어.’” 〈조선비즈〉. 2023.6.5.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6/05/7ZMDBJNBUIJGUXLCWRXNGO7RNGY/](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6/05/7ZMDBJNBUIJGUXLCWRXNGO7RNGY/) [검색일: 2023.10.10.]
- 이지민. 2025. “‘단독’ 정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세계일보〉. 2025.9.7.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7509247?OutUrl=naver> [검색일: 2025.11.10.]
- 정혜연. 2024. “대한민국의 희망, 스타트업에 뛰어든 사람들 ② 한정훈 홈스토리생활대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양성화·전문화 꿈꾼다.”” 〈월간조선〉. 2024.2월.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402100040> [검색일: 2025.12.15.]
- 통계청. 2017.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
- \_\_\_\_\_. 2024.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
- 맘스홀릭. 2020.7.13. “짜깁악어나 자란다에서 영어시터 써보신분?” <https://cafe.naver.com/f-e/cafes/10094499/articles/51114189?boardtype=L&referrerAllArticles=true&inCafeSearch=true&query=%EC%A7%B8%EA%B9%8D%EC%95%85%EC%96%B4%EB%82%98%20%EC%9E%90%EB%9E%80%EB%8B%A4%EC%97%90%EC%84%9C%20%EC%98%81%EC%96%B4%EC%8B%9C%ED%84%B0%20%EC%8D%A8%EB%B3%B4%EC%8B%A0%EB%B6%84&art=aW50ZXJyYWwtY2FmZS1hcnRpY2xlLXJlYWQtaW5DYWZlLXNlYXJjaC1saXN0.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lYWZlVHlwZSI6IkNBRkVfSUQiLCJhcnRpY2xlSWQlOiJlUxMTE0MTg5Ljpc3N1ZWRBdCI6MTc3NzUyMjUwNjg4MSwiY2FmZUlkdjoxMDA5NDQ5OX0.G8qMPi8zwzAMuX-MIAAAxfbSRl6YwvoBKNm0JqWz8&page=3> [검색일: 2025.11.30.]

성중맘. 2020.6.21. “돌지난 아기 두신 분들 요즘 아기랑 뭐하고 지내시나요-” [https://cafe.naver.com/f-e/cafes/11451612/articles/1620317?boardtype=L&referrerAllArticles=true&inCafeSearch=true&query=%EB%8F%8C%EC%A7%80%EB%82%9C%20%EC%95%84%EA%B8%B0%20%EB%91%90%EC%8B%A0%20%EB%B6%84%EB%93%A4%20%EC%9A%94%EC%A6%98%20%EC%95%84%EA%B8%B0%EB%9E%91%20%EB%AD%90%ED%95%98%EA%B3%A0%20%EC%A7%80%EB%82%B4%EC%8B%9C%EB%82%98%EC%9A%94%E3%85%9C%E3%85%9C&art=aW50ZXJuYWwY2FmZS1hcnRyY2xlLXJlYWQtaW5DYWZlLXNlYXJjaC1saXN0.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 nRyY2xlSWQlOiE2MjAzMTcsImZc3VlZEF0IjoxNzc3NTIyNjUwNTQwLjYjYWZlSWQlOiExNDUxNjE5fQ.hEookrtKcsXsWWgPk3S-bB5bbzxSB\\_ZzUGn-S0pCSs&page=6](https://cafe.naver.com/f-e/cafes/11451612/articles/1620317?boardtype=L&referrerAllArticles=true&inCafeSearch=true&query=%EB%8F%8C%EC%A7%80%EB%82%9C%20%EC%95%84%EA%B8%B0%20%EB%91%90%EC%8B%A0%20%EB%B6%84%EB%93%A4%20%EC%9A%94%EC%A6%98%20%EC%95%84%EA%B8%B0%EB%9E%91%20%EB%AD%90%ED%95%98%EA%B3%A0%20%EC%A7%80%EB%82%B4%EC%8B%9C%EB%82%98%EC%9A%94%E3%85%9C%E3%85%9C&art=aW50ZXJuYWwY2FmZS1hcnRyY2xlLXJlYWQtaW5DYWZlLXNlYXJjaC1saXN0.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 nRyY2xlSWQlOiE2MjAzMTcsImZc3VlZEF0IjoxNzc3NTIyNjUwNTQwLjYjYWZlSWQlOiExNDUxNjE5fQ.hEookrtKcsXsWWgPk3S-bB5bbzxSB_ZzUGn-S0pCSs&page=6) [검색일: 2025.11.30.]

\_\_\_\_\_. 2020.12.30. “20대, 30대 젊은 하원도우미(시터)고용해보신분 계신가요?” [https://cafe.naver.com/f-e/cafes/11451612/articles/1696535?referrerAllArticles=true&inCafeSearch=true&query=20%EB%8C%80%2C%2030%EB%8C%80%20%EC%A0%8A%EC%9D%80%20%ED%95%98%EC%9B%90%EB%8F%84%EC%9A%B0%EB%A%BF%B8\(%EC%8B%9C%ED%84%B0\)%EA%B3%A0%EC%9A%A9%ED%95%B4%EB%B3%B4%EC%8B%A0%EB%B6%84%20%EA%B3%84%EC%8B%A0%EA%B0%80%EC%9A%94%3F&art=aW50ZXJuYWwY2FmZS1hcnRyY2xlLXJlYWQtaW5DYWZlLXNlYXJjaC1saXN0.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 nRyY2xlSWQlOiE2OTY1MzUsImZc3VlZEF0IjoxNzc3NTIyNzI5OTE2LjYjYWZlSWQlOiExNDUxNjE5fQ.ZMZg3AKYWTmT6\\_LF-utnqjQiJTWk1Gsqy73F9De2vqI](https://cafe.naver.com/f-e/cafes/11451612/articles/1696535?referrerAllArticles=true&inCafeSearch=true&query=20%EB%8C%80%2C%2030%EB%8C%80%20%EC%A0%8A%EC%9D%80%20%ED%95%98%EC%9B%90%EB%8F%84%EC%9A%B0%EB%A%BF%B8(%EC%8B%9C%ED%84%B0)%EA%B3%A0%EC%9A%A9%ED%95%B4%EB%B3%B4%EC%8B%A0%EB%B6%84%20%EA%B3%84%EC%8B%A0%EA%B0%80%EC%9A%94%3F&art=aW50ZXJuYWwY2FmZS1hcnRyY2xlLXJlYWQtaW5DYWZlLXNlYXJjaC1saXN0.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jYWZlVHlwZSI6IkNBRkVfSUQiLCJhc nRyY2xlSWQlOiE2OTY1MzUsImZc3VlZEF0IjoxNzc3NTIyNzI5OTE2LjYjYWZlSWQlOiExNDUxNjE5fQ.ZMZg3AKYWTmT6_LF-utnqjQiJTWk1Gsqy73F9De2vqI) [검색일: 2025.11.30.]

Abstract

## How Is the Domestic and Childcare Labor Market Changing? – Focusing on Gender-Based Job Quality Comparisons in 2015~2025

Moon, Jisun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This study conducted a gender-comparative analysis centered on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childcare occupation in addition to the quantitative scale from 2015 to 2025. Domestic and childcare workers increased centering on temporary and daily workers for women and self-employed workers for men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Workers Act in 2022, so it was likely that this act was related with a balloon effect increasing men's self-employed workers. These workers often performed short-term labor for extended periods based solely on the employer's needs without fixed employment contracts, and even regular workers' wages were merely at the minimum wage level. Furthermore, while wage inequality by occupational status is greater than gender inequality, and inequality within each category is greater than between categories, overall wage inequality increased in 2020 at which the COVID-19 pandemic was at its peak as the gender wage gap widened. Also the proportion of vulnerable workers remained consistently the highest compared to other occupations. Therefore, the domestic and childcare occupation was always the most vulnerable labor market, and denoted the significant wage inequality across and within gender and

occupational status categories, but especially during economic crises wage inequality worsened centering on gender wage inequality.

**Key words:** domestic and childcare occupation, care labor market, labor supply shortage, job quality, platform economy

■ 투 고 일 : 2026년 3월 17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2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2일

# 팬데믹 시기 60대 여성들의 자기 계발과 그 의미

— 나이듦 그리고 불안과 마주하기\*

최이숙\*

## | 목차 |

- |                            |                         |
|----------------------------|-------------------------|
| 1. 들어가며                    | 5. 514 챌린지 참여-나이듦과 마주하기 |
| 2. 기존문헌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6.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기 계발의 의미  |
| 3. 연구방법                    | 7. 나가며                  |
| 4. 팬데믹, 온라인으로 전이된 자기 계발 실천 |                         |

## | 초록 |

이 연구는 팬데믹 시기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 계발과 챌린지에 참여한 60대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진행된 자기 계발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팬데믹의 발생으로 우리의 일상에 강제적 디지털화가 일어났던 사회적 조건 속에서 본 연구는 자기 계발 실천을 노년 여성들이 감염병 위기가 초래한 사회 변동에 대한 간파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022년 〈김미경과 함께하는 514 챌린지〉에 참여했고 유료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여성들과의 인터뷰, 챌린지가 진행된 주요 공간(Youtube, 오픈 채팅방)에 대한 참여 관찰을 바탕으로 이들의 자기 계발 실천 동기 및 양상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에게 자기 계발은 젠더화된 산업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놓인 여러 제약을 넘나들 수 있는 방안이었다. 팬데믹의 도래에 따른 일상의 변화, 나이듦에 동반되는 불확실한 미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389)

\*\* 동아대학교 젠더·어팩트 연구소 socio21@gmail.com

래, 디지털 기술이 추동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공간 속 자기 계발 실천에 동참하였다. 젠더, 연령이 삭제된 자기 계발 서사에 동조하면서, 디지털미디어 공간 속 끊임없는 미디어 실천을 통해 이들은 나이들의 제약 속에서도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존재로 자신을 구성해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실천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주제어:** 팬데믹, 노년여성, 자기계발, 디지털미디어, 나이들

## 1. 들어가며

팬데믹 종식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 각자 도생 정서의 확산 등 팬데믹 시기의 흔적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감염병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에 따른 일상의 강제적 디지털화로 디지털 취약 계층인 노년층의 삶도 큰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노년층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팬데믹 시기 노년여성들의 디지털 공간 속 자기 계발 실천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자기 계발 실천은 감염병이 초래한 불안과 삶의 위기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Gill & Orgad, 2022).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립된 자신의 생활을 성실히 지켜내기 위해 사람들이 활용했던 습관 형성 앱의 이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소위 ‘바른 생활 루틴’이들의 해시태그를 활용한 SNS 인증 활동이(예를 들면 #오하운-오늘하루운동-, #감사일기, #미라클모닝 등) 코로나 시기 하나의 트렌드로 거론될 정도였다(김난도 외, 2022). 이러한 유행은 결국 위기의 상황에서 시장이 원하는 주체로 자신을 구성해냄으로써, 살아남고자 했던 개인들의 선택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Nehring, 2024). 각자도생

의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왔던 팬데믹 시기, 자기 계발 문화 및 그 실천 양상에 대한 탐구는 이에 대한 사회적 열기에 비해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2022년 〈김미경과 함께하는 514 챌린지(이하 514 챌린지)〉에 참여했고, 그녀가 운영하는 자기 계발 교육 플랫폼([www.mkyu.co.kr](http://www.mkyu.co.kr))<sup>1)</sup>을 이용했던 노년여성들의 목소리와 삶에 다가서고자 한다. 이들이 살아온 여정에 주목하면서, 당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자기 계발 문화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고, 디지털 공간 내의 다양한 자기 계발 실천이 이들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팬데믹 노년층에 대한 논의는 사실 매우 다층적이다. 신체적으로 감염병에 가장 취약해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집단으로 규정되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계층으로 재현되었다(양은경, 2024). 취약한 존재라는 시선과 달리, 팬데믹이 노년층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최인철 등(2022)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MZ세대에 비해 감염에 더 취약한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언택트 라이프에 의해 노년층이 이전에 비해 외로움, 그리고 우울감을 가중시켰다고 언급한다(성민경·성경미, 2024; 김민준 외, 2023). 이상의 논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년 인구가 이들의 거주지, 계층, 디지털미디어 이용 양상 등에 따라 팬데믹을 균일하게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자기 계발이라는 살아남기 수단에 다가섬으로써, 그동안 다소 간과되었던 팬데믹 시기 노년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에게 팬데믹은 어떤 의미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될 것이다. 또한 취약

1) 〈514 챌린지〉에 대해서는 이 글의 3장 연구 방법과 5장(10쪽)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MKYU는 Mikyung & U university의 약자로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김미경이 시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행위자로 이들을 바라보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상 속 많은 활동이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노년층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실천과 그 의미에 대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2. 기존문헌 검토 및 이론적 논의

### 1) 노년(여성)의 삶과 나이듦에 대한 시선

고령인구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인 국가이며(배재성, 2025), 특히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세진, 2024). 노인 인구 내의 양극화 역시 사회적 문제로 자주 거론되었는데, 2022년 고령자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소득 격차는 2019년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소득 5분위 배율은 6.62배로<sup>2)</sup> 다른 세대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이상의 결과는 노년층의 삶이 동질적이지 않으며, 계층에 따라 젠더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노년 돌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노년 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노년층 내 의견이 절반이 넘어섰지만(통계청, 2022), 노년층의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6.7%에 불과하고 공적 돌봄을 받는 노인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강은나 외, 2023).<sup>3)</sup> 이상의 조사는 확

2)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의 노인들이 하위 20%의 노인에 비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팬데믹 시기였던 2022년 조사에 의하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와 비교할 때, 6.62배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통계청, 2022).

3) 노년층 실태 조사(강은나 외, 2023)에 의하면, 노년 돌봄은 여전히 가족에 의해 수



대된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책임이 상당 부분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나이들이 경제적 무능력과 사회적 부담으로 규정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장상철, 2024).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나이들은 자연스레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피하고 싶거나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의미화 되었다(양은경, 2024; 장상철, 2024).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성공적인 노화, 긍정적인 노화, 액티브 시니어 등 ‘노화’, ‘노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미디어 속에 재현된 ‘바람직한 노년상’을 논의한 김은준(2017)의 연구나 미디어 속 노년 여성 이미지를 역할 모델 관점에서 분석한 이동옥(2023)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액티브 노년, 즉 사회·경제·관계적인 차원에서 의존적이지 않고 지적능력을 겸비한 생산적 주체를 바람직한 노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현 양상은 이제까지 나약한 존재였던 노인을 자신의 삶의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이 담론은 노년층 내의 차이와 그에 따른 불평등의 현실을 외면하고 액티브 노년이 될 수 없는 대다수의 노년층을 배제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연구들은 비판한다(김은준, 2017; 이동옥, 2023).<sup>4)</sup> 긍정적 노화 담론에 대한 일련의 서구 연구들 역시 이 담론이 노화에 대한 쇠퇴 담론과 연속선상에 있으며, 노년층에 대한 연령차별 즉 연령주의(ageism)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Calasanti, 2016; Pack, et al., 2019).

이상의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삶이 균질적이지도 전반적으로

---

행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30%에 불과했다.

- 4) 사실 성공적인 노화, 액티브 시니어 담론은 어떤 면에서 보면 노년층의 계층화 현상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고령화 통계에 의하면 30% 정도의 노년층이 대부분 구직 이외의 목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반면, 54.7%의 노년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상의 통계자료는 나이 들어 새로운 꿈을 향해 자아실현 할 수 있는 노년층의 모습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년층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을 일정 부분 시사한다(통계청, 2022).

안정적이지도 않으며, 나이듦에 대한 다양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개인이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이후의 삶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적·사회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 2) 노년 여성의 자기 계발 실천

노년층을 둘러싼 사회적·담론적 조건 속에서 나타난 노년층의 대응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계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예를 들면 강준만, 2016; Gill & Orgad, 2022)이 지적하듯이 자기 계발 현상은 개인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며, 삶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돋우기(empowerment)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렇기에 긍정심리학을 비롯해 심리학적 접근은 자기 계발이 개인의 삶에서 갖는 긍정성에 주목한다. 반면 여러 거시적 연구들은 자기 계발 담론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을 모두 ‘개인의 효율적인 주체되기’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이숙진, 2014; 한선, 2013). 서구에서 진행된 최근의 연구들은 자기 계발 담론의 구성 및 그 실천에 있어서, 이 두가지 스펙트럼을 연결하는 한편 보다 맥락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대학 교원들의 공예(craft)하기를 탐구한 로드리게즈 등은 이 자기 돌봄적 실천을 통해 여성학자들은 자기 통제력과 자기 보존을 확보하고, 유능한 존재로서 자신을 재구성함을 밝혔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 대학에 가해지는 압박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대응 행위이지만 동시에 구조적 불평등에 침묵함으로써 이와 공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Rodriguez et al., 2024). 신자유주의 위기와 자기 계발 담론의 유행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네링은(Nehring & Frawley, 2020; Nehring, 2024) 영국의 전통적인 공동체의 쇠퇴, 노동의 불안정화에 따라 개인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집단적 해결의 방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개인의 어려움과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약속의 담론인 자기 계발서들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렇기에 자기 계발의 성격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 주목했던 기업가적 정신을 강조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생존주의적 자기 계발’로 성격이 변했다고 지적한다(Nehring, 2024). 흑인 여성의 자기 돌봄(self-care)에 대한 주키와이즈(Zuckerwise, 2024)의 연구는 자기 돌봄·자기 계발의 의미를 집단의 삶의 맥락과 역사 속에서 고찰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녀에 의하면, 백인의 자기 돌봄이 소비주의와 결합 되어 비정치적이고 개인화된 자기 계발의 성격을 지닌 성격을 띠었다면 흑인의 자기 돌봄은 인종적 자본주의, 백인우월주의, 이성애적 가부장제에서의 생존과 저항을 위한 “창의적이고 반항적인 힘”(Zuckerwise, 2024: 603)임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자기 계발 담론의 구성이나 그 실천의 의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회 변동, 그 안에서의 집단의 위치성 및 개인들의 삶의 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자기 계발에 대한 탐구는 주로 담론 분석(예를 들면 엄혜진, 2016; 2021)과 해당 담론의 핵심 소비자이자 실천자였던 2030 세대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에 주목하였다(예를 들면 김엘리, 2018; 김은준, 2013; 이숙진, 2014; 한선, 2013). 특히 여성주의 시각의 연구들은 이들 세대 여성들이 여성성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제 및 시장의 요구와 공모하며 자신의 욕망을 실현코자 시도하고 있음을 논의했다. 대학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 이들 세대에게 있어서 자기 계발은 ‘능력 있는 자기’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 성장, 자기 재창조의 과정으로 규정되었음 밝힘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연구했다(김엘리, 2018; 이숙진, 2014; 한선 2013).

앞서 언급한 맥락적 접근이 시사하듯, 노년층 여성의 자기 계발은 그 실천 동기/양상 그리고 그 의미에 있어 2030 세대 여성과 균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윤희와 신민영(2023)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계발 실천을 성장·성취로 규정하는 젊은 세대와 달리, 노년층은 자신의 자기 계발 실천에 대해 독립성, 의존성의 탈피를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60대 만학도

의 생애사를 다룬 김서현(2022)의 연구는 인터뷰 참여자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이 갖는 의미를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진학의 꿈에 대한 실현, 어려움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 이전과는 다른 제2의 인생을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들이 가족 구성원의 주 돌봄자이자, 또 다른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과 배움을 통한 자기실현의 열망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음을 논의했다. 노년 여성들의 디지털미디어 활동을 다룬 김지현·강진숙(2022)의 연구 역시 새로운 배움을 통해 ‘가정 내 존재’, ‘나이 든 돌봄자’라는 소수자로서의 위치성을 넘나들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상의 연구들은 노년층 여성의 자기 계발 실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유사 가족주의가 강하게 작동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교육, 노동의 공간 속에서 ‘취약자’로서 위치했던 이들의 삶의 곁에 조금은 민감히 다가서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노인이 처한 사회적 담론적 조건-불안한 노년,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노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 숭상, 연령주의와 노인 혐오 등에 유의하면서 이들의 삶 전체에 있어 ‘배움’, ‘가정 밖 활동’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함축한다.

### 3) 노년 여성과 디지털미디어, 그리고 팬데믹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디지털미디어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갖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였다. 2002년 이후 실시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에서 고령층은 디지털미디어의 접근, 역량, 이용에 있어서 국민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고, 상대적으로 디지털미디어에 익숙한 장년층이 노년층으로 편입되면서, 그 격차는 점차 줄었지만, 20여 년 간의 조사에서 노년층은 국민 일반의 절반 정도의 미디어 역량과 활용 능력을 지닌 집단이었다. 특히 노년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 2018; 2025). 이는 가정 내 존재로 지내왔던 이들 세대의 특성이 반영되어 업무적으로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했던 동년배 남성에게 비해 이를 접하고 활용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삶의 여정은 이용 및 활용 양상에서도 반영되어, 여성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금융이나 지식 생산보다는 SNS를 통한 지인과의 소통이나 콘텐츠 이용 등에 맞춰져 있었다(박소영 · 박창희, 2023; 한국지능사회정보진흥원, 2025). 그렇기에 격차 연구자들은 노년 여성들의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 교육을 통한 노년층의 활용 능력 및 역량 강화,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대한 욕구 증진, 또한 이들의 신체적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한 노년층을 위한 기기의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박소영 · 박창희, 2023; 신혜진 외, 2022).

노년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디지털미디어 습득 및 이용 역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구경미 · 김하영 · 강버들, 2021), 노년층 역시 자신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고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고양된 노년층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표현코자 하는 활동은 지난 몇 년간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손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일상을 담아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박막례를 비롯하여, 최초의 밀라노 유학과 패션 컨설턴트로서 전문 지식을 뽐내고 있는 장명숙(밀라논나 채널), 그리고 최근의 배우 선우용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세대를 대변하여, 한 사람의 인간이자 주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노년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젊은 세대의 열렬한 환영 속에 이들의 활동으로 노년 여성과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상상할 수 있었고, 세대 간 소통이 촉진되었다(김은진, 2023). 비슷한 맥락에서 미디어 교육 수강 이후 Youtube 크리에이터나 미디어 교육 강사, 심지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약하는 여성들은 소수자로서의 위치성을 넘나들며 새로이 주체로 거듭

나고 있다(김지현·강진숙, 2022). 이는 노년의 디지털미디어 실천을 고려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들을 탐구하고 이들의 삶의 맥락을 천착한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의 리터러시 연구들은 노년층이 디지털미디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신체적·인지적 제약 외의 다른 요인들을 언급하였다. 대표적으로 베리 등에 의하면, 노년층에 대한 혐오, 연령주의에 토대를 둔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대한 가족·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이들의 디지털미디어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ie et al., 2021). 팬데믹이 강제적 디지털화를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 고양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디지털미디어 취약층으로 위치시킨 심리적·사회적 허들이 어떻게 낮아졌는가에 대한 부분에 유의하면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기존 연구의 성과에 기대에 본 연구는 안정되지 않는 노년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담론적 조건, 유교적 가부장제를 헤쳐 나가 60대 여성들의 삶의 여정, 그리고 디지털미디어가 노년층에게 갖는 의미에 유의하면서 팬데믹 시기 이들이 왜 자기 계발 실천에 참여하였는지, 실천의 경험과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3. 연구방법

2022년 1월에 진행된 <김미경과 함께하는 514 챌린지>에 참여했던 60대 여성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팬데믹 시기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진 노년 여성들의 자기 계발 실천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김미경과 함께하는 514 챌린지>는 1세대 여성 자기 계발 강사 김미경이 제안으로 2022년 1월 1일~14일까지 매일 5시 14일 동안 새벽 기상을 실천하는 챌린지였다. 챌린지 참가 신청자들은 매일 새벽 5시에 생방송으로 스트리밍 되는 김미경의 Youtube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sup>5)</sup>, SNS에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시

한 뒤, 이를 챌린지를 운영하는 MKYU 사이트에 관련 링크를 남겨야 한다. MKYU는 챌린지 관련 공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9개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각 채팅방 당 1000명 내외의 인원)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514 챌린지는 팬데믹 시기 ‘홀로 또 함께’의 정서를 창출한 챌린지 의례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미디어 이용 능력을 참여자들에게 요구했다. 그렇기에 514 챌린지는 강제적 디지털화가 이뤄진 팬데믹 시기, 오랫동안 디지털 취약 계층이었던 노년 여성들의 자기 계발 실천과 함께 디지털미디어 실천의 의미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본 연구자의 514 챌린지 참여에서 시작했다. 14일 동안 무려 12,000명의 참여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접속했던 해당 챌린지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청자의 3% 정도가 노년 여성들이었고, 이들 중 일부는 챌린지 시작 전에 유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참여자들임을 알았다.<sup>6)</sup> 삶의 불안이 가중되던 시기 이들이 왜 어떤 이유로 챌린지 참여와 재테크 및 디지털 이용 능력 강화, 앞으로의 사회 변화와 관련된 강의를 수강<sup>7)</sup>하고 챌린지에 참여했는지, 노년의 삶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싹텄다. 이에 대한 탐구는 그동안 공백이었던 팬데믹 시기 노년 여성들의 삶에 다가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생

---

5) 주지하다시피 Youtube는 생산자인 크리에이터와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 간의 끊임 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김미경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1시간 동안, 챌린지 참여자들은 실시간 댓글 달기, 함께 실행하기-study with me와 유사함-를 통해 라이브 방송에 함께하였다.

6) MKYU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챌린지 신청자 16,480명 중 60대 이상은 전체의 약 3%인 561명이었고(70대 이상은 24명), 이중 90%가 여성이었다. 참고로 전체 챌린지 참여자 중 여성이 92%였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자기 계발 담론의 주요 소비자였던 2030 세대 여성들의 팬데믹 시기의 연령, 김미경의 서사가 이들 세대 여성들에게 소구했던 점(엄혜진, 2016)이 반영되는 듯하다.

7) 2022년 당시 김미경의 MKYU에서 개설하던 강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공간 내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것-〈Youtube 사관학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담론을 이끈 이들을 모아 강의한 〈세븐테크 Seven tech〉 등-이나 〈유수진의 독한 머니 아카데미〉와 같이 재테크 관련된 내용이었다.

각에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상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연구는 1) 7명의 60대 여성과의 인터뷰 2) 챌린지의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참여 관찰(14일 간의 Youtube 라이브 방송,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진행하였다.

### 1) 60대 여성과의 인터뷰 자료 수집 및 분석

인터뷰 참여자는 MKYU의 도움으로<sup>8)</sup> 챌린지 참여자들이 배정된 오픈 채팅방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 의도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공지 글을 게시하였다. 12시간 동안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는데, 10대에서 70대까지 450명의 참여자가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60대 노년 여성들의 챌린지 경험과 함께, 이들이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챌린지 이전에 왜 MKYU 등 온라인 플랫폼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등록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내고자 MKYU의 유료회원 가입해 강의 수강한 경험이 있는 27명을 회원 등급을 토대로 먼저 추렸다. 시간과 연구비용의 제한으로 신청자에 대한 랜덤 샘플링을 통해 10명의 신청자들에게 이메일과 SNS DM으로 연구 목적, 연구 절차, 인터뷰에 대한 전반적 안내, 인터뷰 참여자 보호 등이 담긴 인터뷰 안내문과 함께 일정을 상의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터뷰에 선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신청자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명의 참여자 중 7명의 여성이 최종적으로 인터뷰 안내 이메일에 대한 회신을 주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각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60대, MKYU 유료 수강

---

8) 챌린지에 참여하던 연구자가 해당 연구를 게시하기 위해 김미경 대표의 인스타그램으로 간단한 연구 소개 등을 담은 DM(Direct Message)을 보냈고, 회사 담당자의 도움으로 19개의 오픈채팅방에 연구참여자 모집 공지를 낼 수 있었다. 모집 링크에는 이름, 연령대, 소속된 오픈채팅방 주소, MKYU에서의 등급(무료 수강생, 유료 수강생, 많은 수업을 이수한 장학생인지), 자신의 SNS 주소, 선호 인터뷰 방식(1:1 인터뷰 or FGI)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생이라는 점 외에 생활수준에서 ‘상’이라고 언급한 F를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상층’이라고 규정했다.<sup>9)</sup>

〈표 1〉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징

|   | 직업                  | 학력                               | 거주지      | 인터뷰<br>방식      | MKYU 가입 연도 및 특징                                                                                    |
|---|---------------------|----------------------------------|----------|----------------|----------------------------------------------------------------------------------------------------|
| A | 전업주부                | 대학 중퇴                            | 수도권      | Zoom<br>(ZOOM) | - 2020년 연말 MKYU 가입<br>- 19년부터 딸의 아들 돌봄. 다식 등에<br>관심. 종교단체 활동                                       |
| B | 전업주부                | 고졸                               | 광역시      | 전화             | - 2021년 가입, 12월 유료회원 전환<br>- 양가 어른 돌봄을 위해 서울에서 고향<br>으로 이주, 가정사정에 따른 대학 진학에<br>아쉬움을 표함. 다양한 자격증 소지 |
| C | 연구직                 | 대졸                               | 서울       | 서면             | - 2021년 가입<br>- 오랫동안 회사생활을 함                                                                       |
| D | 전직조리사<br>산후돌보미      | 고졸                               | 지방<br>도시 | 전화             | - 2021년 12월 가입<br>- 조리사 정년퇴임<br>- 종교 단체의 교리 공부 및 사회활동                                              |
| E | 요양보호사<br>등하원<br>도우미 | 산업체 지원<br>고교 졸<br>결혼 후<br>방통대 진학 | 서울       | 전화             | - 2021년 4월 가입<br>- 11년간 시부모 간병하며 요양보호사<br>자격증 취득<br>- 아침에 아이들 등원 도우미 활동                            |
| F | 공무원                 | 대졸                               | 광역시      | 전화             | - 2020년 가입<br>- 지자체 공무원<br>- 방통대 졸업 후 영양사 국가시험 준비<br>- 지역 내 커뮤니티(ex-자치회, 아파트<br>동대표) 활동            |
| G | 보험사FP               | 고졸                               | 광역시      | 전화             | - 2021년 가입<br>- 최근MDRT(고소득 보험설계사<br>자격협회) 회원 자격획득<br>- 팬데믹 시기 다양한 챌린지활동                            |

9) 2022년 1월 당시 MKYU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평생 회비 99,000원을 납부하고 ‘열정대학생’이 되어야 했다. 이들 유료회원들은 교양 성격의 무료 강의(예를 들면 〈트랜드 노트〉, 〈딱 1년만 김미경 따라 하기〉 등)와 각종 유료 강의를 이용할 수 있다. 누가 비용을 내고 강의를 수강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수준에 대한 질문은 인터뷰의 마지막 부문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로부터 대한 회신을 받은 뒤, 연구자는 인터뷰에 앞서 사전 질문지를 2-3일 전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질문지는 1) MKYU의 가입 계기와 수강 과목 2) 챌린지 참여 계기 3) 챌린지에 대한 의견(Youtube 방송 의견, 오픈채팅방 내 활동, SNS 이용 등에 대한 의견) 4) 챌린지 이후의 변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이 선택한 방식-줌, 전화-으로 인터뷰는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에 다시 이들의 인터뷰에 대한 설명과 인터뷰 의사를 다시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질문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이 이들의 이야기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한 뒤, 인터뷰 내용을 개인의 특성, 이전 시기 자기 계발 실천의 양상, 팬데믹 시기의 일상, MKYU 가입과 온라인 강의 수강 계기 및 수강 경험, 514 챌린지 참여 계기, 김미경의 Youtube 방송에 대한 평가, 챌린지 이후의 변화의 주제로 묶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맥락적 해석을 위해 해당 시기 노년의 삶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병행하였다.

## 2)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 대한 참여관찰

514 챌린지가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공간에서의 실천을 요구함과 동시에, 새벽 기상-Youtube 방송 참여 등 이용자들의 일상의 루틴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성격을 지닌다. 다양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참여자들을 독려하는 자극제로서의 김미경의 Youtube 방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새벽 5시마다 이뤄진 김미경의 라이브 생방송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연구자가 속한 오픈 채팅방에서의 참여관찰을 함께 병행하였다.

#### 4. 팬데믹, 온라인으로 전이된 자기 계발 실천

##### 1) 팬데믹 이전부터 이뤄진 자기 계발: 가정 내 경계 넘나들기를 통한 치유

7명의 참여자들은 삶 전반에 걸쳐 자기 계발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라는 특색을 공유하고 있었다. 195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이들은 산업화 시기 여성들이 겪었던 가족 자원의 젠더화된 배분, 젠더화된 노동 시장 구조로 인해 교육 및 경제활동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삶 속에도 녹아 있었다. 대표적으로 B의 경우, 인터뷰 내내 아버지의 죽음으로 공장을 맡으면서, 오빠들과 달리 자신만 대학을 나오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한스러움을 표현했다.

“오빠는 워낙 공부를 잘하고 의대로 들어가서 있었고 의대 다니면서도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었고 네 나는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갔고(중략). 학교에 다니다가 솔직히 나 눈물 날라 그래. 나는 졸업을 제대로 못 하고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 배움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엄청 많이 많았죠. (중략) 우리 오빠가 학교를 다니고 우리 동생도 대학교 다닐 때 나만 못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공장을 운영해야 되었어요. 기술자도 내가 그때 데리고 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중략) 그래서 내가 학교를 내가 내 스스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렇게 [오빠 동생] 뒷바라지를 내가 다 해서 지금 얘기로 말하자면 소녀 가장이 있었어요(B).”

그녀는 자녀들의 성장 이후 이러한 허기짐을 검정고시 패스와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여러 자격증 취득(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사 등)을 통해 해소코자 했다고 언급했다. B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자기 계발’ 실천을 통해 이들 세대 여성에게 부여된 ‘가정 내 존재’라는 틀을 넘나들고 있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직업체 운영 고등학교를 졸업한 E의 경우, 어린

시절 상처들 되돌아보기 위해 40대 후반 가톨릭 재단에서 하는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획득하고자, 방송통신대에 입학하였다. 20여 년간 도자기를 제작했다는 A의 경우, 유기농 식당의 개업을 고민할 정도 음식, 다식 제조 등에 전문성을 보이고 있었다. G 역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친척으로부터 식당 동업 제안을 받은 뒤 시부모에게 “자신에게 투자 좀 하시라”고 요청하여 다양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정식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뭐든지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강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한 E, 조손 육아 전까지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A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D)으로 자신을 규정하거나 주위의 평가를 받은 이들이었다.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존재라는 점과 함께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표 1> 참조) 가정의 경계를 넘어선 활동을 시도<sup>10)</sup>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자기 계발은 상황에 따라 ‘가정 내 요구’에 따라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었다. E의 경우, 방송통신대에 입학하자마자 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다고 회고했다. A의 경우, 조손 육아를 위해 주중에 자녀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동안의 사회활동에 단절을 겪게 되었다.

D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꽤 오랫동안 김미경의 책과 강연 등 그녀의 언어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 점은 인터뷰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자기 계발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김미경은 어떤 존재이며 그녀가 지닌 매력에 대해 물었을 때, “뭔가 억눌린 우리 세대 여성들에게 위로”(F)를 준다고 평가하거나(F, G), 자신이 못한 것을 해내고 이룬 “멋짐”(A)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그렇기에

10) 일례로 E의 경우, “직업을 ‘주부’로 적으면 될까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요양보호사이자 베이비시터죠’라고 말을 이었다. 가정 내 존재로서의 ‘주부’의 역할에서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몇몇 참여자들에게 김미경은 자신의 삶에 롤모델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A, B, C).

“내가 말하자면은 소원이 첫째 소원이 선생님 되는 거(중략)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거 너무 멋져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나한테는 롤모델이 됐죠(B).”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동안 저희 세대만 해도 5060 세대만 해도 많이 그런 좀 놀리고 살았잖아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그런데 학장님<sup>11)</sup>의 말씀은 정말 여자도 무한한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항상 용기 아무튼 격려 그런 게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F).”

이상의 언급은 가정, 교육, 노동 공간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었던 이 세대 여성들이 가부장제 규범의 넘나들기를 통해 공적 공간에서의 성공과 인정받기를 제안한 김미경의 서사(엄혜진, 2016)에 공명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 2) 디지털 전환, 새로운 형태의 자기 계발

팬데믹 이전까지 이들은 디지털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들 중의 몇몇은 비교적 최근 들어 Youtube를 이용하기 시작할 정도로(예를 들면, B, D, E), 어떤 면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에 소극적인 존재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MKYU라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유료 수강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을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조손 육아 부담이 더 커졌던 A의 경우 종교 활동을 비롯해 자신의 일상 속 사회 활동이 모두 여의치 않은 상태였다고 회고

11) 김미경을 지칭하는 말이다. MKYU의 유료 수강생들에게 있어서 김미경은 대학의 ‘학장’이라는 칭호로 불렸다.

했다. 온라인 기반의 MKYU의 강의수강 및 배우기가 자신의 상황에서 육아 외에 뭔가를 할 수 있던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기에 열정 대학생-MKYU 유료강의 수강생의 명칭이 되었다고 했다. 자기 돌봄의 기회와 시간이 축소된 상황에서 MKYU의 다양한 강의들은 그녀에게 삶의 활력소로 작용했다고 했다(A). 팬데믹은 몇몇 참여자들이 그동안 ‘이 나이에’란 생각에 배우기를 주저했던(F, G) 디지털 기술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A, D, F, G).

“이제 제가 그때 4학년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방통대] 교양과목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그 AR VR AI 인공지능 그런 거를 용어를 처음 접했어요. 그런데 학장님께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연구자: Youtube 방송에서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고 이걸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공과목으로 한번 이걸 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F).”

몇몇 참여자들은(A, B, D) 바뀐 현실에서 더 이상 불편을 겪고 싶지 않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의지로 “시니어의 디지털 문맹을 탈출”<sup>12)</sup>을 돕는 강사 양성 과정인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을 수강했다(A, B, D).

이처럼 MKYU 가입은 개인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자기 계발 실천을 해온 이들이라는 점<sup>13)</sup>, 팬데믹 이후 일상의 변화와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12) [https://www.mkyu.co.kr/course/course\\_view.jsp?id=55652&cid=#course-view-55652](https://www.mkyu.co.kr/course/course_view.jsp?id=55652&cid=#course-view-55652)

13) 배움, 공부에 대한 개인적 욕구가 MKYU의 입학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는 B에게서 발견된다. B는 MKYU가 대학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 속 한을 풀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MKYU는 대학의 문화적 코드를 운영과정에서 많이 활용하였다. 김미경 스스로를 학장으로 명명한 것뿐만 아니라 MKYU의 사이트는 ‘교양’, ‘전공’ 등으로 대학과 유사하게 과목명을 붙였다. 유료강의를 일정 개수 이상 수강하면 ‘수석장학생’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 이들에게는 대학에서 유행하는 보라색 ‘과잠’을 지급하면서 대학의 문화를 수강생들이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안에서 살아내려는 이들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변화를 포착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상업적 전환을 꾀했던 온라인 플랫폼의 전략이다. 김미경이 운영하는 Youtube 채널(김미경 TV, MKYU official([www.youtube.com/@MKYUOfficial](http://www.youtube.com/@MKYUOfficial)))은 디지털 공간 내의 강의 수강을 비롯한 다양한 실천을 촉진시켰다. 당시 김미경은 코로나 19 위기 발생 직후 자신의 팬데믹 적응기와 전망을 다룬 책 『김미경의 리부트』(2020) 출간,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회 변화에 맞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MKYU 런칭 등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기존의 김미경 TV(MKTV) 외에 MKYU official이라는 Youtube 채널을 추가로 운영했다. 해당 채널 역시 김미경 주도로 콘텐츠가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MKYU의 공식 마케팅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MKYU Official은 MKYU의 강의 및 행사 소개는 물론, 강의를 듣고 변화한 자신의 삶에 대한 수강생의 사연들이 소개되는 이벤트 등을 스트리밍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비춰볼 때, ‘MKYU official’은 참여자들의 유료 회원 가입 및 수강을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통로였다.<sup>14)</sup>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이 수강하는 강의를 MKYU 오피셜 채널에서 방영된 설명회에서 우연히 접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강의의 수강을 결정했다고 했다.<sup>15)</sup> 관련 영상을 보고 MKYU가 자신들에게 적절한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고 유료 강좌를 들었다고 했다(C, E).

종합하면,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계발에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특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상의 변화, 언택트 라이프의 확대에 따른 디지털 기술 활용의 필요성 증대, 자기 계발 강사에 대한 팬덤과 이

14) 기존의 김미경 채널의 구독자들이었던 이들은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MKYU official의 방송 내용을 시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15) 일례로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는 B와 D의 경우, Youtube 방송을 통해 강좌 설명회를 시청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강의 수강을 결정했다고 했다.

를 활용한 플랫폼의 마케팅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 되면서 이들은 그동안 배우는 것을 망설이거만 했던 디지털 세상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다.

## 5. 514 챌린지 참여-나이듦과 마주하기

514 챌린지는 새벽 기상 챌린지였지만, 다양한 챌린지 성공을 위해서는 14일 동안 매일 참여자들에게만 공개되었던 김미경의 Youtube 라이브 방송 시청, 오픈 채팅방 활용, SNS에 인증 게시물 게시, MKYU 가입 등이 필요했다. 챌린지 참여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Youtube 방송은 매일 새벽 5시~6시 참여자들에게만 공개되는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었고 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었다.<sup>16)</sup> 14일간의 새벽 기상에 성공한 참여자들에게는 리워드가 제공되었는데,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매일 자신의 챌린지 참여를 SNS에 인증하고, 자신의 게시글 링크를 주최 측인 MKYU의 챌린지 게시판에 게시해야 했다. 1만 6천 명이 넘는 챌린지 신청자들과 주최측(MKYU)과의 원활한 소통 및 당일 Youtube 생방송 링크 전달을 위해 챌린지 참여자들은 신청 순서에 따라 1~19번까지 각각의 오픈 채팅방에 배정되었다. 이처럼 514 챌린지는 ‘새벽 기상’ 뿐 아니라 챌린지 신청-참여-미션 완수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미디어 이용 능력을 요구하였다.

### 1) 왜 새벽 기상 챌린지에 참여했을까?

팬데믹 시기 다양한 미라클 모닝 이벤트-예를 들면 김유진 변호사와 챌린저스 어플이 함께한 미라클 모닝 챌린지, 캘리 최와 함께하는 미라클 모

16) 애초 1월 한 달에만 진행되기로 한 챌린지가 12월까지 1년 동안 계속되면서, 1월 Youtube 방송은 추후에 공개되었다.



닝 챌린자가 있었다. 이러한 새벽 기상 챌린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김유진, 2021.9.21.),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김미경 TV, 2021.12.8.)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제안되곤 했다. 특히 이 시기 인기 있던 자기 계발서와 자기 계발 콘텐츠-예를 들면 Youtube 방송 등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일찍 일어난다’는 점이 주목받으며, MZ세대나 3040 세대를 중심으로 미라클 모닝 챌린지가 성행했다(손성원, 2021; 류영상, 2022; 이시은, 2022).

인터뷰 참여자들이 챌린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은 MKYU의 이벤트 알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챌린지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김미경의 열렬한 팬이라서 “김미경이 시키는 것은 무조건 해야겠다”고 한 B처럼, 일종의 김미경 팬덤 현상으로 해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이들이 모두 MKYU의 수강생이며, 김미경의 조언과 방식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이다.<sup>17)</sup> 그러나 챌린지 참여가 자기 계발 담론을 소비·형성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김미경의 조언과 ‘새벽 기상’이라는 행위가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흔히 육아기 여성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시간 빈곤 감정과 생산적 주체되기의 열망이(박지영, 2013) 이들에게도 유사하게 드러났다는 점이었다. 조손, 시부모 등 가족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A와 E의 경우 하루 종일 지속되는 돌봄 노동 책무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일단은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갖고 싶었어요. (중략)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초점이 어머니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언제 불러질지 모르시고 언

17) 예를 들어 A는 자신이 못한 성공을 이룬 김미경이 어떻게 성공을 이뤘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녀의 활동을 눈여겨봤다고 했고, C 역시 김미경의 방식을 배워 자신도 비슷한 교육 사업을 시도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제 주무시다 깰지 모르시고 언제 반응을 보일지 몰라요. (중략) 그런데 그 시간에는 주무실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기상시간을 30분 당기면 그래도 30분 동안이라도 내 시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E).”

시간 확보 외에 신자유주의 주체에게 요구되는 부정적 감정 관리(Adams et al., 2019)를 위해 새해 새벽 기상 챌린지를 선택했다. 직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던 C, F, G의 경우 새해를 맞이하여 “정서와 지식이 고갈되어 나 자신이 텅 빈 것 같아”(C), 코로나 감염과 영양사 국가고시 실패 이후 겪은 심리적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챌린지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했다(D, F, G).

종합해보면, 돌봄의 부담, 우울감, 무기력과 같은 감정이 한국 여성들에게 있어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임을 시사한다.<sup>18)</sup> 팬데믹 이후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사회에 대한 간파와 함께, 현재 자신을 정체시키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숨통으로서 〈514 챌린지〉 역시 다가온 듯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챌린지를 신청할 때 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당기는 것이니 이거는 해 볼만하다고 생각한 점이다. 새벽 기상을 이미 실행하고 있었던 이들이 챌린지에 대해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상상한다면 끔직하다(F)”라고 표현할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2) 나이들을 넘어 도전하는 ‘나’로의 재구성 - 김미경의 Youtube 방송

〈514 챌린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김미경이 매일 진행하는 Youtube 라이브 시청이다. 챌린지 참여자들은 매일 5시에 일어

18) 60대 여성들이 언급한 챌린지 참여 이유-자기 시간 확보, 무기력/우울등의 감정 관리 등-3040 세대 여성들의 챌린지 참여 동기와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3040 세대의 무력감은 ‘효율적 생산’ 또는 ‘경제적인 거 되기’와 보다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이숙(2022) 참고.

나 이 Youtube 방송을 시청해야 했다. 매일의 Youtube 방송은 인사-김미경의 자기 계발 강의-참여자들의 미션 실천-마무리 방송으로 구성되었다. 2일째부터는 마무리 방송에 전날 챌린지에 대한 소개 및 공지사항이 이뤄져 사실상 이 챌린지에 활용되는 모든 디지털 플랫폼과 그 안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 Youtube 방송에 녹아든다고 할 수 있다. 챌린지 참여자들에게 전해진 김미경의 강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김미경의 Youtube 생방송 강의 썸네일

| 날짜  | 방송 제목                                               |
|-----|-----------------------------------------------------|
| 1일  | 매일 습관을 동기부여하는 방법                                    |
| 2일  | 2022년 나의 목표는                                        |
| 3일  | 내 꿈의 빌딩을 확실히 하는 방법                                  |
| 4일  | 내 꿈을 찾는 법                                           |
| 5일  | 온라인 빌딩을 지으세요                                        |
| 6일  | 꿈을 빠르게 이루는 법-나를 틀에 가둬라                              |
| 7일  | 자기 계발은 평생하는 것-딱 1년이면 됩니다.                           |
| 8일  | 1월 1일 기억하시나요?-나의 운, 대박 흐름 타게 하는 선행 학습법              |
| 9일  | 만일 514 챌린지를 하지 않았다면?<br>-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
| 10일 | 하루를 대하는 자세와 일생을 대하는 자세가 같다                          |
| 11일 | 나를 사랑한다면 버려야 될 3가지                                  |
| 12일 | 뒤쳐질까봐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
| 13일 | 끝까지 해내는 힘                                           |
| 14일 | 1월 14일 짹짹이의 비밀                                      |

자료: MKTV 김미경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naGfDaiM-pM1I-SXYpq37Q>  
[최종검색일: 2025.7.20.]

〈표 2〉에서 제시되었듯이 그녀의 방송은 매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해에 세워둔 목표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1월 1, 2일), 그녀가 30여 년간 해왔던 자기 계발 및 인간관계 맺기, 팬데믹 이후 언택트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온라인 빌딩 짓기)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12월 챌린지 제안 Youtube 방송부터 1월 라이브 방송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시청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지속적인 공부, 온라인에서의 활동) 남들보다 먼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한다(MKTV 김미경TV, 2021.12.22.; 2022.1.5.). 그녀는 방송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이후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개인의 불안한 삶은 더 심각해질 것이기에 지금부터 한발 앞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녀의 방송은 팬데믹 이후 사회 구조적 변동 및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기 계발 서사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해결은 개인 또는 개인들이 모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챌린지 참여자들의 공동체인 ‘썹썹이’, MKYU 공동체-의 몫으로 바라본다. 새벽 기상을 통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온전한 성장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주체적인 삶”(2022. 1.4)으로 가는 시작점으로, 챌린지 참여자들은 이 어려운 도전을 실행하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칭송된다. 1월 3일 이후 방송 내내 그녀는 팬데믹 이후의 사회 변화가 개인에게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특히 팬데믹 직후 파산 위기를 MKYU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극복한 자신의 사례, MKYU에서 자신과 함께 사회 변화를 공부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수강생들의 성공담 및 이를 미뤄둔 사람들의 후회담을 통해 이것이 ‘누구나’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한다. 차이가 있다면 실력 차이가 아니라 시간 차이임을 강조하면서(2022.1.6), 지금 이 순간 디지털 세계의 여러 공간을 무조건 마구 누르고(2022.1.4), 밥술이 아닌 책상을 마련해 “공부”하며(2022.1.8.) 이 변

화의 물결에서 살아남자고 이야기한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의 각성과 실행의 중요성을 방송 내 강조하는 그녀의 발화에서 나이, 젠더, 계급에 따른 기회와 장벽의 차이는 삭제된다.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나이를 초월한 환대를 통해 개인들이 연령으로 인해 겪는 문제들은 사소화된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특한 모닝 짹짹이 분들 나이가 몇 살이건 70 대 60대이건, 20대이건, 30대이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멋지게 살던 최고의 사람입니다 (중략) 여러분과 함께 하니 나한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2022.1.5. 방송).”

“40대 이상 50대 60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내 또래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블로그 인스타 팔로우도 해신타고 하는 것도 어렵고, 카톡방에서 공지 찾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이 챌린지에 참석을 하고 있다(2022.1.13. 방송 중 챌린지 후기 소개 부분).”

그녀의 생방송에서 노년층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챌린지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는 멋진 집단으로 규정된다. 특히 챌린지 내 다른 디지털 공간 내 SNS, 카카오톡 등 노년 참여자의 활동이 소개되면서 챌린지 참여자들과 이들은 서로 연결된다.

참여자들은 이 Youtube 생방송을 어떻게 경험하였을까? 이는 미디어 이용 환경적인 측면과 김미경의 메시지의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새벽 홀로 Youtube 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으로 참여자들은 김미경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G)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Youtube 생방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예를 들면, Lin, 2025)이 언급하듯이 크리에이터(김미경)와 챌린지 참여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빠르게 올라가는 댓글창과 댓글에 대한 언급 등-은 김미경과 생방송 참여자 뿐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연결성을 촉진 시킨다. 이는 김미경의 이야기에 인 챌린지 참여자들

이 몰입할 수 있는 시공간이 형성되었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이용의 조건이 반영된 듯 참여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해 언급할 때 참여자들의 톤은 다소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방송에 대해 “명언의 집합체”(D)라고 표현할 만큼 그녀의 방송 내용에 참여자들은 모두 공감했다.

“지금 이 나이에 그냥 그거 [디지털 기술 지칭 없이 잘 살아왔고 (중략) 그래도 ‘내가 세상 얼마나 얼마나 살겠어. 그냥 가야 되냐, 아니야 ‘그래도 배워야 되냐’ 이런 갈등이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선생님-김미경 지칭-한테 용기를 얻는 거죠. 지금이라도 배워야 되고 그런 거에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또 좋은 강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결국은 배워서 가야 되는구나 그랬죠(G).”

“제가 생활하는 거는 열심히 산다 그랬는데 (중략)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중략) 이제 똑같이 1학년이라 그러셨거든요. 김미경 선생님이 ‘피리 부는 사나이’ 같아요.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D).”

이상의 언급에 비춰볼 때,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김미경의 자기 계발 서사는 이전에 받은 치유와 위로 이상을 의미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생존과 적응을 위한 자원이자 망설이는 자신에게 용기를 부여 받는 언어였다. 14일의 방송을 통해 매일 이를 확인하고, 또 이 공간에서 함께 노력하는 자신의 동년배를 확인하며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 더 깊이 진입했다.

### 3) 장벽을 넘나들며 성장하는 나

5시에서 6시까지 진행되는 Youtube 라이브 방송은 강의 실행(챌린지 미션 수행)-마무리 이 3부분으로 구성된다. 새벽 5시 김미경이 인사와 함

게 약 20-30분간 강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 참여자들은 스스로 정한 미션을 수행한다. 참여자들은 독서를 비롯해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숙제처럼 남아 있던 다양한 공부(예를 들면 영어, MKYU 강의듣기)를 하거나(A, C, E), 또는 하고 싶었지만 번잡한 일상 속에서 하지 못했던 일(운동, 필사)을 수행했다(G). 20-30분의 시간이지만, 참여자들은 Youtube 방송 후반의 이러한 실천을 통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오롯한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며 못했던 것을 해냈다고 언급했다. 일상에 대한 자기 통제를 통한 자기 돌봄을 경험했다고(Rodriguez et al., 2024).

이들이 챌린지 이후 느낀 성장의 감정은 많은 부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디지털미디어 이용 역량의 향상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챌린지는 새벽 기상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활용 능력을 요구한다. Youtube 방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링크가 공지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리워드 획득을 위해 참여자들은 매일 자신의 챌린지 성공을 ‘인증’한 뒤 게시물을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MKYU 챌린지 페이지에 링크를 남겨야 한다.

인터뷰 참여자 중 챌린지 이전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SNS에 실제 게시물을 올린 이들은 없었고, 자기 계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E와 F 뿐이었다. 디지털 튜터 과정을 수강하고 있던 B와 D 역시 SNS 게시물은 미뤄두고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미디어 이용자의 절반만이 SNS 게시글을 올리고, 고령층의 경우 전체 인구의 1/4만이 SNS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에 비춰볼 때(한국지능사회정보연구원, 2024), 60대 챌린지 참여자들에게 ‘인증’ 절차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 챌린지에서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새벽 기상’이 아니라 ‘인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간이 가면서 해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오픈 채팅방 대화를 통해서였다. Youtube 방송 접속 방법, 인증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주최 측의 답변이 늦어짐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모든 물음에 친절히 답했던 다

른 참여자들 덕분이었다. 챌린지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된 1,000여 명의 폭발적인 대화는 60대 참여자들이 챌린지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소함과 동시에 챌린지에 대해 좌절감과 성장을 느끼는 요인이었다.

“사실 뭔가 좀 뒤쳐지는 느낌 (중략) 14일 동안 인스타를 못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죠.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면 정말 이렇게 누구 할 거 없이 다 아는 거를 다시 친절하게 다 올려주는 거예요. 참 정말 희한한 동네인 거죠(G).”

G의 언급은 이 챌린지의 구성 자체가 노년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 노년의 참여자들은 나이듦으로 인해 흔히 부딪히는 인지적 문제들 “계속 계속 방법을 까먹는 (B)”-과 심리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발견되는 상호존중과 힘돋우기의 문화(김수아, 2007)임을 함께 보여준다.

오픈채팅방 내 참여자들의 교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챌린지 미션 관련 사항-예를 들면 SNS 인증 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미경의 Youtube 라이브 방송이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만의 활동과 공간을 창조할 것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좋은 사람들-주로 MKYU 디지털 튜터 과정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각 단톡방마다 재능기부 형식의 줌(zoom) 강의가 열렸다. 연구자가 있던 채팅방에서도 한 참여자가 주말 2일에 걸쳐 미리캔버스(Miricanvas)를 활용한 이미지 편집 및 동영상 제작 방법에 대해 매우 느린 속도로 강의하고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일일이 살펴주었다. 이와 유사한 일은 모든 채팅방에서 벌어졌다. F가 있던 채팅방의 경우, 5060 세대를 위해 ‘인스타 초보 모여라’ 및 ‘제페토 캐릭터 만들기’가, G가 소속된 채팅방에서는 ‘디지털 초보자 입문방’과 같은 별도의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었다. 챌린지 동안 김미경의 강의에서 강조한 디지털 세계에 진



입해 노년 여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젊은 참여자들과의 소통 덕분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엄청 배워 가는 시간(F)”을 통해 디지털 이용 역량이 고양된 자신을 만났다. 앞서 언급한 자기 돌봄의 실천,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나이 든 자의 취약성을 넘어서는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은 올 한해가 그렇게 자신이 계획한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는 듯했다(A, C, D, E, F, G).

요약하면 60대 참여자들은 새벽 기상 챌린지를 통해 본인이 하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 속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수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김미경의 강의를 통해 챌린지 기간 동안 기술이 주도하는 변화된 세상, 그 속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매일 듣고,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고 SNS를 비롯해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실천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수행해 갔다. 나이듦에 대한 넘나들기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 이들은 진입하기 어려웠던 세계에 서서히 적응하고 이전에 비해 성장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기 계발의 의미

MKYU의 강의 수강과 디지털 공간에 적응하고 나이듦의 제약 속에서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허들과 마주하고 넘어선 이들의 경험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리고 이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 1) 디지털 공간 속 새로운 연결: 생활의 활기

챌린지와 함께 사람들은 새벽 5시부터 김미경의 강의를 듣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수행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오픈채팅방 뿐만 아

나라, 이를 매개로 한 다양한 디지털 공간(예를 들어 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젊은 세대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된 일상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례로 G는 얼마 전 자신의 오픈 채팅방의 구성원들과 함께 제페토(Zepeto)에서 “한판 잘 놀았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했다. 이제까지 삶에서 비중이 낮았던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참여자들은 이전에 비해 더 즐겁고 더 밝게(E, F)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침에 짹짹 문을 열면서 그 안에서 활기를 얻고 새로운 정보를 떠나서 짹짹 이들의 짹짹거리는 그 소리에 활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종일 이렇게 가니까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뭘 해도 재미있는 거죠(E).”

이러한 연결성은 ‘격리’라는 고립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했다.

“이제 제가 12월 22일부터 격리되어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이 진짜 많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는] 항상 마음이 바쁘고 뭘 해야 되겠다고 시간에 쫓기듯이 심심한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는 확진자가 되니까 사람 마음이 우울이 확 오더라고요. 방에 갇혀 책 읽고 MKYU 공부하고 챌린지도 하면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생기가 났죠(D).”

이상의 언급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양과 그에 따른 결과·연결성의 확대, 자기 효능감의 증진에 대한 기존의 조사 및 연구(이운영·신민영, 2023; 한국정보화진흥원, 2025)와 맥이 닿아있다. 결국 MKYU 강의 수강 및 514 챌린지를 통해 ‘공부하고 성장하는 삶’을 실현하고 있다는 성취감, 고양된 디지털 리터러시, 챌린지 동안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마주했던 정서적 지지 등은 위기의 시대 이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으로 챌린지가 다가왔음을 시사한다.

## 2)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바람직한 노년으로 거듭나기

새벽 기상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이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반응이 달라졌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연구자: 챌린지를 안 하셨다면 어떠셨을 거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주변에 제 나이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저처럼 지금 이런 걸 배우려 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중략) 정말 제가 이걸 안 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그냥 뭐 아줌마로 살았겠죠. 지금도 아줌마지만은 그냥 좀 세상 흘러가는 거 모르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MKYU 하면서 세상이 많이 정말 변하고 있고 (중략) 조금 눈 뜨게 되더라고요(F).”

챌린지가 본인의 삶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변화하는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김미경의 Youtube 방송 그리고 다른 챌린지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김미경이 강조하는 Web2.0과 Web3.0-블록체인 기반 생태계-세상, NFT,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책을 읽고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다. SNS 활용 능력의 향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참여자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관련된 조언을 했고, 이를 통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뿌듯함’으로 동시에 이어졌다. A와 B는 매일 인증을 하는 자신에 대해 자식들로부터 “엄마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고 G는 삼일회계법인이 메타버스에서 진행한 수료식 영상을 자녀에게 보여줬더니 “정말 대단하다”는 찬사를 들었다고 했다. D와 E는 자식들에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언을 했다.

“소득이라고 하면 인정받는 느낌요. (중략) 챌린지를 하며 젊은 사람들 생각을 좀 알아야 하지만 세상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딸은 아직 20

대인테 우리 딸들에게 ‘세상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애들은 정보를 잘 안 찾아요. (중략)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3.0 시대니까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NFT나 메타버스 이런 관련 책을 사주고 공부를 하게 해요. [딸이] 그 책을 보고 있어요(E).”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김미경 학장님이 얘기해 주신 데이터 분석 기사를 공부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것도 제가 여기서 알게 된 정보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강의] OT 듣고 나서 “앞으로는 데이터 시대니까 너도 분석 기사 한번 알아봐라”고 얘기해 줬어요. 찾아보니까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이 2년째 시행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으니까 너도 이것을 공부를 해 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원래 제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겠다고 그러면서...(D).”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고양, 새벽 기상, 트렌드를 읽어가는 노력이 결합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변화하는 세상의 취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떨칠 수 없는 ‘뒤처짐’의 불안, 의존적이지 않은 주체에 대한 열망

MKYU 수강 및 챌린지의 의미에 대해 참여자들은 공부하는 노년을 맞으며 치매 등의 건강 문제를 비롯해(D), 긴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은 조금씩 생긴 것(F, G) 같다고 평가했다. 흥미로운 점은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미래에 대한 비전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디지털 실천 과정에서 ‘뒤쳐져 있다’는 느낌을 완전히 떨쳤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MKYU의 수업 및 514 챌린지를 통해 형성된 온라인 공동체에서 이들은 여전히 젊은 세대에 비해 뒤쳐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듯했다.

“그냥 우리 매 주마다 이제 이제 강의 듣고 (중략) 내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픈 부분 또 좋은 부분 (중략) 각자 스피치는 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말을 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중략) ‘왜 나는 이 사람들보다 잘나지 못했고 잘하지 못하지, 나는 뭔가 항상 이렇게 좀 앞서 있어야지만 편한 사람인데 난 여기서 뒤쳐져 있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너무 준비를 잘해서 영상을 다 올리는데 저는 그 영상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박탈감 있었어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자극도 되면서(E).”

“지금 너무 빨리 변하는 데 저는 아직 Web 2.0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유튜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사용하고 보는 편이지 제가 하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었고 아직 블로그 계정 없어서 이제 서서히 제 이제 만들어야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뒤쳐지고 그랬었다는 거죠. (중략) 업무적인 거에서는 앞서고 그랬는데,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몰랐던 거죠. 너무 빨리 온 것 같았고 나이가 드니까 이해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G).”

G는 자기가 뒤쳐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잠도 안 자면서 따라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챌린지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김미경이 말한 ‘공부하는 삶’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MKYU의 과목 수강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강좌 수는 시간보다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롭다고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무료인 교양 강의 외에 거의 모든 유료 강의를 수강했거나 수강하고 있다는 사람에서부터(C), 따라 가기 벅차서(D) 또는 저렴한<sup>19)</sup> 디지털 튜터 자격증 강의만 듣고 있다는 사람(B, D)에 이르기

19) 디지털 튜터 자격증 강의는 문화센터에서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자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증진시키는 강사 양성 과정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었다. 180일 동안 수강하는 비용으로 35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강의였지만, 2021년 MKYU가 회원 체계를 개편하면서 열정대학생들에게는 1천 원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출처: [https://www.mkyu.co.kr/course/course\\_view.jsp?id=55652&cid=#course-view-55652](https://www.mkyu.co.kr/course/course_view.jsp?id=55652&cid=#course-view-55652)).

까지 수강하는 강좌 수에는 편차가 있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들 수강하는 강의의 대부분은 김미경이 강조한 디지털 기술 관련 강의, 이를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 관련 강의가 주를 이룬다. 홈플러스 문화센터를 비롯해 공공 기관에서 시니어들에게 디지털 기술 이용을 가르치는 강사 양성 프로그램인 디지털 튜터 자격증 과정 외에도 〈쿠팡파트너스 되기〉, 〈신사임당의 무조건 돈만 보고 유튜브 키우기〉, 김미경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구성한 〈유튜브 사관학교〉, 20만 명의 인스타 팔로워를 자랑하는 황규진이 강의한 〈인스타 파워업〉과 같은 강의를 신청하여 듣고 있었다. 이러한 강의 수강을 통해 참여자들은 디지털 튜터를 비롯해 김미경이 방송에서 언급한 개인 사업자나 MKYU 강사들의 사례(예를 들면 신사임당, 쿠팡파트너스의 정과장 등)처럼 SNS나 Youtube 채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표출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서적을 지속적으로 읽거나(A, C, F), 채팅 방 내 ‘고수’에게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A).

“나는 또 뭐가 더 UP이 됐냐면 아까 내가 수익 창출 얘기를 했잖아요. oo질환이 처음에는 의료 보험 혜택이 안 됐어요. 다달이 6-70 나오고 그랬어요. 병원비 자체만. 그런데 [남편이] 그 어떤 군말 없이 나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나도 뭔가를 해서 애네 아빠 용돈도 내가 줘 보고, 옷도 하나 내가 좀 사줘 보고 싶은 열망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략)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꼭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뭐냐 하면은, 열정장학생 되는 거 하고 지금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거 하고 이게 지금 목표예요(B).”

요약하자면, 챌린지에 참여했던 60대 노년 여성들은 MKYU의 강의 수강, 챌린지 참여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또는 디지털 세상의 강의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거 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B의 경우처럼 가부장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거

나 A처럼 여전히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자신의 위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서 길어진 노년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노년을 거부하고 싶은 열망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속에서 이들은 서서히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표현하며 변화에 발맞춰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거듭났지만, 성장과 성취를 통한 ‘살아남기’를 강조하는 자기 계발 문화 속에서 결핍된 존재로서의 노년여성의 위치는 다시금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7. 나가며

이 연구는 애초 자기 계발 담론의 주 소비자로 인식되지 못했던 노년층이 왜 팬데믹 시기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배움 및 자기 계발 실천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논의하였듯이 산업화 시기 젠더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가족, 교육, 노동 시장 내 취약한 존재였던 이들은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계발을 통해 자신 앞에 놓은 장벽과 결핍을 넘어서고자 했다. 감염병 위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그에 따른 일상의 변화 속에서 이들의 자기 계발 실천은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져 갔다. 팬데믹은 그동안 연령에 대한 인식으로 디지털미디어 활용을 주저했던 이들의 심리적 허들을 낮추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여기에 팬데믹 시기 더욱 두드러졌던 자기 계발 플랫폼의 부상은 이들의 실천을 더욱 촉진 시키는 요인이었다.

514 챗린지는 디지털 공간을 통한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가 지속되고 커져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14일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참여자들의 도움을 통해 수행했던 매일 매일의 디지털미디어 실천, 변화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김미경의 서

사, 다른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이들은 기술 주도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성장하는 자신을 목격했다. 온라인 공간 내의 자기 계발 실천을 통해 이 여성들은 돌봄부담에 따른 시간부족, 무력감 등에서 벗어나 새벽 시간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MKYU의 강의수강 및 챌린지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은 이들의 삶에 중요한 활력소가 되었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바람직한 노년여성’으로서 자신을 구성해갔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계발의 담론 공간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존재’였고, 나이들의 장벽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했다. 뒤쳐지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아야 한다는 서사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팬데믹 시기 이들의 자기 계발 실천이 ‘가정 내 존재’로서의 위치를 넘나들며, 젠더화된 산업화에 따른 결핍을 치유하려던 이전의 실천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자기 돌봄과 이를 통한 치유도 유지되었지만, 동시에 변화된 세계 속에서 건강히,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노년 여성에게 자기 계발과 디지털 세계에서의 생존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져 본다. 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무기력을 챌린지를 통해서 해소하고 생존을 위해 ‘경제적인 거 되기’를 다시금 고민하는 것일까?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시간은 길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마주해야 하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은 개인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동시에 사회 변화나 경제적 실천에 ‘뒤쳐지는’ 존재, ‘덜 생산적인’ 존재에 대한 혐오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의 현실은 ‘바람직한 어른’이 되기 위해 노년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세상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을 강요하는 듯하다. 이들의 자기 계발 실천은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집합적 해결이 차단되었던 팬데믹 그 이후 사회에



서의 ‘살아남기’의 방편으로, 자기 통제력 확보를 통한 자기 돌봄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여러 비판 연구들의 지적처럼 ‘행복을 약속’하지도 않으며 체제 유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Rodriguez et al. 2024). 계층적으로 이러한 실천 역시 이번 연구참여자들처럼 일정 정도의 경제적 자원을 확보한 중상층 이상의 여성들에게 가능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후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나이듦이 그대로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계급에 따라, 연령(전기 노년 vs 후기 노년)에 따라 노년 여성들은 이 불안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 같다. 60대 여성들의 자기 계발 실천 속에 놓인 불안과 열망을 읽어감으로써, 돌봄과 상호존중의 윤리에 기초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더 치열하게 필요한 때인 듯하다.

## | 참고문헌 |

- 강은나 · 김혜수 · 정찬우 · 김세진 · 이선희 · 주보혜 · 황남희 · 김경래 · 이혜정 ·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준만. 2016. “자기계발의 문화정치학: 자기계발 담론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15(3): 133-174.
- 구경미 · 김하영 · 강버들. 2021. “노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실태 분석 -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3(6): 1407-1416.
- 김난도 · 전미영 · 최지혜 · 이수진 · 권정운 · 이준영 · 이향은 · 한다혜 · 이해원 · 추예린. 2022. 『트랜드코리아 2023』. 서울: 미래의 창.
- 김민준 · 한승아 · 박현미 · 오태웅. 2023. “COVID-19 팬데믹이 노인의 생활양식과 정신 건강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30(4): 417-426.
- 김서현. 2022. “60대 여성 만학도의 사회복지를 통한 자기실현 경험: Schütze의 생애사 연구방법의 적용.”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2): 99-133.
- 김수아. 2007.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돋우기 실천.” 『한국언론학보』 51(6): 346-380.
- 김엘리. 2018. “여성 군인의 능력 있는 자기계발과 군인 되기.” 『한국여성학』 34(1): 141-175.
- 김은준. 2013. “당신은 우리 언니가 아니다.” 『미디어, 젠더 & 문화』 27: 117-153.
- . 2017. “미디어가 표방하는 고령화 사회의 바람직한 노인상.” 『한국언론학보』 61(3): 157-188.
- 김은진. 2023. “여성 노인 유튜버를 통한 여성들의 세대 간 소통과 연대 -박막례, 밀라논나 채널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7(2): 5-51.
- 김지현 · 강진숙. 2022. “노인여성들의 정동체험과소수자-되기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라피연구: 들뢰즈와 과타리의정동과 소수자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6(1): 5-41.
- 박소영 · 박창희. 2023. “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극복을 위한 스마트미디어의 잠재력: 디지털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60(1): 139-180.
- 박지영. 2013.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에 대한 연구: 전문직 여성들의 생애시간, 일상적 시간, ICT가 생성한 시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성민정 · 성경미. 2024. “COVID-19 팬데믹 시기 여성노인의 외로움 극복 경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 『질적연구』 25(2): 138-148.

- 신혜리 · 윤태영 · 김수경 · 김영선. 2020.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고령자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술 사용과 노인복지관 참여 제한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5(4): 207-232.
- 신혜진 · 편미란 · 피연진 · 윤소희 · 방로 · 김용찬. 2022. “코로나19 팬데믹과 노인의 도시 디지털화 경험.” 『한국언론학보』 66(4): 219-265.
- 양은경. 2024. “노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상상: 코로나19 팬데믹시기 요양시설에 대한 미디어 재현 연구.” 『사회과학연구』 35(2): 55-80.
- 엄혜진. 2016. “여성의 자기계발, 소명의 고안과 여성성의 잔여화.” 『페미니즘 연구』 16(2): 215-265.
- \_\_\_\_\_. 2021. “여성의 자기계발과 페미니즘의 불안한 결속: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60(1): 121-162.
- 이동옥. 2023. “노인여성의 재현에서 고정관념과 역할모델의 가능성.” 『한국여성학』 39(2): 103-140.
- 이숙진. 2014.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의 종교: 코칭프로그램의 자기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5: 242-285.
- 이윤희 · 신민영. 2023. “신노년의 자기계발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12(2): 67-82.
- 장상철. 2024.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 사회에서의 감정의 문화정치와 노인 혐오.” 『사회와 이론』 47: 241-265.
- 최이숙. 2022. “팬데믹 시대, 그녀들은 왜 새벽에 일어났을까?: ‘514챌린지’ 참여 3040 세대 여성들의 시간 만들기과 그 의미.” 『한국여성학』 38(4): 155-193.
- 최인철 · 최종안 · 이성하 · 김남희 · 이서진 · 정지정 · 김영주 · 구자일 · 차승은. 2022.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2 코로나19 특집호-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행복 리포트』. 파주: 21세기 북스.
- 한 선. 2013. “네트워크 시대 ‘경제적인 것’ 되기 (becoming)의 통치술.” 『한국언론학보』 57(3): 431-454.

Adams, G., Estrada-Villalta, S., Sullivan, D., and Markus, H.R. 2019. “The Psychology of Neoliberalism and the Neoliberalism of Psychology.” *Journal of Social Issues* 75: 189-216.

Barrie, H., La Rose, T., Detlor, B., Julien, H., and Serenko, A. 2021. “‘Because I’m Old’: The Role of Ageism in Older Adults’ Experiences of Digital Literacy Training in

-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echnology in Human Services* 39(4): 379 - 404.
- Calasanti, T. 2016. “Combating ageism: how successful is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56(6): 1093-1101.
- Gill, R., and Orgad, S. 2022. “Get unstuck! Pandemic Positivity Imperatives and Self-Care for Women.” *Cultural Politics* 18(1): 44-63.
- Lin, H. 2025. “Let’s purchase coloured live chat messages’: the impact of user engagement with Super Chat on YouTub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8(9): 1608-1626.
- Nehring, D. 2024. “The Self in Self-Help: A Re-Appraisal of Therapeutic Culture in a Time of Crisis.”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29(2): 316-333.
- Nehring, D., and Frawley, A. 2020. “Mindfulness and the psychological imagination.”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42(5): 1184-1201.
- Pack, R., Hand, C., Rudman, D. L., and Huot, S. 2019. “Governing the ageing body: explicating the negotiation of ‘positive’ ageing in daily life.” *Ageing and Society* 39(9): 2085-2108.
- Rodriguez, Jenny K., Ridgway, Maranda., Oldridge, Louise., and Edwards, Michaela. 2024. “Technologies of self-care in precarious neoliberal academia: Women academics’ craftwork as strategies of coping and complicit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9(4): 836-858.
- Zuckerwise, L. 2024. “‘I Am Writing You in Reference to Myself’: White Wellness, Black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Self-Car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49(3): 579-607.
- 류영상. 2022. “그로우, ‘미라클모닝 챌린지’ 인기몰이.” <매일경제>. 2022.1.7.
- 배재성. 2025. “아폰데 돈도 없다’ 서글픈 노년 충격…韓노인 빈곤율, OECD 1위.” <중앙일보>. 2025.12.26.
- 손성원. 2021. “‘미라클모닝’에 빠진 MZ세대, 새벽에 일어나 소중한 일상 지킨다.” <한국일보>. 2021.4.4.
- 오세진. 2024. “전 생애 차별이 쌓여 여성노인 절반 ‘빈곤.’” <한겨레 21>. 2024.11.7.
- 이시은. 2022. “SNS 인기 타고…올해 건강 습관에 ‘미라클모닝, 만보 걷기.’” <한국경제>. 2022.12.28.

- 김유진 미국변호사YOOJIN. 2021.9.13. “새벽기상 챌린지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https://youtu.be/-52Papgp8sc?si=uE-A-P6BhLxS1WDy> [검색일: 2025.12.31.]
- MKTV 김미경TV. 2021.12.8. “김미경과 함께하는 미라클모닝 514 챌린지.”  
[https://www.youtube.com/watch?v=-DYHe7ERCHg&list=PLIsXMj5rBOWwOp\\_u8NsE69VpC0mE3mfikq&index=78](https://www.youtube.com/watch?v=-DYHe7ERCHg&list=PLIsXMj5rBOWwOp_u8NsE69VpC0mE3mfikq&index=78)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1. “김미경이 알려주는 습관의 기적.”  
<https://youtu.be/Atyo9LruWY8>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2. “꿈의 원년 멤버가 됩니다.”  
[https://youtu.be/b\\_RAp1SwvKc](https://youtu.be/b_RAp1SwvKc)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3. “내 꿈의 빌딩을 세우는 확실한 방법.”  
[https://youtu.be/b\\_RAp1SwvKc](https://youtu.be/b_RAp1SwvKc)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4. “이 3가지 유형 사람은 꼭 잡으세요.”  
<https://youtu.be/R616oR71Cv0>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5. “올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온라인 빌딩을 지으세요.”  
<https://youtu.be/doyvHd-Y5qI>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6. “내 꿈을 가장 빠르게 이루는 방법.”  
[https://youtu.be/xm6KCtNe\\_Y](https://youtu.be/xm6KCtNe_Y)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7. “오늘부터 실행 가능한 ‘자기계발 기초실력 쌓는법 딱 3가지.’”  
<https://youtu.be/xh1G8lHtmvs>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8. “나의 운, 대박 흐름 타게 하는 선행 학습법.”  
<https://youtu.be/rgtIWBKMUrS>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9.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https://youtu.be/\\_yJT8d8mYr4](https://youtu.be/_yJT8d8mYr4)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10. “살고 싶은 미래가 있나요? 이 순간을 잡으세요.”  
<https://youtu.be/fd3Bjfm46go>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11. “이 생각만 버려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aFiOZCnn8nc>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12. “뒤쳐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https://youtu.be/wFTkPqfAFe4>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13. “나에게 자꾸 지는 분들은 이기는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https://youtu.be/a3zk4EIMOuW> [검색일: 2025.12.31.]
- \_\_\_\_\_. 2022.1.14. “당신의 면역력을 건드리는 위험신호-외로움 이렇게 극복하세요.”  
<https://youtu.be/X8hZ8gwQwN0> [검색일: 2025.12.31.]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 통계조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8.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_\_\_\_\_. 2024.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_\_\_\_\_. 2025.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Abstract

Self-help practices among elderly women  
during the pandemic and its significance  
– Confronting ‘aging’ and anxiety

Choi, Yisook  
(Dong-A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self-help practices in digital spaces were experienced by women in their 60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in this context of enforced digitalization, the study interprets older women’s engagement in self-development as a response to the social transformations brought about by Pandemic. Drawing on participation in the 2022 “514 Challenge with Kim Mi-kyung,” interviews with women who had enrolled in paid online learning platform([www.mkyu.co.kr](http://www.mkyu.co.kr)), an interview with Kim herself, and participant observation of the challenge’s main digital venues (YouTube and Kakao open chat rooms), the research examines their motivations and the meanings attached to such practices. The findings show that women who had previously navigated the constraints of gendered industrialization through self-help practices engaged in digital self-improvement to adapt to uncertain futures of aging, the disruptions of everyday life under the pandemic, and broader changes driven by digital technologies. Through online learning and challenge participation, these older women came to see themselves not as left behind by the times but as agents capable of imagining new futures, actively confronting the uncertainties and anxieties of aging.

**Key words:** COVID-19 pandemic, elderly women, self-help, digital media, aging

■ 투 고 일 : 2026년 3월 15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5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4일



# 조선 후기 『受教輯錄』 소재 여성 관련 수교 연구

— 여성 규범의 법제화 작용 사례에 대한 고찰\*

홍지현\*\*

## | 목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여성 규범의 법적 작동: 판결 |
| 2. 『受教輯錄』 소재 여성 관련<br>수교 개관 | 사례 분석               |
|                             | 4. 나가는 말            |

## | 초록 |

이 글은 『受教輯錄』 『刑典』에 수록된 여성 관련 수교를 분석하여 여성 규범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刑典』에 집중된 수교 조문을 통해 여성의 행위 및 여성과 관련한 문제가 형사 규범내에서 어떻게 통제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관련 수교는 여성의 외출·혼인·복식·성·행위 등 일상적 영역을 규제하면서 여성의 존재를 법적 범주 속에 편입시켰다. 특히 여성의 신분에 따라 형벌이 차등 적용되었으며, 간통죄 등의 성 관련 범죄에서는 여성의 신분 판정 기준이 남성 집단의 권위를 보존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부녀에게 결장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여성에게 형벌을 적용한 사례는 여성의 투기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려 했던 국가의 통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법적 명문화를 통해 사회·가부장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다만, ‘임신한 여성에 대한 형벌 완화’와 같은 사례는 법의

\* 이 논문은 2024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9042962)

\*\* 부산대학교 jhhong0529@naver.com

규제가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법제사의 가교인 『受教輯錄』을 통해 여성 규율이 윤리적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법제의 차원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하다.

**주제어** : 여성 차등, 수교, 『수교집록』, 투기, 여성 규제, 조선 형법

## 1. 들어가는 말

전근대 시대에서 여성은 ‘윤리적으로 억압 받은’ 대상으로서 이해되어 왔다. 특히 17세기 중반 이후로 여성은 성적 억압, 자유의 규제, 주체성의 제약을 경험한 존재로 설명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은 여러 연구를 통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은 동시에 법적 규제의 중요한 대상이었음에도 그 규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법적 규범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 연구를 통해 논의된 바 있다. 강명관(2005)은 恣女案법의 성립과 적용을 분석해 여성의 성적 행위가 자손의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어 법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장치였음을 밝혔다. 장병인(2007)은 성범죄에 관한 규제가 성리학적 윤리보다도 사대부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화된 과정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신분에 따라 형벌이 차등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도적 규제의 측면을 분석한 연구에 이어 여성 처벌의 사회적 함의를 다룬 연구도 제시되었다. 박경(2017)은 사족 여성에게 決杖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형벌이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 유교적 가족 질서와 여성의 도덕적 역할을 규정하는 장치였다고 설명하였고 백민정(2020)은 『審理錄』, 『秋官志』, 『欽欽新書』 등의 판례를 통해 지배층의 성 인식과 법적 모순을 드러냈다. 이들 연구는 특정 법령, 특정 형벌 제도, 혹은 개별 판례와 사례적 접근을 통해 여성 규제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

근은 여성 규범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단편적인 분석에서 머무른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受教輯錄』 자체에 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연정열(1987)은 『受教輯錄』을 소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편찬 배경과 체제를 밝히는 한편 하위 항목을 검토하였다. 한상권(1994)은 조선시대 법전 편찬 과정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는데, 그 안에서 『三錄』 중 하나로 『受教輯錄』을 언급하며 편찬자와 편찬 배경, 조문 수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구덕희(2002)는 집록류 법전의 성격을 검토하는 가운데 각 법전의 특성과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受教輯錄』을 제시하고 「吏典」에서 「公典」에 이르기까지 조항의 증감과 변화된 내용을 소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세 편의 연구는 자료의 기본적인 성격을 밝히는 데에는 일정한 의의를 지니지만 자료 자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나 체계적인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受教輯錄』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백철(2007)은 기왕의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며 『受教輯錄』 내부의 조문 구성과 법조문의 연동 관계에 주목하였다. 특히 六典에 실린 수교들의 관계성, 모순되는 조문의 해석 문제 등을 논하며 이전 연구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소개한 이 연구들은 『受教輯錄』의 체제와 성격을 밝히는 데에 머물러 여성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그 내부에 어떻게 집중되고 제도화되었는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특히 「刑典」에 여성 관련 수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자료의 특징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受教輯錄』은 숙종 24년에 숙종의 명으로 편찬된 수교집으로 ‘법령집’ 혹은 ‘명령집’이다. 수교란, 국왕의 결정인 敎를 담당 관서의 입장에서 수령한 것으로, 관리와 백성이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국왕의 명령이다(정궁식, 2020). 태조의 즉위교서로부터 법치주의를 표방한 조선은 『大明律』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經濟六典』(1397)을 시작으로 『經國大典』

(1407), 『大典續錄』(1492), 『續大典』(1746), 『大全通編』(1785)등으로 이어지는 법전 편찬 작업을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受教輯錄』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국왕의 명령을 집약·체계화한 하나의 법전적 성격(구덕희, 2002)<sup>1)</sup>을 지닌 자료로 자리한다. 이러한 『受教輯錄』은 상황과 時宜에 따라 그때마다 결정되는 명령인 ‘수교’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수교는 당시 사회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구덕희, 2002: 198) 동일한 사안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명령이 내려져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受教輯錄』에 수록된 여성 관련 수교를 대상으로 그 제정된 과정을 따라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刑典」만을 다룬다. 「刑典」에 의존해 여성 문제를 다루고 논한다는 면에서 성급한 일반화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刑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른 典에 비해 여성 관련 조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刑典」은 18개의 조항 중 8개 조항〈推斷·禁制·告訴·殺獄·奸犯·私賤·贖良·補充隊·雜令〉에 여성 관련 수교가 수록되어 있다. ‘~을 금한다’, ‘~에 따라 형률을 정한다’, ‘~한 경우에는 논죄한다’와 같은 금지 행위 및 범법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반했을 때 형벌을 받는가’, ‘위반 사항으로는 무엇을 규정해 두었는가’, ‘여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을 가지고 「刑典」에 접근했을 때, 수교와 사례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사회, 특히 남성 사족 집단과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여성 관련 수교를 살피고 3장에서는 판결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 규범의 법제화 과정을 검토한다. 특히 성 관련

1) 법전적 성격이라는 말은, 『受教輯錄』이 법전이라는 의미가 아닌, 수교를 집적하여 체제를 갖추 정리한 수교 모음집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법전이라는 뜻임을 밝힌다.

범죄에서 여성 신분의 차등화가 법적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여성의 투기가 범죄로 규정되어 가족 질서와 가부장적 권위가 유지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 2. 『受教輯錄』 소재 여성 관련 수교 개관

### 1) 『受教輯錄』의 성격과 구성 체계

본 절에서는 분석에 앞서 『受教輯錄』의 성격과 편찬 배경, 그리고 구성 체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受教輯錄』은 1698년(숙종 24)에 편찬된 수교집으로 국왕의 명령을 직접·정리한 법령집이다. 개별 사안을 처리하거나 시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개별 명령이다.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에 관해서 다른 내용으로 처리하는 수교가 축적되어 혼잡했다. 서문중(徐文重)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교를 모으자고 건의하였다. “외방 군읍에는 법률 서적이 갖춰져 있지 않고, 受教에 이르러서는 더욱 캄캄합니다. 수령들이 법례를 원용하거나 의거하지 못하여 대부분 억측으로 결단하고 있으니 『大典續錄』과 列聖의 수교를 모아 배포하게 해주소서”<sup>2)</sup> 그는 지방관들이 확실한 법적 기준이 없이 판결을 내리는 현실을 문제로 삼았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 『受教輯錄』은 기존의 법전과 선왕들의 명령을 한데 모아 집대성하여, 법적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과 재판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되었다. 이러한 건의에 따라 숙종은 이익(李翊)에게 편찬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다(『숙종실록』 8년 11월 16일 기미(2)).

2) 『숙종실록』 8년 11월 16일 기미(2). “承旨徐文重以外方郡邑, 律書未備, 至於受教, 尤所昧昧. 守令不能援據法例, 多以臆決請收聚《大典續錄》、列聖受教, 鈐梓廣布. 上命議廟堂, 仍使備局堂上李翊, 句管其事.”

그 경위와 편찬 목적은 이여(李翕)가 작성한 서문에 보다 자세히 나타난다. 서문에 따르면, 『經國大典』 이후 『大典續錄』·『大典後續錄』의 편찬으로 축적된 다량의 법령과, 전란을 거치면서 정리되지 못한 채 남겨진 개별 법령들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sup>3)</sup> 흩어진 수교와 법령을 단순히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적된 법제의 혼선을 해소하고 법적 기준의 일관성을 세우려는 의도였다.

또한 『受教輯錄』은 집적한 수교의 시대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년도를 알 수 없는 수교를 제외하고는 수교의 범위가 태종대부터 숙종 24년까지의 수교라는 것을 김백철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김백철, 2007: 139). 이 수교는 앞서 편찬된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各司受教』의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經國大典』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흐름 속에서 성립한 법전 편찬 과정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受教輯錄』의 구성과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刑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6典 체제로 수교를 분류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刑典」으로 범주를 한정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수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조문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經國大典』 「刑典」의 〈推斷〉조와 〈禁制〉에 각각 6개와 15개에 불과하던 조문이 『受教輯錄』에서는 〈推斷〉에 56개, 〈禁制〉에 106개로 대폭 증가하였고 나아가 『經國大典』 「刑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奸犯〉, 〈聽理〉, 〈賊盜〉, 〈告訴〉 등의 항목이 『受教輯錄』에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는 양난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과정에서 「刑典」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안정의 차원을 넘어 피지배층에 대한 규율과 통제를 법제적으로 공고히 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李翕, 「序」, 『受教輯錄』, “暨我殿下遵守成憲, 夙夜圖治, 其間命令條制, 出於裁酌通變, 可繼續錄之後者, 寢以益廣而 國家多故, 不遑編錄. 歲月滋久, 官吏昧於奉行, 論者歎焉. …是編也, 初非欲擬於制作, 惟以備有司藏守, 使不迷於考據.”

특히 이러한 지배 의지는 여성 관련 조문이 상당수 수록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다. 「刑典」이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과 관련된 수교가 상당한 비중으로 수록되었다는 점은 여성의 행위 및 성(性) 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안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經國大典』의 경우 여성의 복식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거나 여성의 활동을 통제하는 조문은 「刑典」에 2개가 확인된다(「刑典」, 〈禁制〉)<sup>4)</sup> ‘失行한 여성을 그의 자손과 연좌했던 법과 유사한 성격의 규정’은 다른 典에서도 확인이 되기는 하지만(「吏典」, 〈京官職〉; 「禮典」, 〈諸科〉)<sup>5)</sup> 「刑典」에 한정해서 보면, 『受教輯錄』에서 수교의 수와 내용이 모두 현저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과 관련된 사안이 보다 세분화된 기준 아래에서 규율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곧 여성의 존재가 형사 규범 속에서 한층 정밀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刑典」은 피지배층인 여성(사족 여성을 제외한)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受教輯錄』의 수교 분포를 표로 확인해 보면 「刑典」에 수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수교는 63조항 98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刑典」은 18조항 392조문으로 약 39%를 차지하여 다른 典에 비해 월등한 비중을 보인다. 또한 여성 관련

4) 『經國大典』, 「刑典」, 〈禁制〉. “都城內行野祭者, 士族婦女遊宴山間水曲及親行野祭·山川·城隍·祠廟祭者, 科場吏典·僕隸漏洩交通者, 故不檢劾者, 竝杖一百.”; “宗親妻女·堂上官母妻女婦·有蔭新婦外用有屋轎子者, 寺刹外用眞彩者, 用花席者, 用朱漆器者, 用絲花鳳·金銀露布花者, 用焰焯者, 官舍及堂下官以下婚姻人用紗·羅·綾段·鬪毬者士族婦女·兒童·京妓, 勿禁. 濫收私債者十分爲率, 每月取一分如十升取一升之類, 每年取五分如十升取五升之類, 年月雖多, 不過一倍. 私占柴草場者, 竝杖八十.”

5)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失行婦女及再嫁女之所生, 勿敘東西班職, 至曾孫方許以上各司外, 用之.”; 「禮典」, 〈諸科〉. “罪犯永不敘用者·臧吏之子·再嫁失行婦女之子孫及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 非居本道者·朝士見在職者, 勿許赴鄉試.”

수교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刑典』은 8조항 50조문으로 총 89개의 여성 관련 수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를 표로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sup>6)</sup>

〈표 1〉 6典의 전체 수교 및 여성 관련 수교 분포

| 典  | 조항 구성 및 전체 수교                                                                                                            | 여성관련수교                                                                                      |
|----|--------------------------------------------------------------------------------------------------------------------------|---------------------------------------------------------------------------------------------|
| 吏典 | 官職(46) 除授(9) 相繼(15) 守令(13) 功臣(3) 褒貶(2) 雜令(27)                                                                            | 7조항 115수교<br>0                                                                              |
| 戶典 | 諸田(19) 徭賦(20) 收稅(2) 戶籍(30) 漕轉(31) 祿俸(5) 給復(5) 還上(4) 解由(21) 徵債(7) 作紙(3) 買賣(6) 雜令(8)                                       | 13조항 161수교<br>收稅 1<br>戶籍 2<br>3                                                             |
| 禮典 | 科擧(41) 朝儀(4) 祭禮(7) 勸獎(17) 婚禮(3) 惠恤(10) 喪葬(4) 給暇(1) 立後(8) 奉祀(8) 雜令(27)                                                    | 11조항 130수교<br>婚禮 1<br>立後 5<br>奉祀 5<br>11                                                    |
| 兵典 | 官職(32) 軍制(41) 諸科(17) 試取(15) 賞典(9) 捕虎(1) 徙民(12) 軍律(14) 驛路(28) 廐牧(5) 烽燧(4) 兵船(3)                                           | 12조항 181수교<br>賞典 2<br>驛路 23<br>25                                                           |
| 刑典 | 推斷(56) 濫刑(3) 偽造(6) 禁制(106) 賊盜(22) 告訴(11) 殺獄(9) 檢驗(4) 奸犯(7) 赦令(7) 公賤(59) 私賤(16) 贖良(17) 補充隊(4) 聽理(38) 決獄日限(9) 文記(5) 雜令(13) | 18조항 392수교<br>推斷 10<br>禁制 13<br>告訴 2<br>殺獄 4<br>奸犯 7<br>私賤 6<br>贖良 6<br>補充隊 1<br>雜令 1<br>50 |
| 公典 | 營繕(2), 雜令(5)                                                                                                             | 2조항 7수교<br>0                                                                                |
| 계  | -                                                                                                                        | 63조항 986수교<br>89                                                                            |

6) 아래의 표는 김백철, 2007;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역주. 2001. 『受教輯錄』. 서울: 청년사를 참고하였다.



먼저 <표 1>에서 정리한 ‘여성과 관련 조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을 가리키는 호칭이 나타난 경우, 둘째, 여성이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 셋째, 행위의 객체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은 여성의 법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호칭에는 <아내·딸·부인·사족 여성·서인 여성·화처·첩·기녀·모친·서모·계모·손녀·숙모·비·며느리·무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따라 정리한 결과, 여성 관련 수교만 헤아려보면 89개의 수교가 집계된다. 거기에서 「刑典」에 포함된 것이 50개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兵典」은 두 개의 조항에서 25개가 여성 관련 수교로 나타나며 「禮典」은 세 개의 조항에서 11개, 「戶典」은 두 개의 조항에서 3개가 여성 관련 수교로 나타난다. 「吏典」과 「公典」은 여성 관련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성 관련 조문이 6典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刑典」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성 규율이 형사 규범 속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受教輯錄』의 6典 체계는 국가 운영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나 수교의 분포는 특정 영역, 「刑典」에 현저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성에 대한 규율이 윤리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적 범주 속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刑典」에 수록된 여성 관련 수교를 중심으로 규정의 유형과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여성 관련 규정의 유형과 내용

「刑典」의 조항은 <禁制>에 13개, <推斷>에 10개, <奸犯>에 7개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禁制>를 살펴보자. <禁制>에는 106개의 수교가 실려 있지만 그중 여성 관련 수교는 13개로 대략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나름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禁制>는 무엇인가를 금지하거나 제한

한다는 뜻으로 금령에 대한 처벌규정을 다룬다. “서인의 처는 명주로 만든 옷과 털옷을 입지 못한다(『受教輯錄』, 「刑典」, 〈禁制〉).”<sup>7)</sup> “상민 여성이 나을 비단으로 만든 족두리를 착용한 경우 금이나 주옥으로 만든 반지를 낀 경우, 사라능단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경우(『受教輯錄』, 「刑典」, 〈禁制〉).”<sup>8)</sup> 등과 같이 여성의 품계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의복과 장신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분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복식에 관한 규제는 제도를 정비하고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나 이후로는 사치 억제에 위한 수단으로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이민주:2003). 사치 억제와 관련해서는 “시부모를 뵈는 신부는 술과 찬거리를 사치스럽거나 정해진 규제를 넘게 마련해서는 안 된다. 시부모가 신부에게 주는 예물로 금은(金銀)이나 주옥(珠玉), 대단(大段), 금수(錦繡)는 사용하지 못한다(『受教輯錄』, 「刑典」, 〈禁制〉).”<sup>9)</sup> 라는 수교와 하나의 맥락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별도로 할 계획이다.

계급에 따라 복식을 규제하는 것에 이어서 여성의 외부 활동을 제약하는 수교가 있다. 이 수교는 “종친의 처와 딸, 당상관의 어머니와 처 및 며느리, 유음(有蔭) 신부 외에 지붕이 있는 교자를 사용한 경우.”에 위법임을 명시하고 있다(『受教輯錄』, 「刑典」, 〈禁制〉).<sup>10)</sup> 이 역시 계급이라는 범주 안에서 물품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면, 열거된 여성들은 ‘옥교자를 반드시 타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족여성

7) “庶人妻, 勿着錦綃及毛衣.”(『受教輯錄』, 「刑典」, 〈禁制〉)

8) “常女, 着羅兀·帽段足道里者, 用金·珠玉指環者, 着紗羅綾段者.”(『受教輯錄』, 「刑典」, 〈禁制〉)

9) “舅姑見新婦, 酒饌, 勿爲侈濫, 所給禮物, 勿用金銀·珠玉·大段·錦繡.”(『受教輯錄』, 「刑典」, 〈禁制〉)

10) “宗親妻·女, 堂上官母·妻及婦, 有蔭新婦外, 用有屋轎子者.”(『受教輯錄』, 「刑典」, 〈禁制〉)

이 외출할 때에 옥교자를 타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 없다는 표현과도 일치하는 말이다. 이는 사족여성의 외출을 터부시하는 의식과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외출을 하더라도 남성과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내제된 것이다(전지원, 2022: 12).

그런데 이 조문은 『經國大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재회할 수 있다. 앞서 짧게 언급한 바 있는, 『經國大典』의 「刑典」에 여성에게 규제한 조문이 2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조문은 『經國大典』에 실린 이래로 『受教輯錄』은 물론 『大全通編』(「刑典」, 〈禁制〉)<sup>11)</sup>과 『大典會通』(「刑典」, 〈禁制〉)<sup>12)</sup>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大全通編』은 앞선 시기에 편찬된 『經國大典』과 『續大典』, 정조 연간에 축적된 수교들을 정리한 결과물이고, 『大典會通』 또한 이들 법전과 『大全通編』을 합본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법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교가 산삭되고 수정과 첨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은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 점은 굉장히 유의미한 현상이다. 여성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인 규제로 두지 않고, 법제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를 가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推斷〉조를 살펴보자. 〈推斷〉은 『續大典』 「刑典」이 구성되는 데에 골격이 되어 대부분 수록되었다(김백철, 2007: 151). 전체 56개 수교 중 여성 관련 수교는 10개로 그 내용은 간음과 살인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 유형과 사건을 다룬다. 여성이 간음과 살인을 한 경우를 다룬 수교를 보자.

- 
- 11) “宗親妻女·堂上官母妻女婦·有蔭新婦外用有屋轎子者, 寺刹外用眞彩者, 用花席者, 用朱漆器者, 用絲花鳳·金銀露布花者, 用焰硝者, 官舍及堂下官以下婚姻人用紗·羅·綾段·鬪毯者, 濫收私債者, 私占柴草場者, 竝杖八十.”(『大全通編』, 「刑典」, 〈禁制〉)
  - 12) “宗親妻女·堂上官母妻女婦·有蔭新婦外用有屋轎子者, 寺刹外用眞彩者, 用花席者, 用朱漆器者, 用絲花鳳·金銀露布花者, 用焰硝者, 官舍及堂下官以下婚姻人用紗·羅·綾段·鬪毯者, 濫收私債者, 私占柴草場者, 竝杖八十.”(『大典會通』, 「刑典」, 〈禁制〉)

“남편을 죽인 죄인인 奸夫와 함께 모의하여 남편을 목 졸라 죽인 경우, 다른 사람과 무리 지어 때려 죽인 경우에는 不待時로 참형에 처한다”<sup>13)</sup>는 수교가 있다. 조선 형법의 모태가 되는 『大明律』 「刑律」 조항 308조에는 ‘처나 첩이 간통한 남자와 모의하여 본남편을 죽이면 능지처사하고 간통한 남자는 참형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大明律直解』, 「刑律·人命」).<sup>14)</sup> 간통한 남자가 본남편을 살해하였을 경우 그것이 아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아내는 교수형에 처해졌다(『大明律直解』, 「刑律·人命」).<sup>15)</sup>

『현종실록』에서 해당 수교의 모태로 보이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을 죽인 죄인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의 奸夫 2명은 啓覆 중에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때를 기다릴 것 없이 사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sup>16)</sup> 하니, 상이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모두 사형하라고 하였다.”(『현종실록』 11년, 6월 23일, 무신(2)). 이 사건은 아내에게 간부가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녀가 간통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남편을 죽였으니 살인 사건이 성립된다. 여기에서 ‘남편을 죽인 죄인’인 아내는 법의 처벌을 받았다고 서술되고 있으므로, 『大明律』 308조에 의거하여 참형에 처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奸夫 2명 또한 명에 따라 사형에 처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간통과 살인이 결합된 사건은 『大明律』에 따라 사형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제정된 수교는 동일한 판단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꼭 일방적인 통제의 성격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

13) “弑夫罪人之奸夫, 同謀縊殺者, 結僞戕殺者, 不待時處斬. 康熙壬子承傳.”(『受教輯錄』, 「刑典」, 〈推斷〉)

14) “其妻妾因姦, 同謀殺死親夫者, 凌遲處死, 姦夫處斬.”(『大明律直解』, 「刑律·人命」)

15) “姦夫處斬, 若姦夫自殺其夫者, 姦婦雖不知情. 絞.”(『大明律直解』, 「刑律·人命」)

16) “弑夫罪人, 既已伏法, 而其奸夫二人, 在啓覆中. 臣意以爲不待時斬可也.”上竝令不待時斬.”(『현종실록』 11년, 6월 23일, 무신(2)).

었다. 규제는 여성의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기도 했다. 바로 “잉태한 여인에게 형벌을 가해 조사하는 것은 법례에 어긋남이 있으니 ‘나이 70세 된 사람의 예’에 따라 贖을 거둔다.”라는 수교이다.(『受教輯錄』, 「刑典」, 〈推斷〉)<sup>17)</sup>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임신한 여성은 형벌을 부과하여 조사하지 않고 70살 된 고령자에 대한 예우에 따라 속바치게 하였다. 이 수교는 『大明律』의 율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444조 2항에는 “부인이 임신 중 죄를 범해 고신하거나 처결해야 한다면 1항에 따라 보증하게 하고, 모두 출산 후 100일을 기다려 고신하거나 처결한다(『大明律直解』, 「刑律·斷獄」, 〈婦人犯罪〉)”<sup>18)</sup>고 명시한다. 이 1항에서 아내의 보증인을 명시해 두었는데, ‘犯姦 또는 死罪로 붙잡힌 경우를 제외하고 雜犯은 본남편이 아내를 관리하고,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유복 친속(有服親屬)이나 가까운 이웃이 이를 맡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大明律直解』, 「刑律·斷獄」, 〈婦人犯罪〉)<sup>19)</sup> 일정한 조건에 따라 형률이 유연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해당 수교는 내용의 수정 없이 『續大典』(「刑典·推斷」, 〈孕胎女收贖〉)<sup>20)</sup>과 『大全通編』(「刑典·推斷」, 〈孕胎女收贖〉)<sup>21)</sup>, 『大典會通』(「刑典·推斷」, 〈孕胎女收贖〉)<sup>22)</sup>에 그대로 수록되어 이어졌다.

여성의 생리적 조건을 고려한 수교가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사례로 1738년(영조14)의 기사를 들 수 있다(『승정원일기』 영조 14년, 10월 8일 정해

17) “孕胎女人刑推, 有違法例, 依年七十例, 收贖. 康熙辛亥承傳”(『受教輯錄』, 「刑典」, 〈推斷〉)

18) “若婦人懷孕犯罪, 應拷決者, 依上保管, 皆待產後一百日拷決.”(『大明律直解』, 「刑律·斷獄」, 〈婦人犯罪〉)

19) “如無夫者, 責付有服親屬、隣里保管, 隨衙聽候.”(『大明律直解』, 「刑律·斷獄」, 〈婦人犯罪〉)

20) “孕胎女, 依年七十例, 除刑推收贖.”(『續大典』, 「刑典·推斷」, 〈孕胎女收贖〉)

21) “孕胎女, 依年七十例, 除刑推收贖.”(『大全通編』, 「刑典·推斷」, 〈孕胎女收贖〉)

22) “孕胎女, 依年七十例, 除刑推收贖.”(『大典會通』, 「刑典·推斷」, 〈孕胎女收贖〉)

13/18). 내의녀의 의녀 취섬(翠蟻)이 병이 났다며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년이 경과했다. 형조에서 그녀를 잡아다 추문을 하였더니 임신한 상태였다. 형조에서는 그녀의 죄를 논하며 “신해년의 수교에 ‘잉태한 여인을 형추하는 것은 법례에 어긋나니 70세 이상의 죄인에 대한 예에 따라 속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취섬이 잉태한 것이 확실하니 수교대로 속전을 받은 후 풀어주겠습니다.”라며 신해년의 수교를 근거로 들어 그녀를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섬은 곧 풀려났다. 여기에서 신해년의 수교란 바로 『受教輯錄』에 수록된 ‘잉태한 여인의 형은 70세 된 사람의 예에 따라 贖을 거둔다’라는 수교를 말한다. 이 사건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형추가 贖錢으로 대체된 사례로, 수교의 제정과 적용이 일률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리적 조건에 따라 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항상 지켜지진 않았다.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도 확인된다. 1734년(영조 10)에도 발생한 사건이 그 예이다(『영조실록』 10년 7월 22일, 을미(3)). 과부 홍점(紅點)은 남편의 조카와, 아지(阿只)라는 여성은 시아버지 문두장(文斗章)과 각각 간통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임신 중이었음에도 출산 직후 곧바로 참수형에 처해졌다. 이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후 일정 기간 형벌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 『大明律』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해당 율문이 전제하는 ‘포태된 아이’가 본 남편의 자식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영조실록』 10년 7월 22일, 을미(3)).<sup>23)</sup> 다시 말해, 간통으로 임신한 경우에는 해당 율문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一夫에게 종속되어야 한하는 성윤리 속에서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사례는 법 적용의 기준에서 여성의 성적 이탈 여부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23) “或以律文所謂懷孕.”(『영조실록』 10년 7월 22일, 을미(3).)

〈奸犯〉조를 보자. 〈奸犯〉조에서는 간통과 겁탈 등 성범죄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수교가 구성되어 있다. 본 조항에서 눈에 띄는 수교는 여성이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 여성의 신분에 따라 가해자 남성에게 처벌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수교이다. 수교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지배층 여성이고 가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가해자를 정범과 종범으로 구분하여 정범은 교수형에 처하고 종범은 극변의 노비로 삼았다(『受教輯錄』, 『刑典』, 〈奸犯〉).<sup>24)</sup> 반면, 사족 여성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사형 집행의 원칙인 待時를 파기하고 不待時로 형을 즉시 집행하였다(『受教輯錄』, 『刑典』, 〈奸犯〉).<sup>25)</sup> 피해자 여성의 신분이 가해자 남성의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續大典』의 「姦犯」에서도 ‘사족 처녀를 겁탈한 자는 겁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정범·종범을 막론하고 모두 不待時斬에 처한다. 천민 여성을 겁탈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 교수형에 처한다.’(『續大典』, 「刑典·姦犯」, 〈士族妻女劫奪〉)<sup>26)</sup>고 명기하여 가해자 남성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여성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화 시켜 놓았다.

차등 처벌에 관한 수교는 『新補受教輯錄』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는 『受教輯錄』과 그 이후에 나온 수교를 함께 수록하여 1743년(영조 19)경에 증보된 수교집이다.<sup>27)</sup> 수교는, “常漢의 딸을 겁탈함에 아직 겁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삼천리로 유배 보내며, 양반 처녀를 겁탈한 경우 겁간

24) “兩班處女劫奪罪人，不分首從處斬。常女劫奪罪人，依常律舉行。據康熙甲子九月日，常漢女劫奪，正犯絞，爲從，改以限己身極邊爲奴。康熙辛亥承傳。”(『受教輯錄』, 『刑典』, 〈奸犯〉)

25) “兩班處女，路中劫掠奸騙者，不待時斬。康熙壬戌承傳。”(『受教輯錄』, 『刑典』, 〈奸犯〉)

26) “士族妻女劫奪者，勿論姦未成，首·從，皆不待時斬。”(『續大典』, 「刑典·姦犯」, 〈士族妻女劫奪〉)

27) 『新補受教輯錄』의 편찬 경위와 시기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영조실록』 19년 3월 5일 기미(1)의 기록에 “『受教輯錄』은 속편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속편 간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수한다.”<sup>28)</sup> 라는 내용으로 실려있다. 피해자 여성이 사족이면 범죄가 강간 미수라 할 지라도 남성 가해자에게는 예외없이 사형이 부과되지만, 사족이 아닌 경우에는 강간 성립 여부를 따진 후에 형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신분에 따른 처벌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신분에 따른 차등 처벌이 가진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곱씹어볼 만한 수교가 있다. ‘정병의 딸과 내금위의 아내가 驛子와 화간(和姦)한 경우에는 사족의 예로 논단한다.’라는 규정이다(『受教輯錄』, 『刑典』, 〈奸犯〉).<sup>29)</sup> 화간 사건에서 당사자인 여성을 사족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여성의 신분 귀속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사족으로 귀속될 경우 상간남에게 부과되는 형량의 경중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여성의 남편이 속한 집단의 위신에 까지 미친다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형량은 여성 간 신분의 차이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남녀 간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大明律』 「犯姦」 조항에는 남성이 미혼 여성과 화간한 경우, 두 사람 모두 杖 80대에 처벌을 받지만 만일 대상이 유부녀라면 두 사람 모두 杖 90대에 처벌을 받는다(『大明律直解』, 「刑律·犯姦」)<sup>30)</sup> 라고 명시되어 있다. 화간이라는 같은 사건에서 남녀가 동등한 처벌을 받은 것은 여성의 결혼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남녀 차별의 요소가 드러난다(장병인, 2018: 221).

28) 『新補受教輯錄』, 『刑典』, 〈奸犯〉. “常漢女劫奪, 未成奸者, 流三千里, 兩班處女劫奪, 勿論奸與未成, 不分首·從, 皆斬. 康熙壬午承傳.”

29) “正兵女·內禁衛妻, 與驛子和奸者, 以士族論斷. 萬曆乙酉承傳.”(『受教輯錄』, 『刑典』, 〈奸犯〉)

30) “凡和姦者 杖八十, 爲婦人無夫者言之, 若有夫而與人和姦, 則杖九十.”(『大明律直解』, 「刑律·犯姦」)



한편 이러한 처벌 규정은 신분과 성별에 따른 차등 구조를 넘어서 감정  
의 영역까지 확장되기도 했다. 특히 투기와 같은 보편적인 감정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법제화한 양상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3. 여성 규범의 법적 작동: 판결 사례 분석

#### 1) 성 관련 범죄와 차등화된 여성 신분

화간 사건에서는 여성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  
의 경중이 달라졌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형벌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  
라, 사족 남성 집단의 권위와 결부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살  
펴보기 위해 여성 신분에 따른 처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화  
간과 관련된 수교를 대표로 삼아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2장에  
서 짧게 언급했던, ‘정병의 딸과 내금위의 처가 역자와 화간한 경우 이를  
사족의 예로 논단’하도록 한 규정을 살펴보자.

정병의 딸이나 내금위의 처가 역자(驛子)와 和奸<sup>31)</sup>한 경우에는 사족의 예로써  
논단한다.

이 수교는 1585년(선조 18)에 반포된 수교로, 화간 사건에서 사족 신분  
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여기에서 화간은 일방적 간음이 아닌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를 의미한다.

‘사족의 예로 논단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알기 전에 잠시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병은 양민 출신의 병사이고 내금위는 태종 7년에

31) 『大明律直解』, 『續大典』, 『大全通編』, 『大典會通』에서는 화간, 간통, 간범, 통간,  
간음하다 등의 의미를 표기할 때 ‘姦’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受教輯錄』의 조  
문에서는 ‘奸’으로 표기한다.

설치된 왕의 호위 조직으로 양반의 자제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그리고 역자(驛子)는 역역(驛役)에 속해 일하는 사람이다. 신분상으로는 엄연히 양인에 해당하지만 그 안에서도 최하층에 위치한 존재였다(유승원: 1979).

이러한 신분 구도를 따져보았을 때,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 모두 양인 간의 화간에 해당하므로 『大明律』에 따라 장 80대의 형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여성을 ‘사족의 예’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벌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의 신분에 따라 가해 남성에게 부과되는 형량이 달라지는 점과 연결된다.

그런데 화간 사건에서 여성 신분 귀속에 대한 규정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동일한 사건에서 여성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형벌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교가 제정되기 이전, 화간 사건에서 여성의 신분을 분명하게 해두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아래는 수교가 반포되기 전인 1520년(중종 15)에 형조에서 올라온 말이다.

형조가 아뢰기를

전라도의 한 정병의 딸이 내금위에게 시집갔다가 지아비가 죽은 뒤에 역리와 간통하였는데, 이 여자를 정병의 자식으로 논한다면 사족이 아니므로 사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내금위의 아내로 논한다면 사족입니다. 어느 울로 결단하리까?<sup>32)</sup>

아무개 여인이 내금위에게 시집간 뒤 남편이 죽은 이후 역리와 간통한 사건이다. 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화간 사건에서 여성의 신분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그녀의 신분이 어디로 귀속되는냐라는 문제는 적용될 형의 경중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다. 『大明律』에

32) 刑曹啓曰: 全羅道有一正兵之女, 適內禁衛, 夫死, 奸驛吏. 此女, 以正兵之子論之, 則非士族, 罪不當死, 以內禁衛之妻論之, 則士族也.”(『중종실록』 15년 4월 5일, 임술(6).)

따르면 남편이 없는 여성과의 화간은 남녀 모두 杖刑 80대가 원칙이다. 그러나 형조의 말을 통해 보자면, 이 사건은 그녀의 신분에 따라 杖刑에서 그치지 않고 死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즉, 그녀를 정병의 딸로 본다면 杖刑에서 끝나지만, 내금위의 아내로 본다면 사족으로 간주되어 死罪가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화간한 상대자인 역리에 대한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형조의 논의는 해결되지 않았고 삼공에 의해 재차 제기되었다.

삼공이 의논드렸다.

정병의 딸은 본계는 천할지라도 이미 내금위의 아내가 되었으니 으레 사족의 부인으로 논해야 합니다.<sup>33)</sup>

아무개 여인을 내금위의 아내로 간주하자는 삼공의 발언은 사족으로 보자는 말과도 같다. 이 말은 본래의 신분이 아닌 혼인 이후에 속한 관계를 기준으로 신분을 규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분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형벌은 달라질 수 있었다. 삼공의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될 형을 예상해 보자면, 아무개 여인은 사족 여성으로서 사형이 부과될 것이며, 사족 여성과 화간한 역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사족 여성이 간통죄를 저지르게 되면 교수형으로 처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다(장병인: 2003).

사족 여성이 사형으로 처벌된 사례를 하나 짚고 가보자. 내수사의 종지중(池衆)과 사족의 며느리 선비(善非)가 간통한 사건이 세상에 밝혀졌을 때 대신들은 그녀를 목 베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성종실록』 3년 3월 30일, 병인(3)). 『大明律』에서는 ‘남자 종(奴)이 양인 여성과 간통 시 범간죄에 1등급을 더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絞刑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

33) 『중종실록』 15년 4월 8일, 을축(1). “三公議啓曰 正兵女子, 本系雖賤, 既爲內禁衛之妻, 當例論士族婦·斷之何律耶?”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은 “사족의 부녀로서 본남편을 배신하고 노예인 천한 자와 음란한 짓을 자행하였으니 강상의 문란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라는 논리를 들어 교형을 주장했다. 사족 여성의 성적 일탈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강상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사족 여성을 제외한 일반 양녀와 천인 여성은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반 양녀는 官婢로, 천녀는 杖流形에 처해지며 사족 여성이 받은 형벌보다 가볍게 처리되었다. 『秋官志』에서는 승려(僧) 두 명과 번갈아 간통을 저지른 양인 여성을 관비로 예측시킨 가례가 기록되어 있다.<sup>34)</sup> 사족 여성의 성은 피지배층 여성의 그것보다 훨씬 강한 도덕적 책임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 양녀가 간통죄를 저질렀을 때 관비로 전략하는 이 처벌은 遊女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이며, 이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게 것은 사족 여성에게 주어진 정절 관념과 유관하다고 설명한다(장병인, 2003: 110-111).

결론적으로 화간 사건에서 내금위의 아내가 역자와 화간한 경우에는 여성의 신분을 사족으로 귀속시켜 판단한다는 원칙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1677년(숙종 3)에 임정원과 이씨의 간통 사건에서 적용된 사례로 나타난다.

영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음죽에 갇힌 임정원이 박성덕의 아내 이씨와 간통한 이유로 계복 중에 들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 이씨는 본래 사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계복에서는 정원이 이미 사형을 면하였는데, 대체로 이전에 정병의 딸이나 내금위의 아내가 역자와 화간을 한 경우에는 사족의 예로 논단 한다는 수교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외방의 관찰사나 수령은 이러한 옥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마다 자신의 견해대로 혹 사족의 예로 논하거나 혹 정병·내금

34) 『秋官志』 권3, 「詳覆部·奸淫」, 〈因奸殺妻〉, “英宗三年, 黃海監司金□□啓本, 谷山罪人宋之元, 其妻笑花, 本以良女, 禮娶居生者, 至於十六年, 而笑花, 與僧令熙·弘律等交奸, 定屬官婢.”

위로 보아 모두가 사족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일반 여인과 화간한 율문을 적용하여 무겁거나 때론 가볍게 멋대로 처분을 내리니, 마땅히 준수할 법을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신이 생각건대, 옛날 내금위는 모두 사족에 입속된 자들이었고 정병 또한 대부분 양반의 자식들로 충정하였으며 그 가문은 지금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게다가 이 수교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이러한 옥사가 있었던 듯하니, 그러므로 특별히 사족으로 논한 것은 호위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다만 이 수교는 시행한지 너무 오래되어 마치 조종조의 정법이 되었으니 또한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시임·원임 대신들에게 물어 정식으로 준행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承政院日記』 숙종 3년 12월 20일, 임술 15/17).<sup>35)</sup>

임정원과 이씨의 화간 사건에서 계복을 통해 이씨가 사족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자 임정원은 사형을 면했다. 반대로 이씨가 사족으로 규정되었다면 그녀는 물론이고 임정원까지 ‘사족의 예’에 따라 사형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承政院日記』에 기록되어 있는 위 기사는 『秋官志』 〈淫獄〉에 축약된 형태로 실려 있다(『秋官志』 권3, 「詳覆部·奸淫」, 〈林丁元獄案〉).

허적의 주장은 길게 이어지지만,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제공한다. 하나는 “특별히 사족으로 논한 것은 호위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는 대목이다. 화간 사건에서 여성의 신분을 규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치지 않고 남성 사족(호위하는 병사) 집단의 위신과 결부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성은 자신의 것이기 전에 집단에 의해 관리되

35) “領議政許積所啓, 陰竹囚林丁元, 以淫奸朴聖德妻李女之故, 入於啓覆之中, 而及其更查, 則李女本非士族, 故今此啓覆時, 丁元, 既已免死, 而大概從前有正兵之女, 爲內禁衛之妻, 和奸驛子者, 以士族論斷之, 受教, 故外方監司·守令, 若有如此之獄, 則各從已見, 或論以士族, 或以爲正兵·內禁衛, 俱非士族, 只用常女和奸之律, 或重或輕, 隨意處置, 宜有更定遵行之法, 臣意則古之內禁衛, 皆是士族之入屬者, 正兵, 亦多以兩班子枝充定, 其門地, 與今懸殊, 且念此受教, 似出於其時亦有此等之獄, 故特論以士族, 以慰衛士之心者也. …(『承政院日記』 숙종 3년 12월 20일, 임술 15/17)

는 대상이었다(김선경, 2000: 91). 가부장의 질서와 명예를 위해 존립하는 수단으로 기능한 것이다. 사족 여성의 성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피지배층 여성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화간 사건에서 여성의 신분이 사족으로 규정될 경우, 화간한 상대 남성의 처벌 수위는 격상되었고, 그 결과 사족(호위하는 병사) 집단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기존의 수교가 변화된 신분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동일한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허적은 기존의 수교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수교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허적의 발언은 “옛날 내금위는 모두 사족이었고 정병 또한 양반이 많아 문벌(門地)이 지금과는 현저히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여 정식을 만들도록 한다.(『受教輯錄』, 「刑典」, 〈奸犯〉)”<sup>36)</sup>라는 수교로 법제화되었다. 화간 사건에서 여성의 신분을 어디에다 두고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족(호위병) 집단의 권위를 재구성하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 2) 여성 투기의 범죄화와 가족 질서의 유지

여성의 신분에 따라 형벌이 달라졌던 양상을 살펴보았듯, 조선의 형벌 체계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법적 판단의 쟁점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의 기준은 신분에 국한되지 않았고 여성의 행위와 감정으로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투기’이다.

투기는 본래 보편적인 감정에 속하는 것이지만, 조선은 이를 ‘비윤리적 감정’으로 범죄시하여 법적 처벌의 근거로 인식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성

36) “古之內禁衛, 皆是士族, 正兵亦多兩班, 門地, 與今懸殊, 不當仍用, 議大臣, 以爲定式, 康熙丁巳承傳.”(『受教輯錄』, 「刑典」, 〈奸犯〉)

의 감정이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절에서는 투기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여성의 감정이 어떻게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편입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에는 부녀를 하옥하거나 決杖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존재했다. 결장이란 장을 친다는 뜻이다. 『大明律』의 기록대로라면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장형을 가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조선에서는 이러한 규정과 달리 부녀에게 결장을 집행하지 않고 왕명에 따라 수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박경, 2017). 그러나 간통죄에 한해서는 이 관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1691년(숙종 17)에 이 관례를 파기하고 “투기로 인해 계집종을 죽인 아녀자는 종루에서 장을 치고 정배한다.(『受教輯錄』, 「刑典」, 〈殺獄〉)<sup>37)</sup>”는 수교가 발표되었다. 기존의 관례를 폐지하고 여성에게 결장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 수교는 유의미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수교는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다. 첫째는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동기가 ‘투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투기’를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여성에게 ‘투기’를 금기로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국가의 권력이 개입하여 법적 처벌을 가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여성의 감정을 일반적인 감정으로 여기지 않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 수교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하다.

해당 수교는 1691년에 윤지성의 아내가 질투심으로 인해 천첩을 때려 죽인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sup>38)</sup> 숙종은 윤지성의 아내를 저자에서 결장하고 정배하도록 명하였으며 남편 윤지성에게도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숙종실록』 17년 11월 11일, 신유(1)).<sup>39)</sup> 이 사건과

37) “因妬殺婢婦女，鍾樓決杖定配。康熙辛未承傳。”(『受教輯錄』, 「刑典」, 〈殺獄〉)

38) “憲府以士人尹志聖妻因妬，撲殺志聖賤妾，請令有司，囚志聖及其妻，詳覈科罪，從之。”(『숙종실록』 17년 11월 11일, 신유(1))

39) 『숙종실록』 17년 11월 28일, 무인(2). “杖配尹志聖妻.”

관련한 기사는 『실록』에 단 두 건만 남아 있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천첩을 때려 죽였다’는 말에서 윤지성이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사건이 이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처벌의 근거가 살인 행위 자체에만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투기라는 감정이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었고, 투기라는 감정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인식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세종대의 두 사례에서 전례를 확인할 수 있다. 1427년(세종 9)과 1440년(세종 22)에 발생한 천첩 살해 사건은 모두 정처가 남편의 첩을 살해한 사건으로, 동기는 ‘성적 질투심’이다. 1427년에 권채는 아내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비첩인 덕금이를 매질하여 학대하였으며, 『세종실록』 9년 8월 24일 기묘(2); 동년 8월 27일 임오(2)), 정씨도 물론 덕금이를 굶기고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일이 있었다. 사건이 발각되자 의금부는 권채에게 장 80대, 아내 정씨에게는 장 90대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처음에 세종은 권채의 직첩을 회수하고 외지에 부처하는 한편 정씨에 대해서는 장형을 수속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9년 9월 3일 무자(2)).<sup>40)</sup> 그러나 이후 권채는 파직으로 번복되었다(『세종실록』 9년 9월 4일, 기축(2)).

이와 유사한 양상은 1440년(세종 22), 이맹균의 아내 이씨 사건에서도 나타난다. 이맹균의 아내 이씨가 여종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렸다(『세종실록』 22년 6월 10일, 경진(1); 동년 6월 12일 임오(1); 동년 6월 17일 정해(1)). 세종은 사헌부에서 추문하자는 황희의 말에 따라 추국을 진행했다. 사헌부에서는 이씨가 남편의 여종을 함부로 죽인 죄를 물어 이혼시키고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종은 결국 이맹균을 파직하고 이씨의 작첩을 빼앗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세종실

40) “照律採杖八十，鄭氏杖九十。命採收職牒，外方付處，鄭氏贖杖。”(『세종실록』 9년 9월 3일 무자(2))



록』 22년 6월 17일, 정해(1)).<sup>41)</sup> 하지만 중신들은 계속해서 이맹균과 이씨의 죄를 문제 삼자 세종은 이맹균을 황해도 우봉현으로 귀양보냈다(『세종실록』 22년 6월 19일, 기축(1)).<sup>42)</sup> 이후에도 이씨의 작첩만을 빼앗고 이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세종은 대신의 아내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세종실록』 22년 6월 20일, 경인(1)).<sup>43)</sup>

권채의 사건에서 대신들이 권채와 아내 정씨의 죄목을 두고 한 논의를 살펴보면, 두 사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대비된다. 정흠지는 “권채가 계집종을 학대하고 곤욕한 것으로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으로 보내는 처벌이 강상이 문란해지는 시작이 될까 두렵다”라는 말과 함께 “권채의 죄는 가볍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세종실록』 9년 9월 4일, 기축(2)).<sup>44)</sup> 권채가 저지른 죄가 가벼운 까닭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강상의 논리가 작용했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 사이는 하나입니다.”라는 발언은 유교적 강상 질서에서 근거한 것으로, 권채의 행위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하게 만든 근거가 되었다. 즉 권채에 대한 처벌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성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강명관, 2019: 193). 이러한 이유로 권채의 처벌은 처음에는 작첩 회수와 함께 외지로 쫓아내는 것이었으나 번복되어 관직 파면에서 그쳤다.

그러나 아내 정씨의 행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그녀가 덕금에게 저지른 행위는 강상이라는 논리 위에서 “가장의 첩으로 대우하지

41) “李氏枉殺夫妾，但按律科罪，則不足以懲惡，請離異黜外，以戒後來 命罷孟昉職，奪李氏爵牒。”(『세종실록』 22년 6월 17일, 정해(1))

42) “爲夫而不能制妻，孟昉信有罪矣。卽命憲府，貶孟昉于黃海道 牛峯縣。”(『세종실록』 22년 6월 19일, 기축(1))

43) “李孟昉妻李氏罪惡深重，只收爵牒，不使離異，何所懲乎？願黜諸遠方，以懲其惡，以警其後，…婦女有如是之行者，家長不能正家之致然，故貶孟昉于外，何必加罪於李氏。”(『세종실록』 22년 6월 20일, 경인(1))

44) “權採侵困婢子之罪，職牒收取，外方付處，臣恐綱常之紊，始於此矣。…採之罪則似輕。”(『세종실록』 9년 9월 4일, 기축(2))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잔학하고 포악한 성품으로 규정되었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이끌어냈다(『세종실록』 9년 9월 4일, 기축(2)).<sup>45)</sup> ‘종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첩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이 발언은 가족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박경, 2017: 250). 곧 정씨가 첩을 죽인 행위는 남편을 업신여긴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유교적 질서와 윤리를 어지럽히는 강상의 문란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맹균의 아내 이씨를 논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논리는 적용되고 있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고려된 사건이긴 하지만 강상의 논리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사헌부가 주장한, 이씨가 여종을 함부로 때려 죽였다는 죄는 『大明律』 〈鬪毆〉에 명시되어 있는 조율에 따라 장 60대와 도1의 형벌을 받아야 했다(『大明律直解』, 「刑律」, 〈鬪毆〉).<sup>46)</sup> 하지만 그녀가 받은 처벌은 작첩 회수뿐이었는데 여기에는 삼불거(三不去)의 논리가 작용했다. 부인을 버리지 못하는 3가지 조건으로, 전에는 가난했으나 부유해졌을 때, 3년상을 함께 치렀을 때, 부인이 돌아갈 곳이 없을 때를 말한다. 세종은 삼불거의 의미와 함께 대신의 아내라는 점을 들어 형벌을 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세종실록』 22년 6월 19일, 기축(1)).<sup>47)</sup> 여기에서 의정부 사인이던 이인손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씨에 대해서 “남편을 업신여긴 것이 천변과 관계된다.”라며 이씨의 행위를 강상의 질서를 파괴한 무도한 행위로 몰아갔고 또 “질투를 하고 자식이 없는 것은 칠거지악 중 두 가지를 범한 것”(『세종실록』 22년 6월 19일, 기축(1))<sup>48)</sup>이라며 여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부덕(婦德)이

45) “雖婢已爲妾，則當以妾待之，妻亦當以家翁之妾待之，其殘暴如此，其可赦乎.”(『세종실록』 9년 9월 4일, 기축(2))

46) “奴婢有罪爲去等 家長果 家長矣 期親果 及外祖父母亦 不告官司 打殺爲在乙良 杖一百齊 無罪爲在 奴婢乙 打殺爲在乙良 杖六十徒一年.”(『大明律直解』, 「刑律」, 〈鬪毆〉)

47) “女有三不去，前貧賤後富貴，不去；與更三年喪，不去。李氏雖云妬且無子，有此二不去之義，未可遽以此而離異也，且大臣命婦，不可加刑，收爵牒足矣.”(『세종실록』 22년 6월 19일, 기축(1))

결여되었음을 지적했다. 당시 이씨의 나이는 70세로 자식이 없었다(『세종실록』 22년 6월 17일, 정해(1)).<sup>49)</sup>

성적 질투심, 즉 투기는 사람이 가지는 보편적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강상의 논리 위에서는 여성의 부덕함으로 치부되었다. 그것이 남편의 또 다른 성적 상대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일지라도 윤리와 법적 판단에서는 금기적 행위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성종조(성종 5)에 일어난 또 한 건의 여종 살해 사건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확인된다. 신자치의 아내 이씨(이숙비)가 자신의 어미 막생과 공모하여 남편과 관계를 맺은 여종 도리를 고문하고 내다버린 사건이다(『성종실록』 5년 10월 10일, 임진(4); 동년 11월 1일, 임자(4)).<sup>50)</sup> 의금부에서 사건을 논할 때 아내 이씨는 정범이므로 『大明律』 〈鬪毆〉 율에 따라 장 60대와도 1년, 단의결벌을 형벌로 청하였고 어미 막생은 종범으로서 장 100대가 마땅하며 도리는 놓아주어 종량<sup>51)</sup>해야 한다고 하였다(『성종실록』 5년 11월 1일, 임자(4)).<sup>52)</sup> 결론적으로 성종은 “신자치의 아내는 사족의 딸이라 장을 칠 수 없다”라는 관례에 따라 결장을 면하고 신자치와 아내 이씨 그리고 막생을 각각 외방으로 부처하는 형을 내렸다.<sup>53)</sup> 이러한 판결에는 “질투와 사나움이 참혹하여 풍속과 교화에 관계가 있으니 징계하지 않을

48) “妾婦乘其夫，天變所關，請依憲府所啓…李氏因妬殺婢，罪惡貫盈，況女有七去之義？今李氏妬且無子，犯此二去，請依憲府所啓”(『세종실록』 22년 6월 19일, 기축(1))

49) “李氏年垂七十，且無嗣.”(『세종실록』 22년 6월 17일, 정해(1))

50) 『성종실록』 5년 10월 10일, 임진(4); 동년 11월 1일, 임자(4)

51) 각주 57번참고. “당방인구를 모두 풀어주어 종량한다”라는 말은 『大明律直解』가 아닌 『大明律講解』, 「刑律」, 〈鬪毆〉에 명문화 되어있다. (當房人口悉放從良.)

52) “淑非爲首，杖六十徒一年，以婦人杖一百單衣決罰餘罪贖，莫生隨從，減一等，決杖一百，道里，當房人口悉放從良.”

53) 『성종실록』 5년 11월 2일, 계축(2). “付處愼自治于慶尙道 安陰，莫生、淑非于山陰”；처음에 신자치는 안음으로, 이씨와 막생은 산음으로 부처했으나 안음과 산음이 근처라는 이유, 그리고 산음이 이씨 모녀의 본가인 함양과 하루 길이라는 이유를 들어 배소를 옮겨지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 이씨 모녀의 배소지가 충청도 진천으로 옮겨지게 된다(『성종실록』 5년 11월 19일, 기사(4)).

수 없다.”, “아내가 이미 지아비를 지아비로 여기지 않았고 질투는 칠거지악의 하나이니 이혼시켜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강상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앞서 다룬 이맹균과 아내 이씨의 사건에서 이씨의 행위를 남편을 업신여긴 강상죄로 몰아갔듯이, 신자치의 아내가 여종 도리를 살해한 것 역시 투기라는 감정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결국 가정 질서를 문란케 한 죄악으로 단죄되었다.

사족 여성이 매를 맞기 시작한 것은 앞서 살핀 윤지성의 아내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이 이때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 전부터 관례를 벗어나 여성에게 장을 집행했던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바로 신수린의 아내인 성씨의 사건이다. 1517년(중종 12)에 성씨는 신수린과 간통한 여종 어영질비를 죽이고 남편에게 시신을 보도록 했다(『중종실록』 12년 12월 20일, 신유(2)).<sup>54)</sup> 중신들은 성씨의 하옥에 대한 가부와 처벌을 논의했다. 의금부에서 성씨를 장 60대 도1년 단의결벌을 하고 도는 속바치자 주청하니 중종이 그대로 따랐다(『중종실록』 12년 윤12월 22일, 계사(4)).<sup>55)</sup> 중신들은 “사족의 부녀는 장죄(贓罪)나 도간죄(盜奸罪)가 아니면 장을 쓰지 않았다.”라며 강력히 만류하였으나 중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종실록』 12년 윤12월 24일, 을미(3)).<sup>56)</sup> 신수린은 파직되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씨의 비윤리적인 태도를 책임으로 묻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윤세호·정사룡 등은 “남편의 비참을 살해한 것은 곧 남편을 능욕한 것으로 강상과 관계된 것이니 의금부에 하옥해야 한다”(『중종실록』 12년 윤12월 9일, 경진(5))<sup>57)</sup>라며 강상죄로 몰아가 부녀자를

54) “軍資監判官申壽麟通其婢，厥妻妬之，濫刑毆打，至以石擊破唇齒以殺之，褻其屍身，使其夫觀之，安有如此慘酷之甚乎?…請下壽麟之妻于禁府，推鞠。”(『중종실록』 12년 12월 20일, 신유(2))

55) “申壽麟妻成氏之罪，以杖六十，徒一年，單衣決罰，徒贖，依尤。”(『중종실록』 12년 윤12월 22일, 계사(4))

56) “聞申壽麟妻成氏，今當決罰。士大夫與士族婦女，非贓盜奸淫之事，則自古不決杖。”(『중종실록』 12년 윤12월 24일, 을미(3))

57) “酷殺夫妾，凌辱其夫，此乃大關綱常，故本府請移禁府。”(『중종실록』 12년 윤12월

하옥하지 않는 형률의 전례를 파기하려 했다. 또한 중종은 성씨에게 형을 내리면서 “요즘 사족 부녀들이 남편을 능욕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풍속과 관계된 것이니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중종실록』 12년 윤12월 24일 을미(3))<sup>58)</sup>라며 풍속 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 사건을 해석하는 초점이 ‘살인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가 강상에 미친 영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세 케이스의 살인 사건은 부인이 여종을 살해했으며 살해의 동기가 투기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신수린의 아내 성씨만이 장을 맞았다는 점에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신들이 말했듯이 그녀의 살해를 비녀가 아닌 남편의 첩을 살해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질투심이 많은 부인을 매로 다스리게 된 것은 신수린의 처에서 시작되었다.’(『중종실록』 31년 11월 15일 을묘(1))<sup>59)</sup>라는 이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 신수린의 처 사건은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60)</sup>

각 사건에서 아내의 죄를 논할 적에 대신들은 죄의 본질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살해라는 행위가 지닌 중대한 의미는 고려되지 않고, 오직 강상의 질서 안에서 도덕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사건의 책임을 여성에게로 전가시킨다. 그 도덕적 의무는 곧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각 사건의 아내들이 강상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여성으로 전락했을 때

9일, 경진(5))

58) “近日士族婦女，凌辱其夫者，比比有之。此有關風化，所當懲戒。”(『중종실록』 12년 윤12월 24일 을미(3))

59) “妬婦之決棒，始於申壽麟妻。”(『중종실록』 31년 11월 15일 을묘(1))

60) 성씨 사건 이후로, 1528년(중종 23) 발생한 하억수의 아내 말정(末貞)이 여종 복비를 투기하여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杖刑으로 처벌이 내려졌다(『중종실록』 23년 3월 2일 계유(1)). 그리고 1543년(중종 38)에 홍전(洪詮)의 아내 윤대(允代)가 투기로 첩과 첩의 딸, 첩의 노비를 독사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다할 처분은 없으나 杖刑의 원칙을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강명관, 2019)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맹균과 신자치는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로 논죄되었다. 신개·하연 등이 지목한 이맹균의 죄목은 이씨가 무서워 사건을 고하지 않았던 것, 즉 “부녀의 제재를 받은 것”(『세종실록』 22년 6월 10일, 경진(1))<sup>61)</sup>이었고 사간원 역시 “집안 다스리기를 엄히 하지 못해 부인에게 제압을 받아 종첩이 죽었으니 강상의 도를 잃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세종실록』 22년 6월 19일, 기축(2)).<sup>62)</sup> 신수린의 파직을 요청할 때 사헌부가 했던 말도 다르지 않았는데 “신수린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니 파직을 청한다.”(『중종실록』 12년 윤12월 23일 갑오(4))<sup>63)</sup>였다.

아내가 첩을 살해한 직접적 원인은 남편의 또 다른 성적 상대자의 등장이다. 그럼에도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강상죄를 물은 것은 여성의 투기를 범죄화하여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를 법제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결장에 관한 수교가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투기를 부덕의 결함으로 전가시키고 법의 규제라는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부장제의 권위에 도전한 아내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 4. 나가는 말

『受教輯錄』 「刑典」에 수록된 여성 관련 수교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규범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분석한 결과, 해당 수교는 금지와 처

61) “孟昫匿不以告, 一則受制婦人, 一則不畏朝綱, 其罪尤大.”(『세종실록』 22년 6월 10일, 경진(1))

62) “孟昫柔懦疲軟, 治家不嚴, 見制於婦人, 妾婢之見殺, 不能禁制, 殊失陽剛之道.”(『세종실록』 22년 6월 19일, 기축(2))

63) “申壽麟, 家不齊之罪, 府方推治. 請先罷職.”(『중종실록』 12년 윤12월 23일 갑오(4))

벌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의 행위·성·신분을 남성중심 질서의 유지와 재편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화간 사건에서 여성의 신분 규정 문제는 형벌 적용의 핵심 기준이었다. 여성의 신분이 사족으로 규정되면 여성은 물론 상간남도 사형에 처해졌으나, 사족이 아니라면 杖刑에 그쳐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분은 개인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사족 집단의 권위와 위신을 유지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나아가 여성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았다. 가부장의 권위와 가족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법적 규율 속에 편입되면서 사회적 윤리 의식이 성문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부녀는 결장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깨지고 여성에게 결장이 적용된 사례는 여성의 투기가 제도화된 원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적인 사례이다. 투기하는 여성을 비윤리적으로 규정하는 윤리의식이 처벌 수위를 점차 강화하는 논리가 되었고 그 결과 명문화된 법조문 속에서 여성은 국가 권력의 규율 아래에서 사회적 통제와 차별의 구조 속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곧 당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가치와 덕목을 법제 속에 고착화시킨 과정이었다. 따라서 『受教輯錄』의 여성 관련 수교 분석은 조선 후기의 법제 운영이 여성 규범을 윤리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 통제의 영역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Ⅱ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明律直解』  
『大典續錄』,  
『大全通編』  
『大典會通』  
『大典後續錄』  
『續大典』  
『受教輯錄』  
『承政院日記』  
『新補受教輯錄』  
『審理錄』  
『秋官志』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윤국일. 2005. 『신편 경국대전』. 서울: 신서원.

장병인. 2018.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서울: 휴머니스트.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역주. 2001. 『受教輯錄』. 서울: 청년사.

강명관. 2018. “조선 초기 자녀안의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37: 95-125.

———. 2019. “조선전기 사족여성의 비녀살해.” 『여성학연구』 29(2): 173-204.

구덕희. 2002. “법전으로 역사 읽기-집록류 법전의 성격.” 『역사와 현실』 46: 197-213.

김백철. 2007. “조선후기 숙종대 『受教輯錄』 편찬과 그 성격.” 『동방학지』 140:  
131-194.

김선경. 2000.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8: 57-100.

박 경. 2017. “조선시대 사족 여성 결장 논의의 사회적 함의.” 『사학연구』 128: 237-270.

백민정. 2020. “조선후기 성 관련 범죄의 처벌 규정과 재판 양상.” 『민족문화연구』 87:  
185-223.



- 연정열. 1987. “수교집록에 관한 일연구.” 『논문집』 11: 77-95.
- 유승원. 1979. “조선초기의 역리의 신분적 지위.” 『논문집』 10: 129-159.
- 이민주. 2003. “조선시대 복식규제를 통해서 본 사치풍조의 제 요인과 복식변화.” 『복식문화연구』 11(4): 551-561.
- 장병인. 2001. “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가규제의 변화.” 『역사비평』 56: 228-250.
- \_\_\_\_\_. 2003.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 83-116.
- 전지원. 2022. “조선후기 사족여성의 생애자료에 나타난 여성노동 담론.”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궁식. 2020. “조선후기 刑曹受敎와 입법경향.” 『서울대학교 법학』 61(2): 1-46.
- 한상권. 1994. “조선시대 법전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 302-320.

Abstract

A Study on Female-related Edicts (Sugyo) in the  
『Sugyo-jiprok』 of the Late Joseon Dynasty  
– An Examination of the Legalization of Gender Norms  
and Judicial Practices

Hong, jihye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women-related sugyo (royal decrees) recorded in the Sugyo Jamnok (受教輯錄), compiled by order of King Sukjong in the 24th year of his reign, with a focus on the Hyeongjeon (刑典, Penal Code) section. While previous scholarship has examined individual legal codes, specific penalties, and case studi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women, a systematic analysis of how female norms were institutionalized through law has remained insufficient. This study addresses that gap by tracing the process through which sugyo were enacted and examining how those norms operated in actual judicial decisions. Chapter 2 surveys women-related sugyo within the Hyeongjeon, and Chapter 3 analyzes judicial cases to investiga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emale norm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how the legal differentiation of women's social status shaped judicial judgments in sex-related crimes, and how the criminalization of women's jealousy (tugi, 妬忌) functioned to preserve patriarchal authority and family order.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women-related sugyo in Sugyo Jamnok did not merely prescribe prohibitions and punishments, but served as a mechanism through which the state brought women's conduct, sexuality, and social status under institutional control in order to maintain a male-centered social

order — a process through which female norms were transferred from the ethical domain into the realm of institutional regulation in late Joseon society.

**Key words:** Female differentiation, Sugyo, 『Sugyo-jiprok』,  
Female jealousy, Female regulation, Joseon criminal law

- 투 고 일 : 2026년 3월 2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4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28일



# 나이지리아 힙합의 (서)아프리카 페미니즘 실천

— 아티스트 ‘시미(Simi)’ 사례연구\*

권영승\*\*

## | 목차 |

- |                 |                  |
|-----------------|------------------|
| 1. 서론           | 4. 사례연구: 여성 아티스트 |
| 2. ‘아프리카’ 페미니즘  | ‘시미(Simi)’       |
| 3. 나이지리아 힙합과 여성 | 5. 결론            |

## | 초록 |

본 연구는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아프리카 여성 힙합 아티스트의 음악을 페미니즘적 실천의 장으로 규정하고, 그 메시지를 아프리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서아프리카의 페미니즘은 탈식민화의 역사와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하여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중문화 속 메시지를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힙합과 대중음악 영역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 서사와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험과 주체성을 조명하는 연구는 주변부에 머물러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나이지리아의 여성 아티스트 시미(Simi)를 사례로 삼아, 그의 음악에 담긴 아프리카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시미는 다양한 곡에서 여성의 자율성, 일상적 억압, 모성 등 여러 주제를 다루며, 이를 아프리카 페미니즘이 강조해 온 협력, 상호 보완, 저항 등과 연계한다. 또한 나이지리아 힙합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젠더 규범이 사회적 인식을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 아티스트의 메시지가 나이지리아 사회의 젠더 역할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1003729)

\*\*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 agysba@gmail.com

는 나이지리아 여성 힙합이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서 사회·문화·정치적 변화를 매개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대중문화 속에서 아프리칸 페미니즘의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성 주체성과 페미니즘 서사가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힙합, 나이지리아, 여성 아티스트, 서아프리카, 아프리칸 페미니즘

## 1. 서론

현대 아프리카의 페미니즘은 서구 페미니즘에 대한 수용과 비판 등 다양한 논쟁을 거치며 여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페미니즘은 탈식민화와 연계된 역사적 특성에 더하여, 아프리카 여성의 경험을 개인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관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서아프리카는 페미니즘 이론의 발전과 함께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서아프리카에서는 주로 나이지리아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토착적이고 새로운 개념의 페미니즘들이 꾸준히 등장했다.<sup>1)</sup>

이러한 흐름은 학문의 공간을 넘어 서아프리카 대중문화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등은 여성의 목소리를 사회로 전파하는 핵심 매개체가 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서아프리카에서는 여성 아티스트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비

1) '(서)아프리칸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나이지리아 페미니즘'이라는 호칭은 더욱 그러하다. 현재까지 나이지리아인들은 국가적 정체성보다 민족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며, 대다수 페미니즘 학자들은 주로 동부 지역 출신으로, 모든 나이지리아 여성을 대변하기 어렵다. 특히 요루바족과 하우사족이 다수 거주하는 서부 및 북부 지역은 각자의 문화, 종교,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페미니즘 모델을 창출해 왔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Badejo, 1998; Whitsitt, 2002).

판하고, 젠더 규범을 재구성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힙합을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대중음악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깊이 연관된다. 아프리카에서 힙합은 젊은 세대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힙합이 태동했던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도 힙합은 청년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참여와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촉매이다. 즉 힙합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와 아프리카의 각 지역을 잇는 매개이며, 높은 실업률과 각박한 삶에 대한 아프리카 청년의 현실을 기록하고 이들의 정체성, 저항,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핵심적인 기제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힙합이 가지는 여러 중요성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힙합 문화 내에서도 침묵과 억압을 경험해 왔다. 이는 식민지 시기의 경험과 함께 근대 이후 지속된 가부장적인 문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페미니스트들은 힙합 문화를 ‘서구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해석했다. 또한 여성의 목소리를 가사와 인터뷰, 퍼포먼스 등에 담아내는 아티스트들의 활동은 기존 사회 규범에 균열을 가져왔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 주체성 등 다양한 층위를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형상화하는 중요한 페미니즘의 실천이다.

그러나 서아프리카에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 국가인 나이지리아와 세네갈, 가나 등에서도 힙합 및 대중음악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특징을 띤다. 따라서 젠더 기반 폭력, 성적 규범, 동성애 혐오 등 아프리카 여성의 삶과 긴밀히 얽힌 주제들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힙합의 여러 영향력을 강조하거나 인기가 높은 남성 아티스트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했으며, 여성의 경험과 주체성 등을 기반으로 한 서사와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왔다.

레이턴과 왓슨(Railton & Watson, 2005)은 “어떠한 곡이 반복되고 인기를 얻게 되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며, 나아가 그 노래가 표현하는 내용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수용된다”고 지적한 바 있

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자신의 곡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청자들도 여성에게 같은 용어를 쓰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뮤직비디오에서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할 경우, 어린 소녀들은 자신들도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듯 대중음악은 시대의 문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새로이 창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은 단지 예술적 생산을 탐구하는 작업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사회의 젠더 역학과 변화를 해석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여성 아티스트인 ‘시미(Simi: Simisola Bolatito Kosoko)’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를 서아프리칸 페미니즘의 틀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시미는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미가 자신의 곡을 통하여 여성의 자율성, 관계 협상, 공동체 기반 젠더 실천, 여성의 일상적 억압, 모성의 정치성 등 다양한 페미니즘 주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탐구한다.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 여성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통해 수행하는 페미니즘적 실천을 밝히고, 서아프리카 대중문화에서의 이론적·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 2. ‘아프리카’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현재까지도 아프리카인들에게 낯선 서구의 용어이다. 학자들은 이를 ‘아프리카 토양에 스며들어 뿌리 내린 잡초’에 비유하기도 한다. 먼저 서구 페미니즘은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의 경험이 같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은 결코 단일체로 취급될 수 없으며, 각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동일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다층적 환경으로 인해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기존 서구 페미니즘을 곧바로 적용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그 결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여성의 삶과 연관된 독자적인 이론 틀이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아프리칸 페미니즘(African Feminism)’은 매우 다양한 실천적·사상적 지형을 이루고 있다(Decker, 2018).

스테디(Steady)는 “흑인 여성, 특히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이야말로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페미니즘은 억압의 실제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테디는 아프리칸 페미니즘을 인종·성·계급·문화적 억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포용적인’ 페미니즘으로 정의하며, 궁극적으로 ‘인본주의적 페미니즘(humanistic feminism)’의 특성을 띠었다고 설명하였다(Steady, 1996: 4).

이러한 아프리칸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남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체의 조화, 상호 의존성, 관계의 유지, 가족과 사회 전체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사회에서 여성의 정체성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아프리칸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안녕, 전통과 현대성의 조화, 남성과의 협력 등 복합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의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서 나타나는 여성적 주체성의 발화 방식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아프리카 여성들이 서구 페미니즘에 대하여 가지는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된다. 첫째는 페미니즘의 다양한 역사와 갈래 중 일부분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이 ‘작’으로 전제되고 배제되는 것이며, 둘째는 인종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여성이 ‘유색인종 여성’으로 통합되어 그들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간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아프리카 학자들은 독창적인 토착적 페미니즘 모델을 구축해 왔다(Nkealah, 2016). 특히 나이지리아의 경우, 일련의 토착 페미니즘은 아프리카 페미니

즘의 목표와 목적을 재정의하고 여성들을 위한 의제를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전된 이론과 개념들은 젠더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방증한다(Arndt, 2002). 이들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전통문화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적 결속’에 유리한 가치관의 보존을 주장한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전통을 재검토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 모델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다(Chigwedere, 2010: 24).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우머니즘(Womanism)’, ‘스티와니즘(Stiwanism)’, ‘마더리즘(Motherism)’, ‘네고-페미니즘(Nego-feminism)’, ‘스네일-센스 페미니즘(Snail-Sense Feminism)’과 같은 이론들은 모두 여성의 주체성, 권력의 문제를 고유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여성들의 삶을 둘러싼 현실적 조건에 기반하여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여성들이 억압에 대응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전략을 다루고 있다.

먼저 우머니즘은 여성의 관계성과 공동체적 해방을 강조한다. 우머니즘은 본래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이론이지만, 아프리카 여성들의 현실에서도 생명력을 갖는다(Ogunyemi, 1985; Kolawole, 1997). 워커(Alice Walker)는 우머니즘을 최초로 언급하며 “흑인 여성의 삶, 감정, 역사, 공동체적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이자, “라벤더가 보라색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성에게는 페미니즘이 당연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의 해방을 개인적 권리 확장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가족·공동체·사회 전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구별된다(Walker, 1982). 코라윌레(Kolawole, 1997: 27)는 백인 페미니즘과 흑인 페미니즘의 두드러진 차이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남성과 같아지거나, 남성처럼 보이거나, 반드시 남성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는 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오구니예미(Ogunyemi)는 우머니즘에 대해 “급진적 페미니즘과 달리, 흑인 여성과 흑인 남성, 흑인 아이들 사이의 의미 있는 결합을 지향하며, 남성들의 변화

역시 촉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Ogunyemi, 1985: 65). 또한 아데산미(Adesanmi)는 “흑인의 뿌리와 삶의 이상을 찬양하는 동시에 흑인 여성의 자유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철학”으로 규정하였다(Adesanmi, 2004: 72). 이렇듯 우머니즘은 흑인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인종과 계급, 성차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후크스(Hooks, 1998: 845)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백인 페미니스트들은 백인 우월주의를 강화하고, 여성들이 인종적 경계를 넘어 정치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인종적·계급적 억압은 성차별적 억압과 분리될 수 없다. 우머니즘은 남성들과의 연대를 믿는다. 이러한 특징은 서구의 페미니즘과 우머니즘을 확연히 구분 짓게 한다.”

즉 일부 서구의 페미니즘이 성차별적 억압에만 주목하는 반면, 우머니즘은 흑인 여성들이 겪는 인종적, 계급적, 성차별적인 억압을 모두 언급한다는 것이다. 우머니즘은 흑인 여성들의 요구가 백인 여성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방 투쟁에 남성의 참여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방법론에서도 서구 페미니즘과 차별화된다. 또한 우머니즘은 가족, 공동체, 모성을 중요시하는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아프리카의 여성들을 넘어 다른 지역의 많은 여성들에게도 포용되고 있다(Ebunoluwa, 2009).

다음으로 오군디페-레스리(Ogundipe-Leslie)가 제안한 스티와니즘은 “사회 변혁에서 아프리카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사회 전체의 변혁과 직결된 과제로 규정한다(Ogundipe-Leslie, 1994: 207). 스티와니즘은 특히 아프리카 여성이 사회 변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점을 강조하며 우머니즘과 차별성을 둔다. 즉 여성 주도적인 사회 변혁 과정에서 남성과의 동반자 관계 개념을 도입한다. 스티와니즘 역시 아프리카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를 넘어 이를 다른 국가들의 여성 해방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한다(Adebayo, 1996: 1).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이다. 이는 남성과의 전쟁이나 역할 전환, 혹은 여성들이 수 세기 동안 남성들이 해왔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남성들에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 아프리카 사회의 변혁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책임이며, 동시에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외에도 아촐로누(Acholonu, 1995)는 1995년 ‘마더리즘’을 창시했다. 이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경험에서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페미니즘의 아프리카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촐로누는 모성주의를 통해 여성의 자유를 논하며, 아프리카 여성에게 모성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즉 ‘어머니-자녀’ 관계를 담론의 중심으로 선택하며, 이를 통한 본성과 양육, 존중을 중시한다(Alkali et al., 2013: 246). 또한 아프리카 여성은 자녀와 거리를 둘 수 없기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폭력 및 적대감을 해소하고 사랑과 관용, 가족 가치 수호를 증진”할 것을 주장한다(Amaefula, 2021: 297).

또한 은나에메카(Nnaemeka)가 제시한 네고-페미니즘은 ‘협상(Negotiation)과 우회(Nego)의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특히 아프리카 여성들은 억압적 구조를 맞닥뜨렸을 때 정면충돌보다 관계 유지, 유연한 전략, 실용적 해결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온 오랜 전통이 있으므로, 네고-페미니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Nnaemeka, 1999: 360). 즉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인들이 공유하는 토착적 가치, 태도, 제도를 바탕으로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혹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아프리카 여성들이 직면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헤쳐 나가는 방법으로 평화적 ‘협상’을 옹호한다(Amaefula, 2021: 299).

마지막으로 ‘스네일-센스 페미니즘’은 성별 포용, 상호 보완, 협력이라는 삼각 구조에 기반하여 아프리카 페미니즘의 원칙을 확장한다. 이 개념은 나이지리아 및 서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친숙한 행동 양식과 생존 전략을 지닌 달팽이를 모델로 삼는다. 느리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경계심

을 갖고 장애물을 우회하는 달팽이처럼, 가부장제와 성차별을 우회하고, 남성들과 협력하며 사회적으로 수완을 발휘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억압을 수용하거나 참아내는 동시에 협력하려는 경향이 이론의 근간이다 (Ezeigbo, 2012: 27).

이러한 일련의 ‘아프리칸’ 페미니즘이 기존의 이론들처럼 확고히 정립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여성들이 현실의 억압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지적 성숙의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한 예로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경찰 부대인 ‘SARS (Special Anti-Robbery Squad: 특별강도단속대)’의 가혹행위를 비판하고 해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페미니스트들의 연합체인 ‘FemCo(The Feminist Coalition)’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위자들에게 식량과 의료 지원 등을 제공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페미니즘은 다층적이며 매우 다양하지만, 오랫동안 여성들을 고착된 이미지에 묶어두려 했던 사슬을 끊고자 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점차 계급, 성적 지향, 종교, 연령, 민족 집단 등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교차적 성격을 띠고 있다.

### 3. 나이지리아 힙합과 여성

힙합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미국 뉴욕의 아프리카계 흑인 공동체에서 태동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장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 힙합의 영향력은 청년들의 정체성 형성과 밀접히 연결되며, 이는 아프리카의 도시 청년 문화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Iwamoto et al., 2007; Zichermann, 2013). 파월(Powell, 2000)은 “힙합의 뿌리는 자메이카도, 푸에르토리코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도 아닌 아프리카에 있다”고 주장하며, 힙합이 아프리카의 바드 전통과 흑인 구전 전통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은타랑위(Ntarangwi)는 일련의 연구에서 동아프리카의 힙합과 지역화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청년들의 사회적 저항과 젠더 관계, 정체성 형성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분석을 다수 수행하였다(Ntarangwi 2007; 2009; 2010). 아프리카의 경우, 중동의 ‘아랍의 봄’과 세네갈의 ‘Y'en a Marre’, 남아프리카의 ‘Fees Must Fall’ 등 중요한 사회변혁 운동에서 많은 여성 래퍼가 참여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힙합 페미니즘’은 흑인 여성의 경험, 교육, 모성, 젠더 수행성 등을 분석하는 주요 틀로 활용되었다(Pough et al., 2007; Pough 2004; Rabaka 2011). 하지만 여성 래퍼들은 기존 젠더 규범에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부분적으로 재생산하는 다층적인 행태를 보인다(Haugen, 2003; Thomas, 2009). 또한 힙합의 가사가 여성의 과도한 소비성향을 강조하며 고정관념을 재생산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Mueni, 202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하며, 아프리카의 힙합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Kibona Clark, 2023).

아프리카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미소지노아르(misogynoir: 흑인 여성 혐오)’와 같은 용어를 통해 복합적인 억압 구조를 분석하는 틀로 사용한다. 이는 흑인 페미니스트 베일리(Bailey)가 흑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특정한 억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미소지노아르는 “인종적·성적 폭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동시에 맞물려 발생하는 억압의 결과로 흑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적 폭력”을 다룬다(Bailey, 2021: 1). 많은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은 음악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고 저항해 왔다. 힙합의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 중심 공간에서 성차별적·인종차별적인 편견과 필연적으로 부딪힌다. 이들은 종종 인종적·성적 고정관념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이중 억압 속에서 활동하며, 가사 등의 메시지는 아프리카의 페미니즘 연구와도 중요한 교집합을 형성한다. 즉 아프리카에서도 힙합은 오랫동안 저항의 문화적 장으로 기능해 왔으며, 여성 래

퍼들은 주요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점점 더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서아프리카의 대표적 국가이다.

나이지리아 힙합의 기원은 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이지리아로 망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래퍼 ‘이브라힘 살람-오마리(Ibrahim Salim Omari)’의 등장은 나이지리아 최초의 랩 앨범인 〈I am African〉의 발매로 이어졌다. 90년대 초반에는 ‘더 리메디즈(The Remedies)’와 ‘플랜테이션 보이즈(Plantation Boyz)’와 같은 힙합 아티스트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Oikelome, 2013). 초기에는 미국의 힙합을 모방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언어적·문화적 토착화가 이루어져 ‘나이자 힙합(Naija Hip-hop)’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장르가 만들어졌다(Adegoju, 2009). 나이자 힙합은 미국 등 외국 아티스트의 영향과 함께 전통 음악의 토착성(indigenous)이 섞여 있다.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전통에서 음악적 기법이나 소재를 자주 차용하며,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음악 산업은 후지(Fuji), 하이라이프(Hi-Life), 아프로비츠(Afrobeats) 등 다양한 토착·외래 음악이 공존하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다. 그레이엄(Graham)은 나이지리아 음악 산업의 성장 동력을 “거대한 국내 시장, 미적·물질적 성공에 대한 강한 욕망, 지역 언어로 노래하고 토착적·외래적 스타일을 모두 실험하는 아티스트들을 지탱할 만큼 거대한 국내 시장”에서 찾는다(Graham, 1989: 45). 나이지리아에 유입된 힙합은 짧은 기간 내에 ‘주변부에서 주류로’ 올라섰다. 특히 국내 음악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국가의 정책 덕분에 나이지리아 힙합이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하였다. 이후 힙합은 점점 나이지리아 청년들의 오락적 기능을 넘어 정치 및 부패 문제, 경제 실패 등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힙합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자 폭력과 퇴폐성, 과도한 남성성과 여성 혐오를 전면에 내세우는 콘텐츠가 만연했다(Onanuga, 2017). 이러한

경향은 콘넬과 메서슈미트(Connell & Messerschmidt, 2005)가 언급한 ‘हे계모니적 남성성의 구조적 재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여성의 객체화와 젠더 위계 강화를 매체적으로 재생산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나이지리아는 다수의 여성 힙합 아티스트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여성들은 종종 배경에서 음악에 맞춰 공연하는 댄서로 등장한다. 또한 많은 힙합 가사에서 여성 혐오적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남서부 지역의 주주(Juju)와 아프로비트 등의 전통 음악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표현 사례는 드물게 나타난다. 힙합의 여성 혐오적 요소는 1990년대 초 나이지리아에 전 세계적 영향력을 미친 미국의 힙합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은 많은 나이지리아 국민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에제(Eze)는 1990년대 나이지리아가 겪었던 경제적·정치적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힙합 음악을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관찰한 바 있다(Eze, 2020).

나이지리아 힙합의 여성 혐오와 성차별적 경향에 대한 원인은 서구 문화의 영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젠더 불평등 구조와도 연결된다. 2025년 ‘세계 성별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나이지리아는 148개국 중 124위를 기록하며 여성의 교육, 경제활동, 보건, 정치 대표성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취약함을 보였다.

그럼에도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나이지리아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다수 존재한다. 와카(Waka) 아티스트인 바틸 알레이크(Batile Alake)와 살라와 아베니(Salawa Abeni)는 각각 ‘Mother of Waka’와 ‘Queen of Waka’로 불리며, ‘Queen of Reggae’라 불리는 에비 에드나 오콜리(Evi-Edna Ogholi)를 비롯해 오네키 온웨누(Onyeka Onwenu), 크리스티 이그엔 이그보웨(Christy Essien-Igbokwe), 리자두 시스터즈(Lijadu Sisters) 등 수많은 여성 선구자가 나이지리아의 음악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들은 펠라 쿠티(Fela Kuti) 등 유명한 남성 아티스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오나누가(Onanuga)의 분석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남성 힙합 아티스트의 가사와 뮤직비디오는 여성을 탐욕스럽고 방종하며 남성의 쾌락을 위한 존재로 주로 묘사한다. 따라서 나이지리아 힙합에서 여성은 객체화·타자화되며 종종 능력 대신 외모가 평가 기준으로 강조된다고 분석한다(Onanuga, 2017). 거장 펠라 쿠티의 〈Lady〉란 곡에서도, 시가를 피우고 평등을 요구하는 ‘현대 여성’(레이디)을 조롱한다. 또한 올라주모케(Olajumoke)는 최근 힙합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동작·폭력·약물 이미지가 청소년의 문화적 가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Olajumoke, 2020). 또한 미디어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결국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Kanu & Nnamdi-Eruchalu, 2023: 163).

종합하면, 나이지리아 힙합은 토착 음악 산업의 역동성과 글로벌 힙합 문화의 영향력 위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힙합 산업에서 여성은 여전히 불평등한 구조 속에 존재하며, 여성의 배제와 성적 대상화는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억압에 대응하는 창작과 실천을 통해 아프리카 페미니즘의 중요한 담론적 공간을 확장하고 있으나, 이를 분석한 학술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 4. 사례연구: 여성 아티스트 ‘시미(Simi)’

나이지리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시미는 현대 아프리카 대중음악에서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선명하게 구축한 대표적 여성 아티스트로 평가된다. 시미는 2008년에 데뷔 정규 앨범 *Ogaju*를 발매한 이후, 2014년 ‘Tiff’를 발표하여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며, 여성의 권리, 성평등, 자기 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시미는 여성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은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발언하였다. 시미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에서 성별 간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강조한 바 있다(The Guardian, 2020).

“여성들이 남성이 되고 싶어 했던 유일한 이유는 아마도 남성이 누려온 특권 때문이다. 왜 여성이 남성이 되고 싶어 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그 특권을 균등하게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시미의 이러한 발언과 활동은 나이지리아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에게 중요한 영감과 대화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시미가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여성에게 강요되는 결혼·출산 중심적 규범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 여성의 자신감·경제력·자기표현을 ‘비여성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시선을 해체하려는 노력이다. 셋째, 여성들 간의 연대와 자존감 회복을 통해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서사적 전략이다. 이러한 시미의 메시지는 그의 음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대표곡 〈Woman〉, 〈Woman to Woman〉, 〈Jamb Question〉, 〈Duduke〉를 중심으로 그의 메시지를 아프리카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표 1〉 Simi - 〈Woman〉(2021)

|                                                                                                      |                                                                                        |
|------------------------------------------------------------------------------------------------------|----------------------------------------------------------------------------------------|
| Woman don suffer oh<br>Lowo everybody<br>Suffer suffer for world (amen)<br>Enjoy for heaven<br>..... | 여성은 많이 고통받지.<br>모두에게 착취당하고,<br>이 세상에서는 고생하며 살아가고,<br>천국에 가서야 누릴 수 있다는 말만 듣는다.<br>..... |
|------------------------------------------------------------------------------------------------------|----------------------------------------------------------------------------------------|

|                                                                                                                                                                                                                                                                                                                                                                                                                                                                                                                                                                                                                                                                                                                                                                                 |                                                                                                                                                                                                                                                                                                                                                                                                                                                                                                      |
|---------------------------------------------------------------------------------------------------------------------------------------------------------------------------------------------------------------------------------------------------------------------------------------------------------------------------------------------------------------------------------------------------------------------------------------------------------------------------------------------------------------------------------------------------------------------------------------------------------------------------------------------------------------------------------------------------------------------------------------------------------------------------------|------------------------------------------------------------------------------------------------------------------------------------------------------------------------------------------------------------------------------------------------------------------------------------------------------------------------------------------------------------------------------------------------------------------------------------------------------------------------------------------------------|
| <p>If woman never marry oh (then she no be woman), If woman never carry omo (she no be woman)</p> <p>If she no get man for side oh, Dem go dey push woman aside oh, And eventually oh</p> <p>Dem go suffer suffer woman</p> <p>.....</p> <p>Na so so submission oh</p> <p>They we get assignment?</p> <p>.....</p> <p>But, you no pay attention oh</p> <p>To the intimidation she dey face</p> <p>No be like water (water, e no get enemy)</p> <p>If woman get confidence oh (then she no be woman), Woman get money, won “I’asewo ni” (she no be woman)</p> <p>If she no get man for side oh</p> <p>Dem go dey push woman aside oh</p> <p>And eventually oh</p> <p>Dem go suffer suffer woman</p> <p>.....</p> <p>I never talk (woman, woman, woman, nobody be like woman)</p> | <p>여성이 결혼하지 않으면(여성이 아니라 하고),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여성이 아니라 하고),</p> <p>결에 남성이 없으면 여성을 밀어내고 주변으로 몰아낸다.</p> <p>그리고 모든 고통을 여성에게 떠넘긴다.</p> <p>.....</p> <p>늘 ‘복종하라’는 말뿐이다.</p> <p>우리가 무슨 과제를 받았는가?</p> <p>.....</p> <p>하지만 사람들은 여성이 매일 마주하는 위협과 억압을 주목하지 않는다.</p> <p>여성은 물처럼 ‘적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p> <p>여성이 자신감을 가지면(여성이 아니라고 하고), 여성이 경제력을 가지면 ‘매춘부’라 부르고(여성이 아니라고 하고),</p> <p>결에 남성이 없으면 여성을 밀어내고 주변으로 내친다.</p> <p>그리고는 결국 모든 고통을 여성에게 전가한다.</p> <p>.....</p> <p>나는 말도 아직 다 하지 못했다(여성, 여성, 여성-여성 같은 존재는 없다).</p> |
|---------------------------------------------------------------------------------------------------------------------------------------------------------------------------------------------------------------------------------------------------------------------------------------------------------------------------------------------------------------------------------------------------------------------------------------------------------------------------------------------------------------------------------------------------------------------------------------------------------------------------------------------------------------------------------------------------------------------------------------------------------------------------------|------------------------------------------------------------------------------------------------------------------------------------------------------------------------------------------------------------------------------------------------------------------------------------------------------------------------------------------------------------------------------------------------------------------------------------------------------------------------------------------------------|

시미의 〈Woman〉은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의 전달을 넘어, 나이지리아 사회의 젠더 규범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폭력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특히 곡 전반에 반복되는 “suffer for world / enjoy for heaven”이라는 구절은 여성의 고통을 ‘이 땅에서의 숙명’으로 규정하고, 그 대가를 ‘천국에서의 보상’으로 미루어 정당화하는 종교적·문화적 기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은 스티와니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사회 일상에 깊이 내재된 구조적 억압을 가시화하고 변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페미니즘

적 실천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시미는 “If woman never marry... she no be woman”, “If woman never carry omo... she no be woman,” 와 같은 가사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이 결혼과 출산 여부로 규정되는 현실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여기서 사회는 여성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 수행 여부로 평가한다. 이는 개인적 편견을 넘어, 공동체 내부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전통성에 기반하여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If woman get confidence... then she no be woman”, “Woman get money, won l'asewo ni” 라는 대목은 여성의 자기 확신과 재정적 자립을 ‘여성다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현실을 풍자한다. 이는 곧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체계적으로 낙인화되는 과정을 드러내며, 아프리카 페미니즘이 문제 삼아온 ‘내면화된 억압’과 ‘규범적 여성성의 강요’를 명확히 시각화한다. 이러한 해석은 네고-페미니즘이 제시한 ‘협상’과 ‘유연한 실천’의 전략을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읽힐 수 있다. 시미는 급진적 대결보다는 일상 언어와 은유적 비판을 통해 억압의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다. 그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I never talk finish”라는 구절은 여성의 말하기를 사회적·정치적으로 제한한 역사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지금 시작한 발화가 ‘전달의 공간’을 확장하는 저항적 실천임을 함축한다. 이는 네고-페미니즘이 강조하는 ‘비충돌적 저항’ 혹은 ‘공간 열기’의 방법과 연결된다.

또한 스네일-센스 페미니즘이 강조한 ‘점진적 전진’과 ‘삶의 복합성 속에서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듯, 시미는 구조적 폭력을 즉각적인 단절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여성들이 하루하루 통과해야 하는 현실을 차분히 드러내면서 느리지만 꾸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시미의 비판은 날카롭지만 폭발적이지 않으며, 이는 아프리카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변화, 즉 갈등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와 호응한다.

결국 〈Woman〉은 단순한 사회 비판 노래가 아니라, 아프리카 페미니즘

의 주요 이론들이 지적인 억압의 구조를 대중문화의 언어로 번역한 텍스트이다. 시미는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침묵, 낙인, 역할 강요, 종교적 정당화, 경제적 불평등을 구체적 언어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사회 내부에서 여성의 위치와 목소리를 재구성하는 발화를 시도한다.

〈표 2〉 Simi - 〈Woman to Woman〉(2024)

|                                                                                                                                                                                                                                                                                                                                                                                                                                                                                                                                                                                                                                                                                                                                                                                                                                                                |                                                                                                                                                                                                                                                                                                                                                                                                                                                                                                                                                                                                                                  |
|----------------------------------------------------------------------------------------------------------------------------------------------------------------------------------------------------------------------------------------------------------------------------------------------------------------------------------------------------------------------------------------------------------------------------------------------------------------------------------------------------------------------------------------------------------------------------------------------------------------------------------------------------------------------------------------------------------------------------------------------------------------------------------------------------------------------------------------------------------------|----------------------------------------------------------------------------------------------------------------------------------------------------------------------------------------------------------------------------------------------------------------------------------------------------------------------------------------------------------------------------------------------------------------------------------------------------------------------------------------------------------------------------------------------------------------------------------------------------------------------------------|
| <p>God did his thing when he made you<br/>         Woman to woman, You're one in<br/>         a billion<br/>         She a queen, she a vision<br/>         Pretty woman, Beautiful woman<br/>         So fine, she causing confusion<br/>         Keep your head up no look down<br/>         You say to yourself, you say</p> <p>.....</p> <p>Look at me now<br/>         You see me a bad bae First class babe<br/>         And you know me status<br/>         Super icon me no need to practice<br/>         Walk in a room, everybody want this<br/>         When you see me coming, better bow down for me<br/>         Queen don come, come hold flower for me<br/>         I'm looking at that girl in the mirror<br/>         And here's what she said to me</p> <p>.....</p> <p>Sexy girl no dey hide yourself<br/>         Not for nobody else</p> | <p>신이 당신을 만들 때 정말 큰일을 해낸 거야.<br/>         여성이 여성에게, 넌 수십억 사람들 중에<br/>         오직 하나야.<br/>         그녀는 여왕이고, 하나의 비전(이상)이야.<br/>         아름다운 여자, 멋진 여자.<br/>         너무 빛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흔들어 놓지.<br/>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히 머리를 들어.<br/>         너는 스스로에게 말하지.</p> <p>.....</p> <p>“지금의 나를 봐.”<br/>         “나는 매력적인 여자고, 최고의 여자야.”<br/>         “내 위상을 알잖아.”<br/>         나는 이미 아이콘이야.”<br/>         내가 방에 들어서면, 모두가 나를 원하지.<br/>         내가 오면, 예의를 갖추고 나를 맞아줘.<br/>         여왕이 오셨다, 꽃을 들고 나를 맞으러 와.<br/>         거울 속의 여자를 바라보니,<br/>         그녀가 내게 이렇게 말하더라.</p> <p>.....</p> <p>너 자신을 숨기지 마.<br/>         누구를 위해서도 그러지 마.</p> |
|----------------------------------------------------------------------------------------------------------------------------------------------------------------------------------------------------------------------------------------------------------------------------------------------------------------------------------------------------------------------------------------------------------------------------------------------------------------------------------------------------------------------------------------------------------------------------------------------------------------------------------------------------------------------------------------------------------------------------------------------------------------------------------------------------------------------------------------------------------------|----------------------------------------------------------------------------------------------------------------------------------------------------------------------------------------------------------------------------------------------------------------------------------------------------------------------------------------------------------------------------------------------------------------------------------------------------------------------------------------------------------------------------------------------------------------------------------------------------------------------------------|

〈Woman〉이 나이지리아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Woman to Woman〉은 보다 부드러운 정서와 자기 격려의 언어를 통해 여성 간 연대와 자존감의 회복을 강조하는 우머니즘적 관점을 보다 강하게 드러낸다. 노래는 “God did his thing when he made you”라는 선언적 구절로 시작하며, 흑인 여성의 존재가 애초부터 존엄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반복되는

“You’re one in a billion / She a queen, she a vision”이라는 표현은 여성의 자기 긍정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사회의 가부장적 시선 속에서 오랫동안 훼손되어 온 흑인 여성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See the girl in the mirror / Here’s what she say to me”와 같은 대목은 ‘거울 속의 여성’이라는 상징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치유적 과정을 묘사한다. 이는 우머니즘이 강조해 온 정서적 회복, 공동체 기반의 자존감 회복, 그리고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다. 시미는 자신을 격려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서사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다. 또한 “Keep your head up, no look down”이라는 구절은 외부의 시선과 규범에 맞서는 심리적 자기방어이자 협상적 저항의 전략으로 기능한다. 이는 네고-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상황에 적합한 협상 방식’을 떠올리게 하며, 여성에게 부여된 부정적 이미지나 억압적 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한다. 시미는 이렇듯 현실적인 실천을 통해 억압 구조를 약화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흑인 여성의 연대와 자기 존중을 중심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표 3〉 Simi - 〈Jamb Question〉(2015)

|                                                                                                                                                                                                                                                                                                                     |                                                                                                                                                                                               |
|---------------------------------------------------------------------------------------------------------------------------------------------------------------------------------------------------------------------------------------------------------------------------------------------------------------------|-----------------------------------------------------------------------------------------------------------------------------------------------------------------------------------------------|
| Na so he see me for road one day<br>He come dey follow me go, he come dey<br>follow me<br>He say, “Sister, sister please wait<br>I wanna talk to you, omoge”<br>I say, “Tell me what do you want?”<br>He said he's only gonna take one second<br>He come dey ask me stupid question<br><br>“Have I met you before?” | 어느 날 그가 길에서 나를 봤어.<br>따라오면서<br>“저기, 잠깐만.<br>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br>오모게(예쁜 아가씨)”라고 하더라.<br>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 건데요?”라고 했지.<br>그랬더니 그는 잠시만 시간을 달래.<br>그리고 바보 같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지.<br><br>“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
|---------------------------------------------------------------------------------------------------------------------------------------------------------------------------------------------------------------------------------------------------------------------------------------------------------------------|-----------------------------------------------------------------------------------------------------------------------------------------------------------------------------------------------|

|                                                   |                                |
|---------------------------------------------------|--------------------------------|
| Is your brother Paul?                             | 당신 오빠 이름이 폴인가요?                |
| Did you go to my school?                          | 우리 같은 학교 다녔어요?                 |
| Cause I recognize you                             | 낮이 익어요.                        |
| Do you live next door?                            | 혹시 옆집에 살아요?                    |
| Does your daddy play football?                    | 당신 아버지가 축구 선수예요?               |
| Girl, I cannot lie for you                        | 거짓말할 생각 없어                     |
| I swear I recognize you                           | 진짜 당신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
| Ma bi mi ni jamb question (no)                    | 나한테 Jamb Question 좀 하지 마. (싫어) |
| I no be dundi, I no be fool (I no be fool)        | 나바보아니야, 멍청이도아니고(절대아니야)         |
| You see your style, it's just not cool (not cool) | 너 그 스타일, 정말 별로야. (안 멋있어)       |
| I won't pay you no attention                      | 이런 식이면 더 이상 상대 안 해.            |
| To'n ba bi mi ni jamb question oh                 | 나한테 Jamb Question을 하면 말이야.     |
| .....                                             | .....                          |
| You no dey shame, you no dey fear                 | 너는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나?         |
| You see your style, it's just not cool            | 봐, 그런 스타일은 전혀 멋있지 않아.          |
| I won't pay you no attention                      | 나는 너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아.            |

〈Jamb Question〉은 전반적으로 경쾌한 리듬과 유머러스한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일상 속 여성에게 가해지는 무례한 시선과 젠더 권력을 경계하고 거부하는 강한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다. 곡 제목에 등장하는 ‘Jamb question’은 나이지리아의 대학 입학시험 기관 ‘JAMB(Joint Admissions and Matriculation Board)’에서 유래한 속어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 또는 ‘쓸데없이 캐묻는 귀찮은 질문’을 뜻한다. 시미는 이러한 문화적 표현을 활용해, 여성에게 끊임없이 사적인 정보를 캐묻고 존재를 통제하려는 남성 중심적인 일상 문화를 풍자한다.

여기서 남성 화자는 “Have I met you before?”, “Do you live next door?”, “Is your daddy play football?” 등 무례하고도 뜬금없는 질문을 이어가며 여성을 파악하고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질문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여성을 평가하고 규정하려는 젠더 권력의 연장선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미는 “I no be dundi, I no be fool”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자신을 판단하려는 시선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러한 대응은 스티와니즘이 제시하는 ‘일상적 억압에 대한 언어적 저항’의 방식과 맞닿아 있으며, 여성이 겪는 침해와 간섭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에 해당한다.

또한 “I won’t pay you no attention”이라는 구절은 관계적 조화를 우선시 하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네고-페미니즘의 핵심 전략과 연결된다. 시미는 과격한 대립이나 공격적 언어 대신, 무시와 단호한 선 긋기를 통한 방식을 택한다. 이는 여성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스스로 수호하는 비대립적 저항으로 읽힌다.

여성의 감정과 경험을 중심에 둔 우머니즘의 관점에서도 이 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미가 남성의 불필요한 질문을 거부하며 자기 보호와 자기 존중을 우선하는 장면은, 우머니즘이 강조해 온 ‘흑인 여성의 정서적 안녕과 자기 보살핌’의 실천을 보여준다. 즉 〈Jamb Question〉은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여성의 사적 공간을 지키고, 젠더적 침해에 대한 일상적 경계를 세우는 페미니즘적 실천을 드러낸다.

〈표 4〉 Simi - 〈Duduke〉(2020)

|                                                    |                         |
|----------------------------------------------------|-------------------------|
| First let me say to you                            | 먼저 네게 말하고 싶은 건,         |
| I can not wait to see you                          | 널 만날 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
| You are the treasure I've been waiting for         | 너는 내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보물이야.   |
| Do you know do you know                            | 알고 있어? 정말 알고 있어?        |
| How much I really need you                         | 내가 너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
| I dey pray for the day when I can finally kiss you | 나는 네게 입 맞출 수 있는 그날을     |
| You know say everyday                              | 매일 기도하고 있어.             |
| I dey pray for you oh                              | 매일 네가 평안하길 기도해.         |
| In my heart oh there is a permanent place for you  | 내 마음엔 네가 영원히 머물 자리가 있어. |
| ....                                               | .....                   |



|                                                                                                                                                                                                                                                                                                                                                                |                                                                                                                                                                                                                                            |
|----------------------------------------------------------------------------------------------------------------------------------------------------------------------------------------------------------------------------------------------------------------------------------------------------------------------------------------------------------------|--------------------------------------------------------------------------------------------------------------------------------------------------------------------------------------------------------------------------------------------|
| That's why my heart e dey beat like<br>duduke du du ke<br>Cos na you I choose oh ayanfe mi a yan fe<br>I sing for you and<br>I be like duduke du du ke<br>Baby na you I go pick<br>oh ayanfe mi a yan fe<br>Gbo temi oh see<br>I may not give the world to you<br>But I'll give you what I have oh<br>Oh baby oh you are my angeli oh<br>Ko duro o le Ife mi o | 그래서 내 심장이<br>'두두케' 뛰는 거야.<br>내가 선택한 너니까, 내 사랑, 내가 택한 사람.<br>너를 위해 노래하면<br>마음이 '두두케, 두두케' 하고 울려.<br>아기야, 내가 선택한 건 너야. 내 사랑,<br>내가 택한 사람.<br>내 말 들어줘. 내가 너에게 세상 전부를<br>줄 순 없지만<br>내가 가진 건 모두 너에게 줄게.<br>오, 아기야, 너는 나의 천사야.<br>내 사랑, 곁에 머물러줘. |
|----------------------------------------------------------------------------------------------------------------------------------------------------------------------------------------------------------------------------------------------------------------------------------------------------------------------------------------------------------------|--------------------------------------------------------------------------------------------------------------------------------------------------------------------------------------------------------------------------------------------|

〈Duduke〉는 시미가 임신 중에 태아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담아 만든 곡으로,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모성의 주체성, 여성의 생명 창조 능력,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정체성 형성을 서정적으로 구현하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곡의 제목이자 가사 속 'Duduke'는 심장이나 북의 박동을 의미하며, 시미는 자신의 아이를 향한 기다림과 설렘을 표현하기 위해 이를 메타포로 사용한다. 시미는 가사에서 모성이 외부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관계임을 강조한다. 특히 “너를 선택했다”는 선언은 사랑과 관계, 모성 모두가 여성의 자율적 선택에 기반함을 명확히 한다.

이 곡은 우머니즘과 마더리즘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성, 생명 중심적 가치, 모성의 긍정적 재해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시미는 미래의 아이와 자신을 잇는 관계를 내밀하게 묘사하며, 모성이 여성의 정체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주체성(relational agency)’을 확장하는 경험으로 표현한다. 이는 전통적 가족 규범 속에서 모성을 희생과 의무로만 인식해 온 사회적 관점을 넘어, 자기 인식과 정서적 능력에 기반한 창조적 경험으로 모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곡에서 시미는 자신의 사랑, 소망, 두려움, 기대를 적극적으로 언어화하며 감정 표현을 통해 스스로의 위치와 역할을 규정한다. 이는 아프리카 사회에서 여성의 감정과 욕망, 목소리가 종종 주변화되어 온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한다. 이는 기존의 규범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고 정서적·문화적 차원에서 사회적 의미를 변화시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Duduke〉는 아프리카 대중음악에서 여성의 모성을 재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 노래에서의 모성은 억압적 규범이 아닌 자기선택과 생명에 대한 축복이자, 여성적 존재의 확장을 담은 서사적 장치로 나타난다. 이는 현대 아프리카 페미니즘 이론이 강조하는 여성의 자율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 5. 결론

오늘날 대중문화는 새로운 아프리카의 페미니즘적 실천이 일상적 언어와 감정, 미학적 스타일 속에서 구현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기능한다. 나이지리아 페미니즘은 협력(Collaboration), 화해(Conciliation), 협동(Cooperation),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y) 등 네 가지 전략을 통해 남성과 공간을 공유하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Amaefula, 2021: 299). 이는 아프리카 페미니즘이 강조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공동체적 자존감, 비대립적 저항의 원칙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나이지리아 힙합에서는 리자두 시스터즈를 비롯해 ‘블러디 시빌리언(Bloody Civilian)’, ‘굿 걸 LA(Good Girl LA)’ 등의 여성 아티스트들이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행동 양식에 대한 거부를 곡에 담아냈다. 또한 본문에서 다룬 시미의 곡이 감정적 호소를 넘어 여성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축을 드러내는 것처럼, 템스(Tems), 티와 새비지(Tiwa Savage), 와제(Waje), 아이라 스타(Ayra Starr)를 비롯한 새로운 여성 아티스트들은

나이지리아 음악계에서 페미니즘을 재정의하려 시도하고 있다.

시미는 가부장적인 나이지리아 사회에서 당당히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프리카 페미니즘의 실천이 대중문화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미는 여성의 감정과 경험을 단순한 개인적 서사로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율성과 협상, 일상적 억압, 모성의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나이지리아 사회에서 작동하는 젠더 권력의 구조를 드러낸다. 특히 그의 음악은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관계 속에서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해 온 규범적 역할과 기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또한 시미는 곡 이외에도 인터뷰와 소셜 미디어,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 예로 시미는 2019년 나이지리아의 남성 아티스트인 파토랭킹(Patoranking)과 함께 'Jericho'라는 곡을 발표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시미의 동선을 따라 전개되며, 두 사람의 구도는 '완전히 동등한 관계'로 그려진다. 이러한 메시지는 아프리카 페미니즘이 강조해 온 공동체적 가치와 비대립적 저항의 방식과 맞닿아 있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미를 비롯한 나이지리아의 여성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페미니즘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 주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사회에서 새로운 페미니즘적 서사를 구축한다. 이는 오늘날 나이지리아 사회 속에 아프리카 페미니즘이 부분적이지만 선명하게 기능하고 있으며, 향후 힙합을 비롯한 여러 대중문화를 통하여 더욱 그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음을 방증한다.

## | 참고문헌 |

- Acholonu, Catherine Obianuju, 1995. *Motherism: The Afrocentric Alternative to Feminism*, Owerri: Afa Publications.
- Adebayo, A. 1996. "The African mother: Her changing perceptions in West African Fiction." In *Feminism and Black Women's Creative Writing. Theory Practice Criticism*, ed. Adebayo, Ibadan: AMD Publishers.
- Adesanmi, P. 2004. "Of Postcolonial Entanglement and Durée: Reflections on the Francophone Novel," *Comparative Literature* 56 (3): 228 - 42.
- Adegoju, A. 2009. "The Musician as Archivist: An Example of Nigeria's Lagbaja," *Itupale Journal of African Studies* 1: 1 - 23.
- African Literature Today. 2006. *New Directions in African Literature*, ed. Ernest N. Emenyonu, Nigeria: Heinemann.
- Alkali, Muhammad, et al. 2013. "Dwelling or Duelling in Possibilities: How (Ir)relevant Are African Feminisms?" *GEMA Online Journal of Language Studies* 13 (3).
- Amaefula, Rowland Chukwuemeka, 2021. "African feminisms: Paradigms, problems and prospects," *Feminismo-s* 37: 289-305.
- Arndt, Susan. 2002. *The Dynamics of African Feminism: Defining and Classifying African Feminist Literatures*,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 Awala, Oritsejomi Damilola, 2008. *The Contemporary Nigerian Popular Music: A Study of the Hip-Hop Styles*, PhD diss., University of Lagos.
- Bailey, Moya. 2021. *Misogynoir Transformed: Black Women's Digital Resistan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Bádéjo, Deirdre, 1998. "African Feminism: Mythical and Social Power of Women of African Descent,"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29 (2): 94 - 111.
- Chigwedere, Yuleth, 2010. "The African Womanist Vision in Vera's Works," *Journal of Literary Studies* 26 (1): 20 - 44.
- Connell, R. W., and J. W. Messerschmidt, 2005.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 Society* 19 (6): 829 - 859.
- Decker, Alicia C., and Gabeba Baderoon, 2018. "African Feminisms: Cartograph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eridians* 17 (2): 219 - 31.
- Ebunoluwa, Sotunsa Mobolanle, 2009. "Feminism: The Quest for an African Variant,"

-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3 (1).
- Eze, Samson Uchenna, 2020. "Glocalisation of Nigerian Contemporary Hip-Hop Music," *Journal of the Musical Arts in Africa* 17 (1): 1 - 18.
- Ezeigbo, Akachi, 2012. *Snail-sense Feminism: Building on an Indigenous Model*. Lagos: University of Lagos.
- Graham, R, 1989. *Stern's Guide to Contemporary African Music*, London: Pluto Press.
- Haugen, J. D. 2003. "'Unladylike Divas': Language, Gender, and Female Gangsta Rappers," *Popular Music and Society* 26 (4): 429 - 44.
- Hooks, Bell, 1998. "Black Feminism: Historical Perspective," In *Call and Response: The Riverside Anthology of African American Literary Tradition*, eds, Liggins Hills et al, Boston: Houghton Mifflin.
- Iwamoto, D. K., J. Creswell, and L. Caldwell, 2007. "Feeling the Beat: The Meaning of Rap Music for Ethnically Diverse Midwestern College Students—A Phenomenological Study," *Adolescence* 43 (166): 337 - 51.
- Kanu, Lilian A., and Geraldine I. Nnamdi-Eruchalu, 2023. "Misogyny in the Lyrics of Selected Nigerian Hip-Hop Songs: A Stylistic Analysis," *AWK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ry Studies* 10 (1): 163 - 86.
- Kibona Clark, M, 2023. "Decolonizing African Studies Approaches to Research on African Women in Hip-Hop," In *Global Hip-hopography*, 159 - 79. Cham: Springer.
- Kolawole, M. E. M, 1997. *Womanism and African Consciousness*,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 Mueni, J, 2025. "A Critical Analysis of Messages Relayed about the Female Gender through Kenyan Secular Hip-Hop Songs and Videos," *Journal of African Interdisciplinary Studies* 9 (7): 136 - 47.
- Nkealah, Naomi, 2016. "(West) African Feminisms and Their Challenges," *Journal of Literary Studies* 32 (2): 61 - 74.
- Nnaemeka, Obioma, 1999. "Nego-feminism: Theorizing, Practicing, and Pruning Africa's Way,"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9 (2): 357 - 85.
- Ntarangwi, Mwenda, 2007. "Hip-Hop, Westernization and Gender in East Africa," In *Songs and Politics in Eastern Africa*, edited by Kimani Njogu and Hervé Maupeu, 273 - 302. Mkuki na Nyota.

- Ntarangwi, Mwenda. 2009. *East African Hip-Hop: Youth Culture and Globaliz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Ntarangwi, Mwenda. 2010. "African Hip-Hop and Politics of Change in an Era of Rapid Globalization," *History Compass* 8 (12): 1316 - 27.
- Ogundipe-Leslie, Molara. 1994. *Re-creating Ourselves: African Women and Critical Transformations*.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 Ogunyemi, Chikwenye Okonjo. 1985. "Womanism: The Dynamics of the Contemporary Black Female Novel in English," *Signs* 11 (1): 63 - 80.
- Oikelome, A. O. 2013. "Are Real Women Just Bad Porn?: Women in Nigerian Hip-Hop Culture,"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5 (9): 83 - 98.
- Olajumoke, S. 2020. "Hip-Hop Music Correlates of Undergraduates' Perception of Social Vices in Three Selected Universities in Ogun State," *Idia: Journal of Mass Communication*, Igbinedion University, Okada.
- Onanuga, P. A. 2017. "Of Commodities and Objects: Women and Their Representations in Nigerian Hip-Hop," *Muziki* 14 (2): 81 - 108.
- Pough, G. D. 2004. *Check It While I Wreck It: Black Womanhood, Hip-Hop Culture, and the Public Spher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Pough, G. D., E. Richardson, A. Durham, and R. Raimist, eds. 2007. *Home Girls Make Some Noise: Hip Hop Feminism Anthology*. Mira Loma, CA: Parker Publishing.
- Powell, Kevin. 2000. "Hip-Hop Is the Most Important Youth Culture on the Planet," *Time*. Web, 22 March 2010.
- Rabaka, R. 2011. *Hip Hop's Inheritance: From the Harlem Renaissance to the Hip Hop Feminist Movement*. Lanham, MD: Lexington Books.
- Railton, Diane, and Paul Watson. 2005. "Naughty Girls and Red-Blooded Women: Representations of Female Heterosexuality in Music Video," *Feminist Media Studies* 5 (1): 51 - 63.
- Steady, Filomina Chioma. 1996. "African Feminism: A Worldwide Perspective," In *Women in Africa and the African Diaspora: A Reader*, 2nd ed., edited by Rosalyn Terborg-Penn and Andrea Benton Rushing, 3 - 21. Washington, DC: Howard University Press.
- The Guardian. 2020. "Feminism Makes Many Men Feel So Vulnerable - Simi," *The Guardian Nigeria*, 26 February 2020. Accessed January 26, 2026.

- Thomas, G. 2009. *Hip-Hop Revolution in the Flesh: Power, Knowledge and Pleasure in Lil' Kim's Lyric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alker, Alice. *The Color Purple*. New York: Harcourt, 1982.
- Whitsitt, Novian. 2002. "Islamic-Hausa Feminism and Kano Market Literature: Qur'anic Reinterpretation in the Novels of Balaraba Yakubu."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3 (2): 119 - 36.
- Zichermann, S. C. 2013. "The Effects of Hip-Hop and Rap on Young Women in Academia." PhD diss., University of Toronto.

Abstract

## African Feminism in Nigerian Hip-Hop – A Case Study of the Artist Simi

Kwon, Youngseu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usic of West African women hip-hop artists, particularly in Nigeria, as a site of feminist practice by analyzing their messages through the lens of African feminism. While feminist thought in West Africa has evolved through decolonial histories and communal values, the hip-hop scene remains dominated by male-centered narratives that marginalize women's experiences and subjectivity. Addressing this gap, the study uses Nigerian artist Simi as a case study to explore how her music articulates themes of autonomy, motherhood, and everyday oppression, aligning with African feminist principles of cooperation, complementarity, and resistance. By investigating how these artists challenge the gender norms reproduced in Nigerian hip hop, the study argues that their work serves as a vital mechanism for reshaping societal gender dynamics. Ultimate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Nigerian women's hip hop functions not merely as musical expression, but as a transformative space where African feminist values are materialized, signaling the continued expansion of women's agency across the continent.

**Key words:** Hip Hop, Nigeria, Women Artists, West Africa, African Feminism

■ 투 고 일 : 2026년 3월 10일  
■ 최초심사일 : 2026년 4월 2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4월 17일



## 『여성학연구』 간행규정

###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의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 조 (발행)

『여성학연구』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 제3 조 (원고내용)

- (1)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의 주제는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 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젠더관련 논문이어야 한다.
- (3) 『여성학연구』의 원고는 연구논문, 기획논문, 특집, 서평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연구논문 : 이론적 분석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 논문
  - ② 기획논문 : 여성연구소 기획 하에 집필된 연구논문
  - ③ 특집 : 대답이나 좌담 등 여성연구소 기획의 결과물
  - ④ 서평 : 최근 3년간 발행된 여성주의 관련 단행본, 간행물, 논문에 대한 서평

#### 제4 조 (논문의 투고자격)

- (1)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은 석사 학위 이상 소유의 여성/젠더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가 투고할 수 있다.
- (2) 한 호에 투고되는 연구논문 또는 기획논문의 수는 주저자 당 하나로 제한한다. 다만 공동저자인 경우는 두 개까지 가능하다.

#### 제5 조 (원고투고 및 접수)

- (1) 원고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으나 3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2호, 9월 1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1호의 간행 일정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 원고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 파일 제출 시 투고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와 원고 내용의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주 소 : (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공동연구소동 715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 전 화 : 051) 510-1893

- 이메일 : [pusanwomen@pusan.ac.kr](mailto:pusanwomen@pusan.ac.kr)

- (3) 원고 투고 시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논문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수의 저자가 관여한 경우에는 저자의 기여도 순서대로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
- (4) 원고내용에는 투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원고 내용에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5)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입각하여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6)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 제 6 조 (편집위원회)

- (1)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는 『여성학연구』의 편집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한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가운데서 여성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원고접수
  - ② 심사위원 위촉
  - ③ 투고된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의 심사
  - ④ 관련 규정의 제·개정
  - ⑤ 기타 『여성학연구』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중요사항
- (6)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7 조 (원고심사절차)

- (1)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요강에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혹은 『여성학연구』의 성

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대상원고의 저자명은 익명으로 하고 제목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 (3)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4)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제8 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1) 연구의 독창성
- (2) 연구방법의 타당성
- (3) 전개의 논리성
- (4) 문장력
- (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
- (6) 젠더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도
- (7) 형태사항의 적절성(원고분량, 도표, 요약 등)

제9 조 (심사결과판정)

- (1)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결과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각 심사의견에 따른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에 의한다.
  - 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심사결과    |
|----|---------|---------|-------|---------|
| 3  |         |         |       | 게재      |
| 2  | 1       |         |       | 게재      |
| 2  |         | 1       |       | 수정 후 게재 |
| 2  |         |         | 1     | 수정 후 게재 |
|    | 3       |         |       | 수정 후 게재 |
| 1  | 2       |         |       | 수정 후 게재 |
|    | 2       | 1       |       | 수정 후 게재 |
| 1  | 1       | 1       |       | 수정 후 게재 |
| 1  | 1       |         | 1     | 수정 후 게재 |
|    |         | 3       |       | 수정 후 재심 |
|    | 2       |         | 1     | 수정 후 재심 |
| 1  |         | 1       | 1     | 수정 후 재심 |
| 1  |         | 2       |       | 수정 후 재심 |
|    | 1       | 1       | 1     | 수정 후 재심 |
|    | 1       | 2       |       | 수정 후 재심 |
|    |         | 2       | 1     | 게재 불가   |
|    |         |         | 3     | 게재 불가   |
| 1  |         |         | 2     | 게재 불가   |
|    | 1       |         | 2     | 게재 불가   |
|    |         | 1       | 2     | 게재 불가   |

\*숫자는 심사위원의 수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며,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수정본과 심사평 반영 사항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 결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의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초심      |         |         | 비고                                                                                                         |
|---------|---------|---------|------------------------------------------------------------------------------------------------------------|
| 심사자 A   | 심사자 B   | 심사자 C   |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세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두 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기존 심사위원 외에 제3자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
|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한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 의뢰하여 적어도 한 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두 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두 명이 모두 게재 판정한 경우 게재 확정. 한 명만이 게재 판정할 경우 편집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며, 다음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재심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제3자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 (3) 기타 게재순서,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4)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급에 따라 일부논문은 다음호로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 (수정 및 이의신청)

- (1)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3)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재심 및 재투고가 불가능하며,

해당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4)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심사  
에 대한 명시적인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  
의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결과판정이 부당한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판정을 재고하고,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 (원고 편집)

- (1) 편집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게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원고에  
한해 발간을 위한 교정 교열 및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 (2) 게재될 원고의 초고는 저자가 하며, 저자는 발간 전에 최종본 원고를  
확인하고 원고 내용에 의도하지 않았던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편집위원회에 편집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원고발표)

최종 게재 원고는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http://mypage.pusan.ac.kr/women>), KCI, KISS에 PDF 파일 형식으로 원문을 공개하므로, 이에 대  
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판권)

『여성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소유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2.10.31.

(5차 개정) 2024.04.30.

##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

『여성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미발표된 것으로 다음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원고 분량 및 구성〉

1. 한글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150매로 하며, 200매를 넘을 수 없다.
2. 영어 논문의 분량은 10,000단어 내외로 하며, 15,000단어를 넘을 수 없다.
3. 논문 편집 후, 30쪽을 넘는 경우 1쪽 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4. 논문의 제목 및 저자 이름,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논문에는 목차,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6개 내외),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주제어(Key words)(6개 내외)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요약은 한 단락으로 작성하며 300단어 내외로 한다.
5.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6. 원고의 구성은 논문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원고 편집 양식〉

1. 원고는 한글(1997 이후판) 프로그램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원고용지는 백색의 A4용지를 세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그림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여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위쪽: 35mm, 아래쪽: 35mm, 좌측: 30mm, 우측: 30mm.
4. 글자의 크기는 10, 장평은 95, 글자 간격(자간)은 0, 줄 간격은 160으로 하고, 글자체는 신명조를 사용한다.
5. 본문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한 글자(혹은 두 칸) 뒤로 들여 쓰기를 한다.
6. 쪽 번호는 원고 하단의 중앙에 위치시키며, 줄표 없이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7. 본문의 소재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1, 1), (1)로 구분하며, 더 세부적인 목차는 ①로 표기한다.

###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인용한 문헌은 각주가 아니라 본문주에서 제시한다.
2. 본문에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구체적인 부분을 인용 또는 참고할 때 :  
홍길동(1997: 127) 또는 (홍길동, 1997: 127)
  - 2) 전반적인 참고로 페이지 제시가 불필요할 때 :  
홍길동(1997) 또는 (홍길동, 1997)
  - 3) 저자의 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처음에만 원명을 괄호 속에 넣고, 그 이후에는 한글표기만 한다.  
한글표기와 원명 모두 성(姓)만 표기한다.  
예) 맥किन(MacKinnon)은 …
  - 4) 인용되는 도서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책이름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 1999; 허난설현, 2000)

- 5) 저자가 다수일 경우에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고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만 표시하고 그 외의 저자는 ‘외’ 또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허난설현 외(2001) 또는 Cornell et al. (1999)

- 6) 동명 저자의 서로 다른 연구가 본문에 포함될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출판 연도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저자의 성(姓)만 표기한 서양 문헌의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저자의 성(姓) 앞에 이름의 첫 글자를 기입할 수 있다.

예) 허난설현(1992)은...

예) A. Dworkin(1997)과 R. Dworkin(1996)의 차이는...

3. 본문주에서 국내·외 문헌을 함께 인용할 때 국내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국외문헌을 제시한다. 국내·외 문헌 모두 먼저 간행된 문헌부터 제시한다.
4.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원래의 저술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주(footnote)에서 서지사항을 제시한다.
5.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 또는 언급된 것에 한하며, 다음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
  - 1) 첫째, 국내에서 출간된 문헌(번역문헌 포함)은 저자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둘째, 국외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제시한다.
  - 2)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동일 저자의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년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 3)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을 먼저 쓰고 쉽표를 찍는다. 단,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부터는 영문식으로 표기한다.

- 4) 따옴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경우 닫는 따옴표 안에 찍는다.
- 5) 단행본이나 잡지에 실린 논문은 맨 끝에 페이지를 명기한다.
- 6) 참고문헌의 종류에 따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 국내문헌 -

조혜정. 199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하딩, 샌드라. 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역). 서울: 나남출판.

- 국외문헌 -

Andersen, Margaret L. 1988. *Thinking About Women: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 and Gender*. N.Y. : Macmillan Pub. Comp.

(2) 정기간행물의 논문

권영자. 1988. “서비스업 여성종사자에 관한 연구.” 『여성 연구』 6(2): 5-33.

Betz, Michael and Lenahan O'Connell. 1989. “Work Orientations of Males and Females.” *Sociological Inquiry* 59(3): 318-330.

(3) 편집한 책의 논문

조옥라. 1985. “사무직 여성의 일, 사회관계,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한국여성과 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04-129.

Huber, John. 1986. “A Theory of Gender Stratification.” Laurel Richardson and Verta Taylor(eds). *Feminist Frontiers II*. N.Y.: Random House. 10-19.

(4) 학위논문

하정화. 2010. “부산 여성기자의 젠더 경험과 여성주의 실천 연구: 지역 여성주의의 가능성 모색.” 부산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5) 학술대회 발표문

장명선. 2008. “적극적 조치의 합헌적 요건.” 한국젠더법학 회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제7차 한국젠더 법학회 학술대회. 「젠더법학에서의 성평등의 이론과 실제(Ⅲ)」 자료집(2008.4.12.).

(6) 신문기사 · 잡지

진혜민. 2019. “불꽃페미 ‘여성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여성신문〉. 2019.7.3.

Walker, L. A. “The Battered Woman.” *New York Times*, 23 July, 1993.

(7) 통계 자료

통계청. 2017. 〈가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 인터넷 자료

여성부. 2008. “여성 e news.”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08.4.16.]

진주원. 2019. “김복동 운동가·서지현 검사, 3.8세계여성의날 수상.” 〈여성신문〉. 2019.3.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566> [검색일: 2019.7.5.]

6. 이 원고작성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편집 위원회에서 발행한 〈여성학연구〉 기존 호의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89.10.31.

(1차 개정) 2010.06.30. (2차 개정) 2018.04.30.

(3차 개정) 2019.06.30. (4차 개정) 2020.09.30.

## 『여성학연구』 연구윤리규정

### 제1 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은 부산대 여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여성학연구』를 비롯한 연구결과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투고한 필자, 편집위원(회),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 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1. 간행규정 제3조(원고의 내용) 1항에 따라, 『여성학연구』에 게재하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계획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 (2)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아무런 명시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5)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자는 자신의 원고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겐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 제3 조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 그리고 심사위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 제4 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5 조 (연구윤리 위원회)

1.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는 즉시 5인 이상으로 연구윤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저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4.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5.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의견 청취 결과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6 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 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8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조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을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논문을 취소한다.
- (2) 부산대 여성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 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제9 조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 2.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7.10.31.

(1차 개정) 2019.06.30.

##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36권 제2호 원고모집

『여성학연구』는 1988년 설립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가 198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로서, 2017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승격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10월 31일에 발행할 제36권 제2호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여성학연구』 <원고작성요강>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투고자격 : 석사 이상
- 원고주제 : 학문 분야별 여성/젠더관련 현안 및 문제  
또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성관련 논문
- 접수마감 : 2026년 9월 1일
- 심 사 료 : 6만원 (재심사시 심사료가 추가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231-3621-41 부산대 여성연구소  
(게재시 일반논문은 10만원, 연구비 지원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투고방법 : 부산대 여성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  
(<https://pusanwomen.jam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논문제출
- 연 락 처 : 부산대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전화 (051)510-1893, 팩스 (051)581-2478  
홈페이지: <http://women.pusan.ac.kr>  
웹메일: [pusanwomen@pusan.ac.kr](mailto:pusanwomen@pusan.ac.kr)

## 『여성학연구』 편집위원회

---

|           |                                                     |
|-----------|-----------------------------------------------------|
| 편 집 위 원 장 | 김남이(부산대학교 한문학과)                                     |
| 편 집 위 원   | 기희경(부산대학교 교육학과)                                     |
|           | 김경연(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           | 김보명(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           | 김수정(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 김애령(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
|           | 김인선(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           | 문재원(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           | 박미선(한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           | 백영경(제주대학교 사회학과)                                     |
|           | 신지은(부산대학교 사회학과)                                     |
|           | 안숙영(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학과)                               |
|           | 주현희(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
|           | 추주희(전북대학교 사회학과)                                     |
|           | 황정미(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           | 신기영(お茶の水女子大學 人間文化創成科學研究科)                           |
|           | Nam Yunju (Univ. at Buffalo, School of Social Work) |
| 편 집 간 사   | 배병용(부산대학교 사학과)                                      |

---

## 여성학연구 제36권 제1호

인 쇄 | 2026년 4월 30일

발 행 | 2026년 4월 30일

발 행 인 | 김남이

발 행 처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051-510-1893)

홈페이지 | <http://women.pusan.ac.kr>

이 메 일 | [pusanwomen@pusan.ac.kr](mailto:pusanwomen@pusan.ac.kr)

인 쇄 처 |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26

ISSN 1598-950X

## Articles

Occupational Health Experiences of Korean Women Outdoor Worker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An Exploratory Study

| Kim, Hyangsu · Ryu, Jia

An Ecofeminist Reading of Research Trends on “Environmental Justice”

| Bae, Hyejeong

Relational Materiality in the Public Square and Solidarity-Based Citizenship

| Jeong, Yeonbo

Marking Women Experts

| Bae, Hongchul

The Gendering of Alone Digital Time

| Kim, Kyungmi

How Is the Domestic and Childcare Labor Market Changing?

| Moon, Jisun

Self-help practices among elderly women during the pandemic and its significance

| Choi, Yisook

A Study on Female-related Edicts (Sugyo) in the 『Sugyo-jiprok』 of the Late Joseon Dynasty

| Hong, jihyeon

African Feminism in Nigerian Hip-Hop

| Kwon, Youngseung